

최종보고서 2002-4

중 국 농 업 법 령 해 설 연 구

농림부 도서실



0001489

협 성 대 학 교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국농업법령 해설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년 4월

연구책임자 : 이 병 기 (협성대학교 교수)

연구 원 : 한 상 돈 (중국 연변과기대 교수)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7
제2장 중국의 법제	13
1. 중국의 정치체제	13
2. 중국의 법치 현실	25
3. 중국 법률제도 개관	31
제3장 중국 농업 법령의 체계	39
1. 농업입법의 발전단계	39
2. 농업관련법령의 구조와 특징	41
3. 농업법규와 농업정책	46
4. 농업관련 행정법규 현황	49
제4장 중국의 주요 농업제도	57
1. 농업기본제도	57
2. 농업토지자원보호 제도	67
3. 농작물 종자관리 제도	75
4. 농업기술보급 제도	85
5. 농약관리 제도	90
6. 축산·수의관리 제도	100
7. 동식물 검역 제도	109
제5장 중국의 주요 농업관련 법령	113
1. 농업일반분야 주요 법령	113
2. 농업생산관련분야 주요 법령	163
3. 축목·수의분야 주요 법령	225
4. 동식물검역분야 주요 법령	283

<표차례>

<표 1> 농업입법의 발전단계	41
<표 2> 농업관련법규의 분야별 법 형식별 현황	46
<표 3> 농업생산 분야의 농업관련 행정법규	51
<표 4> 목축수의 분야의 농업관련 행정법규	52
<표 5> 농기계·농업개발·시장정보 분야의 농업관련 행정법규	54
<표 6> 동식물검역 분야의 농업관련 행정법규	55
<표 7> 농업기술·교육 분야의 농업관련 행정법규	56

<그림차례>

<그림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구 조직체계도	24
<그림 2> 법령의 형식과 체계	38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1) 최근 중국이 세계무대에 급부상함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에서 교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 농업부문 역시 1992년 국교수립 이후 짧은 기간에 교역량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음

- (2) 개혁개방 이후 중국농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농업시장에서 중국 위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몰밀듯이 몰려오면서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뿌리 채 뒤흔들고 있는 실정임

8 중국농업법령해설연구

- (3) WTO가입과 2008 북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중국농업의 위상이 한층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에 중국농업문제와 맞물려 있는 우리농업의 어려움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농업의 발전문제를 중국농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배경임
- (4) 중국농업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국농업 관련 연구동향을 보면 중국농업의 실상을 지역적으로 파악하는 몇몇 연구들과 한·중 농업협력방안을 추상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에서 모색하는 수 편의 연구 등이 고작인 실정임
- 중국농업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즉, 중국농업을 알고자하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임
- (5) 중국과 다양한 형태의 농업교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우리 농업 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국농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 중국 농업관련법령에 대한 고찰이 중국농업을 이해하게 하는 효과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함. 법제도란 구체적인 현실조건과 지향하는 방향성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개별 주체들의 행위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개개 농업법령들이 바로 중국 농업의 실상과 함께 그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임.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크게 상이한 수많은 부분들의 모자이크 같은 중국농업의 실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출발선에서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임
- (6) 한편 농업관련법률의 범위가 방대할뿐더러 영토도 광활하고 지역마다 또 농업조건이 다른 관계로 농업법 체계가 광범위하다 보니 농업법령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의 직접적인 배경을 여기서 찾음

- (7) 나아가 중국농업법 규범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농업협력 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임
- 중국과의 농업교류협력 문제는 1차적으로 현실의 규범 틀 속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임
 - 중국 농업관련법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또 하나의 배경을 이루는 대목임

2. 연구의 목적

- (1) 최근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중국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여 보편성을 갖는 연구결과가 우선 필요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농업관련법령을 해설함
- 개개 법규범이 담고 있는 실체적 내용을 우리의 용어로 해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 (2) 방대한 농업분야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중국 농업관련법 규정을 체계화하여 조망함
- 농업관련법령의 체계적 조망을 위한 관점을 정립하기 위해 중국법제의 원리에 대해 먼저 논의함
- (3) 법규범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실제 농업 상을 분석하여 중국농업의 현실과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이해를 '규범적 차원'에서 도모함

3. 연구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 농업관련법령 해설은 중국농업 관련 개개 법규정을 번역하고, 전문가가 감수 및 해설을 함
- 농업관련법령의 체계화는 기본적으로 일반 법제의 성립 및 구성원리에 입각해서 논의를 시도함.
- 중국의 현실 농업제도에 대한 고찰은 법규범 속에 스며있는 시대적 농업상을 내용 분석을 통해 추출함

(2) 연구범위

- 기본적으로 법조(法條)형식을 띤 규범성 문건을 대상으로 함. 법률형식은 물론이고 국무원 및 농업부에서 제정하는 행정법규 및 규장 등 규범성을 띤 문건은 1차적으로 연구대상에 속함
- 그 범위가 광범위한 관계로 여기서는 중요한 법령을 추출해서 연구대상으로 삼음. 기준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임. 의미가 있는 법령들은 가급적 포함하고자 하였음

4. 기대효과

- (1) 다양한 형태로 폭 넓게 전개되는 대 중국 농업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어 우선 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이므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법규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 관련법규정을 모른 채 뛰어들어 주먹구구식 중국 투자의 후유증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법규범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한 단적인 사례임

- (2) 특히, 중국농업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농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여야 하는 농정 당국자의 정책입안 기초자료 즉, 중국농업을 전체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제 2 장

중국의 법제

1. 중국의 정치체제

(1) 국가권력의 조직과 활동 원리

- 법 제도란, 그 사회의 지배관계와 경제구조를 반영하는 정치적 역학관계를 규범화하고 있는 헌법을 비롯하여 특정영역에서의 사회 경제적 관계를 규정하는 하위의 제반 규범들을 포괄하는 총체적 규범체계를 뜻함
 - 중국 법제의 논의에서 그 성립 토대가 되는 정치체제 즉, 국가권력의 조직과 활동 원리를 먼저 고찰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음

- 중국의 정치체제는 서구와는 판이하게 다름. 서구 정치체제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면, 중국은 공산당 주도 아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14 중국농업법령해설연구

- 중국은 헌법에서 이러한 정치노선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공산당 지도 원칙과 민주집중제라고 부르는 권력집중 원리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는 정치권력 조직과 활동의 핵심원리로 표방하고 있음
 - 이렇듯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중국의 사회주의 헌법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헌법과 근본적으로 그 성질을 달라하고 있음¹⁾.

1) 당 지도의 원칙

-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지도적 중핵으로서 당의 지도를 헌법의 극히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음²⁾. 당의 국가정권에 대한 우위 원칙을 표현하고 있음

- 중국 헌법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정신을 확인해 주고 있음
 - 국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지도는 자신의 정당인 공산당을 통하여 실현되며, 노농 동맹은 중국의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조치의 출발점이라고 함
 - 당과 정부가 정책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할 때는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근본적 이익에 합치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1) 서구 정치체제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는 근대헌법은 주권이 군주로부터 국민에게로 이양되고 중산계층의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대헌법 역시 근대헌법 정신의 연장선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생존권을 부여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수정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적 지향을 보이고 있다.

2) 헌법 전문에서 당 지도 원칙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발췌하면,

“ ~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은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의 인도를 받아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단히 개선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법질서의 건전화에 도모하고, 자력갱생, 각고분투에 힘써 공업·농업·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여 부강하고 민주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당이 국가정권을 지도한다고 하여 국가의 정권기관에 직접 명령을 발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국가정권 기관을 대신하여 구체적 행정활동을 할 수 없음. 당으로서 정에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당과 국가기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① 당은 국가기관의 활동의 성질과 방향에 올바른 지시를 한다.
 - ② 당은 국가기관 및 그 활동부문을 통하여 당의 방침·정책을 관철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 ③ 당의 사업에 충성하며 활동능력이 있는 당 및 당외의 간부를 선발 추천하여 국가 기관을 충실하게 하며, 각 방면에 있어서의 당원의 모범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발휘시킨다.
- 대체로 당은 자기의 강령, 노선, 방침, 정책을 통하여 자기의 지도를 실현하는바, 당의 기본적 지도방식은 정치지도이며, 이밖에 사상적 지도와 조직적 지도도 병행해서 행하지만 일의 대소를 불문하고 당이 관리하는 것은 아님

2) 민주집중제의 원칙

- 중국 헌법은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중국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의 조직형태이며, 기본적 정치제도임을 밝히고 있음
 - 중국 헌법은 이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인민대표회의이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른바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 인민이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를 성립시키고, 인민대표대회를 기초로 모든 국가기구를 수립하여 당 지도 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역사적 임무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중국의 기본적 정치제도임.

(2) 중국의 국가기구: 정치권력의 조직형태

- 중국의 정치권력 조직형태를 나타내는 국가기구는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 '인민대표대회'를 기초로 중앙단위와 각급 지방단위에서 그 정치권력을 기능별로 분담하는 기구를 성립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 당연히 기능별 기구들간에는 횡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보이거나 권력기관인 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는 모든 기구들이 책임을 지는 종속적 관계에서 있음
- 중앙단위 기구와 지방단위 기구들 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최고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조직원리 상 지방 각급 정부기구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성립 모체로 하는 중앙단위 국가기구의 지도 감독을 받는 위계관계에 있음
- 또한 지방 각급 정부기구들은 이렇듯 중앙단위 국가기구에 책임을 지는 동시에 그 성립 모체인 지방단위 권력기관인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을 지는 이중종속제 구조 속에 놓여있음
- 주요 국가기구로서는 먼저 중앙단위에서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와 함께 이를 토대로 구성된 기구로서 의전적 국가원수인 '국가주석'과 최고집행기관인 '국무원'을 비롯하여 '중앙군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 각급 지방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권력기관인 ‘지방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들 기초로 ‘각급 지방인민정부’, ‘지방인민법원’, ‘지방인민검찰원’ 등을 조직하고 있음
- 한편 중앙과 지방조직들간의 체계를 보면 먼저 지방기구들간에는 상급지방기구들이 하급 지방기구들을 지도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며, 지방과 중앙조직들간의 관계 역시 그 연장선에서 ‘지방인민정부는 국무원’에, ‘지방인민법원은 인민법원에’, ‘지방 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에 각각 책임을 지는 가운데 전국의 정부기구들이 상호 분리되고 통합되는 유기적인 체계를 보이고 있음
- 아래에서는 주요 국가기구별로 그 조직의의와 기능을 약술하고 있음

1) 중앙단위 국가기구

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중국의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의 기본적 조직형태이자 정치제도임³⁾
 - 즉, 인민대표대회는 의행(議行) 합일 제도로서, 인민대표대회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가기구들에 의해 그 결정을 집행함
 - 주요기능으로서는 ① 헌법과 법률의 제정, ② 국가의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권, ③ 국가최고기관의 조직 및 감독: 국무원 인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책임자를 선거하고 파면하는 등 핵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회 중인 동안 최고 국가권력을 항상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임

3) 제5기의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총수는 3,497명이다.

- 위원 수는 200명 내외이며, 회의는 일반적으로 2개월마다 1회 개최함

- 주요권한을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음

- ㉠ 헌법, 법률을 해석하고 헌법의 시행을 감독함. 상무위원회의 해석은 새로운 법규범을 만들어 내고 법적 효력을 가짐
- ㉡ 입법권을 행사함. 실제로 헌법 및 몇 가지 기본적인 법률을 제외하고는 대량의 입법활동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됨
- ㉢ 국가생활에 있어서의 중요문제를 결정하는 직권
- ㉣ 국가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는 직권 즉,
 -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활동을 감독하는것'을 비롯하여
 -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 가운데 헌법 및 법률에 저촉하는 것에 대한 취소권 및
 -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지방적 법규 및 결의 가운데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것에 대한 취소권 등을 행사함
- ㉤ 국가기관의 지도자를 임면하고, 임면을 승인하는 직권 등이 그것임

② 국가 주석

○ 대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국가정권을 통솔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함

○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 ②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원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검사장 및 비서장을 임면하며,
- ③ 특사령, 계엄령을 반포하며, 계엄상태를 선언하고 동원령을 반포하고,
- ④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해외주재 전권대사를 파견 또는 소환함

③ 국무원

- 중국의 중앙인민정부임.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채택한 헌법, 법률, 결의를 집행함
- 또한 헌법,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조직활동과 관리활동을 하는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으로서
 - 국무원의 구체적 조직은 '국무원 조직법'으로 정함,
 - 총리는 주석의 지명에 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결정하며,
 - 국무원 구성원은 총리가 지명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결정함⁴⁾
- 그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음
 - ①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행정상의 조치를 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 및 명령을 발함
 - ② 각부, 각 위원회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중앙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직권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
 - ③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및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 ④ 각부, 위원회: 헌법, 법률 및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의하여 당해 부문의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규정을 발하는 것 등임

⑤ 중앙군사위원회

- 전국의 무장력을 지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4) 1982년 5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국무원 부 위원회 기구 개혁 시행방안에 관한 결의” 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서 총 43개의 부 및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20 중국농업법령해설연구

- 중앙군사위원회의 활동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음
 -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하며,
 - 기타 구성원은 주석의 지명에 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함

2) 지방단위 정부기구

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와 그 상무위원회

-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각 행정구역⁵⁾ 내의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임
 - 縣·市 와 鄉·鎮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그 위 계층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은 1계층 이하 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함⁶⁾
 -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음
 - ㉠ 그 행정구역 내에 동급의 인민정부를 조직하고 선출할 권한을 가짐
 - ㉡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서 그 지방의 중대문제를 결정하는 직권을 가짐
 - ㉢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적 법규를 제정할 수 있음
 - ㉣ 현급 이상 지방 인민대표대회는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을 조직하고 선출하는 권한을 가짐

5) 중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3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전국을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 및 자치구를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3. 현 및 자치현을 향, 민족향, 진으로 나눈다.

그리고 직할시 및 비교적 큰 시는 구 및 현으로 나누며,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6) 전국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총 6백여만명에 달한다.

-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縣)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설치함
 - 그 상무위원회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기능과 권한을 항상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임

② 지방 각급 인민정부

-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동시에 각급 인민대표 대회에 책임을 짐
 -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동급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과 부현장, 구장과 부구장, 향장과 부향장, 진장과 부진장을 선출함과 동시에 파면할 권한을 가짐
- 한편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 지도 하에 있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국무원의 지도에 따름
 -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서 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동시에 상급의 국가행정기관에 책임을 지면서 그 활동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중 종속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함
-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 ① 그 행정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도시·농촌 건설사업 및 재정, 민정, 민족사무, 사법행정, 감찰, 계획출산 등의 행정 활동을 관리하고 결정 및 명령을 반포하는 권한과,
 - ② 하급 인민정부의 활동을 지도하고 부적당한 결정이 있으면 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3)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① 인민법원

- 중국의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 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현, 자치현, 시, 시관할구에 설치)과 중급 인민법원으로 구성됨

-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을 감독하고,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을 감독함

- 최고 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동급의 인민대표대회 및 동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각급 인민법원 원장은 동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고 기타의 구성원은 동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함

- 인민법원은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고 법률에만 따름
 - 그렇다고 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님. 법률은 당의 지도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임.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그 자체가 인민법원에 대한 당의 지도를 체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임

- 중국은 현재 2심제의 심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일반사건은 기층 인민법원이 제1심이 되고 중급 인민법원 상소하여 심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
 - 중급 인민법원이 제1심이 되는 경우에는 고급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이를 중심으로 함

② 인민검찰원

- 인민검찰원은 중국의 법률감독기관으로서 국가검찰권의 행사를 통하여 사회주의 법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함
- 인민검찰원 역시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군사검찰원 등 전문 인민검찰원으로 나누어 짐
- 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 파면하고 기타 구성원은 검찰장의 신청에 의하여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함
- 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안에 의하여 하급 인민검찰원 검찰장, 부검찰장 및 검찰위원회 위원을 경질할 수 있음
 - 요컨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상급 인민검찰원의 지도를 받는 한편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2중지도의 원칙을 실시하고 있음
- 인민법원, 인민검찰원,公安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분담하여 책임을 지며, 상호 협력하고 상호제약하여 법률의 명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여야 함
 - 公安기관은 주로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고,
 - 인민검찰원은 체포, 기소를 심사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책임을 지며,
 - 인민법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심리를 책임짐

2. 중국의 법치 현실

(1) 행정 중심의 통치체제와 법치

- 중국은 국가와 당이라는 이중의 행정제도를 갖고 있음
- 1949년에 정권을 잡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정치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음
 - 인치가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국을 지배하면서 사회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침. 지도자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할 '법'으로 국가와 당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지도자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간주되었음
- 1954년 전인대 제1기 1차회의에서 새로운 중국헌법이 채택하고, 두 차례에 걸쳐 준법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교육제도 활성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곤 했으나 1950년대 후반부터 법질서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풍조가 짝트면서 법에 대한 냉소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음
 - 1960년 후반부터 소위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법 제도마저 송두리째 무너짐
- 1978년 공산당 제11기 3차회의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신기원을 열면서 중국의 법률제도 구축은 활기를 띠게 되나,
 - 여전히 법률제도에 기반을 둔 서구의 통치체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행정중심 통치체제의 여러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 그 하나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각종 법률과 법규를 가장 활

7) 공산당 제11기 전인대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강화'와 '사회주의 법률제도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상징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하였다.
즉, 준수해야 할 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발하게 제정한 기관이 국무원을 비롯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배제하고 법을 해석하는 역할까지도 도맡아 왔음
- 모든 행정법규들이 주관행정기관이 해석관을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 또 하나는 국정운영과정에서 법이 종속적 지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임.

- 중국인은 법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법률도구주의'의 입장을 취함. 즉, 법은 행정관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도구 중의 하나일 뿐이며 대개는 정책보다 열위에 있음
- 이러한 행정제도가 중국법률제도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특히 실망스러운 것으로서 법을 지키는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민법원의 미약한 권한을 지적하고 있음

- 중국 법원은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방에서 감시를 받고 있음. 각 인민법원 안에는 공산당위원회가 있으며, 밖에는 공산당 정법위원회가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음
- 인민법원의 사법해석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행정법규와 규칙에 관련된 사안에는 감히 끼어들지 못함. 이러한 사안의 해석에는 국무원 산하의 행정부서가 전담함. 최근들어 행정쟁송법, 행정심방법 등 개혁 행정법이 잇따라 제정되었지만 행정부의 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는 미미하기 짝이 없음

○ 아무튼 중국의 법률제도는 지난 20여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임

-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뒤부터 엄청난 수량의 법령이 제정되고 있음
- 국민의 준법의식과 법률제도에 대한 지식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고, 국가

기관의 권한도 점점 합리적으로 행사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적 감시와 견제가 제도화되고 있음

- 사회의 모든 영역이 법치의 궤도로 이미 진입했거나 진입하는 과정에 있음

(2) 공산당과 법치

- 법의 제정이 법치 구축의 전제라면 법의 집행은 법치 구축의 요건임
 - 법에 명기된 조항을 실천에 옮겨 제약 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어야만 법치의 궁극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음
-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를 체제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임
 - 공산당은 모든 당원, 국가기관, 사회단체를 감독하고 주시하는 임무를 띠고 있음
- 집권 공산당의 법을 대하는 태도가 법의 집행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공산당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과 당헌에도 명시되어 있음
 - 헌법 제5조는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각 정당, 각 사회단체 및 기업, 사업체는 헌법 및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 및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산당 제12회 전국대표대회가 채택한 당규약도 “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또 1979년 9월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완전한 이행을 철저히 보장하는 데 필요한 교시”를 발표하였는데, 이 교시에서 ‘당원과 정부 관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두 명령으로 법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는 등 법률제도를 존중하겠다는 집권 공산당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 그러나 당이 통치의 전면에 나서고, 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현상 등 그릇된 풍토가 당 내부에 만연했던 것은 사실임
 - 부정부패가 공산당의 존립을 뒤흔드는 최대 문제로 지적되는 배경에 법 의식이 미약한 전통적 문화적 영향과 함께 이러한 법률제도를 경시하는 풍조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⁸⁾
 - 현재도 여전히 ‘빨간서류(공산당의 서류)가 까만서류(법률)보다 강한 경우’가 만연하고 있음

-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을 지배해 온 공산당의 통치방식은 과거에 주로 수립해 놓은 정책에 주로 의존하던 것에서 이제는 법에 의지하면서 사회주의 법치제도로 나아가는 것으로 양상이 바뀌었음
 - 장쩌민 총서기는 ‘법치주의는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한 사회가 쌓아 올린 문명과 진보의 중요한 상징이다. 국가안정을 장기적으로 확립하는 데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역설하였음⁹⁾

- 오늘날 중국에서는 국가기구들이 서로를 좀더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당의 고무도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전인대는 최근 한 나라의 법을 입안하고 통과 시키는 의회로서의 소임에 충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 당과 정부도 좀 더 법에 기반한 체계적인 구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 이 과정에서 당의 정책지시와 사법영역의 법적 절차를 적절하게 구별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8) 2001년 전반기에 부패에 연루된 최고위 관료인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戚克杰)이 뇌물수수 혐의로 처형됐고, 건국 이후 최대 밀수사건으로 불리는 원화(遠華) 사건으로 고위간부 14명이 무더기로 사형선고를 받는 등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일보, 2001. 6. 29)

9) 한편 최근, 장쩌민 총서기는 덕치(德治)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법치로 이행 되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가치 문화가 혼재하는 전환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여길 수 있다.

- 당의 역할은 정부의 구체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하고 있음

(3) 법원(法源)의 다양한 형식

- 1978년 공산당 제11기 전대에서 문화대혁명으로 초토화된 법률제도를 새로이 구축하기 위해 입법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기로 결의한 이래 법률제정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음
 - 1980년대 후반까지 시장경제 법률제도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1992년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립이라는 지상과제 앞에서 그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더욱 가속화하여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기에 이룸
- 수많은 법령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제정되다보니 법제의 문란현상이 심화되자, 급기야 법체계를 가닥짓는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을 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그 이후 법체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감
-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던 법령의 명칭들도 정비가 되고 있음
 - 법률은 ‘법’ 또는 ‘결정’이란 이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¹⁰⁾, 행정법규는 ‘조례’, ‘실시조례’, ‘규정’ 등으로, 행정규칙은 ‘방법’, ‘실시방법’ 등으로 통일되는 추세에 있음
- 한편 행정이 법의 우위에 서 있는 그 동안의 문화적, 정치적 현실 분위기 속에 자리잡고 내려온 하나의 관행으로 행정 및 당의 중요정책을 표방하는 문건들이 법조(法條) 형식을 띠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법규와 같은 규범성을 띠면서 국민 생활 깊숙이 간여하는 사회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10) 1982년 3월 제 5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제파괴 범죄를 엄벌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형법의 관련규정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형법조문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 헌법과 당 규약 등에서 법치 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나 완전한 법치기반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보이는 현실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문건들이 갖는 법규범 성격은 부인할 수 없음

- 법규형식이 아니면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성 문건으로서는 정부 정책을 표현하고 있는 '국무원의 문건'과 공산당 지도자의 지도노선을 표현하는 '중앙영도들의 강화'라는 형식을 들 수 있음
 - 중국 중앙 국무원의 중요문건은 주요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정책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던 종전의 통치방식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현재도 중요한 규범적 성격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공산당 지도자들의 담화는 중국이 공산당이 지도하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 규범적 역할이 특히 크게 부각되고 있음¹¹⁾. 공산당 지도원칙과 인치의 측면이 여전히 잔존하는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공산당 지도자들의 담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역할 할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

- 또 '통지'란 명칭으로 국무원 소속 각부 및 위원회에서 공포하는 비 법조(法條)형식의 문건 역시 엄연한 법규적 기능을 하는 규범성 문건으로서 법령형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예를 들면 1988. 3. 12 농목어업부에서 공포한 "부대계통 가축, 가금 및 그 생산품 위탁검역 문제에 관한 통지"에서 비 법조 형식의 일반적 형태의 문건이지만 '군부대에 검역업무를 위탁한다'는 다분히 법 규범적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음

11) 거대한 중국이 전형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혁·개방으로 상징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소위 '흑묘백묘론'이라고 일컫는 덩 샤오핑의 이론에서 찾는다. 이 이론은 1987년 중국공산당 제13기 전국대표대회에서 구체화되고, 1992년 덩 샤오핑이 남방지역을 순시하면서 한 이른바 '南巡講話'에서 만개한다. 이 강화에서 덩 샤오핑은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이 나온 것도 바로 그때이다. 이렇듯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돌리는 직접적 힘의 원천을 지도자의 사상 또는 이론에서 구하는 사실이 중앙 영도들의 담화가 규범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 각종 형식의 농업관련법령 202개 중 58개가 '통지'란 형식의 규범성 문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중국 법률제도 개관

(1) 법률제도의 구축

- 법률제도 구축작업은 '사회주의 법률제도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법치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가 국정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기본방침으로 자리잡음
- 법률제도 구축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입법활동임. 1978년 공산당 제11기 전국대표대회 3차회의에서 상무위원회와 함께 입법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기로 결의
- 1979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7대 법을 채택했는데,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전국 단위의 입법·행정·사법 기구 조직법 및 선거법, 형사법 및 형사소송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임
- 이어서 당 전국대표대회 제11기 3차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법제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이후 1978년 개정 헌법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관계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었고,
 - 이에 따라 1982년 12월에 개혁·개방 노선의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대중의 열망과 요구에도 부응하는 4차 헌법을 공포하기에 이룸
- 개혁과 개방으로 경제체제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이행을 맞이하여 중국은 경제영역에서 법률제도의 구축을 강화하고, 경제관

- 계와 경제활동의 기본원칙을 법의 형태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전인대와 상무위원회는 민법과 경제법의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법통칙', '기업파산법', '외자기업법', '대외경제계약법', '특허법' 등을 잇따라 제정하였으며,
- 시장경제 법률체도의 기본틀을 1980년대 후반까지 대개 마련하였음

○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체도의 구축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제공함

- 회사법 등 사회주의 시장의 핵심요소를 관장하는 데 필요한 법,
- 계약법, 부정경쟁방지법, 증권법, 대외무역법, 중재법, 어음수표법, 담보법 등 사회주의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
- 시중은행법 등 거시적 감독에 필요한 법,
- 보험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사회적 보호와 관련된 법 등을 제정함

○ 한편 심도깊은 사회개혁이 지속되고 개방이 확대되면서 온갖 유형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고, 한편으로 낡아 발전하는 법률체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 행정명령이나 윤리교육 같은 수단에 주로 의존하는 전통적 문제해결 방법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고,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이 새로운 조류로 등장하고 있음¹²⁾

○ 행정권을 법에 종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의 법적 권리와 사회경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도록 유도

- 최고 입법, 행정기관들은 수많은 법·규정·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각급부서가 개혁과 개방의 정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닦아 놓았음
- 특히 1992년 이후 중국은 다양한 종류의 법과 규정을 적극적으로 제정

12)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의 각급법원이 처리한 형사·민사·행정 관련 1심재판의 수는 약 5천만 건으로 나타나며, 재판증가율은 연 13%에 달한다 (샤오양 : 353).

함. “행정처벌법”, “행정감찰법”, “국가배상법”, “국가공무원직무 잠정조례” 같은 법을 잇따라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법제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음

- 1989년 “행정소송법”을 특별히 제정함으로써 이후 10년 동안 50만건의 행정쟁송 재판이 이루어졌음¹³⁾

(2) 법령의 형식과 위계

- 법령은 여러 형식으로 나타나는 데, 하나는 행정계층을 기준으로 효력 발생의 공간 범위가 전국이나 일정 공간범역에 한하느냐에 따라 국가법과 지방법 그리고 자치법규로 구분할 수 있으며,
 - 또 하나는 입법기관의 입법권에 의한 법조의 형식과 행정권에 의해 법조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행정법규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또 법이 성립되는 근본형식인 법원(法源)을 기준으로 크게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¹⁴⁾

13) 1980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중외합작경영기업소득세법”은 외국 합자기업이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행정당국의 결정에 맞서 개인이나 법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중국에서 인정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14) 이외에도 특수한 경우의 법원으로서 자치법규, 경제특별구의 규범성 문건, 특별행정구의 법률법규, 국제조약 등도 성문법원으로 포함된다. 자치법규란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에 의거 자치권력기관에서 그 행정구역 내의 구체적인 정황과 요구에 따라 제정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의미한다.

개혁·개방기간 중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수정책을 실시하는 구역인 경제특별구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권한위임에 의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 또한 중국법의 한 법원을 구성한다. 1981년 광둥성, 복건성을 시작으로 1988년 해남성, 1992년 심천시 등에 권한위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특별구의 규범성 문건의 효력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권한위임하였기 때문에 일반적 지방법규와는 다르다.

그리고 특별행정구역의 법률 법규 역시 또한 중국법의 한 법원으로 포함된다. 특별행정구란 1개국가 2개제도를 양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한 자치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1990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이어 1993년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통과시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들 특별행정구에서는 외교, 국방행정만 중앙인민정부에서 관여할 뿐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사법권, 중심권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법체제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끝으로 국제조약 역시 중국법의 연원 중 하나이다. 1990년 국제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약체결절차법이 통과하였다.

34 중국농업법령해설연구

- 여기서는 법원(法源)을 중심으로 그 지위와 효력에 대해 개괄적으로 고찰함

1) 헌법

- 헌법은 최고의 법률로서 지위와 효력을 가짐
 -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 사회, 경제, 정치의 근본제도와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기본임무와 정책 등을 규정함
- 헌법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 1/5 이상이 제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 대표의 2/3이상의 다수로서 가결함

2) 법률

- 국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지칭함
 - 형사, 민사, 국가기관 등에 관한 규범성 문건인 기본법률은 전인대에서 제정, 개정하는 한편 기타법률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함
 - 결국 대량의 입법활동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표한 규범성있는 결의, 결정, 규정, 방법 등도 법률류의 법원에 속함. 즉, 법이라고 명칭하지 않은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 개정한 결의, 결정, 규정, 방법 등도 협의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이렇게 보면 중국법의 법원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경제특구의 규범성 문건, 규장, 특별행정구의 별률법규, 구제조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률의 지위와 효력은 헌법보다는 낮지만 기타 다른 여타 법규범에 비해서는 상위에 있음
 -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 가운데 헌법 및 법률에 저촉하는 것에 대한 취소와 성·자치구 및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적 법규 및 결의 가운데 헌법·법률 및 행정법규에 저촉하는 것에 대한 취소권능이 부여되어 있음
 - 한편 헌법, 법률을 해석하고 헌법의 시행을 감독함. 헌법, 법률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은 법적효력을 지닌 새로운 법규범을 만들어냄

3) 행정법규

-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 및 각부, 위원회에서 헌법,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범성있는 문건을 가리키며, 그 법률지위와 효력은 헌법과 법률 다음임
 - 국무원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한 행정상 조치의 규정, 행정법규의 제정, 결정 및 명령을 반포하며,
 - 각부, 각위원회가 반포한 부적당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의 변경 또는 취소하며,
 -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부적당한 결정 및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국무원 및 각부 위원회에서 공표한 결정이나 명령 등이 규범성 문건일 경우 모두 행정법규 류의 법원에 속함
- 현재 행정법규 류의 종류와 수는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 류의 규정을 현저하게 초과함
- 행정법규의 규정범위를 보면 상당히 광범위함. 즉, 국가행정관리에 필요한 각종사회 관계, 예컨대 국가행정기관의 직권과 직책을 규정하거나 국

가행정기관과 기타 국가기관, 기업 및 공민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지방법규

- 지방법규는 지방법규의 입법권이 있는 지방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되고 공표된 법규범으로서 관할행정구역 내에서 실시되고 효력을 갖는 규범성 문건을 의미함
 -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당해 지구의 특성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지방적 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하게 함
-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의하여 결의를 채택하고 발표함. 이 역시 규범성 문건일 경우 지방법규 류의 법원에 속함
 - 중국의 지방정권기관은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하에서 그 지방의 중대문제를 결정하는 직권을 가짐
- 일정지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 지방법규의 특수한 형태로서 자치지역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지방법규의 다른 형태로서 하나의 법원을 구성함
 -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등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에 의거하여 자치조례 및 單行조례, 변토통정과 보충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짐¹⁵⁾
 -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맞게 법률과 행정법규를 변통할 수 있음. 즉 중앙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법규와 그 지역 특성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제정이 상충된다 하더라도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임

15) 자치조례는 해당 자치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자치에 관한 헌장적 성격을 갖는 법규범이며, 단행조례는 자치정부가 정립하는 개별 전문분야의 지방적 법규범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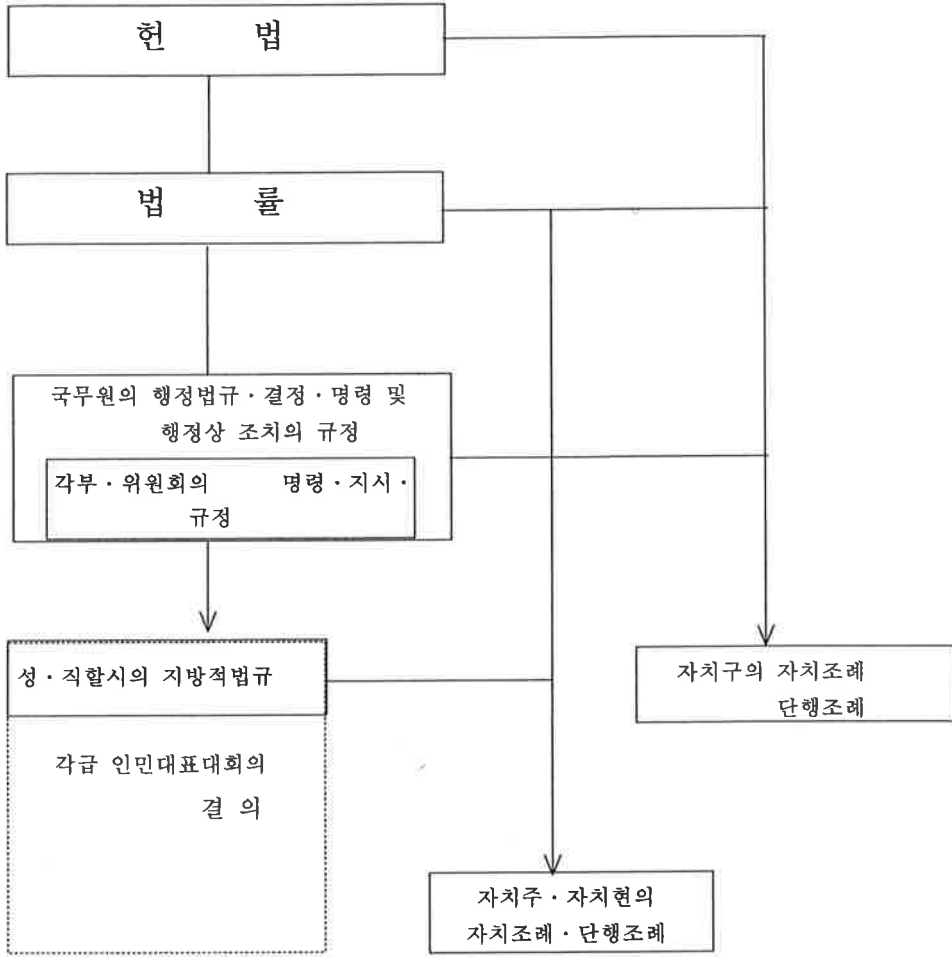
- 이런 까닭에도 자치구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일반지방법규와는 달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거친 후라야 효력을 발생케 하고 있음
- 자치주 및 자치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하며,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케 함

5) 규장

- 규장은 행정규칙적 성격을 갖는 규법성 문건으로서 2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하나는 국무원의 담당부문 및 그 직속기관에서 그 직권범위 내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건임
 - 국무원의 각부, 각위원회는 법률 및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의하여 그 권한 내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반포함
- 다른 하나는 성, 자치구, 직할시 등 지역에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말함
- 국무원의 부문규장과 지방규장 간의 효력은 동등하며 각 법의 범위 내에서 통용됨

]

<그림 2> 법령의 형식과 체계



제 3 장

중국 농업 법령의 체계

1. 농업입법의 발전단계

(1) 농업입법의 발전과정 역시 중국 법제의 발전단계와 맥을 같이 함

- 농업분야의 전면적 사회주의 개조를 완성하는 인민공사 시기부터 문화혁명시기까지를 기준으로 그 이전 단계를 1단계, 이 시기를 2단계로, 그리고 문화혁명 시대가 종료하고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그 후 시기를 제3단계로 구분함

(2) 신중국 건국이후 인민공사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인 1단계 기간은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개조의 시기임

- 이 시기의 농업입법은 사회주의 혁명과 농업분야의 사회주의 개혁에 공헌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 그 사회적 요구에 입각하여 제정된 중요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中華人民共和國土地改革法)》 (1950년),
- 《신해방구농업세 임시조례 (新解放區農業稅暫行條例)》 (1950년),
- 《국가건설용 토지수용 방법 (國家建設征用土地辦法)》 (1953년 반포하고 1958년 개정),
- 《정무원의 면화에 대한 계획구매에 관한 명령 (政務院關於棉花實行計劃收購的命令)》 (1954년),
- 《공사합영공업기업 임시조례 (公私合營工業企業暫行條例)》 (1954년),
- 《농촌양식통일구매통일판매 임시방법 (農村糧食統購統銷暫行辦法)》 (1955년),
- 《농업생산합작사시범장정 (農業生產合作社示范章程)》 (1956년),
- 《고급농업생산합작사 시범장정 (高級農業合作社示范章程)》 (1956년) 등을 들 수 있음

(3) 2단계는 인민공사화를 시작한 때부터 1978년 공산당의 제11기 대표대회 3

- 차 중앙전체회의가 열렸을 때까지 약 20년 동안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함
- 이 시기의 농업입법 상황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도로 집중된 통일적인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다 보니 법규범보다는 농업정책에 의해 농업부문의 관리가 이루어짐
- 예를 들면 60년대 <농촌인민공작조례> 및 그 개정안과 국무원의 정책이 농촌관리의 주된 규범으로 작용하였으며, 나아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은 농업입법은 중단되었을뿐만 아니라 시행 중인 농업법률, 법규가 거의 파괴되었음

(4) 3단계는 농촌의 개혁 개방 시기의 농업 입법시기를 말함. 개혁 개방을 표방한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대회 이후 중국 법제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농업입법도 활기를 띠게 되는 전기를 맞이함

- 이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농업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중국공산당 및 국가의 이러한 관심을 표명하는 많은 사례를 제시해 볼 수 있음. 1983년 중국 공산당 1호 문건, 1991년 중국공산당 제37호 문건에서 각각 농업입법사업 강화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법률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법제체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 제8기 전인대 제4차회의가 비준했던 구오(95)계획에서 농업에 대한 지지

- 와 보호체계를 수립함과 함께 그것의 제도화와 법률화를 강조하고 있고,
- 1999년 6월 11일 강택민 총서기는 “대대적인 농촌법제 건설 강화”라는 연설에서 농업 입법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함
 - 현재 시행 중인 농업법령 대부분이 이 시기에 제정된 것들임

<표 1> 농업입법의 발전단계

구분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시 기	1949~1957	1958 ~ 1977	1978 ~ 현재
입법 특징	농업분야의 사회주의 개조에 공헌	농업입법 중단 및 법질서 파괴	농업입법 활동 활발하게 전개

2. 농업관련법령의 구조와 특징

(1) 농업관련법령의 위계

- 1) 농업관련법령은 농업부문에서 일반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의미로 이해함
 - 그것은 국가의 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헌법의 농업관련조항 및 농업관련법률과 함께 국무원과 농업부의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 지시 및 행정상 조치의 규정 등과
 - 또한 성 및 직할시의 지방적 법규와 민족자치구역의 자치규정인 자치구, 자치주 및 자치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중에서 농업부문을 규율하는 법조형식의 규범을 포괄함

2) 헌법의 농업관련조항은 농업관계에 대한 최고의 법률규범임

- 현행 헌법 제8조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가정도급(家庭承包)경영을 기초로 하고 집체 경제와 통합 결합적인 이중 경영체제를 실행한다. 농촌에 있는 생산, 공동판매, 신용, 소비 등 여러 형식의 통합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인민 집체소유제 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지, 자유산, 가정부업을 영위하며, 자유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3) 다음은 헌법에 이어 농업기본법인 ‘농업법’이 농업법령체계상 여타 농업법령에 비해 중요한 지위를 보이고 있음

- 농업관련법령의 대부분이 행정법규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법률형식인 농업법은 당연히 많은 다양한 하위 법령의 상위 규범이 되고 있다는 것임과 동시에
- 개개 특정분야의 농업법률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임
- 농업법은 주로 농업의 기본제도와 농업 발전의 방향에 관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농업법과 법 형식의 지위는 동일하지만 특정한 농업분야의 생산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문법률이 헌법에 이어 농업법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란히 존재하고 있음

- 현재 제정된 농업분야의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을 비롯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보급법》, 《중화인민공화국 종자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법》 등임

5) 농업관련법률의 하위에 중앙정부의 농업부문 또는 농업관련기관에서 제정하는 농업관련 행정법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이들 농업관련 행정법규는 농업관련법률의 위입에 의해 제정되며, 일반인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법규성 규범과 단순히 집행 차원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를 실행하기 위해 제정한 규장성 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함. 행정중심 통치문화의 역사성으로 이러한 구분이 아직 확연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다양한 부문과 기관들이 각기 제정하는 데서 나타나기 쉬운 상호충돌을 피하고 입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국무원에 먼저 입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6) 다음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에서 제정하는 법규범인 농업관련 지방법규를 들 수 있음

(2) 농업관련법령의 구조와 특징

1) 중국 농업관련법령 현황을 보면 지방법규를 제외한 국가단위에서 제정한 전체 농업관련법령은 총 201개로 나타나는데, 이중 입법권을 갖는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6개로 나타나며¹⁶⁾, 반면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195개의 관련 법령은 국무원 및 농업부에서 행정입법으로 제정한 법규범들임<표 2>

- 농업입법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한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음. 개혁개방이후 다른 분야의 법제화가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제정시기나 하위 법규들의 제정 등 법제화 과정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음
- 농업법과 농업기술 보급법이 1993년 7월에 가서야 농업관련 법으로서는 처음 반포 되었으며, 이제 겨우 6개 법률만 제정되고 있는 실정임

16)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 법률 개수(축산분야 포함, 산림분야 제외)는 현재 41개로 나타나고 있다.

- 2)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 농업관련 법령의 구조가 행정입법에 크게 의존하는 특징을 띠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음
- 그러다 보니 계획경제체제의 유산인 행정권력의 권위를 보호하는 색채가 비교적 강하게 드러남. 농업에 종사하는 생산경영자의 경우 의무가 권리보다 많은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행정입법으로 상당한 범위의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농업부 등 농업관련 행정기관이 법규이행의 감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등이 농업부가 광범한 권한을 행사하는 농정 체제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음¹⁷⁾
- 3) 한편 농업관련 행정법규들은 현실적으로 조례, 방법, 규정, 규칙, 통지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음. 중국 농업관련법령 구조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임
- 이들 형식간의 구분기준은 우선 법 형식의 위계에서 주어지고 있음. 법은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조례는 다시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방법, 규정, 세칙, 통지 등 여러 형식에 위임하여 규율하고 있음
 - 조례와 기타 법령 형식간의 위계는 그 입법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의 지위 상 위계와 일치함. 조례는 국무원에서 제정, 공포하며 나머지 방법, 규정, 세칙, 통지 등 형식은 모두 그 하위기구인 농업부에서 제정 공포하고 있음
 - 실체적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 방법, 규정, 세칙, 통지 등 형식을 확연히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임
 - 일반적으로 일반인의 사회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성 문건은 법률 및 조례형식으로 제정하며, 그것의 집행차원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장적 성격의 규범성 문건은 방법, 규정,

17) 농업부에서 제정하는 법규범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개 농업관련 법규범에서 행정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처벌에 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1997년 10월 25일 <농업 행정처벌 절차규정>을 농업부에서 제정 공포하고 있다.

세칙, 통지 등 형식으로 한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율을 형식위계에 따라 하위규범에 위임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음과 함께 고유한 업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상위 규범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맞은 형식을 채택하여 규율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음

4) 농업관련 법령의 이러한 구조 즉, 행정입법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한편으로 행정입법 형식들 간에 실제적 성격 구분이 확연하지 않은 발전도상적 상황은 궁극적으로 개혁, 개방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온 짧은 입법 역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법령 형식의 비 정형성에서도 이러한 측면의 일단을 읽어볼 수 있음. 즉, 전체 농업관련법령 201개 중 58개를 차지하는 '통지'란 명칭의 규범이 이렇듯 중요한 위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형식은 법조(法條)형식이 아니라 지시성 문서 형식을 띠고 있으며, '규정'이란 명칭의 규범은 일부는 법조문 형식을, 일부는 법조문이 아닌 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부에서 보이는 법규범 형식의 비 정형성을 또 하나의 농업관련법령 구조의 특징으로 제시해 봄

5) 농업관련법령 구조 분석은 또한 시장관련 분야의 입법활동이 극히 취약함을 특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음. 반면에 아직 1차적 농정수요의 대상인 종자, 종축 관련 생산분야와 방역, 검역 분야의 법령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만큼 변화하는 농정여건을 법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시장정보 분야 농업관련법령 입법실적을 보면 겨우 4개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단지 농업부에서 제정한 방법과 규정 형식뿐임
- 농업·농촌 개혁·개방 정책의 핵심 부문이 시장경제체제를 정착하고 확립하는 데 있다고 보면 시장관련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제화 추진에 많은 관심이 모아져야 할 필요가 있음

<표 2> 농업관련법규의 분야별 법 형식별 현황

분야 \ 법형식	법률	조례	세칙	방법	규정	통지	기타	계
총 합	2				1			3
농업생산	1	4	2	14	4	11	4	40
목축수의	2	5	6	16	6	28	6	69
농기계		1		4	4	4	1	14
농업개발		2	1	2	3	2	1	11
동식물검역	1	2	1	10	8	9	1	32
시장정보				3	1			4
농업기술·교육		4	2	16	2	4		28
계	6	18	12	65	29	58	13	201

* 자료: 「중국농업관련법령집(중국인민출판사, 1999)」에 수록된 법령의 개수를 집계한 것임

3 농업법규와 농업정책

- (1) 법률의 제정이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즉, 행정법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또 한편으로 농업분야의 행정목적에 여전히 당 및 국가의 농업관련정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게 함
- (2)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행정입법과 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이러한 현상은 당 지도와 민주집중제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정치체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즉, 국가권력을 분립하여 상호 견제하는 원리가 아니라 인민대표대회에 권력을 집중하고 공산당이 지도하는 정치제도 하에서는 국가목적의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문성을 갖는 행정기관의 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자연스레 띠게 될 것이라는 것임

- (3) 중국에서의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와 당의 역할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인식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것과 다른 만큼 정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개개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가운데 시장실패를 조정하려는 의도로 정책개입이 이루어지는 우리와 달리, 당과 국가가 사회 및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정치체도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정책을 당 및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지도수단으로 여기고 있음
 - 농업정책을 일반적으로 당과 국가가 농업발전과 개혁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기본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즉, 농업정책을 통해 농촌과업을 지도하며, 그것은 나아가 당의 기본 영도방법으로 여기고 있음
- (4) 이들 농업정책은 그 담고있는 내용이 강령성을 띠는 한편으로 그 규정범위 또한 광범위하다는 특성을 가짐. 내용의 강령성이란 농촌경제활동이 마땅히 쫓아야 하는 공동원칙과, 당과 국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꺼리는가를 농민들에게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범위가 광범하다는 것은 농업정책의 조정범위가 농업생산경제활동과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래서 보편적인 지도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뜻으로 이해함
- (5) 농업정책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농업법규 역시 농업정책의 한 표현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음. 농업정책의 범위가 농업법규범을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법규범의 내용을 규정하는 원칙을 제시하는 차원의 당 및 국가 의사를 비롯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법규범을 집행하는 차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야에 대한 규율 내용까지 담고 있음¹⁸⁾
- 최근 법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분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18) 정책의 의미를 현실적으로는 다분히 법규범의 원칙을 제시하는 당의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현실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농업법률과 농업정책으로 동일한 속성을 띤다는 것임. 중국의 경우 정책이 갖는 특성의 하나로서 강령성을 띤다는 사실은 일정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법규가 갖는 규범성, 강제성, 안정성을 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¹⁹⁾, 다만 정책의 경우 법규에 비해 물리적 강제적이나, 명확한 준칙 즉 규범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정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란 것임
- 그만큼 정책과 법규가 당과 국가의 지도를 실현하는 기본적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오히려 아직까지는 법규보다는 정책을 더 상위의 규범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음

(6) 공산당이 지도의 행정중심 통치체제가 그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임²⁰⁾.

- 즉, 정책을 당 지도의 기본수단으로 인식함과 함께 아직 혁명 과도기적 상황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정치체제를 고수하다 보니 정책과 법의 구분을 엄격히 하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양자를 이해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지도방식의 채택이란 관점에서 정책을 주된 수단으로 하면서 법을 보완적인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공산당 지도를 국가통치의 핵심원리로 하는 정치체제에서 당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당 지도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임

(7) 이러한 체제적 특성을 배경으로 농업법규와 농업정책의 관계를 다분히 변증법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즉, 농업정책이 실천과 검증을 거쳐 유효한 성

19) 당의 정책은 당 지도 원칙 상 국가가 접수하여 그것을 관철하는 차원의 입법활동이 전제되는 까닭에 사실적으로 법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여긴다.

20) 헌법 전문과 제1조에서 공산당의 지도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계속해서 공산당 지도 하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임을 선언하고 있다.

공 정책으로 증명되고, 그 정책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것으로 되게되면 법규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임²¹⁾

- (8) 농업정책과 농업법규가 완전히 분화되지 못한 채 혼재하는 이러한 측면은 투명성 제고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배경으로 작용함
 - 그것은 분명한 잣대를 제시하라는 것으로서 법치주의 확립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임
- (9) 법제정을 가속화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 문제는 WTO 가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임
- (10) 이러한 흐름 즉,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한편 기존 정치제도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임
 - 정치제도 특히 공산당 지도 체제의 수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짐

4 농업관련 행정법규 현황

- (1) 농업관련 법률의 하위 법령들의 존재현황을 분야별로 형식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음
 - 농업생산분야의 농업행정법규 현황은 <표 3>에서, 목축수의분야의 농업행정법규 현황은 <표 4>에서, 농기계분야, 농업개발분야, 농업시장 및 정보분야의 농업행정법규 현황은 <표 5>에서, 출입국동식물검역 분야의 농업행정법규 현황은 (표 6)에서 각각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농업기술 및 교육 분야의 농업행정법규 현황 역시 <표 7>에서 정리하였음

21) 정책과 법규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는 정책이 입법을 선도한다고 하며, 둘째는 정책이 입법을 선도한다고 하며, 셋째는 법률이 없는 경우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 등이다.

(2)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법규형식으로는 최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관련 조례가 지금까지 총 18개가 제정된 것으로 나타남

- 다음 농업부가 제정하는 법규범들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여러 형식이 있는데, 세칙이라는 명칭의 농업법령이 12개, 방법이라는 명칭의 법령개수가 65개, 규정이라는 이름의 법령이 29개, 통지란 명칭의 법규범이 58개로 나타나며, 그 외 다른 명칭의 규범도 13개로 나타나고 있음

(3) 분야별로 보면 농업생산 및 기술 관련분야와 축산관련분야 그리고 검역관련 분야의 행정입법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생산 분야의 행정입법현황을 보면 종자와 농약, 비료 등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종자관련 규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목축수의분야에서는 동물약품관련 규정과 종축금 육성관련 규정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동물약품관련 규정들이 절대 다수를 보이고 있음
- 농기계분야는 농기계검증사업조례와 함께 몇 가지 농기계유지보수관련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개발분야에서는 몇 가지 국영농장 관련 규정 천연고무 관련규정들이 나타나고 있음
- 동식물검역분야의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법을 토대로 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와 식물검역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그 하위에 농업부에서 28개의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동식물검역법과 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는 출입국 동식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식물검역조례는 국내에서의 식물검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끝으로 농업기술 및 교육 분야의 행정입법 현황을 보면 기술개발 및 보급과 농업계 학교 육성 관련규정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다수확 기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3> 농업생산 분야의 농업관련 행정법규

조 례	세칙 · 방법 · 규정 · 통지 등
<p>(토지관리법) -> 기본농전보호조례</p>	
<p>(종자법)</p>	<p>종자법실시세칙, 농업부농작물종자검사관리방법, 과수종자묘목관리잠정방법, 수출입농작물종자관리잠정방법 전국식용균균종잠정관리방법, 수출입농작물종자(묘)관리잠정방법, 전국농작물품종심사위원회규정, 전국농작물품종심사방법 농작물종자생산경영관리잠정방법, 농작물종자교역회운영신청에 관한 유관문제 통지, 외국투자농작물종자기업설립에 관한 심사비준 및 등기관리방법 농작물종자남부지역번식사업관리방법(시행), 주요농작물교잡종자성(자치구·직할시)간예약생산공급관리방법 중국종자관리원증 및 중국종자관리홍장 관리방법 신종자검사원증 및 홍장의 발급 및 사용에 관한 통지</p>
<p>농약관리조례</p>	<p>농약안전사용규정, 농약광고심사기준, 농약광고심사방법, 농약등기규정, 농약등기규정실시세칙, 외국농약시험비용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위생살충제등기 및 판매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농업부 비료·토양개량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검사등기 잠정규정, 비료·토양개량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검사등기 및 상품증명 발급에 관한 통지, 비료·농약·종자시장관리에 관한 통지, 비료·농약·종자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 농자재시장관리사업 지원강화에 관한 통지</p>
<p>농업기술도급책임제 시행조례</p>	<p>농작물병충예보관리입시방법, 농작물병충관측사업강화에 관한 통지 농작물병충관측사업초소책임제, 전국종자항목회계제도, 중국종자항목재무관리제도, 중국종자항목물자관리제도, 지방국영·민영 고무 및 열대작물생산담당부서관리에 관한 통지 '사탕작물수매예시가격외 보충적통지'에 관한 통지 면화수매판매경영 중 가격위법행위에 관한 처벌실시방법</p>
<p>전국농업동향정보 사업시행조례</p>	

<표 4> 목축수의 분야의 농업관련 행정법규

조 례	세칙 · 방법 · 규정 · 통지 등
<p>(초원법) -> 초원방화조례</p> <p>(동물방역법) -> 수의관리조례</p>	<p>전국우량목초종자생산기술요구(시행), 초원병충 및 쥐박멸실시규정,</p> <p>향진축목수의소관리방법, 수의관리조례실시세칙, 수의관리강화에 관한통지, 어류용약품관리사업강화에 관한 통지, 가축용마취약품의 공급사용관리방법, 수의미생물균종보관저장관리시행방법, 신 가축약 및 가축약 신제제관리방법, 가축용신생물제품관리방법, 생물제품생산공장관리방법, 가축약위법사용금지에 관한 통지, 폐기가축약품종에 관한 통지, 폐기가축약 '跛行安' 주사제에 관한 통지, '가축약생산허가증', '가축약경영허가증', '가축약제제허가증' 발급 관 리 방법 신가축약심사비분 및 생산비준사업 육성에 관한 통지, 가축약생산품질관리규범, 가축약생산관리규범실시세칙(시행), '중화인민공화국가축용생물제품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가축용생물제 품질표준'공포에 관한 통지, '중화인민공화국가축약전(1990년판)'공포에 관한 통지, '중화인민공화국가축약규범(1992년판)'공포에 관한 통지, '동식물식품중가축약최고잔류허용량'공포에 관한 통지, 외국의 중화인민공화국가축약등기에 등기관리방법, '수출가축약품질표준'공포에 관한 통지, 가축약표본검사감독규정, 수출가축약표본추출규정, 가축약광고심사표준, 가축약광고심사방법, 가축약약정약검사업관리방법, 가축약감찰소사업세칙, 성급가축약감찰소기본조건, 수출가축약관리방법, 신가축약심사절차, 목축수의계통수의생물약품공업기업설비관리잠정세칙</p>

<표 4> 목축수의 분야의 농업관련 행정법규

조 례	세 칙 · 방 법 · 규 정 · 통 지 등
<p>가축가금방역조례</p>	<p>가축가금방역조례 3개 부대법규 발송에 관한 통지 가축가금방역조례실시세칙</p>
<p>종축금관리조례</p>	<p>종축금관리조례실시세칙, 종금관리에 관한 보충통지, 농업계통실험동물관리방법, 전국종축금개량종번육체계건설강화의견, 수입사료첨가제등기에 관한 잠정규정, '사료약물첨가제품종 및 사용규정'의 처음 공포비준에 관한 통지, '사료약물첨가제의 가축약품중허가 및 사용규정'공포에 관한 통지, '사료약물첨가제 사용품종 허가목록' 공포에 관한 통지, '수입사료첨가제 농업부등기 잠정규정' 방법에 관한 통지, 수입사료첨가제등기 잠정규정</p>
<p>6대 도시 유류발전 함목관리잠정조례</p>	<p>6대도시 우유류발전항목물자운송저장 잠정규정, '축산품무역외환조성유지관잠정방법' 발송에 관한 통지, '농목어업부수출입종축(금)심사비준잠정방법' 공포에 관한 통지, 수출입종축금심사비준에 관한 잠정방법, 종축금수출입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중국종축수출입공사수입대리제실행잠정방법' 발송에 관한 통지, 중국종축수출입공사수출입대리제잠정방법, 도시농촌시장 축금 및 육류관리, 검역에 관한 통지, '曾祖代양계장관리잠정방법' 공포에 관한 통지, 전국曾祖代(원중)양계장검수에 관한 통지, '曾祖代양계장검수잠정방법', '중국 牧工商연합총공사 연합경영 잠정방법' 공포에 관한 통지 중국 牧工商연합총공사 연합경영 잠정방법,</p>

<표 5> 농기계·농업개발·시장정보 분야의 농업관련 행정법규

조 례	세칙·방법·규정·통지 등
<p>농업기계감정사업 조례</p>	<p>전국농기계유지보수관리점검관리 방법, 농업부농업기계설비관리 감정방법, 전국향진농기계관리소관리 방법(시행), 농기계성인교육 감정규정, 농업기계유지수리공기술심사 방법, 농용트랙터도로교통관리문제에 관한 통지, '농용트랙터 및 기사안전감독규장' 공포에 관한 통지, 농용트랙터 및 기사안전감독 규장, 농촌기계유지보수체계 등급심사관리의 보충규정, 농촌기계유지보수업종 기술인 기술심사에 관한 보충규정, '국영농장농업기계설비폐기처분갱신 감정규정'발송에 관한 농업부 통지, 국영농장농업기계설비폐기처분갱신 감정규정,</p>
<p>농업개간정보사업 조례</p>	<p>농업개간기업노동안전사업에 관한 규정, 전국농업개간직원교육 감정규정, 농업부국영농장농기계화관리 감정세칙, '국영농공상연합공사재무관리시행방법'공포에 관한 통지 국영농공상연합공사재무관리 시행방법, 국영농장직원가정농장 장정(시행초안),</p>
<p>천연고무와기타열 대작물제품검사조례</p>	<p>'국산천연고무우량품질제품관리 방법' 등 3개문건 발송에 관한 농업부 통지, 국산천연고무우량품질제품관리 방법, 국산천연고무제품합격증제도실행에 관한 규정, 농업부문통계보고관리 감정규정 전국'菜藍子工程' 지정신선농산품중심도매시장관리 방법(시행), 농업부문정보네트워크시스템의 안전관리 감정규정</p>

<표 6> 동식물검역 분야의 농업관련 행정법규

조 례	세칙 · 방법 · 규정 · 통지 등
<p>(수출입동식물검역법)</p> <p>-> 출입국동식물 검역조례</p> <p>-> 식물검역조례</p>	<p>식물검역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 과일,화훼,중약재 및 목초검역사업에 관한 통지, 과일,화훼,중약재등 식물검역사업분담문제에 관한 서신, 수출입동식물적재용기,포장물 제의 관리 시행방법, 국가수입동물격리검역장 관리방법, 동물제품원료가공관련검역방역에 관한 규정, '국내열대작물검역대상목록 및 검역대상식물 및 식물제품목록' 공포에 관한 통지 부대계통축금 및 축금제품위탁검역문제에 관한 통지, 외국도입종자심사비준 관리방법, '출입국동물,동물제품 검역기본 관리방법' 및 그 표준에 관한 통지, '여행객휴대 개,고양이 입국에 관한 관리규정' 실시에 관한 통지, 폐기물품수입관련검역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화란 新城疫 疫區로부터의 가금류 및 그 유관제품 수입금지에 관한 통지, 캐나다 일부지구로부터의 가금류 및 가금류제품 수입금지 규정, 대만성으로부터의 偶蹄동물 및 그 제품 수입금지 규정, 독일로부터의 돼지 및 그 유관제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 화란으로부터의 소 및 그 유관제품 수입금지 규정, 화란으로부터의 돼지 및 그 유관제품 수입금지 규정, 영국 잉글랜드 남부지구로부터의 생 가금류 및 그 제품 수입금지 에 관한 긴급통지, 이스라엘로부터 구제역유입 차단에 관한 통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식물검역원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국동식물검역행정처벌 실시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국동물 및 그 제품검역비용 징수방법, '입국동물검역관리방법'등 5개 동물검역규장 공포에 관한 통지, 입국동물검역관리방법, 출국동물검역관리방법, 출국동물제품검역관리잠정규정, 국경통과 동물 및 동물제품검역 관리방법, 입국동물제품검역 관리방법</p>

<표 7> 농업기술·교육 분야의 농업관련 행정법규

조 례	세 칙 · 방 법 · 규 정 · 통 지 등
<p>식물신품종보호조례</p>	<p>농목어업특허관리 잠정방법, 농업생물 基因工程 안전관리 실시방법,</p>
<p>농목어업부 과학기술정보사업 조례</p>	<p>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관리방법, 농업부 중점개방실험실 관리방법, 농업과학기술성과감정 잠정방법, 농업과학기술성과 활용 방법(시행),</p>
<p>농업기술보급사업 조례(시행)</p>	<p>농업기술중점보급항목관리 시행방법, 농목어업 '다수확계획' 잠정실시방법, 농목어업 '다수확상' 장려방법 시행, 농업과학연구,교육기관 생산 및 경영 농작물종자, 가축용 약전에 관한 약간 규정 '녹색증서'제도 관리방법, 농민기술자격증서제도 관리방법, 농업부 표준화 관리방법, 전국 농업통계품질 감독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 '농업기술중점보급항목관리시행방법' 공포에 관한 통지, 농업기술중점보급항목 관리 시행방법, 농목어업부기업품질관리상 평가심사 방법(시행), '농업 전문기술인원계속교육잠정규정' 공포에 관한 통지, 농업 전문기술인원계속교육 잠정규정, '농업부과학기술진보장려방법' 실시세칙, 세계선진농업과학기술항목도입 관리방법, 농업부 部級제품 품질검사기구 년도 표본검사 실시방법</p>
<p>농목어업부직속고등농 업학교교학실험실, 실습농장 또는 실험실 습장 관리조례(시행)</p>	<p>'농목어업부직속 고등농업학교 교학실험실,실습농장 또는 실험실습장 관리조례(시행)' 공포에 관한 통지</p>

제 4 장

중국의 주요 농업제도

1. 농업기본제도

(1) 농업발전목표

- 1993년 7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이 채택됨으로서 중국 농업법제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함
 - 농업법은 농업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다양한 농업관련법률 규범들 가운데 기본적인 농업생산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짐. 그것은 국가가 농업경제활동을 지도하고 조직하며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당과 국가가 농업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도구이며, 농업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 분야의 경제활동에 대한 행위 규칙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 농업법 제2조 제3항에서 농업발전의 기본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1) 농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농촌생산력을 진일보 발전시키고 (2) 농촌 노동력, 토지와 각종 자원을 개발 이용하여 농산품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증가함과 함께 (3) 농업생산 발전을 통해 농업종사자의 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에로 전환하는 과정에 초래되는 농업의 위축현상을 방지하여 농촌의 기초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조직형식, 경영체제와 정부의 대응방식들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인식이 농업발전 목표의 배경임
 - 농산품의 공급 증대를 농업발전의 기본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는 배경에는 대체적으로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만성적으로 공급부족 현상을 겪어온 경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아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증가와 경작지감소 그리고 소비수요의 고급화 등 현상에 대응하여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도 한 몫을 하고 있음
 - 농업법은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노동자의 소득을 제고하여 도시와 농촌노동자간의 소득격차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그것이 농업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농촌의 기본경제제도

1) 가정도급책임제도의 안정과 완성

- 농촌의 기본경제제도는 일정범위의 생산요소 소유제 기초 위에 건립된 생산관계체제임.
 - 이는 농촌의 경제형식 즉, 소유제 형식과 농업경영체제로 구체화되어 나타날 것임. 농업법 총칙에서는 그 기본적인 경제제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① 가정도급 책임제도의 안정화

- 농업법 제6조는 “국가는 가정도급제를 주로 하는 책임제도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이중 경영체제를 완벽하게 하며, 사회화 서비스체계를 발전시켜 집체경제력을 강대하게 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길을 걷게끔 인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정도급 책임제라고 함은 농가를 하나의 상대적이고 독립적인 경영실체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산방식을 의미함. 농가가 생산주체로서 촌 등 집단이 소유하는 집체 토지와 대형생산요소를 도급받아 농업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도급계약규정에 따라서 집체에 납부할 금액 및 국가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소득을 농가가 모두 소유하는 형식을 가리킴
- 가정도급책임제라는 경영형식을 집체경제에 도입하여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상호결합된 2단계 경영체제를 만들어 농가로 하여금 생산경영자주권을 갖게하는 동시에 토지 등 기본생산요소는 공동소유제로 취하는 통일경영을 견지하는 이러한 이중 경영체제는 서로 다른 수준의 생산력을 포용할 수 있고 광범한 적응성과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함
- 이러한 이유로 가정도급책임제를 주로 하는 농업경영 형식은 중국의 농촌集體경제조직의 기본제도로써 장기간 안정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발전되어야 하는 기본제도로 여김.

② 통합과 분산경영이 조화된 이중 경영체제의 안정화

- 통합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 경영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분산된 가정도급경영과 집체통일경영 등 두 개의 경영단위들이 상호 의존하고 보완하는 가운데 발전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면 농촌경제의 전반적인 건강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이중경영체제의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음

- 보통 말하는 통합과 분산이 결합된 이중 경영체제란 집체경제조직이 농가분산 경영을 실행할 때 가정도급경영체제를 확립해 가는 동시에 일부 농가도급경영에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농가가 도급경영 하려고 하지 않는 생산부문과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집체에서 통일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 통일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함
 - 농가가 도급하려 하지 않는 경영에는 예를 들면 일부 대형농기계의 관리와 사용, 대규모의 경지조성 및 관리관령 기본활동, 병해충 방제, 방역, 종자재배 및 관리, 육종 등 생산 전 단계 및 수확 후 단계에 이루어지는 여러 형태의 농업사회화서비스, 일부 공업관련 생산활동 등이 있음. 이러한 경영체제는 두 개 서로 다른 경영내용과 원리를 갖고 있기에 이중 경영체제라고 부름

③ 集體경제활동 강화로 모든 농민소득 증대 도모

- 많은 지역의 경우 집체 통일경영 단계는 비교적 활발하지 못함. 집체경제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집체단위가 통일적으로 지배하는 자금력과 물적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집체경제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는 집체의 농업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물적 기초로서 집체의 응집력을 높이고 나아가 이중 경영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 논의 대상일 것임
 - 집체경제기반을 확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지역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특화된 생산활동을 집체기업을 설립하며 영위함으로써 통일경영소득을 증가시키자고 하는 주장, 토지와 기타 집체재산에 대한 경영관리를 효율화함과 함께 집체서비스 사업을 발전시켜 그 비용을 적정하게 징수하여 집체로 하여금 수입구조를 개선하게 하자는 등 여러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분분함
 - 어쨌든 총체적으로 실제상황을 토대로 현실적인 생산발전과 집체경제

기반 확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급하게 서둘러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더욱이 위법행위로나 혹은 농민의 의사에 위배되는 정책을 통해 농가의 재산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엄격한 재무, 심사, 감독 등 관리제도를 확립하여 집체재산을 보호해 가는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나아가 빈곤한 농촌지역에서는 집체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즉, 자금, 물자, 기술 등 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2) 공유제를 기초로 여러 경제성분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제도의 견지

- 농업법 제5조에서는 소유제의 경제성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즉, “농촌에서는 사회주의 공동소유제를 기초로 하면서 여러 경제성분을 공동으로 함께 발전시켜 농촌경제를 진흥시킨다” 라고 함.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기본제도와 결합된 것으로 소유제 구조에서는 공동소유제 경제가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개체경제, 사영경제, 외자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체제로 이해함. 여러 경제성분이 장기간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그 유효성이 개혁·개방 이래의 실천경험으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후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함

3) 공동소유제 경제의 주도적 지위 견지

- 농촌경제에서 공동소유제를 주체로 하는 현상은 가장 기본적인 생산요소인 토지가가정도급책임제 실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집체소유에 속하고 있는 사실에서 잘 드러남
- 공동소유제경제는 전민소유제경제와 집체소유제경제를 포함하는 개념임. 전민소유제 경제란 토지와 기타 기본생산요소들을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가 소유하고 지배하여 전체 인민의 이익을 공동으로 실현하는 제도를 가리킴. 농업부문에서 전민소유제경제단위로는 국유농장, 국유임장, 국유목장과 국유어장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 集體소유제경제는 현재 농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제체제를 일컫음. 즉, 토지와 기타 일부 대형 기본생산요소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집체가 소유하고 지배하며, 그 수익을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일종의 사회주의 공동소유제 경제형식임.
-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절대 대부분의 토지는 국유소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체에 속하며, 식량, 면화 등 주요한 농산품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생산량이 集體경제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공동소유제 경제를 중국 농촌 경제의 주체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4) 다양한 경제성분의 공동 발전 도모.

- 개혁개방이래 여러 경제성분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방침은 큰 성과를 얻었음. 비 공동소유제경제의 괄목할 만한 발전은 중국 경제개혁의 중요한 돌파구로 평가됨. 시장체제기초 위에 접목된 이러한 새로운 경제체제는 농촌경제와 전반 국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시켰고 또한 경제체제개혁에 물질적인 기초를 창조하여 개혁의 추진력에 힘을 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의 위험을 분산시켰다는 것임
- 공동소유제경제와 기타 경제성분의 공동발전 방침은 장기간 견지하여야 할 방침으로 여김. 사회발전단계와 현 단계 생산력발전수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것임. 따라서 국가는 여러 경제성분 단위에 대해 공평하게 대하며, 각 경제단위가 평등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도록 좋은 환경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담고 있음

5) 농촌 개체사영(個體私營)경제의 발전

- 개체경제란 가정도급제와 구분되는 경영방식임. 즉, 가정도급책임제란 집체소유제 경제체제의 여러 형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경영방식인 반면에 개체경제는 생산요소의 개별소유와 개별노동을 기초로 손익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경영의 경제활동 형식임
 - 농업부문에서 사영경제는 개인이 생산요소와 타인의 노동력을 점유하고 있는 한편으로 자신은 1차적 생산노동에는 종사하지 않으면서 전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형태의 경제활동 형식임

- 강택민총서기는 당의 15大 보고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비 공동소유경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개체, 사영 등 비 공동소유경제를 지지하고 이끌어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하여야 함. 이는 다양화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함

- 기술진보를 가속화하고 농업구조가 합리적으로 재조정되는 농업현대화를 실현은 경제수익을 중요시하는 개체사영경제의 발전 가운데서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경제구조조정의 필요에 따라 개체사영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몇 가지 강조하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상이한 지역조건에 상응하는 차별화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당장은 개체사영 기업으로 하여금 농산품 생산, 가공, 유통부문에 적극 참여케 하여 농업부문 발전을 선도하여야 할 것라는 것이 그것임. 그리고 농업의 복합산업화 추진에 개체사영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일정 규모이상 건설한 개체사영경제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응용과 창조에 역점을 두도록 하는 한편 농업을 신기술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게 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함

(3) 농민의 권리와 의무

1) 농민의 권리

○ 여기서 농민의 권리라 함은 농민이 법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침범할 수 없는 합법적인 권익임

① 농업생산경영을 도급받을 권리

○ 농민들은 모두 농업집체경제조직에 속해있는 회원으로서 그 집체경제조직이 소유하는 토지 등 생산요소를 도급받을 권리는 농민의 기본적인 권리임.

- 농민들이 기타 集體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국가소유지만 集體경제조직에서 사용하는 토지, 산, 초원, 황무지, 개펄, 수면 등에 대해서는 도급하여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음.

- 국가 혹은 집체의 배치에 따라 황산, 황사, 황무지 등에 풀과 나무를 심으면 그 소유권은 장기간 지속되며, 계승할 수도 있고 가격을 매겨서 양도할 수도 있음. 임목 채벌은 법에 따라 해야 하고 생산품은 자주적으로 처리함. 전업농가가 소유역을 도급하여 경영할 경우 마땅한 이익을 보호해주어야 함

○ 농민이 도급받은 농업생산경영항목에는 생산경영결정권, 제품처리권한과 수익처분권한이 포함됨. 도급기간 내에 양도할 권한도 가짐. 또한 도급기간이 만료되면 재도급 우선권이 있으며 도급권한을 계승할 수도 있음

○ 농민들이 스스로 혹은 연합하여 운송, 기계경운과 파종 및 재배, 수확, 농기계수리와 노무도급을 조직하는 등 사회화서비스조직을 설립할 경우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함.

- 자체로 도급 말을 상대를 찾아 협상할 권리와 함께 농가와 농가간에 노동력을 교환하는 활동을 행할 권리가 있음

② 재산권

- 농업법 제17조는 “국가에서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의 합법적인 재산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농민들의 구체적인 재산소유권의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함
 - 국민의 합법적인 사적재산으로서 소득, 주택, 저축, 생활용품, 문물, 도서자료, 임목, 생축 등이 여기에 속함
 - 농민개인 혹은 연합농가들이 구매한 농부산물가공기계, 소형트랙터와 소형자동차, 대형트랙터, 바인더, 자동차 등 생산과 운송에 필요한 도구 등과
 - 공민이 소유하도록 법률적으로 허가한 생산요소와 기타 생활자료 및 합법적인 재산이 포함됨
 - 자신의 자금을 자유롭게 혹은 조직적으로 유동할 권리가 있음. 예를 들면 토지와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등임. 또한 농가 혹은 연합농가가 여러 기업을 건립할 수도 있고, 주식합작형태로도 투자할 수 있으며 자금을 모아 농촌창고, 도로, 소규모 수전사업을 할 권리도 있음

③ 불합리한 비용 및 노무부담을 거부할 권리

- 농민들은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부담을 거절할 권한이 있음. 우선 법률, 법규규정이 없거나 국무원에서 권리를 부여한 부문의 결정 혹은 성급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근거가 없이 비용을 징수하는 어떠한 기관에 대해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은 거부할 권한이 있음

- 법률, 법규가 규정한 근거가 없을 경우 어떠한 기관이든지 농민 혹은 농업생산경영 조직에 대해 벌금을 하면 농민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은 거부할 권한이 있음
- 농민들이 직접 集體경제조직에 납부하는 통합계획비용은 농촌단위로 계산하는데 전년도 농촌의 일인당 농민총소득 5%를 초과하면 농민들은 납부를 거부할 수 있음
- 매 농촌노동력이 매년 부담하는 의무노동 횟수가 10회를 초과하고 노동축적사업에 참여한 횟수가 20회를 초과하면 농민들은 더 이상 참여를 거부할 권한을 가짐. 특수한 상황이 있는 지역에서는 의무노동과 노동축적사업로 참여하는 횟수를 증가할 수 있지만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기준을 거쳐야 함. 이 경우 추가된 의무노동과 노동축적사업 참여 횟수에 대해서는 농민들은 거절할 수 없지만 다음 해의 노동자이용 계획에서 삭감하여야 함
- 농민들에게 강요하는 등 자발성 원칙을 위배하여 유료 증권을 구매하게 하거나 간행물, 잡지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또 농민들로 하여금 계약공증, 증서검증, 현금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농민들은 거부할 권한이 있음

④ 정책결정과 관리에 참여할 권리

- 농민은 농업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집체자산소유자임. 때문에 집체경제조직의 중요한 사항은 농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며, 동시에 집체경제의 운영에 대해 감독 및 관리를 할 권한을 가짐
- 그 권한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됨
 - 집체경제조직의 관리인원 혹은 농촌주민 자치조직의 간부를 선출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함

- 구성원회의 혹은 구성원대표회의 토론과 투표를 통해 집체경제조직의 여러 중요한 업무에 참여할 권한을 가짐
- 집체경제조직의 관리인원 혹은 농촌주민 자치조직간부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며 동시에 사업에 대해 건의, 비판과 책임을 제기할 권한이 있음
- 본 조직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수익분배와 복리대우를 받을 권한이 있음
- 여러 기타 경제조직에 동시에 가입할 권리가 있음. 예를 들면 면화기술 협회, 양봉 기술협회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집체경제조직에서 퇴출할 권리도 가짐

2) 농민의 의무

- 농민의 의무는 농민이 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고 지녀야 하는 책임으로서 보통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 향(진), 농촌합작경제조직에 농촌 통합계획비용을 납부하고, 농촌의무노동과 노동축적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법률, 법규가 규정하였거나 국무원,省政府과 그 권리를 부여받은 부문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행정사업성 비용, 모금, 기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 집체경제조직의 규칙과 여러 관리제도를 준수하고 집체경제조직의 민주적인 결의를 이행하여야 함

2. 농업토지자원보호 제도

(1) 토지관리 입법 배경

-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일인당 토지면적과 일인당 경작지 면적이 적은 나라임. 일인당 토지면적은 세계평균수준의 1/3수준이며, 일인당 경작지 면적은 0.106ha로서 세계평균 수준의 43%로 나타남.

- 인구가 많고 토지가 적은 모순구조 하에서 당과 국가에서는 상이한 시기에 토지를 절약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일부 정책규정과 방법을 제정하였음
 - 이들 정책규정과 방법은 나름대로 모순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토지관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규범화된 역할을 하지 못한 나머지 빠르게 전개되는 경제성장 및 산업화 발전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음

- 토지에 대한 사회주의공동소유제를 보호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사용을 도모함과 함께 경작지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등 토지 관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었음
 - 중국은 1986년 6월 25일에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시행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수정을 가하여 1988년 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개정 토지관리법을 공포하게 됨
 - 같은 해 12월 27일 국무원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실시조례》 반포하기에 이룸
 - 한편 농업용 토지를 보호하고 농업생산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농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4년 8월 18일 국무원에서 《기본농지보호 조례》를 공포함

(2) 중국의 농업용 토지사용 정책

- 농업법 제3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근거하고 토지관리법의 유관규정을 참조하여 토지소유권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음.
 - 법률적으로 국가소유 즉 전민소유에 속한다고 규정한 토지 외의 농촌과 도시교외에 있는 토지는 모두 집체소유에 속하며, 삼림, 산맥, 초원, 황무지, 간석지, 水流 등 자연자원은 법률에서 집체소유에 속한다고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소유에 속한다고 함. 즉, 중국은 토지의 소유형태를 국가소유와 집체소유 두가지를 인정하는 사회주의 공동소유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가정도급책임제의 실행은 소유제도를 변화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서 실행하는 농촌토지제도의 또 하나의 개혁임.
 - 이 책임제로서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이 상호 분리된 체제를 정립하였고, 또한 가정경영의 주체적 지위를 확립하였음. 동시에 공동소유토지와 가정경영방식이 결합되는 가운데 농민들의 적극성을 높여 토지경영 측면의 개선을 가져왔음.
 - 하지만 시장경제에 적합한 농촌토지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하여 탐색하여야 할 과제임

- 농업토지사용 정책은 2가지 유형을 상정하고 있음. 첫째는 토지소유권과 경영권이 상호 결합되어있는 즉, 토지소유자가 동시에 토지사용경영자인 경우임. 예를 들면 농촌의 향, 촌 집체경제조직이 경영하는 토지는 그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 모두가 향, 촌의 집체경제조직임. 둘째는 토지소유권과 사용경영권이 상호 분리된 경우임. 향, 촌 집체경제조직에 소유된 토지를 향, 촌집체경제조직이 임대인의 신분으로 그 향, 촌 혹은 타지역 농민들이 경작하도록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임

- 토지소유권과 사용권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유토지와 집체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따라 양도될 수 있지만 소유권성격은 변화되지 않음.
 - 토지사용자는 사용권을 재양도하는 행위를 행할 수 있는데, 이는 제3자에게 사용권만을 양도하는 것임

-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된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사용형태는 또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유료사용과 무료사용이 그것임. 무상과 유료사용의 구별은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비용

을 지불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임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사용은 생산력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사용정책을 개혁하여 무상사용을 유료사용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 농가의 토지사용권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함

- ① 배타적 점유권리로서 규정된 임대기간 내 농가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임
- ② 일정범위 내에서의 개발권리가 인정됨. 규정된 임대기간 내에 토지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토지산출가치를 높일 권리가 있지만 농용토지를 비농용토지로 전화시킬 권리는 없음
- ③ 농가는 토지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임대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권을 저당할 수 있음. 토지은행 혹은 전문기구에 신청하여 토지저당으로 농업경영대 부금을 얻고 함
- ④ 농가의 토지사용권은 계승할 수 있음. 한편 인구가 증가하고 가구가 계속 분화되는 상황에서 계승권의 부여는 토지규모를 점점 영세하게 만들어 농업의 능률적 경영을 어렵게 함. 이러한 현상은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토지계승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함.

○ 종합하면 현 단계 중국의 농촌집체경제의 토지사용제도는 아래와 같은 일반특징을 갖고 있음

- ① 사용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 자격범위는 농촌집체경제의 구성원과 농촌의 피부양 인구로 제한됨

- ② 가정보급제도를 토지사용제도의 기본형식으로 하고 있음
- ③ 한편 이것은 제한기간이 있는 도급제도이지 제한기간이 없는 도급제는 아님. 과거에는 도급기간은 15년 불변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30년 불변으로 하고 있음
- ④ 농촌에서 가정보급책임제를 실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집체경제단체 내부의 경제책임제를 실현하는 것임. 집체경제단체에서는 토지를 대외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음

(3) 농업용 토지이용 보호제도의 고찰

- 1) 경작지총량은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당 중앙, 국무원 정책의 대원칙임. 토지관리법에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는 토지사용 종합계획과 토지사용 연도별획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경작지 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은 토지이용방식의 변화에 있다고 함. 조방적 이용에서 집약 이용으로 나아가 토지이용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임
- 또한 국가경제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경작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농용토지자원의 개발이용을 가속화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중저산지를 개간하고 황지, 황산, 황수, 황펄을 개조하거나 휴경지와 황폐지를 개조하는 등 경작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임. 특히 인공초지를 조성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임. 초지 개량을 통해 중국의 농업 생산력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농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서는 개인 혹은 집체에서 황산, 황무지에 대해 도급하여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며 동시에 도급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고 함. 농업법 제14조에서는 농업집체경제조직 혹은 농촌주민위원회에서는 토지, 산맥, 초원, 황무지, 간석지, 수면을 도급한 개인이거나 집체에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외에도 국가에서는 토지개발 이용행위에 대해 일련의 우대정책을 채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세금감면, 투입과 신용대부금의 증가, 선진과학기술과 정보제공 등이 그것임

- 그 외 경작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행정, 경제,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조치로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음 ① 전국과 성급의 토지사용종합계획에서 경작지 총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성급정부책임제를 실행함 ② 토지개발, 개간회복과 정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경작지면적을 증가시킴 ③ 토지사용실태 검사 및 관측을 강화하는 것 등임

- 2) 경작지 보호는 토지용도 지정 및 관리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토지관리법 제4조는 농업용 토지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에서 토지사용 종합계획을 세울 때 토지용도를 규정한다. 토지는 농용지와 건설용지와 未이용지로 나눈다. 농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건설용지의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행한다.”

 - “토지를 사용하는 단체와 개인은 토지사용전반계획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함

- 3) 경작지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함과 동시에 피수용단체 이익이 침해되지 않게 하여야 함. 토지관리법은 토지수용에 대한 심사권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농용지 전용 심사에 대해서는 현급 인민정부의 심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즉, 토지수용은 국무원과 성급인민정부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토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경지 1,000무 이상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무원 기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하 규모의 농경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비준하고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경작지 수용에 대한 보상비용 표준은 그 경작지의 피 수용 전 3년 간의 연평균 생산가치의 3~6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4) 농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도시, 농촌, 鎮건설과 기타 건설수요로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을 가리킴.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혹은 토지점용)비준을 얻기 전에 농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비준을 받아야 함.
- 농용지를 점용하여야 하는 건설은 반드시 토지사용전반계획에서 확정된 건설용지 범위 내에서 배치되어야 하며 토지사용전반계획의 방향과 부합되어야 함. 토지사용 전반계획에서 확정된 용도별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그 용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행함
- 5) 토지관리법은 또 농용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2단계 심사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즉 국무원과 성급인민정부에서 2단계 심사를 거침.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향진기업, 농촌공공시설, 공익사업과 농민주택기지 등으로 농용지를 점용하는 데 대해서는 (시)급 인민정부에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6) 각종 건설수요로 인한 경작지 점용을 또한 엄격하게 통제함

- ① 토지사용종합계획에 따라 도시, 향진의 건설용지 통제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도시에서의 맹목적인 확장을 제한함. 도시, 향진 일인당 사용토지가 규정한 표준을 초과하거나 휴경토지가 충분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도시, 향진에서는 새로운 토지 확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② 농촌집체의 토지사용관리를 강화하여 향(진)촌건설이 경작지를 점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함. 향(진)촌의 건설용토지의 규모와 배치는 향(진)촌 토지사용종합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농촌주민 매 농가는 표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나의 주택기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함
- ③ 개발구역의 토지사용관리를 강화하여 휴경토지를 충분하게 이용하도록 함. 비 농업건설이 경작지를 점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경작지 개간에 사용됨
- ④ 어떠한 단체와 개인들이라도 경작지를 휴경시키거나 황폐시키는 것은 금지됨. 비농업건설이 법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고 1년 이상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경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2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가 무상으로 사용권을 회수함. 회수한 토지는 원 농민집체소유에 속하며 원 농촌집체 경제조직에서 경작하도록 함. 경작지경영을 도급한 단체 혹은 개인들이 연속 2년 경작지를 황폐하게 했을 경우에는 도급을 준 단체에서는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경작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7) 농촌주민들은 비준을 거쳐 농경지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아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① 경작지 개간의무를 실행하여야 함. 국가가 경작지를 점용할 경우 보상제

도를 실행함. 어떠한 단체든지 개인은 비 농업건설로 경작지를 점유할 경우 반드시 점유한 경작지 규모와 질에 상당한 경작지를 책임지고 개간하여야 함.

- ② 경작지 점유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농촌주민들이 주택건설로 경작지를 점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에 경작지 점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국가는 비 농업건설이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징수하는 세금의 절반을 부과하도록 함. 농촌 혁명열사가족, 혁명장애자군인과 혁명근거지, 소수민족 집거지와 가난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농가들이 토지사용표준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경우 납세부담이 크면 납세자 신청에 의거 소재지 향(진)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금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후 세금을 감면하거나 세금을 면제시킬 수 있음

3. 농작물 종자관리 제도

(1) 종자관리 법률제도의 의의

- 농업의 기본 생산요소인 종자도 날로 상품화·시장화로 나아가고 있음. 가짜 혹은 저질 종자로 농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는 등 종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지켜 주고 나아가 종자품질 확보로 농업생산 발전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종자관리 법률제도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종자에 대한 선별과 육성·종자 생산자·종자 사용자의 활동을 규범화하는 법제를 마련하기에 이룸.
 - 1991년 6월 농업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종자관리조례농작물종자실시세칙》을 공포하였고, 1996년 4월에는 농업부·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농작물종자생산경영관리잠정방법》을 공포하였으며, 이어서 1997년 10월 농업부에서는 《전국농작물품종선정위원회 章程과 전국농작물

《품종선정방법》을 공포하였음.

- 2000년 12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을 공포하기에 이룸. 지금까지 행정법규에 의존하던 종자관리를 법률로 대체하게 됨으로서 종자관리 법률제도기반을 완성하게 됨

(2) 종자관리 법률관계 개요

- 종자관리 법률관계란 종자관리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인민정부·종자관리 기관과 종자 선별 및 육성자·생산자·경영자·사용자 사이에 형성된 권리와 이익 및 의무관계를 말함
- 종자관리의 주체는 종자관리 법률관계 가운데서 관리 직능을 행사하며 관리정책을 이행하는 국가기관과 기구를 일컫는데, '국무원 농업·임업 주관부서'와 '현급 이상 농업·임업 주관부서'가 주관기관이 되고, '각급 종자관리소'가 집행기관이 됨. 그밖에 농작 물품중심사위원회·임목우량 종자심사위원회·종자 검사기관 등이 일정 종자관리 관련사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자관리 법률관계의 객체란 종자관리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종자활동 주체의 권리 이익 및 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자 및 종자활동을 일컫음
 - 종자란 농업·임업 생산에서 씨·열매·뿌리·싹 등 번식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하며, 크게 농작물 종자와 임목 종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종자활동이란 주체가 종사하고 있는 종자에 대한 선별 및 육성·생산·경영·저장·사용 등 행위를 말함

(3) 종자자원관리 제도

- 종자자원 관리 법률관계의 객체는 종자자원의 수집·정리·검증·등록·보존·교류·이용 행위를 말함. 법률은 이러한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규정하고 있음
- 농업부와 각성·자치주·직할시 농업 행정주관 부문에서는 관련 단위에 대해 종자자원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종자자원에 대한 수집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리고 종자관리 단위는 수집한 종자의 견본을 집중시켜 제때에 정리하고 분류하여 잘 보존해야 함. 그 다음 발아율에 대한 검사·재배 후 발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용 가능한 견본을 선별하여 심층 연구를 거친 후 다른 이름을 가진 같은 품종의 중복 재료는 도태시킴
 - 종자자원에 대해서는 장기·중기 두 단계의 보존 제도를 실시하며, 수집·정리·보존된 종자자원 재료는 종자자원 관리단위에서 검증을 진행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 외국에서 도입된 종자자원은 적당한 양의 종자를 취하여 종자관리 단위의 검증과 보존이 필요함
- 종자관리와 관련하여 기타 단위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로는 다음과 같음
 - 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농작물 종자자원을 도입할 권리가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종자자원을 도입하려면 국무원 농업·임업 행정 주관 부문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함
 -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이든지 종자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식물검역부에서 규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허가·검사 등 수속들을 밟아야 하며 동시에 격리하여 검역과 실험재배를 해야 함
 - 외국 종자를 도입한 단위와 개인은 그 작물의 종류·품종의 원래 이

름·출처·원산지·도입 시간 및 관련된 자료들을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번역하여 번호를 달아야하며, 적당한 양의 종자를 채집하여 검증하고 보존하여야 함

- 어떤 단위 혹은 개인이 종자자원을 외국에 제공(교환과 판매도 포함)하려면 국무원 농업·임업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품종 선별과 육성 및 심사 제도

1) 품종 선별과 육성

- 종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원 농업·임업·과학기술·교육 등 행정 주관부문과 성·자치주·직할시 인민정부는 종자의 선별·육성에 대한 이론·기술과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함.
- 관련 부서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의거, 관련 연구·교학(敎學) 및 생산단위와 연계하여 농작물 새 품종(교잡조합도 포함)에 대한 선별과 육종을 진행해야 함
- 국가에서는 단위와 개인들이 우량 종자의 선별과 육성 및 개발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무 격려하며, 식물의 새로운 품종에 대한 소유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함
 - 선별 육성된 품종은 광범위하게 보급 응용되어야 하며, 육성자는 법에 따라 상응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음. 우량 임목 종자를 선별 육성하기 위하여 감소된 경제적인 수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해 줄 수 있음

2) 품종 심사결정

- 품종 심사기구는 국무원 농업·임업 주관 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임업 주관 부문에서 각각 설립한 농작물품종 심사위원회와 임목 우량품종 심사 위원회가 됨. 심사 위원회는 농업·임업·식량·과학연구·교학 등 부문의 대표들로 구성됨

- 품종 심사활동이란 심사 신청된 새로운 품종을 규정된 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그 품종의 보급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결정짓는 것을 말함. 이 활동에는 신청과 심사 두 측면의 활동을 포함함

- 종자를 육성하고 도입한 단위와 개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음
 - 품종심사를 신청한 품종은 법률적으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다른 성에서 심사를 거쳐 도입하기로 결정된 품종의 심사신청의 경우 다른 성의 유관 심사결정 자료를 부가적으로 갖고 있어야 함. 동시에 2년 이상의 생산 실험을 진행해야 함
 - 심사 신청을 한 품종은 選育(引種)경과 보고서를 지참해야 하며 지역 실험과 생산 실험 보고·재배기술 요점·항병(蟲)성 검증·품질분석 보고 및 植株(子粒)사진이 첨부되어야 함. 교잡종일 경우 親本자료 및 종자 제작 기술자료도 있어야 함.
 - 지역실험과 생산실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일부 농작물 혹은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품종은 신청할 때 농작물 품종 심사결정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한 그 품종에 대한 형태검증과 몇 가지 품종 비교 실험보고가 첨부되어야 함
 - 전국 농작물 품종 심사결정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품종에 대한 본 성 농작물 심사결정위원회와 국가의 지역 실험조직단위의 추천 의견서가 있어야 함. 신청 단위는 지역 실험·생산실험에 참가할 품종의 실험보조비용을 납부해야 함
 - 중요한 농작물 품종과 중요한 임목 품종은 보급 응용되기 전에 국가급 혹은 성급 심사 결정을 거쳐야 하며, 심사 결정에 통과된 품종은 농작물 품종 심사결정 위원회로부터 품종 심사결정 합격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심사 결정에 통과되지 않은 품종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유관 자료를 보강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심사결정에 통과되지 않았거나 혹은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은 품종은 경영·생산보급·장려·광고를 해서는 안됨. 심사결정에 통과된 품종은 경영·생산보급·장려·광고를 할 수 있음. 새로 육성된 품종과 종자의 생산 기술은 특허를 신청하여 보호해야 하며 기술을 유상으로 이전시킬 수도 있음
- 심사결정 위원회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유관 품종에 대한 심사결정 사업의 규정·제도·방법을 집행하며,
 - 새로운 품종에 대한 지역 실험과 생산실험을 조직하고 시행하게 함
 -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심사결정을 진행하고 심사에 통과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심사결정 합격증서를 발급함과 함께 이름을 정하고 번호를 매겨 등록함과 동시에 공포해야 함
 - 이미 보급된 품종과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시범·번식 육성·보급 사업 관련하여 건의를 하고 심사결정을 함. 또 통과된 품종이 생산이용 과정에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농작물 품종 심사결정 위원회에 그 보급에 대한 정지건의를 제기함

(5) 종자생산 관리 제도

- 상품종자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일정한 규모의 생산기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좋은 품질 종자를 격리시키거나 재배할 수 있는 조건과 종자생산 기술이 익숙한 전문가도 있어야 함
- 생산 종자의 품종은 심사결정에 통과된 품종이어야 함. 종자는 자체로 사용하는 종자와 상품종자로 분류됨. 자체로 사용하고 있는 종자는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종자를 말하며, 상품종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는 종자를 말함.
 - 또 종자는 육종가(育種家)종자·原種·良種으로도 분류됨. 육종가 종자란 육종가들이 육성해 낸 유전성이 안정적인 품종 혹은 親本의 제일 첫 종

자를 말함. 일반적으로 원래 품종을 육성한 단위에서 생산을 책임지고 原種생산에 종자를 공급함. 원종(原種)이란 육종가 종자가 번식된 제1대 부터 제3대 혹은 원종 생산 기술과정에서 원종 품질표준에 도달한 종자를 말함. 良種이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종자·원종으로부터 번식된 제1대부터 제3대의 종자와 교잡종이 우량 표준에 도달된 종자를 말함

○ 종자관리 기관의 직책은 다음과 같음

- 종자 생산계획·상품종자 생산계획·교잡종자 생산계획을 제정함. 다른 성에서 번식된 종자는 두 성급 종자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함
- 주요 농작물의 교잡종·교잡 親本종자·常規농작물 원종 종자를 생산해야 하며, 특급 종자 생산기지를 건립해야 함. 이와 함께 종자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의 종자 생산 활동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

○ 종자생산 단위와 개인의 권리로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종자생산에 종사하고자 하는 단위와 개인은 소재지 종자관리기관에 종자생산허가 증명을 신청해야 하며, 농작물의 종류·산지·생산규모에 따라 처리함
- 수출 종자를 생산하는 단위에서는 수출번식 계약에 근거하여 성급 종자관리 기관에 종자생산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음. 상품 농작물 종자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농업 행정 주관 부문에 농작물 종자 생산 허가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후에 생산을 진행해야 함
- 상품종자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종자 생산 기술 과정과 종자 검사 및 검역과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교환·판매되는 종자는 반드시 국가와 지방에서 규정한 등급 표준에 도달되어야 함. 종자생산 기지에서 종자를 교환·판매할 때 본 종자의 田間검사결과표와 산지 검역합격증이 있어야 함
- 상품종자의 생산자는 종자생산 서류를 만들고 생산 지점·생산지 환경·전작 작물·親本종자 원천과 품질·기술 책임자·田間검사기록·산지 기상 기록·종자의 유통방향 등 내용을 기입해야 함

(6) 종자경영관리 제도

- 종자경영활동의 주체란 종자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을 말함. 농작물 종자를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지·현급 농업행정 주관부문으로부터 농작물 종자 경영 허가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허가증을 지참하고 소재지 공상행정 관리부문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경영대상 종자의 종류와 수량에 상응하는 기술자가 있어야 하며, 종자에 대한 저장 기술자 또한 있어야 함. 그리고 경영대상 종자의 종류·수량에 상응한 영업 장소·저장 보관 시설과 종자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 설비, 유동 자본과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며 완전한 재무제도도 구비되어야 함.

- 종자경영관리 주체의 활동업무는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음
 - 경영 범위에 주요 농작물의 교잡 종자 및 親本 종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현지·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임업 행정 주관 부문의 심사 기준을 거쳐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임업 행정 주관 부문으로부터 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함. 경영자는 반드시 포장된 종자 즉 다시 분리하여 포장할 필요가 없는 종자 혹은 종자 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경영자가 서면 형식으로 위탁한 대리점의 종자를 경영할때는 종자경영 허가증을 낼 필요가 없음.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종자기지의 종자 구매를 우선 보장해야 함
 - 종자관리 부문은 종자 경영허가증 및 연도별 검증사업을 책임지며,
 - 종자를 운송·조달 혹은 우편으로 다른 현에 송부할 경우 종자에 대한 검역증서가 있어야 함
 - 工商부문에서는 종자경영 영업허가증을 처리하며 연간 검사도 책임짐. 종자·공상행정 관리·기술감독·물가·재정·심계(審計) 등 부문에서 종자경영이 개시되기전에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함

- 종자 경영단위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 종자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만들어야 하며 연도별 검사도 받아야 함
 - 종자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에서 지정한 작물 품종과 지정한 지점에서 경영해야 함
 - 종자가격을 정확히 집행해야 하며 마음대로 가격을 높여서는 안됨
 - 종자경영은 정선가공과 등급포장, 종자품질 보장 등을 거쳐야 하며, 다른 것을 섞거나 가짜를 사용하거나 질이 낮은 것을 좋다고 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 매년 판매되는 종자에 대해서는 견본을 보류하여 재검사와 증재시에 사용해야 하며, 보존된 견본은 본 종자가 생산을 거쳐 수확된 후까지 보존되어야 함
 - 조달 및 운송될 종자는 먼저 검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달·운송 시 종자품질검사 합격증·식물검역증과 종자 운행허가증이 있어야 함

(7) 종자검사 제도

-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저장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함. 종자 검사활동이란 과학적인 방법으로 종자의 품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종자 품질의 높고 나쁨을 판단하는 활동임.
 - 종자 품질은 종자의 내적인 품질과 외적인 품질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임. 내적 품질이란 종자의 진실한 품종 순도를 말하며, 외적 품질이란 종자의 淨度·발아율·활착력·용량·수분·병충해 감염을 등을 말함.
- 국가에서는 다양한 종자를 대상으로 종자품질 표준을 제정하였음. 원시적인 종자·1급·2급·3급 표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그것임.
 - 각 단계의 표준에 대하여서는 국가의 표준과 지방 표준이 있는데, 국가 표준이란 농업부가 국가기술감독국과 연합하여 제정하고 국가기술감독국에서 종자등급 표준을 반포한 것임. 이는 국내 종자 수구·판매·발아에 대한 검사 및 분류를 근거로 작성한 것임.
 - 지방표준은 성·자치구·직할시 등 농업 주관부문들이 성 표준국과 함

게 제정한 표준임. 종자를 생산·경영·저장할 때에는 국가 혹은 지방 표준에 도달해야 하며, 종자 검사활동은 국가 혹은 지방 표준에 근거하여 종자품질을 감별함

- 종자 검사기관의 역할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음
 - 종자를 검사하는 기관의 업무는 첫째, 종자검사관리 방법 및 유관 종자 검사에 대한기술절차를 집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종자 품질에 대한 감독 및 표본 추출을 통한검사·검역 중재를 담당하는 것임. 세째는 종자를 생산하고 경영하는 단위들의 위탁 검사를 시행하며, 넷째는 종자검사에 대한 경험교류와 기술교류도 조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음

- 종자 생산·경영·사용·저장단위 혹은 개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짐
 - 종자를 생산·경영하는 단위들에서는 종자 검사실을 갖추고 종자검사에 대한 전문가와 검사기계·설비를 구비하여 자체로 종자에 대한 검사를 책임지는 기반을 가져야 함
 - 종자의 생산·경영·저장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서 행해져야 하며, 국가 혹은 지방의 품질표준에 적합해야 함과 동시에 종자품질 합격증서도 있어야 함.
 - 또한 종자검사 기관의 표본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종자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재검사 혹은 중재 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검사 비용과 중재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현을 벗어나 이동하는 종자는 반출단위에서 책임지고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반입 단위에서는 재검사를 해야 함.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이동하는 종자가 국가 혹은 지방 품질 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금 이상 지방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임목 종자는 그 종자를 이용하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함. 종자의 진실한 품질을 제시해야 하며, 종자의 품질에 대해서는 반출단위에서 검사해야 하며 반출단위에서는 협조해야 한다.

4. 농업기술보급 제도

(1) 농업기술 및 농업기술보급 개념

- 농업기술개념: 농업기술보급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술은 재배업, 임업, 축목업, 어업에 응용된 과학연구성과와 실용기술을 가리킨다고 함. 우량번식육종, 시비, 병해충방지, 재배와 양식기술, 농부산물가공, 신선도 유지, 저장기술, 농업기계기술과 농업운송항공기술, 농토수리, 토양개량과 수토유지기술, 농촌급수, 농촌에너지이용과 농업환경보호기술, 농업기상 기술 및 농업경영관리기술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됨.
- 농업기술보급개념: 농업기술보급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술 보급이란 실험, 시범, 훈련, 지도와 자문서비스 등을 통해 농업기술이 농업생산 전, 생산중, 수확 후 등 전 과정에 보급되어 응용되도록 하는 활동을 가리킴

(2) 농업기술보급원칙

- 농업기술보급법 제4조에서 “농업기술보급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다음과 같이 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반드시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하며,
- 농업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함. 농업기술선택은 농업노동자 자신의 문화, 기술수준, 심리적 소인, 경제상황 등 여러 요소의 제약을 받음. 때문에 농업기술을 보급함에 있어서 반드시 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시 됨. 어떠한 경우라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자발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함

- 농업생산은 자연환경과 자연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관계로 지역마다 요구되는 기술이 다를 수 있음. 때문에 농업기술보급은 반드시 실정에 맞아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실험과 시범을 거쳐야 할 것임
- 국가, 농촌집체조직에서 지지하여야 하며,
- 과학연구단체, 유관학교, 보급기구와 시민과학기술조직, 과학기술인원, 농업노동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가운데 기술보급사업이 실행되어야 하며,
- 농업생산의 경제적 효율, 사회적 효율과 생태적 효율을 검토하여야 함

(3) 농업기술보급체계

1) 농업기술보급체계의 특징

- 농업기술보급체계는 각급 농업기술보급기구와 농업과학연구단체, 유관학교와 시민과학기술조직, 농민과학기술인원으로 구성된 전반적인 농업기술보급단체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가리킴.
- 우리나라 농업기술보급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지적됨
 - 농업기술보급과 농업과학연구, 교육기능이 상호 결합되어 있음과 함께 농업기술 보급기구와 시민과학기술조직, 농민기술인원 또한 상호 결합되어 있음
 - 농업기술보급기구는 점차적으로 건립해 가는 한편 광범위한 사회참여를 바탕으로 농업기술보급서비스 활동을 추진함. 농업기술보급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국가에서는 공급판매합작사, 기타사업단체, 사회단체와 사회 각 분야의 과학기술인원들이 농촌에서 농업기술보급서비스 활동을 하는 것을 고무하고 지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구성

- 중국의 농업기술보급체계는 농업기술보급기구, 농업보급서비스기구, 농업과학연구단체, 유관학교, 시민과학기술조직, 농민기술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기술보급기구는 鄉, 민족鄉, 鎮 이상에 설립하며 국가농업기술보급사업에 종사하는 各級 사업단체들이다. 예를 들면 현급 농업기술보급센터, 향진 농업기술보급소 등이 그것임.
 - 농업기술보급법 제11조에 의하면 “鄉, 민족鄉, 鎮 이상 各級 국가농업기술보급 기구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즉, ① 농업기술보급계획을 제정하거나 조직하고 실시함 ②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훈련을 조직함 ③ 농업기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함 ④ 보급이 결정된 농업기술에 대해 실험, 시범을 진행함 ⑤ 하급조직의 농업 기술보급기구, 시민과학기술조직과 농민기술인원에 대한 농업기술보급활동을 지도 함
 - 농업기술보급법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농업기술보급기구의 전문과학기술인원은 중등이상 유관 전문학력이 있어야 하거나 혹은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문에서 주최하는 전문자격훈련을 받아 상당한 전문기술수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함
- 농업기술보급서비스조직은 농촌에서 설립되며, 농업기술보급기구의 지도하에 농업 기술지식을 선전하고 농업기술보급조치를 실행하는 즉, 농업노동자를 위해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集體조직임
 - 촌민위원회에서는 농촌의 농업기술서비스조직에서 농업기술보급서비스를 실행하는 행위에 대해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함
- 시민과학기술조직은 농민 혹은 기타 과학기술인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민간농업 과학기술조직임. 농민이 자원으로 조직한 농민전문기술협회, 연구회 등을 그 예로 들수 있음

- 농업기술보급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구와 인원이란 예를 들면 농업과학연구단체 혹은 유관학교, 교육부문, 공급판매합작사, 기타기업, 사업단체, 사회단체, 농업集體경제조직, 기타 사회역량, 사회각계과학기술인원 등을 일컬음

- 농민기술인원. 농민기술인원이란 농촌생산 현장에서 재배업, 축목업, 어업, 기타양식업, 농부산물가공업, 농업기계화, 농업회계와 경영관리, 농촌에너지, 농업환경보호 등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원들을 가리킴. 예를 들면 농민기술원, 농민조수기술자, 농민 기술자, 농민고급기술자 등을 말함
 - 농민기술인원은 농업기술보급기구의 지도 하에 농업기술지식을 선전하고 농업기술 보급조치를 실행하여 농업노동자에게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함. 국가에서는 농민 기술 인원을 훈련시키는 조치를 취하며,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농민기술인원에게는 규정에 따라 상응한 기술직함을 수여함과 동시에 증서를 발급함. 1991년 농업부에서는 농민기술인원직함평가와 승진에 대한 잠정규정을 반포하였음

(4) 농업기술의 보급과 응용

1)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보급법 제17조에 의하면 “농업기술을 보급함에 있어서 반드시 농업기술보급 항목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농업기술보급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기에 농업기술성과와 농업생산수요를 감안하여 보급해야할 농업기술유형을 뜻함.
 - 농업기술보급항목의 제정을 통하여 급히 보급해야할 농업기술을 보급계획에 포함시키며, 특히 중점항목에 대해서는 국가 혹은 지방의 유관과학기술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제때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함

- 농업과학연구단체와 유관 학교에서는 농업생산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기술문제를 연구과제로 하여 얻은 연구성과를 농업기술보급기구에 보고 하여 보급하도록 함
 - 또한 과학연구단체 혹은 유관학교에서 직접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조직에게 보급할 수도 있음

- 농업기술을 보급할 때는 먼저 보급항목을 지정하여야 함. 그리고 지정한 농업기술보급항목에 열거된 기술을 농업노동자에게 보급할 때에는 반드시 보급지역에서 실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실험 결과 선진성과 적합성이 증명되면 보급하도록 함

- 농업기술보급법 제12조에서는 “국가농업기술보급기구가 기술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재정에서 지급함. 국가농업기술보급기구에서 농업노동자에게 기술을 보급할 때, 기술양도, 기술서비스 및 기술도급 등 형식으로 유료로 제공되는 것 외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실행함.

- 유료 농업기술보급서비스라 함은 농업기술보급기구, 농업과학연구단체, 유관학교와 과학기술인원들이 기술양도, 기술서비스와 기술도급 등 형식으로 농업노동자에게 기술을 제공할 때 유료 서비스형식을 취하는 경우를 가리킴
 - 농업기술보급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술양도, 기술서비스, 기술도급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농업기술양도, 기술서비스, 기술도급을 진행할 때 당사자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음
 - 농업기술양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보급기구, 농업과학연구단체, 유관학교와 과학기술인원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농업기술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협의를 말하며,
 - 농업기술서비스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보급기구, 농업과학연구단체, 유관학교와 과학기술인원들이 자기의 기술지식, 정보, 경험으로

농업기술사용자를 위해 특정된 기술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술문제를 지도해주고 기술자문, 기술훈련, 기술중개 등 서비스를 해주는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 일방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협의를 말함.

- 농업기술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보급기구, 농업과학연구단체, 유관학교와 과학기술인원들이 농업생산경영조직 혹은 농업노동자들에게 특정 농업기술을 응용 하도록 기술제공, 서비스, 조치를 하여 일정한 지표에 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농업생산경영조직 혹은 농업노동자는 협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수를 지불하는 협의를 일컬음

2) 농업기술응용

- 농업기술응용은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조직이 보급되는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 농업기술보급법 제2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즉, “농업노동자는 자발적 필요의 원칙에 따라 농업기술을 응용한다”라고 하고 있음
 - 이는 농업기술보급은 농업노동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을 취하여야 한다는 제4조에서 표방하는 내용과 일치함. 농업기술보급과 응용 쌍방 당사자는 평등한 민사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음
 - 또 제20조 제2항에서는 어떠한 조직과 개인이든지 농업노동자가 농업기술을 응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5. 농약관리 제도

(1) 농약관리 법률제도의 의의

- 농약관리에 대한 법률제도란 농약생산·경영과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규정하여 농약의 품질을 보장하고 농업·임업생산과 생태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인간과 가축의 안전을 법률적인 제도로 수호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짐

- 중국 농업법 제34조는 농약을 비롯한 농업자재들의 생산·판매와 안전한 사용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 1997년 5월 국무원에서는 농약생산·경영과 사용의 감독관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농약관리조례》를 제정 반포하였음

(2) 농약관리 기구

- 농약관 조례 제5조에서 중국의 농약관리 관련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당연히 농업행정주관 부문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일 것임.
 -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문은 전국의 농약 등록과 농약 감독에 대한 관리사업을 책임지며,
 -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문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문을 협조하여 당해 행정구역 내의 농약등록 및 농약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짐
 - 현급 인민 정부 및 그 구역내의 시·자치주 인민정부의 농업 행정 주관 부문에서는 당해 행정구역 내 농약에 대한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짐
- 화학공업 행정관리 부문 역시 농약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무원 화학공업 행정관리 부문에서는 전국 농약생산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지도·감독 및 관리를 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화학공업 행정부문에서는 당해 행정구역 내 농약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 사업을 책임짐
- 이와 함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문들도 각각의 직책 범위 내에서 농약 감독관리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예를 들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임업·환경보호·공상·식량 등 행정관리 부문과

공급판매 부문들은 각자의 직책 범위내 에서 농약에 대한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고 있음

(3) 농약 등록 관리

- 농약등록이란 생산 농약, 수입 농약의 연구 제조자 또는 생산자 혹은 중국에 농약을 판매할 외국 기업이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부문에 등록신청과 유관등록자료들을 제출하면,
- 국무원 농업행정주관 부문은 심사를 하여 등록을 허가함과 동시에 등록증을 발급하는 농약관리 제도를 말함

(4) 농약생산 관리

- 농약생산에 대한 관리의 기본 원칙은 농약공업의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할 것임
 - 농약 공업은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효과가 높은 농약제품을 생산하여 농업 병충·취해 및 기타 해로운 생물들을 효과적으로 방지함과 동시에 국민과 가축의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농약공업 산업정책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임
- 농약생산 기업은 반드시 비준허가 절차를 거쳐 설립되어야 함.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설립에 관한 규정에 더하여 농약생산기업을 반드시 기업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화학공업행정관리 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설립할 수 있음
- 농약생산은 국가 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후 농약생산 허가증 혹은 농약생산 비준 서류를 발급해야만 생산할 수 있는 생산허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농약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에서는 농약생산 허

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음

- 국가에서 농약제품 생산에 대하여 허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농약 제품이 농업생산의 병·벌레·잡초·취해 및 기타 해로운 생물을 방치하는 작용을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및 농업 생태환경보호에 중대한 작용을 하기 때문임

- 농약생산 기업은 품질을 제일 우선시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함. 품질 감독 검사 기구를 완벽하게 설립하도록 하여 농약제품의 품질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해야 함
- 농약 관리조례는 “농약생산 기업은 농약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5) 농약경영 관리

1) 농약을 경영하는 부문

- 농약경영에 대한 관리는 농약생산의 발전과 안전한 농약생산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 및 재산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계되는 중대한 경제활동임. 따라서 농약 경영은 반드시 전문적인 기구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경영되어야 함
- 농약은 화학 위험물품에 대한 경영이므로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경영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농약 경영을 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농약관리조례는 명확히 밝히고 있음. 관련이 없는 기타 단위 혹은 개인은 농약 경영을 할 수 없음. 농약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부문에서는 농약 경영을 할 수 있음.

- 공급판매 합작사의 농업 생산자료 경영 부문
- 식물 보호사무소
- 토양비료사무소
- 농업·임업 기술 보급기구
- 산림 병충해 방치 기구
- 농약생산 기업
-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경영 부문 등이 그것임

2) 농약 경영부문의 조건과 자격 취득

- 농약경영 부문은 아래와 같은 조건과 관련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함
 - 우선 경영대상 농약에 대한 상응한 기술자가 있어야 함. 즉, 경영대상 농약의 화학·독리학(毒理學)·약효·잔류·환경에 대한 영향·안전한 사용 등 지식과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경영대상 농약 관련 규장 제도가 있어야 함. 예를 들면 농약 구매·운송·저장·판매과정에서의 오염방지제도·품질검사제도·창고출하·등록제도·기간이 지난 농약에 대한 처리제도·농약 운송제도 등과 같은 것임
 - 경영대상 농약과 상응한 영업 장소·설비·창고시설·안전한 예방 및 보호 조치·환경오염 방지 시설과 조치 등이 구비되어야 함
 - 경영대상 농약과 상응한 품질관리제도와 품질관리 수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위와 같은 법정조건을 구비한 농약경영 단위는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영업 허가증을 받은 후 농약 경영을 할 수 있음
 - 농약 경영단위의 경영 자격 취득은 등록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법률·법규에서 다른 규정이 없으며 등록을 하고 영업 허가증을 받으면 바로 농약을 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3) 농약 경영단위의 농약경영 의무

- 농약 경영단위에서 농약을 구입할 때에는 농약제품과 제품 라벨 혹은 설명서·제품품질 합격증을 서로 대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며 품질에 대한 검사도 진행해야 함
- 농약 경영단위에서는 국가에서 구매·판매 금지한 농약을 구매·판매해서는 안됨. 즉, 농약 등록증 혹은 농약 임시등록증이 없거나 농약 생산허가증과 농약 생산비준 서류가 없으며 제품품질 표준과 제품품질 합격증이 없거나 검사에 통과되지 않은 농약을 말함
- 농약 경영단위에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농약 비축사업을 해야 함. 비축된 농약에 대하여서는 창고보관제도를 확립하고 집행함으로써 농약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 농약 경영단위에서 농약을 판매할 때 제품의 품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농약제품과 제품표시 혹은 설명서·제품품질 합격증은 오차가 없어야 함
 - 농약 경영단위에서는 농약 사용단위와 개인에게 농약의 용도·사용방법·용량·중독 되었을 때의 구급조치·주의 사항 같은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함
- 제품품질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제품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문에 소속된 농약 법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함. 표준에 부합되는 제품은 규정기한 내에 판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이 지난 농약이란 글자를 표시하고 사용방법과 용량도 기재해야 함

(6) 농약 사용 관리

- 1982년 농목어업부·위생부 합동으로 <농약안전사용규정>을 반포하였으며, 1997년 국무원에서 반포된 <농약관리조례>에서는 농약사용에 대해 독립된 1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1) 농약사용 관리에 대한 농업행정주관 부문의 직책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 부문에서는 “예방 위주, 종합치료”란 식물 보호 방침에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 높은 농약을 보급해야 하며, 훈련을 전개하고 농민들의 농약 사용에 대한 기술 수준을 제고시키며, 병충해에 대한 예측 예보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 부문은 농약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함. 현지 농업 병·충·잡초·취해 발생 상황에 따라서 농약의 순차적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계획을 제정하고 계획성 있게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병·벌레·잡초·취해의 약에 대한 저항성을 완화시킴으로서 예방과 치료 효과를 제고시켜야 함
- 임업·식량·위생 행정부문에서는 임업·식량비축·위생용 농약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함

2). 농약 사용자의 책임

- 농약 사용자가 농약을 사용할 때 농약의 독성방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정확하게 농약을 배합하여 사용해야 함. 또 폐기물에 처리와 안전방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약 중독사고도 동시에 방지해야 함

- 농약 사용자가 농약을 사용할 때 국가에서 규정한 농약의 안전과 합리적 사용규정을 준수해야 함. 규정된 사용량·사용 회수·사용 방법과 安全間隔期 사용에 따라야 하며 농부산물에의 오염을 방지해야 함. 환경위생 총해의 방지에 사용하는 고독성 농약을 채소·과일·차잎·중약재료에 사용해서도 안됨
- 농약 사용자가 농약을 사용할 때 또한 환경보호 및 유익한 생물과 희귀한 품종에 대한 보호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국가에서 사용 금지된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됨

(7) 농약에 대한 종합관리

- 농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란 농약 등록·생산·경영·수입·사용 등과 관련한 내용 가운데서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과 관리를 지칭함. 중국 농약관리조례 제6장 규정에 의하면 농약 관리에 대한 기타 규정이란 바로 농약 생산·경영·수입·사용 등에 있어서의 공통적 문제들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말함

1) 농약등록과 허가 및 농약 생산·경영·사용

- 농약 등록·허가는 농약을 생산·경영·수입·사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임. 어떤 단위 혹은 개인이든지 농약 생산허가증 혹은 농약 생산비준서류를 취득하지 않고 농약을 생산해서는 안됨
- 어떤 단위 혹은 개인은 농약 등록증 혹은 농약 임시등록증이 없는 농약을 생산·경영·수입·사용해서는 안됨. 수입 농약은 국가의 유관규정을 따라야 하며 화물 주인 혹은 대리인은 세관에 중국 농약등록증 혹은 농약 임시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2) 가짜 농약의 생산·경영·사용 금지

- 가짜 농약의 생산·경영·사용을 금지해야 함. 소위 가짜 농약이란 농약이 아닌 것을 농약으로 꾸미거나, 어떤 농약을 다른 종류의 농약으로 꾸미거나, 함유된 성분의 종류·명칭·제품 표시가 설명서에 기록된 성분의 종류·명칭과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함
- 저질 농약에 대한 생산·경영·사용을 금지해야 함. 저질 농약이란 농약 제품 품질 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사용효과가 상실되었거나 혹은 藥害를 가져올 수 있는 농약을 말함
- 제품 포장에 표시가 없든지 아니면 그 표시가 떨어져서 잘 알 수 없는 농약에 대한 경영을 금지함
-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이든지 국가에서 명문으로 금지한 농약을 생산·경영·사용 해서는 안됨

3) 농약 광고에 대한 관리

- 농약관리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즉,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신문에 내거나 방송하거나 공고해서는 안되며, 농약광고 내용은 농약등록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농약광고는 광고법과 농약광고 관리에 대한 유관 규정에 따라 심사도 받아야 함
- 1995년 4월 국가 공상행정관리국과 농업부에서는 <농약광고심사방법>을 반포하였음

4) 농약 등록에 대한 제한과 등록 취소

- 등록된 농약이 유효기간 내에 농업·임업·가축의 안전·생태환경에 매우 위험할 경우, 농약 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 부문에서는 사용 제한 혹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이든지 국가에서 등록이 취소된 농약을 생산·경영·사용해서는 안되며 국가에서 사용에 제한을 둔 제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함

5) 농약 잔류량에 대한 측정

- 농약 잔류량은 농약을 사용한 후 농부산물에 남아있는 농약량을 말함. 농부산물에 농약이 남아 있으면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음. 때문에 농약 잔류량에 대한 측정을 반드시 강화해야 함.
- ‘농약관리조례’에서는 농약 잔류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 부문에서는 농부산물의 농약 잔류량에 대한 측정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문이란 농업 행정 주관부문·위생부문·식량부문·상업부문 등을 말함.
- ‘농약관리조례’에는 또 다음과 같은 규정도 있음. 농약 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한 농부산물은 판매가 금지됨.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이든지 농약 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한 농부산물을 판매해서는 안됨

6) 가짜·저질 농약에 대한 처리

- 가짜 농약·저질 농약·기간이 지나 폐기된 농약·사용이 금지된 농약·버린 농약의 포장처리와 기타 농약을 함유한 폐기물 처리는 환경보

호 법률 및 유관 법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함

6. 축산·수의관리 제도

(1) 種畜禽생산관련 제도

1) 의의

- 축금자원의 보호·배육과 축금의 생산·경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축금의 품질 제고 및 우량화를 실현함으로써 축산업 생산수준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축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국무원에서는 1994년 4월 15일에 《種畜禽관리조례》를 반포하였음
- 축금자원의 보호·육성과 種畜禽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種畜禽관리조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농민들이 자체로 번식하여 자체로 사용하는 축금은 제외함
- 種畜禽이란 축목업 생산에서 종자로 사용하는 가금을 가리킴. 돼지·소·양·말·나귀·토끼·개·여우·고양이·오리·닭·거위 등을 비롯하여 그의 알·정액 등 유전자료가 포함됨
- 국무원 축목업행정 주관부문에서는 전국 種畜禽에 대한 보호와 관리 사업을 책임지며, 현급 이상 정부의 축목행정 주관부문에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種畜禽에 대한 보호와 관리 사업을 주관함

2) 축금품종자원의 보호

- 중요하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등급보호제도 실시
- 특별 보호제도 실시. 이는 멸종위기에 있는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는 축금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축금자원보호구(장)·유전자 창고·관측소 등을 건립하여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 보편적인 조사·검증제도를 시행
- 수출·수입 種畜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임

3) 축금품종의 배육과 심사 결정

- 배육 : 국무원 축목행정 주관부문과 성급 주관부문에서는 자체 관할구역 내 축목 품종자원의 분포와 자연조건 및 경제상황에 근거하여 양호한 번식시스템을 계획적으로 구축하고,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축금장을 배치하고 건립해야 함
 - 지방 종축금장 건립은 성급 주관부문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국가급 종축 금장은 국무원 축목행정 주관부문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심사결정: 국가에서는 축금품종 심사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성·자치구·직할시에서는 성급 축금품종 심사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자체 관할 구역 내에서 새로 배육된 種畜禽 제품 및 새로 발견된 種畜禽의 지방품종 검정사업을 책임지게 함. 지방시·현(시·구)에서는 축금품종 심사결정 소조를 설립하여 본 구역 내 축금품종에 대한 초보적인 심사·추천·검정 사업을 책임지게 함
 - 국가 혹은 성급 비준을 거쳐 축금품종 증서 발급 및 공포한 후라야 보급 사용할 수 있음

4) 종축금에 대한 생산과 경영

- 국가 소유 종축금장은 독립 결산 사업단위로서 배육 및 우량품종 공급, 품종자원보호, 새로운 품종의 개발 및 신 기술 보급 책임을 짐

- 종축금의 생산 및 경영단위와 개인은 현금 이상의 주관 부문으로부터 '종축금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축금 냉각정액·태반 혹은 기타 유전재료를 생산 및 경영하는 경우는 국무원 혹은 성급 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종축금 생산경영허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종축금의 생산 및 경영 단위와 개인은 종축금 번육·생산기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생산과 육종 서류를 정리해야 하며, 방역제도를 확립하고 실시해야 함. 규정된 품종·품계(品系)·대별(代別)과 사용기간에 따라 생산과 경영에 종사해야 함
 - 일체의 판매용 종축금은 종축금 국가표준·업종 표준 혹은 지방표준에 부합되어야 함. 동시에 '종축금 합격증'과 종축금 계보도 있어야 함. 축금의 배종·배란사업을 전업적으로 할려면 반드시 종축금장의 '종축금 합격증'과 '종축금 계보'가 있는 종축금을 사용해야 함

(2) 가축·가금 방역제도

1) 의의

- 중국은 축금의 생산대국임. 여러 가지 축금 병은 축금 생산, 특히 축목업의 상품화·집약화·사회화 생산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소임. 현재 축금 및 그 제품에 대한 경영방식은 대단히 다양함. 객관적으로 볼 때 질병 전파기회가 많고 범위도 넓음. 게다가 대외개방·무역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의 질병들이 유입될 기회도 증가되었음
- 축금에 대한 방역사업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체건강과 축산업의 발전을 보장하고자 국무원에서는 1985년 2월 14일 《家畜家禽 방역조례》를 반포하고 실시하였다. 동시에 1992년 4월 8일 농업부에서는 《방역조례실시세칙》을 반포함으로써 가축·가금 방역사업이 법적인 제도로 보장되게 되었음

2) 방역·검역기관

- 농업부에서는 전국 축금의 방역·검역 및 기타 수의위생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 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농목행정 주관부문에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축금 방역·검역 및 기타 수의 위생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3) 축금 전염병에 대한 예방

- 축금 전염병의 예방이란 방역과 검역활동을 포함함. 방역을 위주로 하면서 검역과 함께 방역효과를 촉진함
- 방역
 - 강제적으로 면역접종을 시켜야 될 방역대상에 대해서는 면역증명 관리 제도를 실시함
 - 사양장·사양전업농가는 수의위생 인원의 지도 하에 수의위생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짐. 종축장·종금장과 사양장에는 전문적인 수의위생 인원을 배치해야 함. 가축개량소·종축장·종금장·배종 전업농가가 사양하는 종축금에는 규정된 전염병이 없어야 함
 - 도살장·육류 종합가공공장 및 기타 축금 도살 종사단위와 개인은 축금검역 요구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며, 전문 검역기구, 검역인원 및 검역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축금 시장과 농산물 시장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단위들은 축금 종류별 지정장소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장소는 일상적으로 제때에 청소하고 소독해야 함. 분변·짚·오염물에 대해서는 무공해 처리를 진행해야 함
 - 축금을 운송하는 차량·비행기·선박은 역구(疫區)를 지날 때 풀·음료수·기타 물자를 실어서는 됨. 운송 도중에 병든 축금 혹은 병으로 인해 죽은 축금을 판매해서는 안됨. 운송 도중에 병들어 죽은 축금 혹은

변질된 축금제품·분변·풀·오염물을 버려서는 안되며, 운송도구는 제 때에 청소하고 소독해야 함

○ 검역

- 가축을 판매하기 전에 주인은 소재지 검역기관 혹은 위탁 부문에 신청하여 검역을 받아야 함. 검역에 합격된 후에야 판매할 수 있음
- 검역기관 혹은 검역을 위탁받은 단위에서는 검역을 통과한 경우 아래와 같은 증명서류를 발급함. 현(縣) 내에서 유통 가능한 축금에 대해서는 축금 산지검역 증명을 발급하며, 현밖으로 운송될 축금에 대해서는 축금 운송검역 증명을 발급해야 함. 축금제품에 대해서는 축금제품 검역증명을 발급해야 함. 축금 검역증명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이며 축금제품은 30일 이내임
- 다음과 같은 축금 및 그 제품의 경영은 금지되어 있음. 봉쇄된 역구에서 생산된 축금 및 그 제품이거나, 검역 증명이 없거나, 검역 증명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전염병 혹은 해로운 병이 있거나, 병들어 죽거나, 독약으로 인해 죽거나 혹은 죽은 원인이 불투명한 경우와 기타 수의위생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임
- 병들어 죽은 축금 혹은 그 제품이 발견되면 화물주인은 무공해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처리비용은 화물주인이 부담하도록 함

4) 축금전염병 퇴치

-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각급 농목 주관부문에서는 필요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의 기준을 거쳐 관계 부문들을 조직하여 방역지휘기관을 설립하고 제때에 질병을 퇴치해야 함
- 축금·축금제품의 사양·생산·가공·구매와 판매 등 활동을 진행하는 단위와 개인은 축금전염병 혹은 전염병과 비슷한 병을 발견했을 때 즉시 현지 축금방역 검역기관 혹은 향(진) 축목수의소에 보고해야 함

- 역점(疫点), 역구(疫區), 위험구역의 구획 및 봉쇄령의 반포는 현급 범위 내의 경우는 현급 정부가 진행하며, 두개 현(시)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시(현지) 정부에서 진행함. 두개 시(현지) 이상에 걸칠 경우는 성급 정부에서 진행하며, 두개 성 이상에 걸칠 경우에는 농업부에서 진행함
- 봉쇄 역점에 대해 사람, 축금 및 기타 사양 동물, 차량의 출입과 축금제품 및 전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운송은 금지함. 병으로 죽은 축금, 그것과 같이 기른 축금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의 주관부에서 소멸 및 소각과 무공해 처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인은 거절해서는 안됨. 역점 내에서 사용한 기구·장소 등은 반드시 소독해야 함
 - 봉쇄 역구의 교통 요충지에는 임시 검역소독소를 설립하여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시장거래와 역구 내 축금·축금제품에 대한 교역을 정지시켜야 함.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축금에 대해서는 검역 혹은 방역 주사를 놓아야 함
 - 위협을 받고 있는 구역에서는 정부에서 유관단위와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방역조치를 취해야 하며, 축금 방역검역기관 및 향(진) 축산수의소는 수시로 질병 상태에 대하여 관측을 해야 함
- 疫區(点) 내에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병든 축금을 도살하거나 혹은 다치유가 되고, 그 이후 한 발병 잠재기 이상의 검측·관찰을 거쳐 다시 병이 나타나지 않을때 철저한 소독과 청소를 하여 현급 이상 농목주관부문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후, 봉쇄령을 반포한 원 인민 정부에 봉쇄령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3) 수의약품 관리

1) 의의

- 수의약품은 축금 등 동물 질병의 예방·치료·진단에 이용되는 것으로

서 생리기능 조절과 함께 물질의 작용·용도·용법·용량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 사료약물 첨가제를 포함함

- 수의약품의 품질은 축금의 안전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영향을 끼침. 수의약품의 생산·경영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감독하여 수많은 농축산업 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국무원에서는 1987년 5월 21일 《수의약품관리조례》를 반포하고 실시함으로 중국의 수의약품 관리 사업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음

2) 수의약품 생산기업 관리

- 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들이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첫째, 생산되는 수의약품에 상응하는 助理공정사·助理수의사 이상의 기술자 혹은 기술공이 있어야 함. 둘째, 상응하는 공장 및 시설과 위생환경을 갖추어야 함. 셋째, 국가 안전·위생표준에 부합되는 시설과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넷째, 품질 검사기구 및 전문 검사인원이 있어야 함. 다섯째, 수의약품 전문 생산기업이 아닌 기업이 수의약품을 생산할 때에는 단독의 수의약품 생산구역을 갖추어야 함
- 상기조건들을 구비하고 수의약품 생산 신청을 한 기업은 그 소재지 현급 이상 농목행정관리 기관의 심사와 동의를 받은 후 성급 농목행정관리 기관의 심사 기준을 거쳐 '수의약품생산허가증'을 발급 받고 나서야 '영업허가증을 낼 수 있음
- 수의약품 생산기업은 기술규정에 따라 생산을 해야 함. 수의약품 포장에는 반드시 '수의약품'이란 글자가 박힌 딱지와 설명서가 있어야 함. 수의약품을 분류하여 포장할 때에는 완전하고 명확한 포장분류 기록이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규정된 것은 유효기간도 적어야 함. 수의약품이 공장에서 나가기 전에 반드시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하고 제품품질 검사 함

격증도 있어야 하며, 합격증이 없는 수의약품은 경영기업들이 구매해서는 안됨

3) 수의약품 경영기업 관리

- 수의약품을 경영하는 기업은 경영 수의약품에 상응하는 수의약품 기술자와 영업장소·설비·창고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 수의약품을 경영하는 기업은 현급 이상 농목 행정 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수의약품경영허가증'이 있어야 '영업허가증'을 낼 수 있음
- 수의약품을 구매할 때에는 품질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수의약품을 저장할 때에는 창고보관 제도를 반드시 확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수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함. 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품질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도시 농촌 시장에서 수의약품을 경영하는 경우 '수의약품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함

4) 수의 의료단위의 약제 관리

- 수의 의료단위는 건전한 수의약품 관리제도를 확립해야 함
- 수의 의료단위에서 수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성급 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수의약품제제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합격기준에 도달되어야 당해 단위의 임상 및 책임의료 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해서는 안됨
- 수의 의료단위에서 구입한 수의약품에 대해서는 품질 검수제도를 실행해야 하며, 합격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면 안됨. 수의 의료단위에서는 수의약품 소매업무를 겸하여 할 수 있음

5) 신 수의약품의 심사 기준과 수출입 수의약품 관리

1) 신 수의약품 심사기준

- 수의약품의 표준은 국가표준·전문 표준과 지방표준으로 구분됨. 국가는 신 수의약품 연구와 개발을 장려해야 함. 신 수의약품이란 중국이 연구 제작한 수의약 원료 약품을 말함
- 신 수의약품이 중국 수의약품 감찰소의 여러 검사·검증을 거쳐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면 '새로운 수의약품 증서'를 발급함. '새로운 수의약품 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과학연구 성과 혹은 기술이전이라고 할 수 없음
- 수의약품의 새로운 제제(製劑)란 수의약품 원료 약품을 이용하여 새로이 연구 제작·가공된 수의약품제제로서 성급 수의약품 감찰소의 제 검사·검증을 거쳐 안전하고 효율적임이 증명된 것을 말함

2) 수출입 수의약품 관리

- 수의약품에 수입에 대해서는 '수의약품 수입허가증'과 '수입 수의약품 등록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가짜 저질 수의약품의 수입은 철저히 막아야 함

6) 가짜 저질 수의약품과 기준을 거치지 않은 수의약품의 생산 및 경영 금지

- 가짜 수의약품이란 비 수의약품을 수의약품으로 꾸며대거나 수의약품 함유 성분의 종류·명칭이 국가표준·전문 표준 혹은 지방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저질 수의약품이란 수의약품 성분의 함량이 국가 표준·전문표준 혹은 지방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했거나, 변질되어 사용 불가능하거나,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는 약 등을 말함
- 비준을 거치지 않은 수의약품으로는 허가를 받지 못하여 문서번호(文号)를 따지 못한 것과 국무원 농목행정 관리기관에서 명문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수의약품이 포함됨

(4) 사료관리

- 축산업과 어업의 빠른 발전을 도모하고 양식업을 농업의 주도적인 업종으로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료 생산과 경영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은 사료관리 분야에서 통일적인 단일 법규가 없는 실정이나,
 - 적지 않은 성에서 현지 실제 사정에 부합하는 지방 법규 혹은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하고 있음
 - 사료관리 분야에서도 이미 법제화 궤도에 들어섰음을 말해주고 있음

7. 동식물 검역 제도

(1) 동식물 검역의 의의와 대상

- 동식물 검역이란 국가 동식물 검역기관이 출국·입국 및 국내에서 이동하는 동물 및 그 제품의 질병·기생충병 및 유해생물과 식물 및 그 제품의 역병, 해충, 잡초 등 유해생물에 대해 일정한 기계·설비와 과학적인 기술방법을 이용하여 검사감독하고, 동물전염병, 기생충병, 식물위험성병, 충, 잡초 등 유해생물이 국경을 넘어 전파가 만연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제하여 안전한 농업생산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를 가리킴

- 농업법 제32조에 “국가는 동식물방역, 검역제도를 실행한다. 어떤 단위가든지 혹은 개인이든지 동식물 검역에 관련된 법률과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1991년 10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을 제정, 반포하였으며, 1996년 12월 2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를 반포하였음
 - 한편 1992년 5월 13일에는 1983년 1월 3일 반포한 《식물검역조례》를 수정 반포하였으며, 1997년 12월 25일에는 1995년 2월 25일 반포한 《식물검역조례실시세칙(농업부문)》을 수정 반포하는 등 일련의 동식물검역관련 법령이 제정되면서 검역법제도가 완비되기에 이룸

(2) 동식물 검역법 상의 주요 검역의무 내용

1) 검역 신청 및 수검 의무

- 수입된 동식물·동식물 제품과 기타 검역물(檢疫物)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수출될 때 아래에 나열한 검역의무 주체는 일선 검역기관에 신청하여 검사를 받고 검역에 통과하여야 함
 - 출입국 화물의 주인 혹은 대리인
 - 동식물·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운송하는 운송인
 - 동식물 종자·종묘 및 기타 번식 재료를 갖고 있는 사람
 - 혹은 우편으로 부치는 사람
 - 동식물·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국내 혹은 국외로 갖고 나가는 사람 등이 검역의무 주체임

- 국내에서 이동하는 검역대상 식물 혹은 식물 제품의 당사자는 법에 따라 현지 식물 검역기관에 신청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함. 검사신청 수속할 때 법에 따라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 2) 검역의무 주체는 검역기관에 관련정보와 편리한 방법 등을 제공하는 등 검역기구가 검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3) 검역과정에서 검역기관이 반송·소각·봉쇄 등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는 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그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4) 검역 당사자는 검역 합격서류·검역 통과서류·국경통과검역 허가서류·운송도구 검역 서류 등 과 같은 검역 서류를 구비하기 전이나 혹은 검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사에 통과되지 않았을 때 동식물·동식물 제품을 국내·국외로 갖고 갈 수 없으며 국내에서 이동할 수도 없음
 -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 가운데 위험성 병·충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 재료들은 격리시켜 시험 재배를 해야 하며, 검역기관에서는 조사·관찰 및 검역을 진행하여 위험성 병, 충이 없다고 확실히 증명하고 나서야 식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심을 수 없음
- 5) 종자·묘목 및 기타 번식 재료의 번육 단위에서는 식물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종묘 번육기지·母樹林기지를 건립하며, 시험, 보급하는 종자·묘목 및 기타 번식 재료에는 식물검역 대상이 들어 있어서는 안됨
- 6) 가축을 판매하거나, 현계(縣境)를 넘어 반출하거나, 도살하는 경우 현급(縣級) 농목부문 혹은 그 위탁단위가 발급한 검역증명이 있어야 함. 도살장, 육 가공공장에서는 축금에 대한 방역과 검역을 잘 실행해야 함. 거기서 생산된 축금제품에는 공장의 검역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함과 동시에 농목부문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함
- 7) 검역을 받아야 할 단위 혹은 개인은 검역기관에 일정한 검역비용과 함께 관련 손실에 대해서도 부담을 짐. 검역비용이란 검역실시를 위해 필요한 차량 혹은 배의 정류, 화물의 운송·개봉·표본 채집·저장·소독 처리 등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제 5 장

중국의 주요 농업관련 법령

1. 농업일반분야 주요 법령

- ◇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 113P
- ◇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보급법 / 114P
- ◇ 기본농전보호조례 / 129P
-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 136P
-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 146P
- ◇ 농업행정처벌 절차규정 / 153P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

(1993년7월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장하고 농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며, 농업생산 경영조직과 농업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농업을 기초로 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침을 견지한다.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농업 발전의 기본목표는 농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힘써 발전시키며, 농촌의 생산력을 가일층 해방 및 발전시키고 농촌의 노동력, 토지와 각종자원을 개발·이용하며,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시키고 인민생활과 사회경제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킨다. 생산을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 농업 노동자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 생활수준을 높이며, 함께 부유하고 문명한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여 점차적으로 농업 현대화를 실현한다.

본 법률에서 일컫는 농업은 재배업, 임업, 축산업과 어업을 가리킨다.

본 법률에서 일컫는 농업생산경영조직은 농업 집단경제조직, 국가소유 농업기업과 기타 농업기업을 가리킨다.

제3조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소유 및 전체 인민소유를 제외하고 집단소유에 속한다.

삼림, 산맥, 초원, 황무지, 하천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가소유이고 법률에서 규정한 집단소유의 삼림과 산맥, 초원, 황무지는 제외된다.

제4조 국가소유 토지와 집단소유 토지의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매매하거나 혹은 기타 불법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할 수 없다.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토지를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확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경작지를 함부로 점유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에서는 사회주의 공동소유제 경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경제성분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농촌경제를 진흥시킨다.

제6조 국가는 농촌의 가정연산도급을 주로 하는 책임제를 안정시키고, 충분히 결합시키는 이중 경영체제를 완벽하게 하고 사회화 서비스체제를 발전시키며, 집단 경제실력을 높이고 농민들을 함께 부유해지는 길로 인도한다.

제7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진보와 교육의 발전에 의거하여 농업을 진흥시킨다.

제8조 국가는 수력사업과 농업용 생산자료 공업을 발전시켜 농업생산의 안정된 증가를 위하여 물질 담보를 제공한다.

제9조 국가는 농업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장려한다.

제10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농업사업을 중요한 지위에 놓고 통일적으로 책임지며, 관련부문과 전 사회를 조직하여 농업을 지지하고 농업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국무원 농업주관부문은 반드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국의 농업관련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국무원 기타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국의 농업생산경영을 위한 서비스사업을 책임진다.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농업주관부문을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에 관련된 농업사업을 책임진다. 현 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에 관련된 농업생산경영을 위한 서비스사업을 책임진다.

제2장 농업생산 경영체제

제11조 법률에 따라 집단이 소유한 토지는 촌 농민 집단소유이고 촌 농업집단경제조직 혹은 촌 인민위원회가 경영하고 관리한다. 이미 향(진) 농민집단경제조직의 소유인 것은 향(진) 농민집단이 소유할 수 있다.

촌 농민 집단이 소유한 토지 중에서 각각 촌 내의 두개 이상의 농업집단 경제조직의 소유로 된 것은 각각 그 농업집단 경제조직의 농민집단 소유로 될 수 있다.

제12조 집단 혹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농업집단 경제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산봉우리, 초원, 황무지, 간석지, 수면은 개인 혹은 집단이 도급 맡아서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국가소유 혹은 집단 소유인 조림할 수 있는 황무지는 개인 혹은 집단이 도급 맡아서 조림할 수 있다. 개인 혹은 집단의 도급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도급 쌍방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한다.

제13조 농업도급계약이 따로 약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자는 생산경영결재권, 제 품처리권과 수익권을 향유하며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조립할 수 있는 황무지를 도급하여 조립을 할 경우 삼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도급 기한 내에 피도급자의 동의를 거쳐 도급자는 도급 말은 토지, 산봉우리, 초원, 황무지, 간석지, 수면 등을 양도, 도급할 수 있으며 또한 농업도급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도급 기한이 되면 도급자는 원래 도급 받았던 토지, 산봉우리, 초원, 황무지, 간석지, 수면 등에 대하여 도급권을 우선 향유한다.

도급자가 도급기간 내에 사망하면 사망자의 계승자가 계속하여 도급할 수 있다.

제14조 농업집단 경제조직 혹은 촌민위원회는 토지, 산봉우리, 초원, 황무지, 간석지, 수면을 도급 받은 개인 혹은 집단에게 생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에서는 개인 혹은 집단이 황산, 황무지를 도급하여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을 고무 격려하며 도급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16조 농민은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법률에 따라 농촌 의무작업과 노동누계작업을 담당한다.

제17조 국가는 농민과 농업생산 경영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침범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18조 어떠한 기관이든 공무수행 시 농민 혹은 농업생산 경영조직으로부터 수금할 경우 반드시 법률, 법규, 국무원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부문의 결정, 혹은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반드시 국무원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수금의 표준과 범위는 공포하여야 하고 정황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 정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어떤 기관이든지 법률, 법규, 국무원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부문의 결정, 혹은 성급 인민정부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금할 경우 농민과 농업생산 경영조직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기관이든 농민 혹은 농업생산 경영조직에게 벌금처벌을 진행할 때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어떤 기관이든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농민 혹은 농업 생산 경영조직에게 벌금을 실시할 경우 농민과 농업 생산 경영조직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기관 혹은 단체든지 어떤 방식으로 농민 혹은 농업생산 경영조직으로부터 할당을 요구하지 못한다. 법률 법규의 규정 외에 어떤 기관 혹은 단체가

농민 혹은 농업생산 경영조직으로부터 인력, 재력, 물질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요구하는 것은 할당에 속한다. 농민과 농업생산 경영조직은 어떤 방식의 할당이든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농민 혹은 농업생산 경영조직으로부터 모금하는 것은 자원원칙에 따라야하고 강제적으로 모금할 수 없다. 어떤 기관 또는 단체가 농민 혹은 농업생산 경영조직으로부터 강제모금을 요구할 때 농민과 농업생산 경영조직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국가는 농업단체 경영조직과 기타 관련조직의 여러 가지 형식의 농업생산 전, 생산 중, 생산 후의 사회화 서비스사업의 발전을 격려해야 한다. 재정, 금융, 과학기술, 물자 등 부문은 반드시 농업생산 사회화 서비스사업에 대하여 마땅히 지지하여야 한다.

제3장 농업생산

제21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자금, 농업생산자료, 기술, 시장정보 등 면에서 농업생산 경영조직과 농업 노동자가 농업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지한다.

제22조 국가는 농업생산 경영조직과 농업 노동자로 하여금 시장의 수요에 따라 농업생산구조를 조정하여 식량과 목화생산의 안정적인 증가를 유지하고 전면적으로 재배업, 임업, 목축업, 어업을 발전시키며 높은 생산량, 높은 품질, 높은 수익의 농업으로 발전되도록 지도한다.

국가는 계획적으로 상품식량, 상품목화의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제23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종합개발계획을 제정하여 농업을 더 넓고 더 깊게 개발하여야 하며 또한 조직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단체 경제조직은 응당 조치를 취하여 농촌기업과 제3산업을 발전시키며, 농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잉여 농업노동력을 전이하여야 한다.

제25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생산 경영조직은 반드시 계획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하여 논밭의 수리와 방호림의 건설을 조직하고, 한해나 수재를 만나도 수익이 담보되는 논밭면적의 안정적인 증가를 보증하여야 한다.

제26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생산 경영조직은 반드시 논밭 수리설비의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물 절약형 관계설비를 발전시키고 비농업건설이 관개수원을 차지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어떤 단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논밭 수리설비를 점유하거나 파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농업생산 경영조직과 농업노동자가 선진적이고 알맞는 농업기계를 사용하여 농업기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식량의 가공과 종합개발 이용을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식량의 부가 가치를 증대하고 인민의 식품영양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

제29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고 재해방지, 재해저항과 재해구제사업을 잘 해나가며, 재해인민을 도와서 생산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서로 돕고 서로 구제하는 것을 전개하여야 한다. 생활 보장이 없는 재해인민에 대하여 생산자구책을 마련하여 구조와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

국가는 빈곤지역을 보조하고 경제개발진행을 도와주며 경제개발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

제30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농업 서비스를 위한 기상사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기상재해의 예보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농업 보험사업의 발전을 격려하고 보조하여야 한다.

농업보험은 자원원칙을 실시한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농업 노동자와 농업생산 경영조직이 농업보험에 참가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제32조 국가는 동식물방역, 검역제도를 실시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동식물방역, 검역의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거시적 조절조치를 실시하여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박막, 농업기계와 농업용 디젤오일 등 주요 농업생산재료와 농산물간의 합리적인 비교가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34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생산 경영조직은 반드시 농약, 가축약, 농업기계 등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업생산재료의 안전사용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야 하며, 농업노동자에게 생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약, 가축약, 화학비료, 종자, 농업기계, 농업용 박막과 기타 농업생산재료의 생산자, 판매자는 반드시 그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나쁜 것으로 좋은 것을 대체하거나 가짜를 진짜로 대체하거나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 법령으로 도태된 농업생산재료로 농약, 가축약, 농업기계 등의 생산을 금지한다.

제4장 농산품 유통

제35조 농산품의 구매와 판매는 점차적으로 시장조절을 실행하고 국가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중요한 농산품의 구매와 판매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거시적 조절을 실행한다.

국무원과 국무원이 권리를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 경영조직에 위탁하여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농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위탁 구매하는 농산품의 품종과 수량은 국무원이나 국무원이 권리를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필요 시 국무원은 특정한 농산품에 대하여 위탁구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 국가는 식량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농산품에 한해서는 보호가격 구매제도를 실행하고 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국가는 식량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에 다급 비축 조절제도를 실행하고 비축기금을 설립하며, 창고저축, 운송체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 공급을 보장하고 시장을 평온하게 한다.

제37조 국가소유 상업조직과 공급판매합작경제 등 단체, 상업조직은 반드시 창고저축설비의 건설을 강화하고 시장정보를 공급하며, 구매사업을 개진하고 주된 통로작용을 발휘하여 농민들의 농산품 판매를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민들이 여러가지 형식의 농산품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도한다. 농업생산 경영조직과 농업노동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농산품 구매, 가공, 도매, 운반과 소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38조 국가는 기업과 사업단체 개인이 법에 따라 지역을 뛰어 넘고 업종을 뛰어 넘어 농산품의 생산, 가공, 판매, 연합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제39조 국가는 농산품 집중 무역시장과 농산품 도매시장의 건립과 발전을 지지한다.

농산품 도매시장은 교역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농산품 도매시장의 관리자는 농산품 도매시장의 교역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0조 조건을 구비한 농업생산 경영조직과 기타 경제조직은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허락을 받은 후 대외무역 경영권을 가질 수 있으며 농산품의 수입, 수출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는 반드시 재정, 금융, 식량, 공급판매 등 관련부문과 단체를 조직하여 제때에 농산품 구매자금을 모아야 하며, 어떠한 단체 혹은 개

인이든지 빼내든가 유용할 수 없다.

농산물의 구매단체는 구매할 때 반드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생산 경영조직 혹은 농민에게 구매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농산물의 구매단체는 농산물 구매시 농산물의 등급과 가격을 낮추지 못하며 지불한 자금에서 기타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수수료, 세금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5장 농업투입

제42조 국가는 점진적으로 농업투입의 전체 수준을 높인다. 국가 재정에서 매년 농업 총 투입의 증가폭은 국가 재정의 경상적인 수입의 증가폭 보다 높아야 한다.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농업의 외자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제43조 현 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발전, 삼림재배, 수리 전문건설 등 각 항 농업전문기금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44조 국가는 세금징수, 가격, 신용대출 등 수단으로써 농업생산 경영조직과 농업 노동자가 농업투입을 증가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업생산 경영조직과 농업노동자는 자원의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농업자금 모집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제45조 국가는 농업투입을 아래와 같은 기초설비와 공정건설에 사용한다: 큰 강, 큰 호수를 다스리는 주체공정, 홍수방지, 가뭄관리, 관개 등 대형 수리공사, 농업 생산과 농산물 유통, 중점 기초시설, 상품식량과 목화 생산기지, 목재에 쓰는 임업 기지와 방호림 사업, 농업교육, 농업과학연구, 기술전개와 기상기초설비 등이다.

농업의 생산투입과 논밭, 수력 등 기초건설은 농업생산 경영조직과 농업 노동자가 자금과 노동을 투입하여 저축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보조한다.

제46조 국가는 세금징수, 신용대출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농업용 생산재료, 공업의 발전을 격려하고 보조하며, 농업 용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박막과 농기계 등 농업 생산재료에 대한 수요에 적응되게 한다.

제47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농업자금의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농업집단 경제조직이 합리적으로 집단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어떤 단체든지 각급 인민정부가 하달하는 농업용 자금과 은행의 농업용 대부금을 빼내든가 유용하지 못한다.

제6장 농업과학기술과 농업교육

제48조 각급 인민정부는 점진적으로 농업과학기술경비와 농업교육경비를 증가하여 농업과학기술과 교육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국가소유 기업사업단체와 기타 사회역량이 농업과학기술과 교육사업을 거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무원 관련부문은 농업과학기술 기초연구, 응용연구와 높은 기술연구에 대하여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고 큰 프로젝트는 연합해서 난제를 해결하며 국제농업과학기술 합작과 교류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49조 국가는 농촌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직업교육을 발전시키며, 농업 노동자의 문화, 기술 소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농업기술의 지도사업을 보조하고, 선진적인 농업기술이 빨리 농업생산에 응용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농업기술 지도기구는 농업과학연구, 교육단체와 상호 협조하여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기술지도기구, 농업과학연구 단체와 관련학교에서 주최한 농업서비스를 위한 기업에 대하여 국가는 세금징수, 신용대출 등 면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제52조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농업과학기술 교육과 농업기술추진 대열을 충실히 강화해야 한다. 농업기술추진사업을 하는 전문기술 인력에 대하여 그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그들의 대우를 개선하고 국가에서 결정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주어 그들을 농업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제53조 국가는 농민이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시도하는 것을 격려하고, 농민이 각종 과학기술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7장 농업자원과 농업환경보호

제54조 농업을 발전시킴에 있어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자원계획, 농업환경보호 계획과 농촌자원발전계획을 제정하고 농업생태환경관리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55조 현 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기본적인 논밭보호구를 확정하고 기본논밭

보호구의 경작지에 대하여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현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황산, 황무지, 간석지의 개발과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생산 경영조직과 농업 노동자는 토지를 보호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유기비료 사용을 높이고 지력을 제고하며 토지의 오염, 파괴와 지력의 쇠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가는 수도유지사업에 대하여 예방위주, 전면 계획, 종합방치 등 관리를 강화함에 있어 효과를 중시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작은 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모래의 침해를 억제하며, 수도유실과 토지사막화를 예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삼림을 없애고 경작지를 만드는 것, 산을 태우고 경작지를 만드는 것, 호수를 말로 만드는 것 및 국가에서 개간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가파른 산지를 황무지로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제57조 국가는 전체인민 의무 식수제도를 시행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군중을 조직하여 식수조립하고 조립방화, 삼림 병충해 방치 및 임지보호를 하며 삼림을 남벌하고 도벌 하는 것을 제지하고 삼림 복개율을 높여야 한다.

제58조 국가는 물, 삼림, 초원, 야생 동식물 등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오염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8장 법률 책임

제59조 본 법의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농민 혹은 농업생산 경영조직으로부터 수급, 벌금, 할당 혹은 강제 모금할 경우 상급기관은 제지시켜야 하며 관련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미 돈을 받았거나 인력, 물력을 사용했을 경우 상급기관은 규정기간 이내에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이미 사용한 인력 물력을 환산하여 상환하도록 명령한다. 경우가 엄중한 것은 상급기관 혹은 소속 단체에서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60조 본 법의 제41조 제1항,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의 단위가 농산물 구매자금을 빼내거나 본 단체의 비 농산물 구매용도에 전용한 경우, 혹은 각급 인민정부가 농업용으로 내려보낸 자금을 빼내거나 본 단체의 비 농업지출로 전용한 경우 혹은 은행의 농업대부금을 빼내거나 단체의 비 농업용도에 전용한 경우 상급기관은 규정기간 내에 빼내거나 전용한 자금을 되돌릴 것을 명

명한다.

경우가 엄중한 것은 상급기관 혹은 소속 단체에서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61조 본 법의 제4조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 팔거나 혹은 기타 불법적인 형식으로 토지를 넘겨주거나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면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62조 본 법의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짜농약, 가짜 가축약, 가짜 화학비료를 생산하거나 가짜 혹은 사용효과를 상실한 농약, 가축약, 화학비료, 종자인지 알면서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자, 혹은 판매자가 불합격된 농약, 가축약, 화학비료, 종자를 합격된 농약, 가축약, 화학비료, 종자로 위장할 경우 생산, 판매를 정지시키고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한 제품과 소득을 몰수하고 또한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주며, 영업허가증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한 기관에서 결정한다.

제63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농업생산 경영조직과 농업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여 손해, 손상을 야기하면 법에 의하여 민사배상책임을 묻는다.

제64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하여야 할 경우 본 법에서 이미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65조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경우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장 부 칙

제66조 본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술보급법

(1993년7월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농업기술의 보급사업을 강화하고 농업과학의 연구성과와 실용기술이 빨리 농업생산에 응용되도록 촉진하며, 농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농업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말하는 농업기술은 재배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사용하는 과학연구성과와 실용기술을 가리키며, 우량종 번식, 비료 사용, 병충해 방치, 재배와 양식기술, 농업부산물 가공, 신선도 유지, 저장, 운송기술 농업기계기술과 농업용 항공기술, 논밭수리, 토양개량과 수도보호기술, 농촌 물 공급, 농촌 에너지 이용과 농업환경 보호기술, 농업기상기술 및 농업경영관리기술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일컫는 농업기술 보급은 시험, 시범, 훈련, 지도 및 자문, 서비스 등을 통하여 농업기술을 농업생산의 생산 전, 생산 중, 생산 후의 전 과정에서 보급하고 응용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국가는 과학기술진보와 교육의 발전에 의거하여 농촌경제를 진흥시키고 농업기술의 보급·응용을 가속시켜 높은 생산량, 우수한 품질, 높은 효익의 농업으로 발전시킨다.

제4조 농업기술의 보급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농업 발전에 유리하여야 한다.
- ②농업노동자의 소원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시험, 시범을 통과하여야 한다.
- ④국가,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보조한다.
- ⑤과학연구단체, 유관학교, 보급기구와 대중성 과학기술조직, 과학기술자, 농업노동자의 상호결합을 실행하여야 한다.
- ⑥농업생산의 경제효익, 사회효익과 생태효익을 강구한다.

제5조 국가는 과학기술자들이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 응용하는 것을 격려, 지지하고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 경영조직이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응용하는 것을 격려, 지지한다.

제6조 국가는 국외의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격려, 지지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국제합작과 교류를 촉진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술촉진사업의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부문과 단체를 조직하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기술보급사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 농업기술보급사업 중 공헌을 한 단체와 개인은 장려한다.

제9조 국무원의 농업, 임업, 목축, 어업, 수리 등 행정부문(이하는 농업기술보급 행정부문으로 칭함)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국 범위내의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책임진다. 현 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농업기술보급행정부문은 각급 인민정부의 영도 아래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의 과학기술행정부문은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지도를 진행한다.

제2장 농업기술 보급체계

제10조 농업기술의 보급은 농업기술보급기구와 농업과학연구단체, 관련학교 및 대중성 과학기술조직, 농민기술자들이 결합하는 보급체계를 실행한다.

국가는 공급판매합작사, 기타 기업, 사업단체, 사회단체 및 사회 각계의 과학기술 인력이 농촌에 가서 농업기술보급 서비스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제11조 향, 민족 향, 진 이상 각급 국가농업기술보급기구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업기술 보급계획의 제정에 참여하고 실행을 추진한다.
- ② 농업기술의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③ 농업기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보급하기로 확정된 농업기술에 대하여 시험, 시범을 진행한다.
- ⑤ 하급 농업기술 보급기구, 대중성 과학기술단체와 농민기술자들의 농업기술보급활동을 지도한다.

제12조 농업기술보급기구의 전문과학기술자들은 중등 이상의 관련전공의 학력이 있어야 하거나 혹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부문이 조직한 전공 평가교육을 통과하여 상응한 전공 기술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13조 촌 농업기술보급 서비스조직과 농민기술자에게 농업기술보급기구의 지도하에 농업기술지식을 선전하고 농업기술보급조치를 실시하며 농업노동자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기술을 보급할 때 조건이 되는 농가를 선택하여 응용시범을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농민기술자들을 교육한다. 농민기술자들이 시험을 통하

여 조건에 부합되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상응한 직위를 수여하고 증서를 발급한다.

촌민위원회와 촌 집단경제조직은 촌 농업기술보급서비스조직과 농민기술자들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제14조 농장, 임업장소, 목장, 어장은 자신의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잘하는 외에 사회를 대상으로 농업기술보급서비스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15조 농업과학연구단체와 관련학교는 농촌경제건설발전의 수요에 따라 농업기술개발과 보급활동을 전개하고, 선진적 기술의 농업생산과정에서의 보급과 응용을 가속해야 한다.

교육부문은 농촌에서 농업기술보급에 관련된 직업기술교육과 농업기술교육을 전개하여 농업기술보급자들과 농업노동자의 기술소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국가는 농업집단경제조직, 기업, 사업단체와 기타 사회역량이 농촌에서 농업기술교육을 전개하는 것을 격려한다.

농업과학연구단체와 관련학교의 과학기술자들 중에서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위를 평가할 때 그들이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종사하는 실적을 고과의 주요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농촌의 대중성 과학기술조직을 발전시키는 것을 격려, 지지하고 그들이 농업기술을 보급할 때 작용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

제3장 농업 기술의 보급과 작용

제17조 농업기술을 보급할 때 농업기술보급 항목을 제정하여야 한다. 중점적인 농업기술보급 항목은 국가와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에 관련되는 계획에 넣어야 하며, 농업기술보급 행정부문과 과학기술 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상호 배합하여 조직 실행한다.

제18조 농업과학연구단체와 관련학교는 농업생산 중 해결하여야 할 기술문제를 연구과제로 하여야 하며, 그 연구성과는 농업기술 보급기구를 통하여 보급할 수 있고 또 그 농업과학연구단체와 그 학교가 직접 농업노동자와 농업생산경영조직에게 보급할 수 있다.

제19조 농업노동자에게 보급하는 농업기술은 보급지구의 시험을 거쳐 선진성과 적용성을 구비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농업노동자에게 보급지구에서 선진성과 적용성을 증명하는 시험을 거치지 않

은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그들에게 손실을 야기했을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주관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그들이 소속하는 단체 혹은 상급기관이 행정처분 한다.

제20조 농업노동자는 자원원칙에 근거하여 농업기술을 응용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농업노동자로 하여금 농업기술을 응용하도록 강박하지 못한다. 강제적으로 농업노동자에게 농업기술을 사용하게 하여 그들에게 손실을 야기했을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주관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그들이 소속하는 단체 혹은 상급기관이 행정처분 한다.

제21조 현, 향 농업기술 보급기구는 농업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농업과학기술지식을 학습시켜 그들의 농업기술을 응용하는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농업노동자가 생산 중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응용할 때 관련부문과 단체는 기술 교육, 자금, 물자와 판매 등 면에서 원조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업노동자가 농업기술보급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제22조 국가농업기술 보급기구가 농업노동자에게 농업기술을 보급할 때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무료서비스를 실행한다.

농업기술보급기구, 농업과학연구단체, 관련학교 및 과학기술자들이 기술양도, 기술서비스와 기술도급 형식으로 농업기술을 제공할 경우 유상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고 그 합법적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농업기술양도, 기술서비스와 기술도급을 실행할 때 당사자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농업기술 보급기구가 농업기술을 보급할 때 수요하는 경비는 정부재정으로 충당한다.

제4장 농업 기술 보급의 보장조치

제23조 국가는 점진적으로 농업기술 보급의 투입을 제고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에 농업기술보급의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마다 증가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지출금 및 농업발전기금 중 일정한 비례로 자금을 취하는 방법을 통하여 농업기술보급 전용 자금을 모아 농업기술보급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사용한다.

어떠한 기관 혹은 단체든지 농업기술보급에 사용하는 자금을 함부로 빼 쓰거나 유용하지 못한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과학기술자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그들의 대우를 개선하고 국가의 규정대로 보조금을 주어야 하며 농업기술보급기구와 전문과학기술자들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향, 촌에서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과학기술자들의 직위를 평가할 때 그들이 보급사업에서의 업무기술수준과 실적을 위주로 하여 고과하여야 한다.

제25조 향, 촌 집단 경제조직은 그들이 창업한 기업의 공업으로 농업을 보충하고 농업을 건설하는 자금 중 일정한 금액을 취하여 본 향, 본 촌의 농업기술보급의 투입에 사용한다.

제26조 농업기술보급기구 농업과학연구단체와 관련학교는 농촌경제발전의 수요에 따라 기술지도와 물자공급이 상호 결합하는 등 여러 가지 형식의 경영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다. 농업기술보급기구, 농업과학연구단체와 관련학교가 창업한 농업을 위해 서비스하는 기업에 대하여 국가의 세금징수, 신용대출 등 면에서 혜택을 준다.

제27조 농업기술보급 행정부문과 현 이상 농업기술 보급기구는 계획성 있게 농업기술보급 요원들에게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전공연수를 추진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단히 새로운 지식을 갱신하고 업무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제2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농업기술 보급기구의 필수로 되는 시험지와 생산재료를 얻는 것을 보장하여 농업기술의 시험과 시범을 진행하도록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술 보급기구가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기술 보급기구의 시험지 생산재료와 기타 재산이 침범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9조 국무원은 본 법에 근거하여 실시례를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과 본 지구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농전 보호 조례

(1994년8월18일 국무원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기본논밭을 특별보호하고 농업생산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본논밭이란 일정한 시기에 인구와 국민경제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 및 건설용지에 대한 예측으로 확정되어 장기적으로 점용하지 못하는 경작지와 기본논밭 보호구 계획기간 내에 점용할 수 없는 경작지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본논밭 보호구란 기본논밭에 대하여 특별보호를 하기 위한 법정절차에 근거한 확정구역을 가리킨다.

제3조 기본논밭 보호구의 확정, 보호와 감독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기타 관련법률, 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기본논밭보호는 전면적인 계획, 합리적인 적용, 사용과 배양의 결합, 엄격한 관리의 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제5조 현 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기본논밭보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정부영도 임기목표책임제의 중요내용으로 삼아야 하며 상급 정부가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모두 기본논밭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본논밭을 침범 또는 파괴하거나 기타 본 조례를 위반한 기타 행위에 대하여 검거 또는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7조 국무원 토지관리부문과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본 조례와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분업에 의해 전국의 기본논밭보호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 급 이상 각급 지방정부 토지관리부문과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본 조례와 각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분업에 의해 본 행정구역내의 기본논밭보호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향 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의 기본논밭보호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8조 국가는 기본논밭보호작업 중 현저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한다.

제2장 확정

제9조 국무원 토지관리부문과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은 기타 관련부문과 함께 전국 기본논밭보호구 확정을 편제하여야 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 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과 동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은 기타 관련부문과 함께 상급 인민정부의 기본논밭보호구 계획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내의 기본논밭보호구 계획을 편제하여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의 심사규정을 거쳐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 받아야 한다.

향 급 인민정부는 현 급 인민정부의 기본논밭보호구 계획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기본논밭보호구 계획을 편제하여야 하며, 현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 받아야 한다.

비준을 거친 기본논밭보호구 계획이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기본논밭보호구 계획은 토지이용 전체계획과 농업자원 조사계획에 의거하여야 하며 도시 계획, 향촌건설계획과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각급 인민정부가 기본논밭보호구계획을 편제할 때 기본논밭보호의 수량지표와 배치를 확정하여 급에 따라 나누어 하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래 경작지는 원칙상 기본논밭보호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국무원 관련주관 부문과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비준하여 확정된 양식, 면화, 석유와 유명하고 우수하며 특수한 새 농산물생산기지.
2. 높은 생산과 안정된 생산을 하는 논밭과 양호한 수리와 수도 보호시설이 있는 경작지 및 관리, 개조와 개조계획중인 중·저급 생산량 논밭.
3. 대중도시 채소 생산기지.
4. 농업과학연구, 교수 실험논밭.

제13조 기본논밭보호구에 계획된 경작지는 아래와 같이 2급으로 나눈다.

1. 생산조건이 좋고, 생산량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점용 못하는 경작지는 기본논밭으로 확정한다.
2. 생산조건이 비교적 좋고 생산량이 비교적 높으며, 계획기간 내에 점용할 수 없는 경작지는 2급 기본논밭으로 확정한다.

제14조 기본논밭보호구의 구역설정과 경계선 설정작업은 향(진)을 단위로 진행하며, 현 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이 동급 농업행정 주관부문과 함께 조직 실시한다.

확정된 기본논밭보호구는 현 급 인민정부에서 보호표시를 설치하여 공고하며, 현 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당안을 작성하고 동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기본논밭 보호구의 보호표지를 파손하지 못하며 마음대로 고치지 못한다.

기본논밭보호구가 확정된 후 현 급 인민정부의 상급 인민정부는 검사해야 한다.

제15조 기본논밭보호구를 확정할 때 원 도급자의 도급 경영권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한다.

제16조 기본논밭보호구를 확정하는 기술규칙은 국무원 토지관리부문이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과 함께 제정해야 한다.

제3장 보호

제17조 기본논밭보호구가 일단 확정되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점용하지 못한다. 국가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중점건설항목의 위치선택이 확실히 기본논밭보호구를 피할 수 없고 기본논밭보호구의 경작지를 점용하여야 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이 규정한 심사비준절차와 심사비준권한에 의거하여 현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 신청을 제출하여 동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한 후 현 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 받아야 한다. 위의 조례에서 열거한 건설항목의 점용한 것이 일급 기본논밭 500무 이하인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점용한 것이 1급 기본논밭의 500무를 초과한 것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 받아야 한다.

제18조 개발구역을 설립함에 있어 기본논밭보호구내의 경작지를 점용하지 못하며, 특수정황을 위해 꼭 점용하여야 하는 것은 관련단위에서 개발구역설립을 신청하고 보고할 때 반드시 성 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과 농업행정주관부문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비 농업건설이 비준을 거쳐 기본논밭보호구내의 경작지를 점용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관련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경우 외에는 '얼마를 점용하면 얼마를 개간하는' 원칙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나 개인이 점유한 경작지의 수량과 품질에 상당한 경작지의 개간을 책임져야 하며, 개간할 조건이 없거나 혹은 개간한 토지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된 부문에 토지건설비를 내거나 기본논밭보호구내의 경작지를 점용한 토지조성

비용을 보충하여야 한다. 기본논밭보호구내의 채소토지를 점용하고 이미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새 채소토지 개발건설기금을 바친 것은 기본논밭보호구내의 경작지를 점유한 토지건설비를 면한다. 국가 투자를 위주로 새로 건설한 에너지, 교통, 수리, 국방공업 등 대·중형 건설프로젝트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기본논밭보호구 경작지의 토지건설비를 면할 수 있다.

토지조성비와 같은 전문자금은 전문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바 새로운 기본논밭의 개간, 건설과 중·저 생산량의 밭의 개량에 써야 한다.

새로운 기본논밭의 개간, 건설과 중·저 생산량의 밭의 개량은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에서 조직하고 실시한다.

제20조 기본논밭보호구내에 굴을 파거나 집을 짓거나 무덤을 만들거나 혹은 마음대로 모래를 파거나 채석, 채광하거나 흙을 채취하거나 고체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기본논밭보호구내의 경작지를 마음대로 비 경작지로 만드는 것을 엄금한다.

제2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기본논밭보호구 내의 경작지를 내버려두거나 황폐하게 하는 것을 엄금한다. 이미 심사 비준을 마친 개발구역과 기타 비 농업건설 용으로 점용한 기본논밭보호구 내의 1년 내에 쓰지 않으나 다시 파종하면 수확할 수 있는 경작지는 원 경작지를 경작하여야 할 집단이나 개인이 계속 경작하여야 하며, 건설단위 또한 파종을 조직할 수 있다. 1년 이상 시공하지 않고 버려 둔 경작지에 대해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의해 내버려 둔 비용을 바쳐야 하며, 원 비준기관의 동의를 걸치지 않고 연속 2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작지는 현 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서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후 원 토지사용단위의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토지사용증을 취소한다.

기본논밭보호구내의 경작지를 도급 경영한 개인이 내버려 두어 황폐해진 것은 농촌집단 경제조직이 도급 경영권을 회수한다.

제22조 기본논밭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의 생산력을 유지하고 배양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업생산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기본논밭에 유기비료를 치거나 합리적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치는 것을 제창하고 격려 한다.

제23조 현 급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기본논밭보호구 내의 경작지 지력을 등급을 나누어 급수를 정하는 방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자신의 농업행정주관부문이 토지관리부문과 함께 기본논밭보호구 내의 경작지 지력에 대해 등급을 나누고 급수를 정하는 것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서류를 작성한다.

제24조 농촌집단경제조직이거나 촌민위원회는 정기적 혹은 기본논밭보호구 내의 경작지 등급 경영권이 변경될 때 기본논밭보호구 내의 경작지 지력에 대해 등급을 나눠 평정을 진행한다.

제25조 현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점진적으로 기본논밭보호구 내의 경작지 지력과 비료사용 효력을 장기적으로 측정할 검사소를 설립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본급 인민정부에 보호구내 경작지 지력의 변화상황보고 및 그에 상응한 지력 보호조치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자에게 비료 주는 기술지도 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동급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과 함께 기본논밭보호구 내 경작지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검사와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본급 인민정부에 환경질량과 발전추세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특수정황으로 인하여 확실히 기본논밭 보호구내의 경작지를 점용하여 건설하여야 할 국가 중점건설항목은 국가 관련건설항목 환경보호관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항목 환경영향보고서는 본 논밭의 환경보호 방안이 있어야 하며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 심사 비준할 때 동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의 기본논밭 환경보호방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 기본논밭보호구 내에 제공하는 비료와 비료로 하는 도시 쓰레기, 오물들은 국가 관련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9조 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기타 돌발성 사건으로 인해 기본논밭의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키거나 혹은 일으킬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각 조치를 취하여 처리하여야 할 뿐아니라 현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과 농업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처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30조 기본논밭보호구를 설립한 지방에서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와 기본논밭보호 책임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향 급 인민정부는 농촌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와 기본논밭보호 책임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기본논밭보호책임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논밭의 범위, 면적, 지피
2. 기본논밭의 등급
3. 보호조치

4.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5. 표창과 처벌

농업 도급계약은 도급 농가와 전문대오(조)가 기본논밭에 대한 보호책임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제31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본논밭보호구의 감독검사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토지관리부문, 농업행정주관부문 및 기타 관련부문을 조직하여 기본논밭 보호정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검사 정황을 상급 인민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피검사 단위와 개인은 관련정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벌칙

제33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비준 없이 혹은 기만수단으로 비준을 거쳐 기본논밭보호구 내의 경작지를 불법적으로 점용한 경우
2. 기본논밭보호구 내의 경작지를 징용 사용할 권리가 없는 단위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비준 점용한 경우
3. 비준권한을 초월하여 불법적으로 보호구내 경작지를 비준 점용한 경우
4. 매매 혹은 기타 형식으로 기본논밭보호구내의 경작지를 불법 양도한 경우

제34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기본논밭보호구의 보호표시를 파손하거나 마음대로 고친 경우, 토지관리부문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농업행정주관부문이 원 상태를 회복하도록 명령하며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기본논밭에서 굴을 파거나 집을 짓거나 무덤을 만들거나 혹은 마음대로 모래를 채취하고 채석, 채광하거나 흙을 가져가서 재배 조건을 엄중히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처리하게 하며 파손된 경작지에 대해 15원/m²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제36조 단위가 불법적으로 기본논밭보호구의 경작지 조성비 혹은 토지를 내버려 둔 비용을 점용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관련부문이 배상을 하도록 명령하며 불법점용한 금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소재

단위 혹은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주며, 개인이 불법점용한 것은 뇌물 이외로 처리한다.

- 제37조 기본논밭에 국가관련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비료 혹은 도시 쓰레기, 오물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문이 경고를 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제6장 부칙

제3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기타 농업생산용 토지를 보호구로 확정할 수 있다.

보호구내의 기타 농업생산용 토지의 보호와 관리는 본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9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세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0조 본 조례는 1994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1986년 6월 2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회의 통과,
1988년 12월 2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차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의 수정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공유제를 수호하고 토지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성실히 보호하고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공유제 즉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은 강점, 매매, 임대 혹은 다른 위법적 형식으로 토지를 양도할 수 없다. 국가는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법에 따라 집체소유제의 토지에 대해 징용을 실행할 수 있다.

국유토지와 집체소유토지의 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따로 규정한다.

국가는 법에 의해 국유토지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국유토지유상사용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따로 규정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침을 관철집행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토지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무질서한 경작지 점유와 토지 남용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4조 토지자원의 보호 개발 및 합리적 이용과 관련 과학연구 등 방면에서 성적이 현저한 단위나 개인에 대해 인민정부는 표창을 한다.

제5조 국무원 토지관리부문에서 전국 토지에 대한 통일적 관리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서 그 행정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통일적 관리사업을 주관하고 기구설치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현실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향급 인민정부는 그 행정구역 내의 토지관리사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6조 성시 시구(역자주:도시지역의 시가지)의 토지는 전민소유 즉 국가소유에 속한다.

농촌과 성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소유 외에는 집체소유에 속한다. 주택용지와 자류지, 자류산은 집체소유에 속한다.

제7조 국유토지는 법에 따라 전민소유제 단위 혹은 집체소유제 단위에게 사용하게끔 줄 수 있고 국유토지와 집체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개인에게 사용하게끔 줄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나 개인은 토지를 보호하거나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집체소유의 토지는 법률에 따라 촌 농민집체소유에 속하고 촌 농업생산합작소 등 농업집체경제조직 혹은 촌민위원회에서 경영, 관리한다. 이미 향(진)농민집체경제조직소유에 속하는 것은 향(진)농민집체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미 따로 촌 내 두 개 이상의 농업집체경제조직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진 것은 각 농업집체경제조직의 농민집체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집체소유의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에서 등기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소유권을 확인한다.

전민소유제단위와 집체소유제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등기하고 증서를 발급하며 소유권을 확인한다.

임지, 초원의 소유권 및 사용권의 확인, 수면, 간석지의 양식사용권 확인은 각각 <삼림법>, <초원법>과 <어업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토지권리변경등기 수속과 증서를 개인해야 한다.

제11조 토지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침범하지 못한다.

제12조 집체소유의 토지, 전민소유제 단위와 집체소유제 단위에서 사용하는 국유토지는 집체 혹은 개인이 도급받아 경영할 수 있으며, 농, 림, 목, 어업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

토지를 도급 맡아 경영하는 집체 혹은 개인은 토지를 보호하고 도급 계약서에 규정한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진다.

토지의 도급경영권은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제13조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들이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전민소유제 단위간, 집체소유제 단위간, 전민소유제 단위와 집체소유제 단위간의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 분쟁이 있을 때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개인간에, 개인과 전민소유제 단위와 집체소유제 단위간에 토지사용권 분쟁이

생겼을 때는 향급 이상의 인민정부 혹은 현급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당사자가 유관인민정부의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리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 어느 일방이든 토지현황을 변경하거나 토지상의 부착물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3장 토지의 이용과 보호

제14조 국가는 토지조사통계제도를 수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토지관리부문에 서는 유관부문과 합동으로 토지조사통계사업을 진행한다.

제15조 각급 인민정부에서 토지이용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인민정부의 토지이용 총괄계획은 상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실행한다.

제16조 성시계획과 토지이용총괄계획은 조화적이어야 한다. 성시계획구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 반드시 성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강과 호수의 안전구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 강과 호수의 종합적개발이용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7조 국유황산의 개발 및 토지 이용은 응당 강, 호수 종합개발이용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채광, 채토 후에 재개간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이용하는 단위 혹은 개인이 재개간, 회복이용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

제19조 국유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토지관리부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를 이용하는 단위의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거나 토지사용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1. 토지를 이용하는 단위가 이미 폐지되었거나 혹은 옮겨간 경우
2. 원 비준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연속 두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비준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등이 기준에 따라 폐기한 경우

제20조 각급 인민정부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관배수시설을 보호하고,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제고하고, 토지의 사막화, 염분화, 수토유실을 방지하고, 경작지 황폐와 파괴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과 향(진)촌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황무지를 이용하도록 하여 경작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한 하급

지를 이용하도록 하여 우량지가 침범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국가건설용지

제21조 국가가 경제, 문화, 국방건설 및 사회공공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집체소유제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국유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국가규정에 따라 국가고정자산투자계획에 들어있거나 혹은 허락받은 국가건설항목은 비준을 거쳐 건설단위는 토지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건설용 토지수용은 건설단위에서 반드시 국무원 주관부문 혹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국가기본건설절차에 따라 비준한 설계과업서 혹은 기타 비준문서를 가지고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 신청을 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토지관리부문에서 토지를 불하한다.

국가건설용 토지수용에서 피 수용토지단위는 가 국가필요에 따르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4조 국가건설용으로 수용한 집체소유제토지에 있어서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고 토지이용단위는 사용권만 갖는다.

제25조 국가건설용 수용에서 경작지는 일천 무(역자주: 무는 중국의 토지 수량 단위로써 통상 200평을 가리킨다) 이상, 기타 토지가 이천 무 이상 인 것은 국무원에서 비준한다.

성, 자치구행정구역 내의 토지 수용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경작지 3무 이하, 기타 토지 10무 이하인 경우는 현급 인민정부에서 비준한다. 성관할구역 내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의 비준권한은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직할시 행정구역 내의 토지 수용은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비준하고 직할시의 구 인민정부와 현 인민정부의 비준권한은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 한 건설항목이 필요로 하는 사용 토지는 총괄설계에 근거하여 한꺼번에 비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기로 나누어 건설하는 항목은 시기를 나누어 토지를 수용해야 하지 사전에 수용하여 사용 대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철도, 도로와 기름 및 물의 수송 등 관로건설에 수요되는 토지는 단계별로 비준 신청과 토지수용 수속을 할 수 있다.

제27조 국가건설용 수용토지는 토지이용단위에서 토지보상비를 지불한다. 경작지의 수용보상비는 수용하기 전 3년 간의 연평균 생산액의 3배 내지 6배로 한다. 기타 토지의 수용보상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수용보상비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한다.

피 수용토지상의 부착물과 농작물·묘목 등의 보상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다.

성시교외의 채소밭(菜地)을 수용하는 토지이용단위는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새 채소밭조성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28조 국가건설용 수용토지를 이용하는 단위는 보상비를 지불하는 외에 또 배치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경작지 수용의 경우 배치보조비는 배치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구수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구수는 수용된 경작지 수량을 수용 전 피 수용단위의 평균 1인당 점유경지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농업인구 1인당 배치보조비 기준은 그 경작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무 당 평균 연생산액의 2배 내지 3배이다. 그러나 무 당 수용경작지의 배치보조비는 최고로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생산액의 10배를 넘지 못한다. 기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배치보조비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경작지수용 배치보조비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한다.

제29조 본 법의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배치보조비를 지불하나 배치 농민이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배치보조비를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배치보조비의 총합은 토지수용 전 3년간의 연 평균 생산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국가건설수용토지의 각 항 보상비와 배치보조비는 개인에게 속한 토지 부착물과 농작물·묘목 등에 대한 보상비를 지불하는 외에 피 수용단위의 생산 발전과 토지수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잉여 노동력의 취업과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보조를 하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 차지해서는 안된다.

제31조 국가건설용 토지 수용으로 인해 나타난 잉여 노동력은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토지관리부문에서 피 수용단위, 토지이용단위와 유관단위를 조직하고 농부업 생산 발전과 향(진)촌 기업 등의 운영을 통해 배치한다. 완전 배치하지 못하고 남은 노동력은 조건이 맞는 경우 토지이용단위 혹은 기타 집단소유제 단위, 전민소유제 단위에 취업시킬 수 있다. 동시에 상응한 배치보조비를 노동

력을 흡수하는 단위에 지급하도록 한다.

피 수용단위의 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 기준을 거쳐 원래 농업호구이던 것을 비 농업호구로 전환 할 수 있다. 고 원래 있던 집체소유의 재산과 소득의 보상비, 배치보조비는 현금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와 유관 향(진)촌이 상의하여 처리하고, 생산을 조직하는데 사용되어야 지 취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보조에 사용하는 등 사사로이 분할할 수 없다.

제32조 대중형 수리(水利), 수력발전공사 건설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비기준과 주민 이주 배치방법은 국무원에서 따로 규정한다.

제33조 공사 시공, 필요한 자재 적치장, 운수통로와 기타 임시 설비 등은 가능한 한 수용 토지범위 내에 배치해야 한다. 확실히 임시용지를 따로 필요로 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공사용지를 비준한 기관에 임시용지수량과 기간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농업집단경제조직과 임시토지이용협의를 체결하고, 그 토지의 이전 3 년간 연 평균 생산액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상해 준다. 임시 사용하는 토지상에서 영구성건축물을 건설할 수 없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건설단위는 토지의 생산조건을 회복하여 즉시 반환해야 한다.

지상선로를 가설하고 지하관로를 설치하며, 기타 지하공사를 시공하고 지질탐사를 진행하는 등 토지의 임시사용이 필요한 경우 당해지역 현금 인민정부에서 비준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

건설단위가 건설지점을 선택하기 위해 토지에 대해 탐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 현금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건설용 국유의 황산, 황무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기타 단위가 국유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건설용 토지 수용의 순서와 비준권한에 따라 비준한 후 양도한다. 국유황산, 황무지의 사용은 무상으로 양도한다. 기타 단위에서 사용하는 국유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 사용단위가 손실을 입으면 건설단위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원 사용단위를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단위 책임 하에 이동한다.

제35조 성시 집체소유제 단위가 건설을 하는데 있어 토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장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전민소유제 기업, 성시집체소유제 기업 및 농업집체경제조직과 공동으로 투자 운영하는 연합경영기업이 집체소유의 토지를 사용해야 될 경우 반드시 국무원 주관부문 혹은 현금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국가기본건설절차에 따라 비준한

설계과업서 혹은 기타 비준문서를 지참하여 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건설용 토지수용의 비준권한에 따라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토지는 국가건설토지수용규정에 따라 수용을 실행할 수 있다. 또 농업집체경제조직은 협의에 의해 토지의 사용권을 연합경영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5장 향(진) 촌 건설용지

제37조 향(진) 촌 건설은 합리적 배치, 용지절약 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행한다. 성시계획구역 내의 향(진)촌 건설계획은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행한다.

농촌주민주택건설, 향(진)촌 기업건설, 향(진)촌 공공시설, 공익사업용 건설 등 향(진)촌 건설은 반드시 향(진) 촌 건설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38조 농촌주민이 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원 주택택지와 촌 내 공한지를 사용해야 한다. 경작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향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한다. 원래 있던 택지와 촌 내 공한지 및 기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향급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농촌주민이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주택을 팔거나 세를 준 후 주택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준해주지 않는다.

제39조 향(진)촌기업 건설용으로 사용할 토지는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비준한 설계과업서 혹은 기타 비준문서를 지참하여 향급 인민정부토지관리부문에 신청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비준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향(진)촌기업 건설용지는 반드시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향(진)촌 기업의 다양한 업종과 경영규모에 따라 개개 용지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향(진)경영 기업 건설에 사용되는 촌 농민집체소유의 토지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피 토지이용단위에게 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주고 또 농민의 생산과 생활을 적당하게 배치해야 한다.

제40조 향(진)촌 공공설비, 공익사업용 건설에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향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 신청을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비준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비준한다.

제41조 성 진(역자주: 시가지 지역)의 비 농업호구 주민이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집체소유 토지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급 인민정부의 기준을 거쳐야 한다. 그 용지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가건설용 토지수용 기준에 따라 보상비와 배치보조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42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향(진)촌 건설용지의 통제지표를 제정할 수 있고 차 상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준을 받아 실행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3조 전민소유제 단위, 성시집단소유제 단위가 기준을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기만적 수단을 사용해 기준을 편취하거나 하여 위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한 경우에는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를 반납하게 하거나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설비를 기한 내에 철거하게 하거나 혹은 몰수하며, 병행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한 단위의 관계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재 단위 혹은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비준한 용지수량을 초과하여 토지를 점용한 경우는 초과한 부분을 위법점용토지로 간중 처리한다.

제44조 향(진) 촌 기업이 기준을 거치지 않거나 혹은 기만적 수단을 사용해 기준을 편취하거나 위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한 경우에는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를 반납하게 하거나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설비를 기한 내에 철거하게 하거나 혹은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준한 용지수량을 초과하여 토지를 점용한 경우는 초과한 부분을 위법 점용토지로 간주해 처리한다.

제45조 농촌주민이 기준을 거치지 않거나 혹은 기만적 수단을 사용해 기준을 편취하거나 하여 위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를 반납하게 하거나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주택물을 기한 내에 철거하게 하거나 혹은 몰수한다.

제46조 성 진의 비 농업호구 주민이 기준을 거치지 않거나 혹은 기만적 수단을 사용해 기준을 편취하거나 하여 위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를 반납하게 하거나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주택물을 기한 내에 철거하게 하거나 혹은 몰수한다.

국가사업 종사자가 직권을 이용하여 비준을 거치지 않거나 혹은 기만적 수단을 사용해 비준을 편취하거나 하여 위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를 반납하게 하거나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주택물을 기한 내에 철거하게 하거나 혹은 몰수하며, 소재 단위 혹은 상급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47조 매매 혹은 기타 형식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매매 혹은 기타 형식으로 위법하게 양도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은 기한 내에 철거하게 하거나 혹은 몰수하며, 병행하여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계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재 단위 혹은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48조 토지의 수용, 사용을 비준하는 권리가 없는 단위 혹은 개인이 위법적으로 토지점용을 비준한 경우, 비준권한을 초월하여 위법적으로 토지점용을 비준한 경우 비준문서는 무효이며 위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한 단위의 관계종사자 혹은 개인에 대해서는 소재 단위 혹은 상급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수뢰의 경우에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위법적으로 점용비준받은 토지는 위법점용토지로 처리한다.

제49조 상급 단위 혹은 기타 단위가 위법적으로 피 수용단위의 보상비와 배치보조비를 가로챈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하며, 병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한 단위의 관계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재 단위 혹은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개인이 위법적으로 점용한 경우는 탐오로 처리한다.

제50조 본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 사용토지를 기한이 만료해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본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몰수한다. 토지반납을 거절할 경우 반납명령을 내림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제51조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경작지에서 흙, 모래를 파거나 광, 석을 채집하는 등 경작조건을 심각하게 파괴하거나 혹은 토지 개발로 인해 토지사막화, 염분화, 수토유실 등을 조성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병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 본 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토지관리부문에서 결정하고 본 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향급 인민정부에서 결정한다. 당사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처벌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기소하지도 않고 또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도록 처분을 받은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즉시 시공을 정지해야 한다. 계속 시공하는 경우 처벌결정을 내리는 기관에서 제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토지관리사업 담당자가 법에 의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절, 방해하는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3조 토지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침범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침범을 정지시키고 손실을 배상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가 처리결정에 불복하면 처벌규정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 역시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54조 토지소유권, 사용권을 변경하거나 토지소유권, 사용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기협잡으로 국가와 집체의 재물을 탐오, 절도하거나 혹은 군중들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키거나 국가건설을 방해하는 등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55조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 사용하는 토지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따로 규정한다.

제56조 국무원 토지관리부문에서는 본 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하며, 국무원에 신청하는 비준업무를 시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에 근거하여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57조 본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82년 2월 13일 국무원이 반포한 <촌진주택건설용지관리조례>와 1982년 5월 14일 국무원이 반포한 <국가건설토지수용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실시조례

(1991년 1월 4일 국무원 반포)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이하에서는 <토지관리법>이라고 부름)제5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토지관리국은 전국 토지에 대한 통일된 관리사업을 주관한다.

제2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3조 아래의 토지는 전민소유 즉 국유소유에 속한다.

- (1) 성시 시구내의 토지.
- (2) 농촌과 성시 교외 중 법에 따라 몰수, 수용, 징발, 매수, 회수한 국유토지(법에 따라 정하거나 혹은 집체소유로 확정된 것 제외).
- (3) 국가에서 아직 집체소유로 확정하지 않은 임지, 초지, 연봉, 황무지, 간석지 및 기타 토지.

제4조 집체토지소유자, 국유토지사용자는 반드시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토지 관리부문에 토지등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집체소유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기하고 <집체토지소유증>을 발급하며 소유권을 확인한다.

단위나 개인이 법에 의거 사용한 국유토지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등기하고 <국가토지사용증>을 발급하며 사용권을 확인한다.

토지증서양식은 국가토지관리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임지, 초원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의 확인과 수면, 간석지의 양식사용권 확인 등은 각각 <삼림법>, <초원법> 및 <어업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미 개발, 미 사용의 국유토지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등기 및 보호,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6조 법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을 변경하거나 혹은 법에 의해 지상의 건축물, 부착물 등을 매매하거나 양도하여 토지사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 토지소유권, 사용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증서를 갱신한다.

법에 의해 지상 건축물, 부착물 등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소유권명의변경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7조 <토지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단위의 소유권을 회수하는 경우 토지관리부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비준과 함께 국유토지사업 중 취소를 신청하며 동시에 토지관리부문은 토지 등기 취소수속을 한다.

제8조 전민소유제단위 사이, 집체소유제단위 사이, 전민소유제 단위와 집체소유제 단위 사이에 발생한 토지소유권과 사용 분쟁에 대해서는 토지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 사이, 개인과 전민소유제단위와 집체소유제단위 사이의 토지사용권 분쟁에 대해서는 토지 소재지 향급 인민정부 혹은 현급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이 분쟁이 생겨 소유권과 사용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에서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인하여 토지증서를 발급한다.

제3장 토지의 이용과 보호

제9조 국가는 토지조사제도를 수립한다. 토지조사의 내용에는 토지권리 조사,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토지조건 조사를 포함한다.

전국국토지조사계획은 국가토지관리국이 유관부문과 함께 수립하여 국무원 비준을 받은 후에 신청한다.

지방 토지조사계획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이 유관부문과 함께 수립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음과 동시에 차상위 인민정부 토지관리 부문에 보고한 후 실시한다.

토지조사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이 유관부문을 조직하여 진행한다. 토지소유자와 사용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유관부문과 함께 토지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토지등급을 평정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토지통계제도를 수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통계부문과 함께 법에 의해 토지통계사업을 진행한다. 통계종사자는 법에 의해 토지통계직권을 행사한다. 토지소유자와 사용자는 응당 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짓보고, 보고거절, 지체보고, 위조, 왜곡하는 등 행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 전국토지이용총괄계획은 국가토지관리국이 유관부문과 함께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계획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원 비준을 거쳐 집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토지이용총괄계획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 부문이 유관부문과 함께 초안을 작성하여 동급 계획주관부문의 종합의견을 수립한 후 동급 인민정부가 심사동의를 하면 차상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행한다.

향급 인민정부의 토지이용총괄계획은 향급 인민정부가 수립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행한다.

비준을 거친 토지이용총괄계획의 수정은 원 비준단위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국유황산, 황무지, 간석지의 개발은 반드시 당해지역 토지관리부문에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가 만든 비준권한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비준하며,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유관 법률, 법규에 의해 처리한다. 1만무 이상 2만무 이하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국가토지관리국의 비준을 거쳐야 하고 2만무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단위와 개인이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단위와 개인이 도급 경영하는 토지와 법에 의해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확정해 준자유지, 자유산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방, 동굴, 무덤을 짓거나, 광, 석을 채집하고 모래를 파고 흙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전항에서 지적한 토지에서 광, 석을 채집하고 모래를 파고 흙을 채취하는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 부문에 토지이용신청을 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법률,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유관 법률, 법규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 광, 석을 채집하고 흙을 채취한 후 다시 개간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이용단위와 개인이 반드시 국무원에서 반포한 <토지개간복구규정>에 따라 개간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유관부문과 함께 개간 복구한 토지에 대해 검사,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제4장 국가건설용지

제17조 국가에서 경제, 문화, 국방건설을 진행하고 사회공공사무를 경영할 때 응당 용지를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건설 설계과업서 비준을 신청할 때 토지관리부문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건설용지의 심사비준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건설단위에서는 비준을 거친 설계과업서 기본설계, 연도기본건설계획 등 유관문서를 지참하여 피 수용토지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 건설용지를 신청한다.
- ②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건설용지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고 용지구모를 결정하며, 건설단위와 피 수용단위 및 유관 단위 등을 조직하여 법에 의거한 수용토지의 보상, 배치 방안을 토의 결정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비준을 신청한다.
- ③ 건설용지의 신청은 법정비준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피 수용 토지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건설용지비준서를 발급하며, 토지관리부문은 건설진척정도에 따라 한번에 혹은 시기를 나누어 건설용지를 양도한다.
- ④ 건설사업 준공 후 건설주관부문이 유관부문을 조직하여 검수할 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은 실제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한다(성시계획구역 내의 건설사업 준공 후에는 성시 계획행정주관부문이 토지관리부문과 함께 실제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한다). 그리고 승낙을 거친 후 본 조례 제2장의 유관규정에 따라 토지등기수속을 처리하고 국유토지 사용증을 발급한다.

성시계획구역 내의 건설용지 신청은 건설단위 혹은 개인이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전항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철로, 도로와 송유, 송수 관로 등 건설용지는 건설항목총괄설계에 근거하여 우선 비준을 신청하고 단계별로 토지의 수용, 양도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시기를 나누어 건설하는 건설사업은 공기를 확정하고 있는 설계과업서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비준신청, 토지수용 및 양도수속을 할 수 있다.

제20조 재해지원에 급하게 필요한 토지는 먼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에 반드시 규정에 따라 임시토지이용 혹은 수용, 양도수속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 <토지관리법>제25조 제1항에서 '기타토지 2천무 이상 수용'이라 함은 한 건설항목이 경작지 1천무 이하와 기타 토지 1천무 이상을 동시에 수용하여 그 합이 2천무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관리법> 제25조 제2항에서 '기타 토지 10무 이하 수용'이라 함은 한 건설항목이 경작지 3무 이하와 기타 토지 10무 이하를 동시에 수용하여 그 합이 3무 이상, 10무 이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 <토지관리법> 제19조에 의해 사용권을 회수한 국유토지는 현급 이상 인민

정부가 농업집체경제조직에게 경작하게 할 수 있다. 농업집체경제조직은 경작 기간에 그 토지에 영구성 건축물을 짓거나 다년성 농작물을 심어서는 안 되며, 국가건설상 그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반환할 때 토 지상에 농작물과 묘목이 있을 경우 건설단위는 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제23조 건설단위가 시공상 필요로 인해 수용토지범위 밖에 임시용지가 필요한 경우 에는 당해지역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에 임시용지 신청을 하고 동급 인민 정부에 비준을 신청한다. 성시계획구역 내에서 임시용지를 증가하여야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성시 계획주관부문에 기본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동의 를 거친 후 토지관리부문에 임시용지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적으로 이용하는 집체소유 토지의 경우는 <토지관리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제5장 향(진)촌 건설용지

제24조 향(진)촌의 각 건설사업은 반드시 농업생산용지 점용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하달한 향(진)촌 건설용지통제지표를 벗어나서 는 안 된다.

제25조 농촌촌민이 주택건설에 사용할 토지가 필요한 경우 먼저 농업집체조직 혹은 촌민위원회에 용지신청을 하며, 촌민대표회 혹은 촌민대회에서 토론하여 통과 한 후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청한다. 그중 경작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향급 인민정부가 심사하고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문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원래 있는 택지, 촌내 공한지 및 기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향급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제26조 성 진의 비 농업호구 주민이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집체소유의 토지 사용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재지 단위 혹은 주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토지 소재의 촌농업집체경제조직 혹은 촌민위원회 혹은 향(진) 농민집체경제조직에 용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할 토지가 촌농민집체소유인 경우 촌민대표회 혹 은 촌민대회에서 토론을 하여 통과하고,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사용할 토지가 향(진) 농민집체소유인 경우는 촌 민대표회 혹은 촌민대회가 토론을 하여 통과하고, 향(진) 인민정부 심사동 의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제27조 원적의 향촌에 돌아 온 직공, 제대군인과 휴,퇴직간부 및 고향에 돌아와 정

착한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동포가 집체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을 건설해야 할 경우에는 <토지관리법> 제38조와 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향(진)촌 건설계획에 따라 농촌시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토지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농촌의 도급경영호, 개체공상호가 비 농업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때는 응당 원래 있는 주택부지를 이용해야 한다. 확실히 별도로 집체소유 토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관부문의 비준문서를 지참하여 토지가 소재한 촌 농민집체경제조직 혹은 촌민위원회 혹은 향(진) 농민집체경제조직에 용지신청을 하고 촌민대표회 혹은 향(진) 농민 집체경제 조직의 토론을 거쳐 통과한 다음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비준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0조 <토지관리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자에게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를 반환하게 하거나, 기한 내에 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게 하거나 몰수하는 것 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위법 점용토지 매 평방미터 당 15원 이하를 기준으로 집행한다.

제31조 <토지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자에 대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기한 내에 매매 혹은 기타 위법한 형식으로 양도한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게 하거나 몰수하는 것 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법소득의 50% 이하를 기준으로 집행한다.

제32조 <토지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 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법점용 금액의 30% 이하를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토지관리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자로 하여금 토지를 반환하게 하는 것 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법 사용 토지 매 평방미터 당 5원 이하를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토지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지조건을 심각히 훼손한 위법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처리하게 하는 것 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경작지보호법 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토지개발로 인해 초래된 토지사막화, 염

분화에 대해서는 위법자에 대해 지정기일 내에 처리하게 하는 것 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토지개발로 인해 초래된 수토유실의 경우는 위법자에 대해 지정기일 내에 처리하게 하는 것 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수토보존법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35조 벌금은 반드시 규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매일 벌금액의 3‰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부과한다.

벌금과 체납금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국고로 수납된다.

제36조 비준을 거치지 않거나 경작지를 황폐하게 하는 등 수속으로 비준을 속임수로 얻어내거나 위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타 건설에 종사하는 경우 기일 내에 위법 점용 토지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게 하거나 몰수하며, 위법 점 용 토지를 반환하게 한다.

법에 의해 기일 내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도록 처벌을 받은 단위와 개인이 계속 시공하는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은 계속 공사에 이용되는 설비, 건축재료 대해 차압할 수 있다.

제37조 거짓보고, 누락보고, 보고거부 및 누차 늦게 보고하거나 토지통계자료를 위조, 왜곡한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제25조와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실시세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 토지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침범한 자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토지 관리부문이 <토지관리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린 후, 침범자가 법정기일 내에 기소도 하지 않고 이행도 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침범 당한 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39조 본 조례에 대한 해석은 국가토지관리국에서 책임진다.

제40조 본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행정처벌 절차규정

(1997년10월25일 농업부 반포)

제1장 총칙

제1조 농업행정처벌을 규범화하고 농업행정 주관부문이 행정관리를 유효하게 실행하는 것을 보장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 행정처벌법이라 약칭)과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계통의 실제와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이 행정처벌을 할 때 행정처벌법과 관련법률, 법규 및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재배업, 목축업, 어업, 농토개간, 농촌기업, 사료공업과 농업기계화 등 행정주관기관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농업행정처벌기관은 구체적으로 행정처벌을 실행하는 아래의 부문 혹은 기구들은 가리킨다:

- ① 현 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문
- ②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한 농업관리기구
- ③ 현 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위임한 농업관리기구

제4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법률, 법규 혹은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 시 법적으로 설치한 행정처벌법 제19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농업관리기구에 위임하여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제5조 농업행정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법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농업관리기구에 행정처벌을 위임 할 때는 위탁서류를 작성하고 위임한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상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위임받은 농업관리기구가 행정처벌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위임을 받은 농업관리기구는 위임범위 내에서 위임한 농업행정주관부문의 명의로 행정처벌하며 기타 단체 혹은 개인에게는 행정처벌을 위탁하지 못한다.

제6조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농업행정처벌기관이 내린 행정처벌에 대하여 진술할 권리, 심판할 권리를 향유하며, 행정처벌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2장 농업행정처벌의 관할

제7조 농업행정처벌은 위법행위 발생지의 현 급 이상 농업행정처벌기관이 관할한다.

입국, 출국 동식물검역 행정처벌은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의 업무 관할구역에 근거하여 관할한다.

어업 행정처벌기관은 본 관할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과 상급부문이 지정하여 관할하는 어업 위법사건을 관할한다.

제8조 현 급 농업행정처벌기관은 본 행정구역내의 행정위법사건을 관할한다.

건설구역의 시, 자치주의 농업행정처벌기관과 성급 농업행정처벌기관은 본 행정구역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 위법사건을 관할한다.

농업부 및 그에 소속한 법률, 법규의 권력을 받은 농업주관기구는 전국의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 위법사건을 관할한다.

제9조 어업행정처벌은 아래 각 호의 상황에 해당하면 '발견한 자가 처리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 ① 위법행위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구역, 접해진 구역에서 발생한 것
- ② 위법행위가 관할권이 불명확하거나 논쟁이 있을 구역에서 발생했을 경우
- ③ 위법행위의 발생지가 발견지점과 불일치할 경우

제10조 상급 농업행정처벌기관은 필요 시 하급 농업행정처벌기관이 관할하는 행정처벌을 관할할 수 있다. 행정처벌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농업행정처벌기관이 관할해야 될 경우 하급 농업행정처벌기관은 상급 농업행정기관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자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둘 이상의 농업행정처벌기관이 모두 관할권이 있을 경우 먼저 입건한 농업행정처벌기관이 관할한다.

농업행정처벌기관은 관할에 대하여 논쟁이 있을 경우 협상하여 해결하거나 공동의 상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 관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은 접수한 행정처벌사건이 자기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발견될 때는 관할권이 있는 행정처벌기관이 관할하도록 넘겨주어야 하며 아울러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농업행정처벌기관은 사건을 사법기관에 넘겨 법적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해야하며 행정처벌로 형벌을 대체할 수 없다.

제3장 농업행정처벌의 결정

제14조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농업행정관리 질서를 위반한 행위 중에서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해야 할 것은 농업행정처벌기관에서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며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벌 할 수 없다.

제15조 집행인이 농업행정처벌 사건을 조사 처리할 때 당사자 혹은 관련자에게 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집행표식이 있을 때에는 집행표식을 달아야 한다.

집행증서는 농업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성급 이상 농업행정주관부문의 법제사업기구가 집행증서의 발급과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농업집행증서의 관리방법은 농업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16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이 농업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하는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려야 하며 당사자에게 법적인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농업행정처벌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에 대하여 재심을 해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혹은 증거가 성립되는 것은 받아 들여야 한다.

농업행정처벌기관은 당사자가 변호를 신청하였다 하여 처벌을 가중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농업행정처벌 절차는 간이절차와 일반절차로 나뉜다.

제1절 간이절차

제18조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공민에 대하여 50원 이하, 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대하여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던가 혹은 경고의 행정처벌을 내릴 경우는 즉석에서 농업행정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9조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결정을 할 경우 통일번호의 《행정처벌(즉석)결정서》를 써서 당사자에게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만약 행정처벌결정을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20조 집행인은 즉석 처벌결정을 내린 날부터, 어업 집행인은 육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2일 내로 《행정처벌(즉석)결정서》 사본을 소속 농업행정처벌기관에 주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절차

제21조 농업행정처벌을 실행 할 때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절차를 적용한다.

제22조 법에 의거하여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집행인이 공민, 법인 혹은 기타조직이 위법행위가 있어서 행정처벌을 할 경우 《행정처벌 입건심사비준표》를 써서 본 행정처벌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7일 안에 입건하여야 한다.

- ①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위법행위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 ③ 본 처벌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 ④ 일반절차 적용범위에 속하는 경우

제23조 농업처벌기관은 사건정황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필요 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집행인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때 두 사람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증거에는 서류증거, 물증, 시청자료, 증인증언, 검증결론, 검증기록과 현장기록이 포함된다.

제24조 집행인이 사건을 조사할 때 증인 혹은 당사자(이하 피 질문자라 약칭)를 질문 할 때 《질문기록》을 하여야 한다. 기록은 피질문인이 본 후 질문인과 피질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피질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할 경우 질문자가 기록에 정황을 설명한다.

제25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은 사건조사의 수요에 따라 법에 의하여 현장검증을 할 때 당사자가 현장에 도착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검증기록》을 작성한다. 만약 당사자가 현장에 오는 것을 거절 할 경우 현장에 있는 기타 사람들이 현장증인을 서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이 사건을 조사할 때 전문성 문제는 법적 감정부문에 넘겨 감정을 하며 현지에 법적 감정부문이 없을 경우 공동으로 인정하는 감정기구에 넘겨 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감정자가 감정한 후 《감정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견본을 취하여 증거를 얻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증거가 훼손되었거나 분실되거나 추후에 획득하기 어려운 정

황에서 농업행정처벌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다.

제28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은 먼저 등록하여 보존한 증거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①기술점검 혹은 감정이 필요하면 관련부문에 넘겨 점검 혹은 감정을 진행한다.
- ②법에 의하여 몰수해야 될 재물은 몰수를 결정하고, 법에 의하여 몰수할 필요가 없는 물품은 당사자에게 되돌려 준다.
- ③법에 의하여 관련부문에 넘겨 처리하여야 할 것은 관련부문에 넘긴다.

제29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이 증거에 대하여 견본을 취하여 증거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등록하여 보존 할 경우 당사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오는 것을 거절할 경우 집행인은 관련자를 요청하여 참가시킬 수 있다.

선택하여 증거를 얻거나 혹은 등록하여 보존한 물품에 대해서는 《견본채취증거 취득증빙서》와 《증거등록 보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존 물품을 등록할 때 원 지역에서의 보존이 공공질서 혹은 공공안전을 방해할 수 있을 경우 타지에 보존할 수 있다. 타지에 보존하는 물품에 대하여 농업행정처벌기관은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사건 조사자가 본 사건과 이득, 손해 관계가 있거나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사건 조사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도 농업행정처벌기관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건 조사자의 회피는 농업행정처벌기관 책임자가 결정하고, 농업행정처벌기관 책임자의 회피는 집단이 토론하여 결정한다.

회피가 결정되기 전에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집행인은 조사가 끝난 후 사실이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주요증거가 충분하다고 여기면 《사건처리 의견서》를 작성하고 농업행정처벌기관 책임자에게 심사를 보고한다.

제32조 농업행정처벌기관 책임자는 《사건처리 의견서》를 심사한 후 행정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여길 경우 농업행정처벌기관은 《위법행위처리 통지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넘겨 행정처벌을 주는 내용 및 그 사실,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고,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진술과 변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농업행정처벌기관에게 본 장의 제3절 규정에 따라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까지 진술, 변호신청 혹은 처리를 요구하지 않

을 경우 상술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3조 사건조사가 끝난 후 농업행정처벌기관 책임자는 즉시 사건조사에 관련된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변호신청자료, 재판기록과 재판보고서를 심사하고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한 사건은 정절의 정도에 근거하여 처벌결정을 내린다. 농업행정처벌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한다.

사건의 정황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어 비교적 큰 행정처벌을 할 경우 농업행정처벌기관 책임자들이 함께 토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물위에서 일반절차에 따라 처벌을 할 경우 집행인은 배에 있는 무선전신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처벌기관 책임자에게 입건과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록은 보존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물위일 경우 당사자는 즉석에서 집행인에게 진술과 변호 신청을 할 수 있다. 진술과 변호 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35조 농업행정처벌 사건은 입건 날로 부터 한달 내에 끝내야 하고, 농업행정처벌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 할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수정황이 있어 3개월 내에 끝내지 못할 경우 상급 농업행정처벌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청문절차

제36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이 생산과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허가증 혹은 영업허가증을 몰수하거나 비교적 큰 액수의 벌금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할 경우 농업행정처벌기관은 청문을 조직하여야 한다.

본 조례 전 항에서 말한 비교적 큰 액수의 벌금은 지방 농업행정처벌기관이 성급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혹은 인민정부가 규정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부문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라 집행하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 바다구역 어업행정, 어업 항구 감독관리기구가 공민에게 각각 5000원 이상, 3000원 이상, 벌인 혹은 기타 조직에게 30000원 이상 벌금을 내릴 경우는 비교적 큰 액수의 벌금에 속한다.

제37조 청문은 행정처벌을 결정한 농업행정처벌기관이 마련한다. 구체적인 실시사업은 그 기관의 법제사업기구 혹은 상응한 기구가 책임진다.

위임을 받고 행정처벌을 실행하는 농업 관리기구가 청문절차에 적용하는 행정

처벌을 결정했을 경우 위임한 농업행정주관부문이 청문을 마련한다.

제38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할 경우 《위법행위처리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형식으로 청문조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후 청문조직기관은 재판을 진행하기 7일전에 《행정처벌 청문회 통지서》를 보내어 당사자에게 청문을 진행하는 시간, 지점, 청문 사회자 명단 및 회피 혹은 위임 대리인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린다. 당사자는 제때에 청문에 참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연기를 요구할 경우 청문조직기관 책임자의 결제를 받은 후 한번 연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때에 청문에 참가하지 않으며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청문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40조 청문회 참가자는 청문 사회자, 청문인원, 사건 조사인원, 당사자 및 위임 대리인, 서기로 구성된다.

청문 사회자, 청문인원, 서기는 청문조직기관 책임자가 지정한 법제사업기구의 사업인원 혹은 기타 상응한 사업인원 등 본 사건의 조사인원이 아닌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41조 재판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혹은 개인의 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42조 당사자의 청문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

- ①사건에 연관되는 사실, 적용법률 및 관련정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변호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 ②사건 조사인원이 제기한 증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 ③사회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한다.
- ④청문의 규율을 준수하고 청문 사회자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43조 청문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 ①청문 서기가 청문규율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포한다. 청문 사회자는 사건 이유를 선포하고, 청문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고 청문시작을 선포한다.
- ②사건 조사인원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제출하고 증거를 보이며 농업행정처벌을 결정하게 된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한다.
- ③당사자 혹은 위임 대리인은 사건의 사실, 증거, 적용되는 법률 등에 대하여 진술과 변호 신청을 하며 청문회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④청문 사회자는 사건에 관계되는 문제를 당사자, 사건조사인원, 증인에게 질

문한다.

⑤사건 조사인, 당사자 혹은 위임 대리인이 상호 변론한다.

⑥당사자 혹은 그의 위임 대리인이 최후 진술을 한다.

⑦사회자가 청문의 마침을 선포한다. 청문기록은 당사자에게 보이고, 틀림이 없을 경우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제44조 청문이 끝난 후 청문 사회자는 청문정황에 근거하여 《행정처벌 청문회보고서》를 작성하며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청문기록과 함께 농업행정처벌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심사토록 한다.

청문의 거행은 당사자가 농업행정처벌기관이 처벌결정을 내린 후 행정재심사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에 영향주지 않는다.

제45조 청문조직기관이 청문을 조직할 경우 당사자에게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4장 농업행정처벌결정의 송달과 집행

제46조 《행정처벌 결정서》는 선고 후 즉석에서 피 처벌자에게 주어야 한다. 피 처벌자가 그 자리에 없을 경우 7일 내에 피 처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피 처벌자는 《행정처벌문서 송달회신증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피 처벌자가 없는 경우 그의 성년 가족에게 교부하든가 혹은 그의 직장의 책임자가 대신 받은 후 송달회신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된다.

피 처벌자 혹은 접수대리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송달자는 그의 이웃 혹은 직장의 관련인원을 현장에 청하여 정황을 설명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그의 집이나 혹은 직장에 남겨두며 송달회신증서에 사인을 거절한 사유, 송달한 날짜를 쓰고 송달인과 증명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송달한 것으로 본다.

농업행정처벌서류를 직접 송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타 농업행정처벌기관에 위탁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고 송달을 할 수 있다.

우편 송달을 할 경우 우체국의 도장 날짜를 송달 날짜로 하며, 공고 송달 시 공고를 한 후 6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47조 제48조, 제4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농업행정처벌기관은 스스로 벌금을 수납하지 못한다. 벌금하기로 결정한 농업행정처벌기관 혹은 집행인은 서류형식으로 당사자에게 지정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제48조 본 규정의 제18조 규정에 의해 즉석에서 농업행정처벌결정을 내릴 경우 아

래 각호의 상황일 경우 집행인은 즉석에서 벌금을 수납할 수 있다.

- ①법에 의하여 20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경우
- ②즉석에서 수납하지 않으면 추후에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49조 편벽하고 수상,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농업행정처벌기관 및 그 집행인이 본 규정의 제18조, 제33조 규정에 따라 벌금결정을 한 후 당사자가 지정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농업행정처벌기관 및 그 집행인은 즉석에서 벌금을 수납할 수 있다.

제50조 농업행정처벌기관 및 그 집행인이 즉석에서 벌금을 수납할 경우 당사자에게 성급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만들어 발급한 벌금영수증을 주어야 하며, 재정부문의 통일적인 벌금영수증을 주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벌금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51조 집행인이 즉석에서 수납한 벌금은 수납한 날부터 2일 내로 농업행정처벌기관에 내야 하고, 수상에서 즉석벌금을 한 경우 육지에 도착한 날부터 2일 내에 농업행정처벌기관에 내야 하며, 농업행정처벌기관은 2일 내에 벌금을 지정한 은행에 입금해야 한다.

제52조 법에 따라 농업행정처벌결정을 한 후 당사자가 행정처벌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행정 처벌결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제53조 계속 운행하여야 할 농업기계, 어선에 대하여 잠시 허가증을 몰수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행정처벌을 실행할 경우 농업행정처벌기관은 행정처벌을 실행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상응한 증명을 주어 농업기계, 어선이 예정되었거나 지정한 지점에 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54조 효력을 발생한 행정처벌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복종하지 않을 경우 농업행정처벌결정을 내린 농업행정처벌기관은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매일 벌금액의 3%씩 할증하여 벌금을 내린다.
- ②법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존하거나 몰수한 재물을 경매해서 벌금을 대신한다.
- ③인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아울러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55조 당사자가 확실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연기 혹은 분납을 하여야 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연기 혹은 분납을 할 수 있다.

제56조 법에 의하여 없애야 할 물품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몰수한 불법 재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경매를 하거나 혹은 국가의 관계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벌금, 몰수한 위법소득 혹은 불법재물을 경매한 금액은 반드시 전부 국고에 입금해야 하며, 어떠한 농업행정처벌기관 혹은 개인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빼내거나 개인소유로 하지 못한다.

제57조 농업행정처벌 안건을 종결한 후 안전조사 인원은 《행정처벌 종결보고》를 써야 하며, 모든 안전자료는 당안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58조 농업행정처벌기관 및 집행인이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59조 농업행정처벌 기본문서격식은 농업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성 급 농업 행정주관부문이 인쇄하고 발행한다.

제60조 본 규정은 농업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61조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농업부에서 제정한 규칙과 가타 규범서류가 본 규정과 불일치 할 경우 일률로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농업생산관련분야 주요 법령

- ◇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 164P
- ◇ 농작물 종자검사 관리방법(시행) / 177P
- ◇ 곡수 종자요목관리 잠정방법 / 180P
- ◇ 전국 식용균 균종 잠정 관리방법 / 182P
- ◇ 수출입 종자(묘) 관리 잠정방법 / 185P
- ◇ 농작물 종자 생산경영관리 잠정방법 / 189
- ◇ 주요농작물 교잡종자 성(자치주·직할시)간
예약생산 공급 관리방법 / 196P
- ◇ 농약관리조례 / 198
- ◇ 비료·토양개량제 및 식물생장조절제 검사 등기 잠정규정 / 208P
- ◇ 비료·토양개량제·식물생장조절제 검사 등기 및
상품증명 발급에 관한 통지 / 211P
- ◇ 비료·농약·종자시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 212P
- ◇ 비료·농약·종자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 / 217P
- ◇ 농자제시장 관리사업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 / 219P
- ◇ 농작물 병충해보 관리 잠정방법 / 222P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종자자원의 보호 및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품종선택과 육종을 규범화하고 종자생산, 경영, 사용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또한 육종가와 종자생산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종자품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종자산업화를 추진하고 재배업과 임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육종과 종자생산, 경영, 사용, 관리 등에 종사하는 활동은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소위 말하는 종자란 농업, 임업에 사용되는 씨, 과실과 뿌리, 가지, 묘목, 싹 잎 등 번식자료를 가리킨다.

제3조 국무원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는 각각 전국 농작물종자사업과 임목종자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는 각각 본 행정구역 내의 농작물종자사업과 임목종자사업을 주관한다.

제4조 국가는 종자자원 보호사업과 우량종자 육종, 생산, 갱신 및 보급 사업을 지원한다. 종자자원보호사업과 우량품종 육종 및 보급 등 사업에서 성과가 현저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표창한다.

제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는 농업진흥을 위한 과학, 교육 방침과 재배업, 임업발전의 수요에 따라 종자발전계획을 제정한다. 동시에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재정, 신용대부, 세수 등 면에서 조치를 취하여 계획실현을 보증한다.

제6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는 자금을 확보하여 우량품종 선별, 육종 및 보급에 사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7조 국가에서는 종자비축제도를 마련하여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생산 종자수요에 충당 사용함으로써 농업생산안전을 보장한다. 비축 종자는 정기적으로 검측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종자비축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2장 종자자원 관리

제8조 국가는 법에 따라 종자자원을 보호한다. 어떠한 단체와 개인이든지 종자자원을 침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천연종자자

원을 채집하거나 채벌하는 것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채집하거나 채벌할 때는 국무원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9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종자자원을 수집, 정리, 검증, 보존, 교류 및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자자원 목록을 공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의 농업, 임업 주관부문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농업, 임업 주관부문이 규정한다.

국무원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은 국가종자자원창고를 건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는 필요에 따라 종자자원창고, 종자자원보호구역 혹은 종자자원보호지를 건립한다.

제10조 국가에서는 종자자원에 대해 주권을 행사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 국외와 종자자원을 교류할 때는 국무원 농업, 임업 주관부문의 종자자원 대외교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외국으로부터 종자자원을 도입할 때는 국무원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품종 선택육종과 심사결정

제11조 국무원 농업, 임업, 과학기술, 교육 등 행정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에서는 유관단위를 조직하여 육종이론, 기술과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가는 우량 육종과 개발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제12조 국가에서는 식물 신품종에 대한 보호제도를 실행한다. 인공 배육했거나 야생식물을 발견했어도 새롭고 특이하고 일치성과 안정성 있는 식물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하여 식물신품종권을 부여하고, 식물신품종권 소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육종된 품종이 보급 응용되면 육종자는 법에 따라 상응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제13조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임목의 우량품종을 육종하기 위하여 측정림, 시험림, 우량 수목 수집구역, 유전자창고를 설립하면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경제적 수입을 감소시켰을 경우, 설립 비준한 임업행정주관부문은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전자 조작 식물품종의 육종, 실험, 심사결정과 보급 등 추진과정에서는 반드시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엄격한 안전통제조치를 취해야 한

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5조 주요농작물품종과 중요한 임목품종은 보급 응용되기 전에 국가급 혹은 성급 심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자는 성급 심사결정 혹은 국가급 심사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확정한 주요 농작물품종과 주요 임목품종에 대해서는 성급 심사결정을 실행한다.

주요농작물품종과 주요 임목품종에 대한 심사결정방법은 국무원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한 공정성, 공개성, 과학성, 효율성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는 각각 전문가로 구성된 농작물품종 및 임업품종 심사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주요 농작물품종과 주요 임목품종에 대한 심사결정사업을 진행한다.

생태다양성이 있는 지구에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이 그 구역의 시, 자치주에 위탁하여 특정생태구역에서 보급 응용되는 주요농작물품종과 주요 임목품종에 대한 심사결정사업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16조 국가급에서 심사결정한 주요 농작물품종과 주요 임목우량품종은 국무원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공고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적합한 생태구역에 보급할 수 있다. 성급의 심사결정을 통한 주요농작물품종과 주요 임목우량품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공고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적합한 생태구역에 보급할 수 있다. 같은 생태구역에 속하는 인접한 성, 자치구, 직할시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얻어 종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17조 심사결정하여야 할 농작물품종이 심사결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광고를 할 수 없으며 경영하거나 보급 할 수 없다.

심사결정하여야 할 임목품종이 심사결정을 통과하지 않았을 경우 우량종자로서 경영 및 보급할 수 없다. 단 생산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쳐 같은 등급의 임목품종 심사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인증 받아야 한다.

제18조 심사결정에 통과되지 못한 농작물 품종과 임목 품종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원 심사결정위원회 혹은 상위 등급 심사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중국에 일정한 주거 혹은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혹은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품종심사를 신청할 경우, 법인자격이 있는 중국종자과학연구, 생산, 경영기구에 위탁하여 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종자생산

제20조 주요농작물과 주요 임목의 상품종자 생산에 대해서는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주요농작물의 잡교종자 및 그 친본종자, 재래종 원종 종자, 주요 임목 우량종자의 생산허가증은 생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심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다. 기타 종자 생산허가증은 생산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다.

제21조 종자생산허가증 수령을 신청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번식종자의 격리와 배육 조건
- (2) 검역성 병충해가 없는 종자생산지점 혹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확정한 채종립
- (3) 종자생산에 상응하는 자금과 생산, 검역설비
- (4) 상응한 종자생산 및 검역 전문기술인원
- (5)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식물신품종권한을 갖는 종자생산허가증서를 수령할 것을 신청할 경우 품종 권한인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종자생산허가증에는 생산종자의 품종, 지점과 유효기한 등 항목을 표기하여야 한다.

종자생산허가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매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허가 없이 혹은 허가증의 규정에 어긋나게 종자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3조 상품종자 생산에는 종자생산기술규정과 종자검증, 검역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4조 임목종자 생산기지 내에서 종자를 채집할 경우 종자생산기지를 경영하는 자가 조직하여 진행한다. 종자채집은 국가유관표준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과도한 채벌과 모수(母樹)훼손을 금지하며, 열등한 임지에서 열등한 모수에서 종자채집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5조 상품종자 생산자는 종자생산서류를 작성하며, 생산지점, 생산지역환경, 이전 재배작물, 친본종자 원산지와 품질, 기술책임자, 경작지검사기록, 생산지기상기록, 종자유동 등 내용을 명기한다.

제5장 종자 경영

제26조 종자경영은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종자경영자는 종자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종자경영허가증을 근거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처리하거나 변경한다.

종자경영허가증은 등급에 따라 심사하고 발행하는 제도를 실행한다. 종자경영허가증은 종자경영자가 소재하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다. 주요농작물 잡교종자 및 친본종자, 재래종 원종종자, 주요임목 우량종자 경영허가증은 종자경영자가 소재하는 현급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심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발행한다. 육종, 생산, 경영부문을 종합적으로 영위하고 동시에 국무원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규정한 등기자본금액에 달하는 종자기업과 종자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의 종자경영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심사하고 국무원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다.

제27조 농민개인이 스스로 번식하여 사용하고 남은 재래종자의 잉여는 시장에서 판매, 교환을 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종자경영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에서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28조 국가에서는 과학연구단위, 학교, 과학기술인원이 농작물 신품종과 임목 우량품종을 연구개발하고 법에 따라 경영하고 보급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29조 종자경영허가증 수령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종자종류와 수량에 적합한 자금 및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 (2) 경영하는 종자를 정확히 식별하고 종자품질을 검증하고 종자저장, 보관을 할 수 있는 기술인원
- (3) 경영하는 종자의 종류, 수량에 적합한 영업장소 및 가공, 포장, 저장보관설비와 종자품질 검증 설비
- (4)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종자경영자가 재 포장하지 않은 포장 종자를 전문적으로 경영하거나 혹은 종자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종자경영자로부터 서면위탁을 받아 그 종자를 대리 판매할 경우에는 종자경영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0조 종자경영허가증의 유효지역은 증서발급기관이 그 관할범위 내에서 확정한다.

다. 종자경영자는 경영허가증이 규정한 유효구역에서 지사를 설립할 경우 종자경영허가증을 재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영업허가증을 처리하거나 변경한 15일 내에 당해 지역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과 증서발급 원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종자경영허가증에는 종자경영범위, 경영방식 및 유효기한, 유효지역 등 항목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자경영허가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매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지 허가 없이 혹은 허가증의 규정에 어긋나게 종자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2조 종자경영자는 유관법률, 법규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종자사용자에게 종자에 대한 간략한 성능, 주요재배조치, 사용조건에 대한 설명과 유관자문서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종자품질에 대해 책임진다.

제33조 국무원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임업행정주관부문이 설립한 임업종자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종자는 국무원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문이 지정한 단위에서 계획적으로 구매와 사용조절을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비 지정단위는 생산기지범위 내에서 구매하지 못한다.

국무원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임업행정주관부문의 기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귀중한 수목종자와 동급 인민정부가 구매를 제한하는 임목종자를 구매할 수 없다.

제34조 판매하는 종자는 가공, 등급분류, 포장을 해야 한다. 단 가공하거나 포장할 수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대(大)포장 혹은 수입종자에 대해서는 분리포장을 할 수 있다. 분리포장을 실행할 경우에는 분리포장단위를 표기하는 동시에 종자품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35조 판매하는 종자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에는 종자유형, 품종명칭, 원산지, 품질지표, 검증증명번호, 종자생산 및 경영허가증번호 혹은 수입심사서류번호 등 사항이 적혀야 한다. 표지에 적힌 내용은 판매하는 종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수입종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중문 표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유전자조작식물품종 종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용 시 안전통제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종자경영자는 종자경영서류를 작성하여 종자원산지, 가공, 저장, 운송과 품질검측 각각에 대한 개략설명 및 책임자, 판매처 등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일년생 농작물종자에 대한 경영서류는 종자판매 후 2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년생 농작물과 임목종자 경영에 대한 서류보존기한은 국무원 농업, 임업행정 주관부문에서 규정한다.

제37조 종자광고의 내용은 본법과 유관 광고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주요성능에 대한 묘사는 심사결정한 광고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38조 현에서 나가는 종자를 운송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검역증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장 종자 사용

제39조 종자사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종자를 구매할 권한이 있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지 불법으로 간섭하지 못한다.

제40조 국가에서 투자하거나 국가투자를 주로 하는 조림항목과 국유 임업단위의 조림은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한 계획에 따라 임목 우량품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는 임목 우량종자를 사용하여 방호림을 건설하는데 대해 특종의 용도림을 제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 종자사용자가 종자품질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종자를 판매한 경영자가 배상을 하여야 하며 배상금액에는 종자구매가격, 유관비용과 얻을 수 있는 이익손실이 포함된다.

경영자는 배상한 후 책임있는 종자생산자 혹은 다른 경영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2조 종자사용으로 민사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협상 혹은 화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화해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거나 협상, 화해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제7장 종자 품질

제43조 종자생산, 가공, 포장, 검중, 저장 등 품질관리방법과 업종표준에 대해서는 국무원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는 종자품질에 대한 감독을 책임진다.

제44조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는 종자품질검증기구에 위탁하여 종자품질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종자품질검증을 책임진 기구에서는 상응한 검측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유관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쳐 합격되어야 한다.

제45조 종자품질검증기구는 종자검증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종자검증인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관련 있는 전문중등전업기술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수준
- (2) 종자검증기술사업에 3년 이상 종사경험 소유
- (3)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의 심사에서 합격

제46조 가짜, 저질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래에 열거한 종자는 가짜종자에 속한다.

- (1) 비 종자를 종자로 위장하거나 갑 품종의 종자를 을 품종 종자로 위장할 경우
- (2) 종자종류, 품종, 원산지가 표기한 내용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아래에 열거한 종자는 저질의 종자에 속한다.

- (1) 품질이 국가에서 규정한 종자용 표준보다 낮을 경우
- (2) 품질이 표기된 지표보다 낮을 경우
- (3) 변질 등 원인으로 종자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4) 잡초종자비율이 규정을 초과했을 경우
- (5) 국가에서 검역대상으로 규정하는 유해생물이 존재할 경우

제47조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생산 상 필요로 국가 혹은 지방에서 규정한 종자용 표준보다 낮은 농작물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자사용지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준을 거쳐야 한다. 임목종자는 종자사용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기준을 거쳐야 한다.

제48조 품종육종과 종자생산, 경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유관 식물검역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식물위험성병, 충,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의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지 종자생산기지에서 병충해집중실험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8장 종자수출입과 대외합작

제49조 수출입 종자에 대해서는 검역을 실시하며, 식물위험성 병, 충,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이 국내에 전파되거나 국외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검역사업은 유관 식물출입국검역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0조 상품종자의 수출입업무에 종사하면서 종자경영허가증을 갖지 않은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유관 대외무역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종자수출입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국외로부터 농작물, 임목종자를 도입하는데 대한 심사결정 권한과 농작물, 임목종자에 대한 수출입심사방법과 유전자식물품종을 도입하는데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51조 수입하는 상품종자품질은 국가표준 혹은 업종표준에 달하여야 한다. 국가표준 혹은 업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약정한 표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2조 국외로부터 종자제조를 위해 종자를 수입할 경우에는 본법 제50조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대외 종자제조계약이 있어야 하며 수입한 종자는 종자제조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못한다.

국외에서 실험용 종자를 도입할 경우에는 격리시켜 재배하여야 하며 수확물도 상품종자로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53조 가짜, 저질종자 및 국가에서 수출입을 제한한 종자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제54조 국외기업 기타경제조직 혹은 개인들이 중국에서 종자생산 경영에 투자하는데 대한 심사절차와 관리방법은 국무원 유관부문에서 유관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규정한다.

제9장 종자행정관리

제55조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은 '종자관련 법집행 행정기관'이다. 종자관련 법집행 인원은 법에 따라 공무 집행 시 '행정 법집행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은 본법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6조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 및 그 사업인원은 종자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종자생산경영기구는 종자행정관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종자에 대한 행정주관부문과 생산경영기구는 인원과 재무면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제57조 국무원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과 타지의 종자번육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는 타지 종자번육사업에 대한 관리와 협조를 강화하고, 교통운수부
문에서는 종자의 운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8조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본법에 따라 관련증서에 대한 심사발급사업을
진행할 때 증서발급에 대한 기본비용을 징수하는 외에 기타 비용을 징수하지
못한다.

제10장 법률책임

제59조 본법규정을 위반하고 가짜, 저질의 종자를 생산하고 경영하는데 대해서는
현급이상 인민정부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 혹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책임지
고 생산, 경영을 정지하도록 하고 종자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종자생산허가증,
종자경영허가증 혹은 영업허가증을 몰수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
득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2,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행
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본법의 규정의 위반하여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은 책임지고 종자와 위법소득을 시정하거나 몰수
하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
을 경우에는 1,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한다. 위법행위자의 종자생
산허가증 혹은 종자경영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종자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종자생산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
빌린 경우 종자생산허가증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종자 생산을 하지 않았
을 경우
- (2) 종자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종자경영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
빌린 경우 혹은 종자경영허가증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종자를 경영하지 않
았을 경우

제61조 본법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 중 하나를 행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
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종자와 위법소득을 시정하거나 몰수
하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한다. 위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한다. 범죄행위에 해당되면 법
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종자제조용으로 국외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하였을 경우
- (2) 국외에서 실험용으로 도입한 종자의 실험에서 얻은 수확물을 국내에서 상품종자로 판매하였을 경우
- (3)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천연종자 자원을 사사로이 채집하거나 채벌할 경우

제62조 본법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를 행하였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책임지고 시정하는 동시에 1,000원 이상 3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경영하는 종자는 반드시 포장하여야 함에도 포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 (2) 경영하는 종자의 표지가 없거나 표지 내용이 본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3) 표지, 실험과 검증수치를 위조하거나 고친 경우
- (4) 규정에 따라 종자생산, 경영서류를 작성,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 (5) 종자경영자가 타지에서 지사를 설립하였지만 규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제63조 본법규정을 위반하여 종자자원을 국외에 제공하거나 국내로 도입할 경우 국무원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b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은 책임지고 종자와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0,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의 비준문건을 취득하지 않고 종자자원을 휴대하거나 운송하여 출국할 경우 세관에서는 해당 종자자원을 압류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4조 본법규정을 위반하여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통과한 종자를 경영하고 보급했을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은 책임지고 종자의 경영, 보급을 정지시키고 종자와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0,000원 이상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5조 본법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남벌하거나 모수(母樹) 파괴하거나 저질의 수립과 모수에서 종자채집 한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은 책임지고 종자채집행위를 정지시키고 채집한 종자를 몰수하는 동시에 채집한 종자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6조 본법 제33조의 임목종자 구매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현금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을 책임지고 구매한 종자를 몰수하는 동시에 구매한 임목종자 가치의 2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7조 본법규정을 위반하여 종자생산기지에서 병충해접종실험을 했을 경우 현금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을 책임지고 실험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8조 종자품질검증기구에서 허위로 검증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종자생산자, 판매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시에 법에 따라 종자품질검증기구 및 유관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하고 범죄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9조 종자사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종자사용으로 사용자가 손실을 받았을 경우에 판매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70조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이 본법규정을 위반하여 조건을 갖추지 못한 종자생산자, 경영자에 대해 종자생산허가증서 혹은 종자경영허가증서를 발급했을 경우 직접 책임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1조 종자행정관리인원이 부패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위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본법 규정을 어기고 종자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당사자가 유관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로 인해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여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73조 농업, 임업행정주관부문을 법에 따라 위법행위자의 종자경영허가증을 취소한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지하여 법에 따라 위법행위자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한다.

제11장 부 칙

제74조 본법에서 사용하는 아래 용어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 (1) 종자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품종을 육종하는 기초자료를 가리키며, 각종 식물의 재배종자, 야생종의 번식재료 및 상술한 번식재료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식물의 유전자료를 포함한다.
- (2)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육종을 통하거나 혹은 발견되거나 개량을 통해 형태특징과 생물학특성이 일치하고 유전형태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식물군체를 가리킨다.

- (3) 주요농작물이라고 함은 벼, 소맥, 옥수수, 면화, 대두 및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각자가 확정한 기타 1~2가지 농작물을 가리킨다.
- (4) 임목 우량종자라고 하는 것은 심사결정을 통과한 임목종자로서 일정한 구역 내에서 그 생산량, 적응성, 저항성 등 측면들이 이전에 주로 재배되는 재료보다 현저하게 우량한 번식재료와 재배재료를 가리킨다.
- (5) 표지라고 하는 것은 종자포장물 표면 및 내외에 특정된 도안과 문자설명을 가리킨다.

제75조 본법에서 말하는 주요 임목은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확정하고 공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는 국무원 임업행정주관부문에서 확정한 주요임업 외에 기타 8가지 이하의 주요 임목을 확정할 수 있다.

제76조 잡초종자, 식용균 균종의 종자자원관리와 육종, 생산, 경영, 사용, 관리 등 활동은 본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77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혹은 참여한 종자 관련 국제조약이 본법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한다고 밝힌 조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제78조 본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89년 3월 13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종자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농작물종자 검사 관리방법(시행)²²⁾

(1989년9월5일 농업부 반포, 1997년12월25일 농업부령 제39호에 근거하여 수정)

제1조 종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종자 품질 표준화를 실현하며 농업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종자 관리조례》(이하 《종자관리조례》로 약칭)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농업생산에서 사용하는 종자, 열매와 뿌리, 줄기, 묘, 싹 등 번식재료는 모두 검사대상으로 한다.

제3조 종자검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1) 국영단위, 집체단위와 개인이 번식, 경영 및 사용을 위해 생산한 종자
- (2) 선별육종 단위, 도입단위 혹은 개인이 육성하여 심사를 신청한 새품종 종자
- (3) 국가, 생산단위와 농가에서 재해를 구제하고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한 종자

제4조 종자검사는 포장(田間)검사와 실내검사를 가리킨다.

포장검사는 주요하게 격리조건, 품종의 진실성, 순수도를 검사하며, 또한 이작물(異作物), 잡초, 병충해 등 상황을 검사한다.

실내검사는 주요하게 품종순수도, 발아율, 정결도, 수분(목화는 健子率도 검사)을 위주로 검사하며, 또한 질병, 벌레, 잡초종자, 천립중(역주: 입자 천개의 중량) 등을 검사한다.

제5조 각급 종자관리부문은 종자검사기구를 설립하고 검사실을 설치해야 하며, 각급 종자생산 및 경영단위에 종자검사실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 국가 종자검사기구는 《종자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농작물종자 검사관리방법을 책임지고 추진하며, 농작물종자 검사규정과 종자 등급표준 등에 기초하여 집행을 감독한다. 각급 종자검사 업무를 지도하며, 종자 품질의 표본검사, 경험교류와 기술훈련을 추진한다. 종자검사에 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검사설비 포함)

22) 연구대상인 농업관련법령의 시간적 범위는 1999년도에 집대성한 「농업관련법령집」에 수록된 주요법령들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그 이후에 제정, 개정된 내용은 담고있지 못하다. 다만 농업법률은 몇 개 되지 않는 관계로 최근까지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 2000년 8월에 제정한 “종자법”이 수록되면서 동시에 그 이전에 종자법을 대신하던 종자관리조례는 삭제하였다. 이렇게 종자법과 기타 관련법령들간에 시간적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관계에서 법령들간에 내용적 불일치가 노출되고 있다. 즉, 기타 관련법령들 내용에서 이러한 변경 내용들이 정리되지 않은채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중국의 법제화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의 계약연구와 국내외 학술교류를 추진하며, 성과 성 사이의 종자품질 중재검사를 담당(혹은 종자검사 관련 센터에 위탁)한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종자검사기구는 국가 종자관리와 관련된 법규 및 종자검사 관리방법, 규정, 등급표준 등을 집행하는 것을 책임지고, 관할구역 내의 종자검사 사업을 지도 감독하며 또한 종자검사 인원을 훈련하고 평가한다. 관할구역 내 국영, 집체, 개인이 생산, 경영, 사용하는 종자에 대해 표본검사한다. 성내 종자품질 중재검사를 하며, 종자검사와 관련된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계약연구를 조직하며, 유관단위에 대한 위탁 검사를 책임진다.

제8조 시, 현의 종자검사기구는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반포한 종자검사 관리방법, 규정, 등급표준 등을 집행한다. 관할구역 내의 종자검사 사업을 지도, 감독하며 아울러 검사인원을 훈련한다. 관할구역 내의 국영, 집체, 개인이 생산, 경영, 사용하는 종자를 표본검사한다. 관할구역 내의 종자품질 중재검사를 하며, 유관단위에 대한 위탁검사를 책임진다.

제9조 각급 종자생산, 경영단위의 실험실은 본 단위의 종자 자체검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동시에 종자검사 결과를 매년 현지 종자검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며, 감독 및 품질에 대한 표본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단위의 자체 종자검사 경우 반드시 방법 제13조의 규정대로 자격증을 지참한 검사원이 종자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시(지), 현 사이의 종자 이동은 종자관리부문의 기준을 거쳐야 하며, 이동해 나가는 단위가 검사를 책임지며, 이동해 들어오는 단위는 재검사를 한다.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이동할 종자의 질이 국가 혹은 성급에서 규정한 품질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는 이동해 들어오는 단위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준을 거쳐야하며, 이동해 들어오는 단위에서 검사하고 이동해 나가는 단위는 협조를 한다.

제11조 각급 종자검사기구, 검사실은 상응한 전문직 종자검사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작업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도록 보증해야 한다.

제13조 자격증이 있는 종자검사원은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전문학교(혹은 전문학교상당)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 3년 이상 전문직 검사기술 작업에 직접 종사한 자
- (3) 성, 자치구, 직할시 주관부문의 시험에 합격한 자

제14조 종자검사인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 할 때는 국가 종자관리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 《종자 검사원증》과 흉장을 패용해야 한다. 만약 검사직업을

이직할 경우, 증명 발급부문을 제 때에 검사원증, 홍장을 회수하고 각 유관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종자검사원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법규를 홍보하고 집행을 해야 하며, 《농작물종자 검사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검사사업의 각종 규정제도를 지켜야 한다.

제16조 종자검사인원의 보건복지는 농목어업부, 노동인사부, 재정부(82)농(인)자 제 37호 문건인 《농업단위의 유독, 유해작업 전문직 종사자에게 보건수당을 지급하는 시행에 관한 통지》중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종자검사기구에 위탁과 중재검사를 신청한 단위 혹은 개인은 현지에서 규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라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18조 종자검사기구는 종자의 품질을 표본검사할 때 《농작물종자 검사규정》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표본을 채취하되 채취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표본의 보관은 그 작물 수확 후 1개월(감자류 제외)까지 보존해야 하며 재검사 준비를 한다.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 종자관리조례, 종자검사 방법과 종자검사규정을 모범적으로 집행하고, 종자검사 사업에서 현저한 성적과 중대한 성과를 거둔 단위 혹은 개인에 대해 농업행정부문이 표창을 한다.

제20조 종자검사 사업에 있어서 직무 소홀로 사고가 나거나 뇌물을 받는 자, 검사원의 정상적 직책 이행에 이유없이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평교육,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법을 저촉한 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세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2조 본 방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수 종자묘목 관리 잠정방법(시행)

(1990년 2월6일 농업부 반포, 1997년 12월25일 농업부령 제39호에 근거하여 수정)

제1조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과수 생산을 발전시키고, 품종의 우량성과 순수성을 보충하며, 위험성병충이 만연하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현지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배치를 하며, 고품질 고생산성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과수 종자묘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종자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과수 종자묘목은 과수 생산에 사용되는 묘목, 접목종자, 접지, 꺾꽂이 및 기타 번식재료(이하 과수종묘 라고 약칭)를 가리킨다.

제3조 본 방법은 과수생산을 주관하는 각급 농업행정부문이 실시와 감독을 책임진다.

제4조 생산, 번식, 판매와 과수종묘를 조달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이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5조 과수종묘의 우량종 번식 보급체계를 건전하게 건립하고, 우량종의 순도와 생산력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생산에 있어서 우량주 계통 묘를 점진적으로 사용하여 과수품종 자원 개발 및 이용을 강화한다.

선별육종, 우량종(접목포함) 도입의 경우 성 내 보급은 성급 과수품종 심사위원회에 심사와 인가를 거쳐야 하며, 성 농업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성에 보급하려면 전국 과수품종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인가를 거쳐야 하며, 농업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품종은 보급하지 못한다.

제6조 성 이외로부터 과수종묘를 들여오는 단위 혹은 개인은 반드시 사전에 본 성 농업행정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식물검역조례》규정에 따라서 수속해야 한다. 역구로부터 과수종묘를 들여오는 것을 엄금한다.

외국에서 과수종묘를 들여오는 경우 국무원 유관부문에서 들여온 것은 반드시 농업부의 심사와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각 성(구, 시)유관부문에서 들여온 것은 반드시 성(구, 시) 농업청(국)의 심사와 동의를 얻는 동시에 중국 농과원 농작물 품종자원연구소에 등기 수속을 하여야 하며, 국가 식물검역 유관법규에 따라 검역과 격리 시험재배를 실시해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송달하거나 재배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

외국에 제공하는 과수종묘는 성급 농업행정부문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또한 중국 농과원 농작물품종자원연구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과수종묘의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 혹은 개인은 필요한 기술역량과 생산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금 이상(현금 포함) 농업행정부문에 보고하여 심사 기준을 거쳐 《과수종묘생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생산할 수 있다. 동시에 성 농업구획에서 지정한 품종을 생산해야 하며, 필요한 접목종자와 접지, 꺾꽂이 등 번식재료는 현 농업행정부문에서 통일적으로 배정한다.

제8조 과수종묘의 경영은 《중화인민공화국 종자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과수종묘 번식원(번식포)은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과수종묘을 반출하기 전에 생산단위는 현지 농업행정부문의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가 혹은 성 급 종묘품질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검역수속을 하여 종묘합격증과 검역증을 받아야 반출 할 수 있다. 과수종묘의 이동은 현금 이상(현금 포함)농업행정부문이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t관리한다. 《과수종묘 품질합격증》, 《과수종묘 검역합격증》이 없는 종묘인 경우 철로, 육로, 수로, 해운, 우편, 민항 등 모든 부문은 운송해서는 안 된다.

농업행정부문은 공상행정 등 부문과 협력하여 과수종묘의 시장관리를 강화한다.

제10조 본 방법규정을 위반하여 과수종묘를 생산한 단위 혹은 개인(종묘 수출입 단위 혹은 개인 포함)에 대해 농업행정관리부문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혹은 위법한 소득의 3배 이내 벌금에 처하며, 최고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경우 위반한 단위 혹은 개인은 배상을 해야 한다. 형법에 저촉한 경우 사법부문에 제청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1조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행정부문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제12조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전국 식용균 균종 잠정관리방법

(1996년 5월 28일 농업부 반포)

제1조 식용균 균종(이하 균종으로 약칭)관리를 강화하고, 균종의 품질을 확보하며, 계획적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용균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본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가리키는 균종은 쌍포자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후두버섯, 팽나무버섯, 풀버섯(草菇), 검은목이버섯, 흰참나무버섯 등 인공재배한 식용균의 균사체(포자포함) 및 그 생장물질인 번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 균종은 1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균종장은 1급 균종장, 2급 균종장, 3급 균종장으로 나눈다.

제4조 농업부는 전국의 균종사업을 주관한다. 각 급 농업(식용균 포함, 이하 같음) 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균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5조 각종 각급의 균종을 생산판매하는 단위 혹은 개인은 본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6조 균종을 생산하는데는 반드시 아래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각종 균종을 생산하는데 상응한 기술이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 중 1급 균종장의 주요기술인원은 전문대학 이상 학력이 있어 균종생산의 기본 지식과 기본기능을 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5년 이상의 2급 균종 생산 경험이나 혹은 균종 육종 경험이 있어야 한다. 2급, 3급 균종장의 주요기술인원은 고등학교 혹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구비하여 균종생산의 기본지식과 기본기능을 장악할 수 있어야하며, 동시에 3년 이상의 실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2) 균종생산의 요구에 상응하는 멸균소독과 접종설비, 균종배양실, 재배방(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 중 1급 균종장은 격리배양, 우량품질 순도 유지, 저장 및 품질검사 등 실험기구와 설비가 있어야 한다.
- (3) 균종장 주위 50m 이내 축사, 쓰레기, 폐수와 기타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 (4) 1년 이상의 균종 시험생산 성공경험이 있어야 한다.
- (5) 균종생산에 수반되는 기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7조 균종을 생산하는 모든 단위 혹은 개인은 현지 현금 및 그 이상의 농업행정관리부문에 《균종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1급 균종장의 건립 신청의 경우 성급 농업행정관리부문이 심사 기준을 하고

농업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2급 균종장의 건립 신청에 대해서는 지방급(地級) 농업행정관리부문이 심사 기준을 하고 성급 농업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3급 균종장의 건립 신청은 현급 농업행정관리부문에서 심사 기준을 하고 지방급 농업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건립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심사 비준단위의 비준 후, 유효기간이 3년인 《균종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제8조 《균종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거나 혹은 균종장 등급을 조정하거나 1년이상 생산을 중단한 균종장은 허가증 갱신 비준수속을 해야한다.

제9조 균종생산단위 혹은 개인은 《균종생산허가증》에서 규정한 등급 및 그 이하의 각급 균종을 생산할 수 있다.

제10조 각급 균종은 균종생산단위가 직접 판매하는 것을 위주로 하며, 비 생산단위 혹은 개인의 경우 일부 균종을 대리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 균종판매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주요 판매인원은 균종의 저장, 품질 감별의 기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2) 균종판매에 적당한 장소, 설비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무릇 균종판매에 종사하는 단위 혹은 개인은 소재지 현급 및 그 이상의 농업행정부문에 유효기간이 3년인 《균종판매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균종판매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다 되었거나 1년이상 영업을 중지한 경우 허가증 갱신 비준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새로 육성하거나 도입한 품종(균주 포함, 이하 같음)은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이 주재하는 구역실험(버섯류의 생산과 가공 포함)을 거쳐야 하며, 동급 농작물 품종 심사 전문기구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품종심사 전문기구의 심사를 받은 후의 품종 명칭과 일련번호는 각지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되 임의로 고칠 수 없다.

제14조 심사에 통과한 신품종은 그것을 육종(혹은 도입)한 단위 혹은 개인이 그 품종의 번육, 저장, 양도 등의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다른 성에서 도입하거나 본 성이 이미 심사한 품종을 구매하는 경우에 그 육종 단위는 직접 생산에 이용할 수 있지만, 육종을 하지 않은 단위는 실험을 거쳐야 하며, 현지 농업행정주관부문에 그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외국에서 도입하거나 외국에 품종자원을 공급하는 경우, 소재지 성(자치구, 직할시) 농업행정주관부문에 등기를 신청하고, 농업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는다. 도입한 균종은 본 성(자치구, 직할시) 농업행정주관부문이 조건을 갖춘 단

위를 지정하여 종자실험, 저장, 번식을 하게 한다.

제17조 상품 균종의 품질은 반드시 국가표준 혹은 업종표준(부분표준), 혹은 지방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8조 균종의 품질은 균종을 생산하는 단위가 검정을 책임지며, 균종 판매 합격증에 생산일과 유효기한을 명기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 균종의 품질문제는 균종 단위가 책임을 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균종의 품질문제는 판매하는 단위가 책임진다.

제19조 각급 농업행정부문은 균종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생산, 경영 대상인 균종에 대해 표본검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통보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농업부와 각성(자치구, 직할시) 농업행정부문에 속한 식용균 혹은 균종 품질 감독검사 기구는 균종품질의 검사, 검정을 책임진다.

제21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생산, 판매하는 단위 혹은 개인에 대해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혹은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경우 규정을 위반한 단위 혹은 개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 사법부문 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제정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199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수출입 농작물종자(묘)관리 잠정방법

(1997년 3월28일 농업부 반포)

제1장 총칙

제1조 종자관리 관련 법규를 더욱 실현하고, 종자자원관리를 강화하며 중국 농작물 종자(묘)의 해외무역과 합작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 중 수출입 농작물 종자(묘)(이하 농작물종자 라고 약칭)는 국(경)외로부터의도입과 국(경)외에 제공하는 연구용 종자자원(이하 수출입 종자자원이라 약칭), 수출입 생산용 종자를 포함한다.

수출입 생산용 종자는 시험용 종자, 대규모 경작지(大田)용 상품종자와 대외용 종자를 포함한다.

제3조 수출입 생산용 종자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국(경)외에 종자자원을 제공하는 단위는 반드시 중국 법인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 수출입 생산용 종자업무에 종사하는 것과 국(경)외에 종자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규모 경작지 용 수출입 상품종자는 수출입 종자 종류에 부합하는 종자 생산, 경영권 및 수출입권이 갖춰져야 한다. 수출입권이 없는 경우, 농업부가 지정한 농작물 종자 수출입권이 있는 단위가 대리한다.

제2장 수출입 종자자원의 관리

제4조 국(경)외에 제공하는 종자자원은 작물 종자자원 분류목록에 따라 관리한다.

“대외 교환 조건을 갖춘 것”과 “대외교환이 가능한 것”에 속하는 종자자원은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이 심사한 후 중국농업과학원 작물품종자원연구소(이하 품자소라 약칭)에 보내고, 품자소는 농업부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심사비준 수속을 처리한다. “대외 교환할 수 없는 것”과 아직 국가의 통일 일련번호가 없는 종자 자원은 국(경)외에 제공할 수 없다. 특수 사정으로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자소가 심사하여 농업부에 보고하여 그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종자자원을 도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품자소에 등기하여야 하며, 적당량의 종자를 첨부하여 보존 및 이용에 제공되도록 한다.

제5조 대외 제공 종자자원의 신청과 심사비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국(경)외에 종자자원을 제공하는 단위는 심사단위에 규정된 양식 및 요구

에 따라 《농작물종자자원 대외교류 신청표》(첨부1 참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경)외에 제공하는 종자자원에 관련된 정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단위의 동의를 거친 후 심사비준단위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 (2) 비준단위가 비준 동의한 경우 품자소에서 통일적으로 《대외교류 농작물 종자자원 허가증》(첨부2 참고)을 발행하고, “농업부 농작물종자자원 대외교류 심사비준 도장”을 찍는다. 대외로 종자자원을 제공하는 단위는 《농작물 종자자원 대외교류 허가증》을 지참하고 식물검역기구에 가서 검역 심사비준 수속을 하여야 한다. 《농작물 종자 대외교류 허가증》은 세관을 통과하는 근거로 삼는다.

제3장 생산용 종자 수출입 관리

제6조 생산용 종자 수출입은 소재지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의 심사와 농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시험용 종자의 수입은 양은 비록 적지만 정밀하게 규정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매년 수입 물량은 종자는 10무 파종량을, 묘목은 100주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실험용종자 수입은 반드시 국가 및 성(직할시, 자치구) ‘농작물품종 심사위원회’의 통일적인 관리와 지도 하에 재배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대규모 경작용 상품종자의 수입신청은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품종은 반드시 국가 및 성급 농작물품종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한동안 심사를 한 적이 없으면서 한편 급하게 생산 상 필요한 농작물 품종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생육주기 실험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종자의 품질은 반드시 국가 및 업종 표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업종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품종은 계약에서 정하거나 유관 국제표준을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 대규모 경작용 상품종자 수입 사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매년 8월 말 이전에 다음 한해의 종자 수입계획을 소재지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급 농업행정부문에서는 심사 후 10월말 전으로 농업부로 보고한다.

제11조 대외제작 재배용 종자의 수입은 본 조례 9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번식한 종자는 국내에서 팔지 못한다.

제12조 국가에서는 종자수출을 격려한다. “대외 교환할 수 없는 것”과 국가의 통일

적인 번호가 없는 품종 및 잡교작물의 친본종자는 원칙적으로 수출하지 못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생산용 종자 수출입 신청과 비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수출입단위가 심사단위에 신청할 때 반드시 규정된 양식과 요구에 따라 《농산물종자(묘) 수출(입) 심사비준표》(첨부3참고)를 작성하고, 수출입 종자품종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외 제조용 종자 수출입 처리의 경우 반드시 종자 대외제조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규모 경작용 상품 종자의 수출입 처리 경우, 《종자경영허가증》, 《영업허가증》과 품종심사결정과정을 거쳤다는 것과 품질표준에 도달하고 있음과 수출입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단위에서 동의 한 후에 심사비준기구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 (2) 심사비준기구의 심사비준 동의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수출입작물 종자심사비준 전용도장”을 날인한다. 종자수출입 단위에서는 유효한 《농작물종자(묘) 수출입 심사비준표》를 지참하여 식물검역기구에 가서 검역심사 비준을 얻어야 한다. 농작물종자수입의 면세수속 처리는 농업부에서 《동식물 묘종(苗種) 수입 면세 심사비준 증명》를 발급하며, 세관 면세통행의 근거로 삼는다.

제4장 수출입농작물종자관리감독

제14조 품자소는 반드시 매 계절 시작 첫 번째 달 10일전까지 지난 계절의 종자자원 수입심사비준 상황을 농업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10일 전에 농업부에 전년도 사업 총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농업행정주관부문과 관계 업무 담당자들이 본 방법에 규정한 수출입심사, 심사비준 및 검역비준의 규정을 위반하면 본 단위 혹은 상급기구에서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기구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16조 《농작물종자(묘)수출입심사비준표》, 《동식물묘종수입면세심사비준증명》

은 농업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인쇄한다.

《농작물종자자원대외교류신청표》, 《농작물종자자원대외교류허가증》은 농업부가 품자소를 위탁하여 통일적으로 제작, 인쇄한다.

제17조 《농작물종자자원대외교류신청표》, 《농작물종자(묘)수출입심사비준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동식물묘종수입면세심사비준증명》, 《농작물종자자원대외교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유효기간을 초과하거나 수출입종자의 품종, 수량, 수출입 국가 혹은 지구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심사비준을 다시 얻어야 한다.

제18조 수출입종자는 반드시 식물검역에 통과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중화인민공화국입출국동식물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입출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식물검역조례》, 《국외도입 검역심사비준 관리방법》 및 유관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농업부에서 책임진다.

제20조 본 방법은 반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농작물종자 생산경영관리 잠정방법

(1996년 4월16일 농업부, 국가공상국 반포)

제1장 총칙

제1조 농작물종자의 생산 경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계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각급 농업행정주관부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농작물종자 생산 경영에 대한 행정관리와 시장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농작물종자의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방법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장 농작물종자의 생산관리

제4조 상품농작물종자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농업행정주관부문에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여 증서를 지니고 생산을 해야 한다.

제5조 상품농작물종자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번식, 원종 혹은 우량종을 배양하기 위한 격리, 재배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검역대상병충해가 없는 농작물종자 생산기지가 있어야 한다.
- (2) 농작물종자생산기술에 능숙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 (3) 생산 농작물종자의 품종(조합)은 심사(인정)에 통과한 품종(조합)이어야 한다.
본 성에서는 심사를 거치지 않았지만 다른 성에서 심사 통과한 품종(조합)의 농작물종자를 번식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성의 예약생산계약과 다른 성의 그 품종(조합)에 대한 심사통과 증명이 있는 관계 증서가 있어야 한다.
국의 품종(조합)의 농작물종자 생산의 경우, 반드시 예약생산계약 및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이 그 품종(조합)을 본성에서 번식하도록 허락한 비준 문서와 검역합격증서가 있어야 한다.
- (4) 생산한 농작물종자에 대하여 믿을만한 현지재배(田間) 검사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5) 주요농작물의 잡교종자 및 친본종자의 생산을 신청할 경우, 소재지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의 생산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은 등급별로 심사비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주요농작물의 잡교종자, 잡교친본종자, 일반작물의 원종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은 생산 소재지의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다.

기타 농작물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은 생산 소재지의 현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다.

제7조 농작물종자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파종 1개월 전 농업행정주관부문에 신청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단위책임자가 서명한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 신청표》(첨부1 참고)
- (2) 농작물종자 생산기지의 정황 소개.
- (3) 주요 기술인원의 기술자격 증명.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비준 후,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을 발급한다.(첨부2 참고)

제8조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그 작물의 1개 생육주기로 하며, 종자 수확후 자동 실효된다.

제3장 농작물종자의 경영관리

제9조 무릇 농작물종자를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을 근거로 해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하고 영업증을 받은 다음에야 허가한 경영범위, 경영방식, 경영지점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10조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을 발급받은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종자검사원》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자품질 검사인원이 있어야 한다.
- (2) 농작물종자의 저장, 포장기술에 능숙한 보관인원이 있어야 한다.
- (3) 경영종류, 수량에 상응한 경영장소, 저장, 보관시설과 가공, 농작물종자의 품질을 검사하는 기계, 기구, 설비가 있어야 한다.
- (4) 경영 농작물종자의 종류와 수량에 상응한 자기 자금이 있어야 한다.
- (5) 자격이 있는 회계인원과 완벽한 재무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경영범위에 주요농작물 잡교종자 및 그 친본종자가 포함된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자는 위의 조건을 구비하는 외에도 반드시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경영단위여야 한다.

제11조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농업행

정주관부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단위책임자가 서명한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 신청표》(첨부3 참고)
- (2) 검사인원의 기술자격증명.
- (3) 경영범위에 주요농작물 잡교종자 및 그 친본종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경영단위로 지정함을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 육종 과학연구단위가 경영범위에 주요농작물 잡교종자 및 그 친본종자를 포함한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품종 심사(인정)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영을 신청한 품종(조합)은 본 단위가 배양(혹은 도입)한 것이며 동시에 그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12조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첨부4 참고)은 등급별로 심사비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주요농작물의 잡교종자 및 그 친본종자를 경영하는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은 소재지 현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다.

제13조 농작물 보통품종을 경영하는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과 영업증을 취득한 향진의 농업기술복무조직은 경영권이 있는 단위의 위탁을 받아 주요농작물 잡교종자의 대리판매업무를 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소재지 현 농업행정주관부문의 종자공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시에 대리판매를 위탁한 단위와 쌍방의 권리, 의무(책임을 포함)가 명기된 대리판매 협의서 혹은 계약을 체결해야 본 향진에서 대리판매를 할 수 있다.

제14조 경영대상 농작물종자는 반드시 정선 가공, 분류, 포장을 거쳐야 하고, 품질은 국가 혹은 지방에서 규정한 품질표준에 도달해야 하며, 종자포장 안팎에 검표가 부착되어야 한다. 매 비준 종자는 검사원이 발급한 《농작물종자품질 합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장의 표기와 안팎에 부착한 검표는 반드시 품종명칭, 품종의 특징과 특성(재배요점 포함),품질, 수량, 적용범위, 생산일자, 판매단위 등 사항을 명기해야 하며 동시에 포장 안의 종자와 같아야 한다.

수입한 농작물종자를 경영하는 경우는 중문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15조 농작물종자를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판매하는 매 비준 종자마다 고르게 견본품을 남겨 재검사와 중재 시 사용에 대비해야 하며, 그 견본품의 보존은 그 종자의 수확 후까지로 한다.

제16조 농작물종자 도매시장의 건설과 농작물종자 교역회, 판매회, 주문회, 전람회 등 집중적인 교역활동을 거행할 경우, 반드시 현지 성급 농업행정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쳐 농업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수매와 반입이 필요하거나 공급하는 농작물종자가 품질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종자 사용 소재지의 현 이상 인민정부의 정식 비준 공문이 있어야 하며, 종자의 품질을 사실대로 명기하고 기술지도를 잘 해야 한다.

제4장 농작물종자 계약관리

제18조 상품종자의 생산 경영은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통일계약양식을 사용하고, 이 통일계약양식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과 농업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계약양식 첨부 5, 6 참고).

제19조 종자 예약생산 경우는 농작물종자 예약생산계약을 체결하고, 농작물종자 구입 판매 경우는 《농작물종자 구입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0조 성 사이의 잡교 옥수수, 잡교 벼종자의 예약생산과 구입 판매는 《농작물종자 예약생산계약》과 《농작물종자 구입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종자 공급자의 소재지 현급 이상 농업행정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종자 공급자의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감정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농업행정주관부문과 공상행정주관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농작물종자 계약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계약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2조 농작물종자 생산, 경영단위와 개인이 본 관리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농업행정주관부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1) 규정에 따라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과 영업증을 신청하여 취득하지 않고 농작물종자를 생산, 경영하였을 경우에는 《종자관리조례》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 (2) 범위를 넘어서 농작물종자를 생산, 경영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 없이 종자를 생산, 경

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자관리조례》 제 36조에 따라 처리한다.

- (3) 잡종, 가짜, 저질종자와 불합격된 농작물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종자관리조례》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 (4) 농작물종자의 포장표기 혹은 농작물종자의 검증표지에 명기한 항목이 포장 안의 종자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자를 판매하거나 저질, 잡종, 가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자관리조례》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 (5) 계약을 이용하여 열등한 농작물종자를 생산 판매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금전을 편취하였을 경우에는 《경제계약법》 제44, 45조와 《투기조장 행정처벌 임시조례》 제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 농업행정주관부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인원이 본 관리방법이 규정한 조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과 영업증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재 단위 혹은 상급 주관부문이 직접적인 책임자와 주관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한다.

제6장 부칙

제24조 본 관리방법 중의 《주요농작물》의 구체적인 작물 종류는 각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이 현지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제25조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 신청표》,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 신청표》,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과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은 농업부가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농작물종자 구입 및 판매계약》과 《농작물종자 예약생산 계약》은 각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감수하고 농업행정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인쇄하여 제작한다.

제26조 본 관리방법은 농업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7조 본 관리방법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 투자 농작물종자기업 설립에 관한 심사 기준 및 등기관리 방법

(1997년 9월 8일 농업부, 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부, 국가공상국 반포)

제1조 대외개방의 수요에 적응하고 외상(外商)이 투자하는 농작물종자기업의 질을 보증하고 종자자원의 관리를 강화하며 우리나라 종자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외상투자 농작물종자기업이란 중국과 외국이 합자, 합작하여 개발, 생산 및 경영하는 농작물종자 기업을 가리킨다. 외상이 투자, 경영하고 판매하는 농작물종자 기업과 농작물종자 외국독자기업은 당분간 허가하지 않는다.

제3조 외상투자 농작물종자기업의 설립은 외상투자와 종자관리의 관계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외상투자 농작물종자기업의 설립은 관계법률, 법규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중국의 종자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외상투자 농작물종자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 측 당사자는 농작물종자 생산의 경험과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고 주관부문의 심사 동의를 거친 기업이어야 하며, 외국 측 당사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 육종, 종자생산 기술과 기업관리 수준이 있어야 하고, 기업 신용이 양호한 기업이어야 한다.

(2) 국(경)외의 우량품종(종자자원), 선진적인 종자기술과 설비를 들여올 수 있거나 채용 할 수 있어야 한다.

(3) 등록자본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양식, 면화, 유지작물 종자기업의 등록자본은 20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기타 농작물종자 기업의 등록자본은 50만 달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4) 양식, 면화, 유지작물 종자기업의 설립은 중국 측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외상투자 농작물종자기업 설립 신청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한다.

(1) 중국 측 투자자는 사업 건의서와 가능성 연구보고를 현행 '외상투자 기본건설, 기술개조사업'의 심사기준 권한과 심사절차에 따라 성급 이상의 비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심사부문은 비준 전에 성급 이상의 농업행정 주관부문의 심사의견을 구해야 한다. 양식, 면화, 유지작물 종자기업의 설립

은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의 1차 심사를 거친 후에 농업부에 심사의견을 제출한다. 농업행정주관부문의 심사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그 항목을 비준하지 못한다. 비준을 받은 항목은 유관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기업의 명칭을 우선 비준 받아야 한다.

- (2) 중국 측 투자자는 계약, 장정(章程) 및 관련 서류를 현행 심사비준권한과 심사비준절차에 근거하여 성급 이상 심사부문에 제출한다. 심사비준 동의를 거치면 심사비준부문이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 (3) 중국 측 투자자는 농업부에 영업허가 수속을 신청해야 하고, 농업부는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 (4) 중국 측 투자자는 사업건의서와 가능성 연구보고에 관한 비준관련 서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 및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혹은 그 권한을 받은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신청하여 기업법인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6조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을 신청할 때 중국 측 투자자는 농업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건의서와 가능성 연구보고에 관한 비준문건
- (2) 외상투자종자기업 설립의 계약, 장정
- (3) 계약, 장정에 관한 비준문건 및 심사부문에서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 (4) 외상투자농작물종자기업의 주주총회 구성원 명단과 각 측의 이사 위임파견서
- (5) 기타 제출해야 할 증명, 문건

제7조 외상투자 농작물종자기업의 상품종자 생산은 유관 규정에 의하여 파종 1개월 전에 생산소재지의 성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 신청하여 《농작물종자생산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외상투자 농작물종자기업이 합자, 합작 상대방 혹은 개발범위를 변경할 때는 본 규정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심사와 동기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대만, 홍콩, 마카오 지구의 투자자가 농작물종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0조 본 규정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이 반포되기 전에 설립한 외상투자 농작물종자기업은 본 규정이 반포된 당일부터 6개월 내에 본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행정주관부문에 가서 《농작물종자경영 허가증》수속을 보충해야 한다.

주요 농작물교잡종 성(자치구, 직할시)간 예약생산 공급 관리방법(시행)

(1989년 12월 21일 농업부 발표)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종자관리조례》 제20조의 “주요농작물 교잡종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단위가 조직하고 경영하며, 동시에 동급 농작물종자관리 부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방법을 제정한다.
- 제2조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농작물 교잡종자는 교잡 벼, 교잡 옥수수, 교잡 수수, 교잡 유채종자, 및 기타 친본종자를 가리킨다.
- 제3조 성(성, 자치구, 직할시를 포괄함, 이하동일)간 교잡종자 예약 생산은 반드시 성 종자관리부문 종자구매, 판매계획의 반입, 반출로 구분해서 포함시켜 소비와 생산을 일치하도록 한다.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엄금한다.
-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교잡종자 경영단위가 다른 성에 가서 교잡종자를 예약 할 시 반드시 소재지구(시) 종자관리부문의 심사동의를 거쳐야 하며, 또 성 종자관리부문에 제출하여 《교잡종자의 출성(出省) 예약생산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이 증명을 소지하고 예약을 받는 성 종자관리부문에 가서 예약 수속을 한다.
- 제5조 예약을 받은 성 종자관리부문은 성 예약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본 성 상황에 근거하여 예약승낙 단위의 생산공급을 배정하고 《교잡종자 예약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각 생산지는 허가증에 의해서 생산공급을 배정한다. 전통적인 예약 협조관리에 의해 예약단위가 예약승낙단위를 지정하여 생산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 교잡종자의 예약생산공급은 일률적으로 계약제를 실시하며, 계약은 예약단위와 예약승낙 단위가 체결한다. 계약서는 쌍방이 각각 원본 한 부씩 소지하는 것 외에 계약을 체결한 후 일 개월 내에 쌍방 성 종자관리부문에 각각 부분 한 부씩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두 성의 교잡종자구매, 판매계획에 포함시킨다. 만약 계약 부분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성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약을 받는 성 종자관리부문은 반드시 성 전체가 접수한 예약생산 계약서를 총괄하여 농업부 종자관리부문에 보고한다.
- 제7조 쌍방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잡종자의 구매, 판매계획에 들어있는 교잡종자의 예약생산공급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에 따라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성 관리부문은 이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계약에 표시된 수량은 1

0~15%의 편차를 허락한다. 불가항력으로 감산했을 경우 예약승낙 단위는 반드시 즉시 예약단위에 통지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감산한 정도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성 종자관리부문에서 조정하거나 경제계약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다.

제8조 성 간 교잡종자 예약생산공급의 예약단위는 반드시 예약승낙단위에게 구매가격의 15%가량의 예약금을 지불하거나 혹은 예약쌍방이 예약금 비율과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성 간 예약생산계획에 포함시킨 교잡종자는 예약승낙 단위가 본 성 종자관리부문에 운송 수속을 신청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시 관련 운송부문에 가서 운송계획을 처리한다. 계획에 없는 교잡종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 종자관리부문의 비준이 없으면 운송수속을 할 수 없다.

제10조 예약단위와 예약승낙단위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종자관리조례》에 관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고 필수적인 증명수속을 완비하며, 법에 의해 생산, 경영하고, 법에 의해 농업, 공상, 물가, 회계 등 부문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 품질과 양을 보증하도록 한다.

제11조 농업부의 종자관리부문은 성 간 교잡종자 예약공급생산계획을 조직하고 협조할 책임을 진다. 또한 각 성 종자관리부문에 협조하여 계약 집행상황을 검사하고 독촉하며, 계약분규를 조정한다. 또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단위에 대해 상황에 따라 비평통보하거나 경제손실 배상을 독촉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벌을 내린다.

제12조 교잡종자 성 간 예약생산공급계획 이외 일시적으로 성과 성사이의 부족 부분을 조절하는 경우, 계획 내에서 마땅히 계약을 실현하고 난 이후에 본 관리방법에 따라 구매 판매 쌍방 성 종자관리 부문이 심사비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3조 본 방법은 공포된 당일부터 집행한다.

농약관리조례

(1997년5월8일 국무원 반포. 2001년11월29일 일부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농약생산, 경영과 사용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농약품질을 보증하고 농업, 임업 생산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사람과 목축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농약은 농업, 임업에 해로운 병, 충, 초와 기타 유해생물을 예방, 퇴치 혹은 통제에 이용됨과 함께 그 목적으로 조제한 식물, 곤충의 생 화학합성 혹은 생물 및 기타 천연물질의 한 물질 혹은 몇 가지 물질의 혼합물을 가리킨다.

전 항에서의 농약은 다른 목적과 장소에 쓰이는 아래 몇 종류를 포함한다.

- (1) 농업, 임업에 해로운 병, 충(곤충, 진드기, 진드기류를 포함), 초와 쥐, 연체동물 등 유해생물을 예방, 퇴치 혹은 통제하는 것
- (2) 창고의 병, 충, 쥐와 기타 해로운 생물을 예방, 퇴치하거나 통제하는 것
- (3) 식물, 곤충의 성장을 조절하는 것
- (4) 농업, 임업상품의 방부제 혹은 신선도 유지에 쓰이는 것
- (5) 모기, 파리, 바퀴, 쥐와 기타 해로운 생물을 예방, 퇴치 혹은 통제하는데 쓰이는 것
- (6) 하천제방, 철로, 공항, 건축물과 기타 장소에 해로운 생물을 예방, 퇴치 혹은 통제하는데 쓰이는 것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농약을 생산하고 경영하려면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에서는 생산 및 사용에 안전하고 고 효율의 경제적 농약을 연구 제조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제5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전국의 농약등기와 농약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의 농업행정주관 부문에 협조하여 본 행정구역 내에서 농약등기를 잘 해나감과 함께 농약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현 급 인민정부와 구역을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문은 행정구역 내의 농약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국무원 화학공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전국의 농약생산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절 지도하며, 감독관리하는 사업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화학공업행정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농약생산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현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농약감독 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2장 농약 등기

제6조 국가에서는 농약등기제도를 실행한다.

농약생산(原藥 생산, 제재 가공과 분류포장을 포괄)과 수입 농약은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농약과 처음으로 수입한 농약의 등기는 아래의 3 단계를 거친다.

- (1) 포장 실험단계: 농약등기의 신청은 우선 그 연구제조자가 포장실험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라야 포장실험을 할 수 있으며, 포장실험 단계의 농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 (2) 임시등기단계: 포장 실험 후 포장실험 시범과 시험 판매를 필요로 하는 농약 및 특수상 하에서 사용 필요가 있는 농약은 그 생산자가 임시등기 신청을 하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농약 임시등기증서를 발급한 후에야 규정한 범위 내에서 포장실험 시범과 시험판매를 할 수 있다.
- (3) 정식등기단계: 포장실험 시범과 시험판매를 거쳐 정식상품으로 유통되는 농약이 될 수 있다. 생산자는 정식등기 신청을 하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농약등기 증서를 발급한 후에야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다. 농약등기 증서와 농약임시등기 증서는 등기유효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등기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생산하거나 계속 중국에서 판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식등기와 임시등기를 거친 농약이 등기유효기간 내에 제조형식이나 함량, 사용범위, 사용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본 조례의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농약등기를 신청할 때 연구제조자, 생산자나 혹은 중국에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등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 농약견본을 제공하거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을 거쳐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 농약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이 규정하고 있는 농약등기 요구에 근거하여 농약의 제 품화학, 毒理學, 약 효과, 잔류, 환경영향, 상표 등 측면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 소속 농약검정기구는 전국의 구체적인 농약등기사업 을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문 소속 농약 검정 기구는 본 행정구역내의 구체적 농약등기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야 한다.

제9조 국무원 농업, 임업, 화학공업, 위생, 양식부문과 전국 공급판매합작총사 등 부 문에서 추천한 농약관리 전문가와 농약기술전문가들로 농약등기심의위원회를 구 성한다. 농약의 정식등기 신청자료는 국무원 농업, 화학공업, 위생, 환경보호부문 과 전국공급판매합작총사의 개별심의회 의견수렴을 거친 후 농약등기심의위원회 의 평가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되면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농약등기증 서를 발급한다.

제10조 국가는 처음 등기를 취득한 새로운 화합물이 있는 농약의 경우 신청인이 제 출한 아직 노출되지 않은 시험수치와 기타 수치에 대해 보호를 실시한다.

제11조 다른 제조업자가 이미 등기한 동일한 농약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자 는 농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농약건본과 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자료를 제공하면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농약등기증서를 발급한다.

제3장 농약생산

제12조 농약생산은 국가농약공업의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3조 농약생산 기업 설립(聯營과 분 공장, 비 농약생산기업이 농약생산기업을 설 립하는 경우)은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기업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 할시 화학공업행정관리 부문의 심의회 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 화학공업행정관 리 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가 기업 설립의 조건 과 심의 혹은 비준기관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다면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 (1) 해당 농약 생산에 상응하는 기술인원과 기술공인이 있어야 함
- (2) 해당 농약 생산에 상응하는 공장, 생산시설과 위생환경을 갖추어야 함
- (3) 국가노동안전, 위생표준에 부합되는 시설과 그에 상응한 노동안전, 위생관 리제도가 있어야 함
- (4) 상품품질표준과 상품품질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함
- (5) 생산 농약이 법에 의해 농약 등기를 취득한 농약이어야 함

(6) 국가환경보호요구에 부합되는 오염방지시설과 조치가 있고 동시에 오염물 배설이 국가와 지방이 규정한 배설표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농약생산기업은 비준을 거친 후에야 법에 근거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14조 국가에서는 농약생산 허가제도를 실행한다.

국가표준이나 업종표준이 있는 농약을 생산할 경우는 반드시 국무원 화학공업 행정관리 부문에 농약생산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표준이나 업종표준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으나 기업 표준은 이미 있는 농약을 생산할 경우는 성, 자치구, 직할시 화학공업행정부문의 심의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 화학공업행정관리 부문의 비준을 거쳐 농약생산 비준서류를 발급한다.

제15조 농약 생산기업은 농약제품 품질표준, 기술규정에 따라 생산하여야 하고, 생산기록은 완전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농약제품 포장에는 상표가 붙어있거나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상표는 농약 포장물에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상표나 설명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농약명칭, 기업명칭, 상품루트번호와 농약등기증서번호 혹은 농약입시등기증서번호, 농약생산허가증서번호 혹은 농약생산비준서류번호 및 농약의 유효성분, 함량, 중량, 상품성능, 독성, 용도, 사용기술, 사용방법, 생산일기, 유효기간과 주의사항 등이다. 농약을 분할하여 포장하였다면 분할포장단위에다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농약제품은 출하되기 전에 품질검사를 거쳐서 제품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품질표준에 불합격한 제품을 출하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농약경영

제18조 아래 단위는 농약경영을 할 수 있다.

- (1) 공급판매합작사의 농약생산재료 경영단위
- (2) 식물보호소
- (3) 토양비료소
- (4) 농업, 임업기술 보급기구
- (5) 삼림 병충해 방지기구
- (6) 농약생산기업
- (7)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경영단위

경영하는 농약이 화학위험 제품에 속하는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경영허가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농약경영단위는 아래의 조건과 관련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구에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라야 농약 경영을 할 수 있다.

- (1) 경영하는 농약에 상응하는 기술인원이 있어야 함
- (2) 경영하는 농약에 상응하는 영업장소, 설비, 창고시설, 안전방호조치와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조치가 있어야 함
- (3) 경영하는 농약에 상응하는 규정제도가 있어야 함
- (4) 경영하는 농약에 상응하는 관리제도와 관리수단이 있어야 함

제20조 농약경영단위는 농약을 구입할 때 농약제품과 제품의 상표 혹은 설명서, 제품품질합격증과 잘 대조하여야 하고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농약등기증서나 농약임시등기증서가 없고, 농약생산허가증이나 농약생산 비준서류가 없으며, 제품품질표준과 제품품질합격증이 없고, 검사에서 불합격한 농약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21조 농약경영단위는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농약 비축사업을 하여야 한다. 농약의 저장 보관을 위해 마땅히 농약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창고 보관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농약 경영단위가 농약경영을 할 경우 품질과 농약제품 및 제품상표 혹은 설명서, 제품품질합격증이 오류가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농약 경영단위는 농약사용단위나 개인에 대해 농약의 용도, 사용방법, 용량, 중독 구급조치와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제품품질보증기한이 지난 농약제품은 성 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문 소속 농약검정기구의 검사를 거친 후 표준에 부합되면 규정기한 내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이 경과한 농약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사용방법과 용량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장 농약사용

제24조 현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예방위주, 종합방제”의 식물보호방침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고 효율적인 농약을 보급하고, 훈련활동을 전개하고, 농민들의 농약사용기술수준을 제고하고, 병충해의 예측예보사업을 충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농약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지구의 농업 병, 충, 초, 쥐 재해의 발생상황에 근거하여 농약순환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농약을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병, 충, 초, 쥐의 약물내성을 감소하고 방제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제26조 농약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농약의 방독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약을 조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와 안전방호사업을 잘하여야 하고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약중독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농약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리적 사용에 대한 국가유관 규정을 준수하고, 정해 놓은 용량, 회수, 방법과 안전간격기간에 근거하여 약을 사용하고 농부산물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극독, 고독 농약은 위생해충의 방지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채소, 과일, 차나 중초약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농약을 사용할 때 환경보호와 유익생물과 진귀한 종의 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농약으로 물고기, 새우, 새, 짐승을 독해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29조 임업, 양식, 위생행정부문에서는 임업용, 양곡저장용, 위생용 농약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규정

제30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농약생산허가증이나 농약생산비준 서류를 취득하지 않고 농약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농약등기증서 혹은 농약임시등기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생산하고 경영하며 수입해서는 안 된다.

농약을 수입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주나 대리인은 세관에 취득한 중국농약등기증서나 농약임시등기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1조 가짜 농약을 생산, 경영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래 농약은 가짜 농약이다.

- (1) 비 농약으로 농약을 사칭하거나 어떤 종류의 농약으로 다른 종류의 농약을 사칭하는 경우
- (2) 함유한 유효성분의 종류, 명칭과 제품상표나 설명서에 설명한 농약의 유효성분의 종류, 명칭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32조 저질농약의 생산, 경영과 사용을 금지한다.

아래 농약은 저질농약이다.

- (1) 농약제품 품질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2) 사용효능을 실효한 경우
- (3) 약해를 초래하는 유해성분이 섞여있는 경우

제33조 제품포장에 상표가 없거나 상표가 결점을 지니고 명확하지 않는 농약의 경영을 금지한다.

제34조 등기하지 않은 농약은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하거나 광고설치나 부착을 금지한다. 농약의 광고내용은 농약등기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고 광고법과 국가유관 농약광고관리 규정에 따라 심의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35조 등기를 한 농약이 등기유효기간 이내에 농업, 임업, 사람과 가축의 안전, 상태환경에 대해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농약등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등기철회를 선포한다.

제36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국가에서 명확하게 생산을 금지하였거나 등기를 철회한 농약을 생산,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현 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 관련부문은 농부산물의 농약 잔류량 검사작업을 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8조 농약 잔류량이 표준을 초과한 농부산물의 경우, 판매를 금지한다.

제39조 가짜농약, 저질농약, 기한이 경과한 농약, 사용이 금지된 농약, 폐기농약포장과 기타 농약을 포함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환경보호 법률, 법규와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 아래의 행위는 형법의 불법경영죄 혹은 위험물 사고죄의 규정에 따라 범에 의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을 한다.

- (1) 농약등기증서 혹은 농약임시등기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함부로 농약을 생산하고 경영하거나 혹은 이미 등기를 철회한 농약을 생산하고 경영한 경우에는 생산, 경영을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2) 농약등기증서 혹은 농약임시등기증서의 유효기간이 넘었는데도 계속 등기하지 않고 임의로 농약생산을 계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속경영 수속을 정한 기한 내에 보충하여 수속하게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지나도 보충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는 원래의 증서발급기관에서 생산경영을 멈추도록 명령하고 농약등기증서나 농약임시등기증서의 등기기록을 취소한다.
- (3) 제품포장에 상표가 없거나, 상표에 흠결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함부로 상표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경고를 주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을 때는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4) 국가의 유관 농약 안전사용 규정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위해 결과에 근거하여 경고를 주거나 3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의 4개 항으로 열거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였다면 법에 의하여 행사책임을 추구한다.

제41조 아래의 행위는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화학공업행정관리 부문에서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 (1) 비준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농약생산기업을 개설하거나 농약생산허가증이나 농약생산 비준서류를 취득하지 않고 농약을 임의로 생산하면 생산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2) 농약생산허가증이나 농약생산비준서류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농약을 생산하면 생산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없으면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황이 엄중하면 원래의 증서발급기관에서 농약생산허가증이나 농약생산비준서류의 등록을 취소한다.

제42조 농약등기증서 혹은 농약임시등기증서, 농약등기증서번호 혹은 농약임시등기증서번호, 농약생산허가증 혹은 농약생산비준서류, 농약생산허가증번호 혹은 농약생산비준서류번호를 위조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형법의 불법경영죄 혹은 국가기관의 공문, 증명서류, 도장을 위조, 변조, 매매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

주하여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농약등기증서 혹은 농약임시등기증서를 회수하거나 철회하고, 공업행정관리 부문에서 농약생산허가증 혹은 농약생산 비준서류를 회수하거나 철회하며, 농업행정주관부문 혹은 공업행정관리부문에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없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 가짜농약, 저질 농약을 생산하거나 경영하면 농업행정주관부문이나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관련 부문에서 가짜농약이나 저질농약 그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황이 엄중하면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농약등기증서나 농약임시등기증서를 회수하고, 화학공업행정관리부문에서는 농약생산허가증이나 농약생산비준서류를 회수하며, 범죄를 구성하였다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3조 가짜농약, 저질농약을 생산, 경영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허위저질제품죄 혹은 허위저질농약죄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행정주관부문 혹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다른 관계부문에서 가짜농약, 저질농약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혹은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농약등기증 혹은 농약임시등기증을 회수하며, 공업제품 허가관리부문에서 농약허가증 혹은 농약 생산비준 문건을 회수한다.

제44조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농약을 생산하고 경영하거나 농약광고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의 불법경영죄 혹은 허위광고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공상행정관리 기관에서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을 한다.

제45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농약중독, 환경오염, 약해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기타 경제적 손실을 발생케 하면 법에 근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46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농약의 생산, 저장, 운수과정, 사용과정 중에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들은 형법의 위험물사고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47조 농약관리인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사로운 정에 의해

불법행위를 하고, 뇌물을 요구하고 받았을 경우 형법의 직권남용죄, 직무소홀죄 혹은 수뢰죄의 규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장 부 칙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혹은 참가한 농약과 관련된 국제조약에 본 조례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한다고 미리 밝힌 조항은 제외한다.

제48조 본 조례는 1997년5월8일부터 시행한다.

농업부 비료, 토양개량제 및 식물생장조절제 검사등기 잠정규정

(1989년9월6일 농업부에서 반포, 1997년12월25일 농업부령 제39호에 근거하여 수정)

제1조 비료, 토양개량제 및 식물생장조절제의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증산을 보증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함과 함께 사람과 가축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상품품질감독시행방법》 및 관련법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농업에 쓰는 아래 제품들은 모두 본 규정의 관리범위에 속한다.

- (1) 식물양분 제공을 위주로 하는 유기, 무기비료유형
- (2) 토양 이화학적성상의 개선을 위주로 한 토양개량제유형
- (3) 식물생장발육조절을 위주로 한 식물생장조절제유형
- (4) 상술한 두 가지 혹은 3가지 작용을 겸한 기타 제제 등

논밭에 장기간 사용하였고, 국가의 품질표준에 부합되는 아래품종의 비료는 등기를 면제한다. 1. 황산암모늄, 2 요소, 3. 질산암모늄 4. 氰銨化鈣, 5. 인산암모늄 (인산1암모늄, 인산2암모늄) 6. 질산인산 비료, 7. 과인산 마그네슘, 8. 염화 칼륨, 9. 유산 칼륨, 10. 질산 칼륨, 11. 염화 암모늄, 12. 탄산수소나트륨, 13. 칼슘 마그네슘 인산 비료, 14. 수입 삼원 복합비료.

제3조 비료, 토양조절제, 식물생장조절제는 반드시 농업부에서 지정한 단위의 검사와 정규 포장시험을 거쳐 그 효익 및 무독, 무해가 충분히 증명되어야만 등기를 비준할 수 있다.

제4조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를 생산 판매하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더라도 제2조 규정에 의해 등기가 면제되는 비료품종 이외에는 검사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비준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외국상이 중국에 판매하기 위해 보내온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도 검사등기를 하여야 한다. 검사등기를 거치지 않은 제품은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 생산국에서 등기, 판매가 허락되지 않거나 혹은 이미 도태된 제품은 일률적으로 등기해주지 않는다.

제5조 농업부는 국가 화학비료품질감독검사측정 센터(북경)에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의 등기수속을 처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것은 농업부에서 제품등기허가증을 발급한다. 등기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6조 국내외 생산업체에서 등기신청을 제출할 때 아래 자료와 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자료(1식4부)

- ① 제품개괄설명: 이름, 성분, 및 주요 이화학적 성질
- ② 제품분석방법: 기술지도, 직업규칙, 검사방법
- ③ 생산기술공정개요: 원료, 방법원리, 기술공정 노선
- ④ 독리학자료: 급성, 아(亞)급성 시험, 기형, 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시험결과
- ⑤ 잔류 및 그 환경에 대한 질적 영향: 토양, 물, 농산물 등의 잔류 및 생태계 통에 대한 오염과 영향
- ⑥ 응용효과 및 기술: 상이한 3개 지구에서 행한 2년 이상의 비료 포장시험 자료, 안정 용량 및 사용기술
- ⑦ 등기상황: 생산국에서 비준한 제품시험보고 및 생산판매 관련증명, 상표 표기 등록 및 설명서, 주의사항 등

(2) 건본

- ① 건본을 취하는 규칙에 따라 대표성이 있는 표본과 표준표본을 제공한다.
- ② 제공수량 매 품종은 반드시 3개 批호가 있어야 매 批는 화학실험수량의 3~5배이다.

제7조 국가 화학비료 품질 감독검사측정 센터(북경)는 농업부의 요구에 근거하여 새 품종, 새 제조형식의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에 대해 응용효과 및 잔류시험을 진행한다. 농업부 지정 성 급 토양비료기술단위는 2년 이상 기한의 시험을 진행한다.

제8조 명칭, 상표, 성분, 제조형식을 변경한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는 국가 화학비료 품질 감독검사측정 센터에 따로 검사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등기 신청에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수속비와 검사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외국생산업체는 일률적으로 미화로 지불한다. 동시에 등기관련 서식을 작성한다.

제10조 검사와 심사비준 단위는 신청단위가 제공한 기술자료와 샘플에 대해 비밀제도를 실행한다.

제11조 이미 등기하여 증서를 발급 받은 제품에 품질문제가 발생하면 사용농가는 그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국가 화학비료 품질 감독검사측정 센터(북경)는 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등기를 거치지 않은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는 중국의 신문간행물, 출판물, 방송, TV 등 선전매체에 광고하지 못한다.

제13조 농업부 비준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개인이나 단위도 국외 생산업체 및 그 대리인이 중국경내에서 비준을 얻지 못한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를

210 중국농업법령해설연구

임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시험을 임의대로 조직하지 못한다. 위반자는 일체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집행한다. 등기를 하지 않은 비료, 토양조질제, 식물생장조질제는 1년 이내에 등기수속을 보충하여야 한다. 기한이 되어도 등기수속을 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여 가짜, 저질제품으로 대하여 국무원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본 규정의 해석권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에 속한다.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에 대해 검사, 등기 및 상품증명 발급에 관한 통지

(1994년 2월 19일 농업부 반포 및 1997년 12월 25일 농업부 제39호 문건 근거 수정)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에 포함된 시 농업(임업, 목축업, 어업, 개간)청(국):

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저질비료가 농민에게 해를 끼치고 농업에 주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에 우리 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연합으로 반포한 工商市字(1993) 제373호 문에서 명확히 규정한대로 비료 농약 검사 등기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며, 비료, 농약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반드시 농업부에서 수속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1989년부터 우리 부에서 비료, 토양조절제, 식물생장조절제 검사등기사업을 전개한 이래 각급 정부와 유관단위의 대대적인 지지와 시험검증을 거쳐 우리 부는 7개 유형의 46개 제품에 대한 등기를 허락하여, 그중 1개 제품은 정식등기로 45개 제품은 임시등기를 하였다. 실천이 증명하듯이 등기를 거친 제품의 품질은 보증되며, 농민들이 신임하여 농업생산 상에서 일정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제2기 비료, 토양조절제, 식물생장조절제 검사등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우리 부의 심사를 거쳐 현재 5개 제품에 대한 정식등기와 13가지 제품을 임시등기를 허가하였으며, 동시에 이에 대해 공고하였다. 정식등기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임시등기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증명을 발급 받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각급 농업행정부문에서는 반드시 우리 부의 문건에 의해 규정된 관리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방에서 권한을 초과하여 등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무효로 처리하며, 등기를 하지 않고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비료는 일률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바라건대 각 성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미 등기를 거친 제품도 현지실정에 맞게 시험, 시범 및 보급사업이 엄격하게 잘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비료, 농약, 종자시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1993년 11월 16일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농업부에서 반포)

각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에 포함된 시 공상행정관리국, 농업 청(국):

농업생산을 보증하고 농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근 몇 년 사이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가짜, 저질의 비료, 농약, 종자 판매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유관조례정신에 입각하여 비료, 농약 종자시장 관리를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 (1)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반드시 《국무원에서 비료, 농약, 농막(農膜) 경영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국 발 [1992] 60호)의 유관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비료, 농약, 경영 단위의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등기 심사 허가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상품비료 (요소수에 치는 비료, 종자와 섞는 비료, 토양조절제, 미생물비료, 유기·생물비료 등 포함, 이하 같음)나 농약(살충, 살균, 잡초제거, 쥐약, 식물생장조절제, 위생살충제품 등 포함, 이하 같음) 경영하거나 혹은 직접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전문분야를 신청하여 등록허가를 받은 후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 종자경영에 종사하려면 종자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의 농업행정부문의 종자관리기구에서 종자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증에 의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기를 한 후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매년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있는 비료, 농약, 종자경영단위에 대한 1차 정비를 하도록 한다. 이미 비료, 농약, 종자경영을 허가 받은 단위에 대해서는 각 시(지), 현(구)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조사 보고하여야 하며, 성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재심사를 진행한 다음 심사 상황에 대한 총괄결정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위법경영을 척결할 의지를 분명히 하며, 농업행정부문은 적극적으로 공장행정관리기관과 협조하여 각 분야 사업을 잘해야 한다.

- (2) 비료, 농약의 경영은 세 가지 형태로 제한한다.

- ① 농업생산자료회사와 각급 공급판매합작사
- ② 농업기술보급부문[토양비옥, 식물보호용 비료, 농약과, 농업기술보급소(중심)가 기술보급과 유료 기술서비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유상으로 충당하

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비료, 농약에 한함]과 농간부문의 개간구 직접 공급[직접 공급하는 비료, 농약에 한함]

- ③ 비료, 농약 생산기업[자체판매 하는 비료, 농약으로 제한됨].

그 외의 임의의 단위와 개인은 비료, 농약을 경영할 수 없다. 위생살충제의 경영은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 농작물종자는 《종자관리조례 농작물종자실시규칙》 규정에 따라 여러 형태의 경영을 실행할 수 있다. 주요농작물 교잡종자 경영은 현금 이상 (현을 포함) 인민정부가 지정한 경영 단위에서만 허용된다.

- (3). 동기비준을 받아 비료, 농약을 생산 경영하는 기업법인이 지사를 분리 증설하거나 연합경영단위를 개설 할 경우 반드시 절차에 따라 다시 그 경영 범위를 심사비준 받아야 한다. 동기를 거쳐 비료, 농약 경영단위가 위탁한 대리구매, 대리판매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원 동기 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한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며, 그 대리판매, 구매는 다만 농가에 대해서만 허락되고 도매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개체 공상호(가구), 사영기업, 개인은 비료, 농약에 대한 경영을 할 수 없다. 교통이 불편한 지구에서는 기층 판매 조직인 개체 공상 호에서 소량의 비료를 경영할 수 있으나 반드시 당해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과 농업행정 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비료, 농약을 생산하는 기업(가공과 분류 포함)이 원료가공방식으로 비료, 농약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료가공 단위의 경영자격을 검사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유관 규정에 따라 경고, 벌금부과를 하거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영업허가증을 차압하거나 완전히 몰수하는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 (4). 동기수속을 밟지 않고 유관 증명이 없이 비료, 농약, 농작물종자를 경영하거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업법인동기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영업정지, 영업 허가증의 차압, 몰수 등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 (5) 비료, 농약 검사동기제도와 농작물품종 심사제도를 엄격히 진행한다. 비료, 농약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반드시 농업부에 신청하여 동기절차를 밟아야 하며(일반적인 비료품종은 동기를 면제함, 부록 참조), 검사소에서 필요한 조사와 표본채취를 한다. 검사와 심사합격을 받은 후에 동기를 비준하며, 농업부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동기를 비준한 상품과 공장 명부를 공고한

다. 각지의 농업행정부문은 반드시 농업부 문건에서 규정한대로 엄격하게 등기수속을 밟아야 하며 지방에서 권한을 초과하여 등기하였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무효로 처리한다.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비료, 농약은 일률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아직 심사비준 결정을 거치지 않고 비준과정 중에 있는 농작물품종을 생산 보급하거나 장려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재 혼합 및 배합비료는 반드시 성급 토양비료시험측정센터의 검사합격을 거쳐 등기허가를 받은 후에야 보급할 수 있다. 분류하여 포장한 비료, 농약제품은 반드시 농업부에서 등기를 거친 제품 이여야 하고, 성급 농업행정부문에 신청하여 분류포장등기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 (6) 등기(분류 포장등기 포함)와 공고를 거치지 않고 비료, 농약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급 이상의 농업행정부문이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통보비평을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법에 따라 제품과 위법소득을 봉쇄, 추적, 몰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허가증을 철회한다. 심사통과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 신품종을 경영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농업행정부문은 《종자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고, 종자몰수와 위법소득몰수,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하게 한다.
- (7) 모든 신제품 비료, 농약이나 신품종 농작물은 반드시 시험, 시범, 보급의 3단계 원칙을 지키며, 현지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사용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되 맹목적인 보급을 방지하여야 한다.
- (8) 비료, 농약, 종자를 생산 판매하려면 반드시 제품품질합격증이 있어야 하며, 중요한 유효성분의 함량, 제품등기증 번호, 품질보증기관과 사용설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장에서 출고된 비료, 농약제품의 포장물에 표시된 양은 반드시 실물과 부합되어야 하며, 다른 명칭의 것이나 비슷한 성분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제품설명이나 포장물에 표시된 것과 실물이 부합되지 않으면 가짜 저질제품으로 간주한다. 품질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종자, 질이 떨어지는 종자 혹은 잡질을 섞은 가짜 종자일 경우에는 농업행정부문의 종자관리기구에서 종자를 차압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넘겨 처벌을 부과하게 한다. 제품품질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생산과 판매를 정지시키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 (9) 비료, 농약, 종자 생산자, 경영자는 위법적인 판매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거나 계획지표를 바꾸어 판매하거나 화표(貨票)를 발급하거나, 투기행위를 하거나, 가짜상표, 명표 등 정당하지 못

한 경쟁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들 규정에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기관은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통보비평하거나, 제품판매를 제한하거나, 강제적으로 제품을 거두어들이며,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투기에 이용된 물자는 몰수하며, 판매대금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하며, 영업허가증을 철회하는 등 처벌을 한다.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손실을 배상하게 한다.

- (10)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과 농업행정관리부문은 본 지구의 비료, 농약, 종자 광고에 대해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비료, 농약, 종자에 관한 광고가 나가기 전에 심사사업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농약광고를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농업행정부문에서 비준한 《농약광고심사표》을 제출한 후에야 광고를 할 수 있다. 농약광고의 문자, 언어 및 화면에 포함되는 의미는 심사비준을 거친 내용을 초과하지 못하며, 안전성에 관해 단언(斷言)을 하거나 다른 제품을 폄하해서는 안 되며, 비평과 농약안전사용규정을 위반한 문자, 언어, 화면 등에 대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비료, 종자의 광고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광고관리조례》 등 법규에 딸 광고가 나가는 것을 정지시키거나 공개적으로 다시 고치거나, 통보비평, 위법소득 몰수, 벌금, 영업을 바로잡고, 영업 허가증 혹은 광고경영허가증을 철회하는 등 처벌을 한다.
- (11) 각 급 농업행정부문에서는 반드시 국무원의 유관규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비료, 농약, 종자의 품질 검측과 검정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내년 첫째 계절에 성, 시, 현의 토양비료소, 농약검정소와 종자기구는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본 지에서 판매하는 비료, 농약, 종자에 대해 종합적인 품질검사를 진행한다. 농업행정부문의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비료, 농약, 종자는 일률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검측과 검정에서 거친 가짜저질과 독해 유독 물질이 포함된 비료, 농약, 농작물종자로 판명된 것은 반드시 제때에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 (12)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과 농업행정부문은 본 지구의 실제상황에 맞게 본 통지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집행하며, 그 집행상황을 제때에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부: 등기 면제되는 일반적 비료품종 명칭

첨부:

등기 면제되는 일반적 비료품종

논밭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했던 경우로서 국가품질 표준에 부합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비료 품종은 등기를 면제한다.

1. 황산암모늄, 2 요소, 3. 질산암모늄 4. 氰銨化鈣, 5. 인산암모늄(인산1암모늄, 인산2암모늄) 6. 질산인산 비료, 7. 과인산 마그네슘, 8. 염화 칼륨, 9. 유산 칼륨, 10. 질산 칼륨, 11. 염화 암모늄, 12. 탄산수소나트륨, 13. 칼슘 마그네슘 인산 비료, 14. 수입 삼원 복합비료.

비료, 농약, 종자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통지

(1995년 3월 20일 농업부, 국가공상국에서 반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에 포함된 시 농업 청(국), 공상행정관리국:

비료, 농약, 종자는 중요한 농업생산자재로서 눈앞에 있는 봄 농사계절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비료, 농약, 종자 등 제품의 품질관리와 시장관리를 강화하고, 광대한 농민군중의 이익을 수호하고, 농업생산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무원[1994] 45호 문건의 정신에 따라 특별히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 (1) 비료, 농약, 종자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과 농업 부문은 두개 국이 연합하여 하달한 [1993] 373호 문건의 정신에 따라 열심히 이행하고, 동시에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공상공자 [1995] 제23호 문건의 정신에 따라 농업생산자재에 관한 시장관리를 한층 강화하며, 가짜를 축출하는데 역점을 둔다. 각 지구는 반드시 봄 농경기간에 비료, 농약, 종자를 중심으로 농업자재에 대한 대 검사를 한 차례 실시하여야 한다. 농업행정주관부문과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고, 면밀히 구상하여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기술감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물가, 계량 등 부문과 협조하여 지방보호주의의 폐해를 제거하고, 가짜 저질 상품을 적발하고 가짜저질상품의 발생원인에 대한 중점적인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2) 경영방침을 바로잡고 농업물자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수호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국무원의 [1994] 45호 문건과 종자관리조례에 입각하여 현재의 유통경로를 바로 잡고, 경영범위와 제품품질 관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해당 증거가 없이 생산하거나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가짜 저질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농업자재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수호한다.
- (3) 농가기업은 자체검사와 품질관리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에 소속된 농업자재생산기업과 판매단위는 우선적으로 자체조사와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출하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제품은 출하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출하하게 해서는 안되며, 품질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당사자와 영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 (4) 각급 농업부문은 공상행정관리기관 등 부문과 협조하여 농업생산자재의 품질 검측과 검정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구와 설비, 기술인

원의 우수함을 충분히 발휘하여, 유관부문 합동으로 규모가 크고 품질 문제를 표출하는 농업자재상품에 대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표본검사를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품질감독부문의 검사에서 불합격이 된 비료, 농약, 종자제품은 일률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 (5) 심사등기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 지에서는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농업부 연합으로 반포한 373호 문건의 정신에 비추어 비료, 농약, 종자의 광고등기 관리를 성실히 하고, 심사등기를 거치지 않은 비료, 농약, 종자는 일률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보급할 수도, 광고 선전을 진행할 수도 없다.
- (6) 가짜 저질 농업자재 생산, 판매 안전에 대한 조사를 진지하게 하여야 한다. 각 지에서 가짜 저질농업 자재들이 발견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봉쇄하고 엄격하게 처리한다. 3가지 증서(등기증, 생산증, 출하증)를 구비하지 않은 제품, 가짜상표를 붙여 생산 판매하는 제품, 공장이름, 공장주소, 유효기간이 넘은 것을 속이는 제품, 제품품질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각급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반드시 국가의 유관법규에 따라 처벌을 하며, 동시에 통보를 한다. 사안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각 지에서 대규모 검사를 진행하는 중에 검사사업의 전개상황을 농업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중대한 사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상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6월 중순에 각 지구 농업부문은 검사상황을 총괄하여 농업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한다.

농자재시장관리사업 지원강화에 관한 통지

(1997년3월31일 농업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반포)

(1997년12월25일 농업부령 제39호에 근거하여 수정)

각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에 포함된 시 농업(농림목어업)청(국), 공상행정관리국:

최근 몇 년 사이 《비료유통체제를 가일층 완벽하게 하는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6] 16호)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농업부의 《비료, 농약, 종자시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공상시자[1993] 제373호)정신을 관철하고 실현하도록 각급 공상행정관리,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방대하고 세밀한 사업을 하였으며, 농업자재시장 관리를 가일층 강화하였고, 가짜 저질 비료, 농약, 종자를 축출하는 역량을 증가하여 농업자재시장감독관리사업에서 초보적인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 경우 비료, 농약관리사업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가짜저질 농자재품이 농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한다. 많은 농민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고 농업생산을 순조롭게 해 나가기 위해 지금부터 바로 농업자재관리시장관리사업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가짜 척결”과 봄농사를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봄농사가 가까워짐에 따라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과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봄농사 농사준비를 중심으로 한차례 농업자재시장의 법 집행 상황 대 점검을 조직하여 “가짜를 축출하여” 봄농사를 보호하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첫째는 비료, 농약 등에 대한 농업자재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현재 문제가 상대적으로 표출된 복합비료, 과인산 칼슘, 칼슘 마그네슘 인산 비료와 농약혼합제 등 제품에 대해 전문 항목 검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둘째는 비료, 농약, 종자 경영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비준하여야 한다. 불법으로 농업생산자재를 경영하는 불법행위를 제지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셋째는 가짜 저질자재제품을 만들어 파는 원조를 축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가짜저질제품을 제조하고 파는 중점지구와 장소에 잠입하여 세밀한 조사를 진행한다.

각지 공상행정관리기관과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밀접히 협조하여 각자의 특징을 발휘하고, 이 활동이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활동전개과정에서 국가의 규정에 따라 불법경영, 예를 들면 허가증 없이 생산하거나 영업허가증

없이 경영하는 등 행위를 엄금하여야 한다. 경영제품등기증서, 생산허가증, 품질 합격증이 불완전한 제품과 품질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제품을 경영하는 행위 및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위조하거나 제품경영단위 명칭, 주소, 유효기간을 고치는 행위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하며, 불법으로 비료, 농약을 도매하고 가짜농업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여야 한다. 정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법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각지는 활동 전개상황을 제때에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농업부는 각지에서의 사업 전개상황을 근거로 인원을 조직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에 보내어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금후 이 활동은 하나의 제도로 하여 매년 1~2차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비료, 농약 등기관리 및 종자경영관리를 가일층 완벽하게 한다. 비료, 농약 검사 등기제도 및 종자경영관리제도는 농업자재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과학적 사용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이다. 각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은 현실 정세의 발전과 실제상황을 참작하여 등기제도를 가일층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 (1) 등기 후 제품의 품질에 대한 추적검사를 강화한다. 매년 봄갈이와 가을파종 이전에 이미 등기한 비료, 농약제품 품질에 대해 견본검사를 한다.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정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내에 개선하여 품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가짜 저질 농업자재상품이 시장에 유입되어 농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엄격히 방지하여야 한다.
 - (2) 종자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종자관리조례》 등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각지는 계속 “여섯 번 조사하고 세 번 바로잡는” 활동을 진실로 전개하고, 종자품질을 충실히 보증하여야 한다.
 - (3) 월권 등기행위를 청산한다. 성 급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본 성에서 생산하는 복혼합비료, 배합비료 및 廠土調酸劑류 제품의 등기관리와 분리포장 농약제품의 등기관리에 있어 권한을 넘어서 등기하는 것을 엄금한다. 각 성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이미 등기한 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하여 권한을 초월해서 등기한 제품은 시정하여야 한다.
3. 유효조치를 채택하여 농업자재시장관리의 역량을 확대한다. 각지는 적극적으로 유효한 관리방법을 탐색한다. 예를 들면 농업자재시장 감독원제도,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제품 품질의 검사, 샘플을 남겨 검사에 대비하는 것, 제품신용카드 등과 같은 제도로써 비료, 농약시장유통이 질서 있는 관리체도에 들어서게 한다.

농업자재시장 감독원은 정부 행정주관부문에 협조하여 농업자재시장 감독관리

를 전개하는 인원이다. 주요직책은 국가의 유관 농업자재시장관리 법규, 정책을 선전하고, 제때에 관리부문에 농업자재시장상황을 통보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집행부문에 보고하고 협조하여 조사하며,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각지는 점차적으로 농업자재시장 감독원 제도를 수립하고, 확정된 시장 감독원에 대해 농업자재시장관리의 관련규정에 따라 직책훈련을 시키고, 농업자재시장 감독원의 업무수준과 정책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각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인원과 기술의 우수성을 발휘하여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진행하는 시장의 농업자재상품 품질 감독관리사업에 협조한다.

4. 농업 “3 소(三站)”의 서비스기능을 충실히 강화한다. 실천에서 증명되었듯이 농업 “3 소”가 농업기술보급사업과 결합하여 화학비료·농약을 경영하고, 과학적 시비와 농약이용 수준을 제고시키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 “3 소”는 화학비료경영의 보조경로로서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보급, 유상서비스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각지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적극적으로 농업 “3 소”의 농업자재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제때에 등기처리를 한다.

각지 농업 “3 소”는 자체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을 엄격히 집행하며, 경영행위를 규범적으로 하고, 농업기술보급과 결합하여 서비스사업을 효과적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첫째는 농업생산발전수요에 근거하여 비료, 농약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야 하고, 품종구조 및 자원배치방안을 효과적으로 수립하여 정부와 관련부문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는 현지에서 생산한 것과 외지에서 들어온 비료, 농약 등 농업자재제품에 대해 품질과약을 하여야 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법률집행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는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추천하며, 선진적인 시비와 농약사용기술을 보급하여야 한다. 넷째는 등기를 거치지 않은 것과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 “3가지 불가(三不)”를 통보하여야 한다. 즉, 합작생산에 참가하지 못하고, 사용을 위한 보급을 하지 못하며, 제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작물 병충예보 관리 잠정방법

(1993년 1월 15일 농업부 반포)

제1조 농작물병충(잡초와 쥐해를 포함)에 대한 예보, 경보 반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병충 예보 혹은 경보의 반포는 방송, 텔레비전, 신문 등 공중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병충 예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농작물병충 예보와 경보는 통일적인 발령제도를 실행하고, 각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 소속된 병충예측기구에서 발령한다. 기타 조직이나 개인은 임의의 방식으로 사회, 농민에 대해 마음대로 병충 예보하거나 경보를 진행할 수 없다.

제4조 농작물병충 예보의 중점은 양식, 면화, 기름, 과일, 채소, 차, 뽕나무, 사탕 등 주요작물의 병충과 특별히 대면적 유행성 병해와 원거리 이동성 해충에 대한 예보에 둔다. 각급 식물보호소는 조사와 엄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을 진행하고, 제때에 정확하게 예보하고, 유관영도부문에서 방재정책을 제정하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적시 방재토록 지도한다.

제5조 농작물병충 예보는 단기(방재적기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중기(10일부터 30일까지), 장기(30일 이상), 초장기(과년도 혹은 몇 년) 예보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돌발성, 폭발성 병충에 대해 경보를 발령한다. 성급 병충측정기구는 중, 장(초장)기의 예보를 중점적으로 발령하고, 현급 병충측정기구는 주요하게 단기에보와 경보를 발령하며, 향급 농업기술소는 현 병충측정기구에서 발령한 예보에 근거하여 본 향의 단기적인 병충예보를 보충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과학연구소, 학교단위 및 학술단체와 개인이 농작물병충예보의 기술과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격려하고, 그 연구에서 나온 결론과 의견을 병충측정기구나 유관주관부문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매체거나 기타 형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령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각급 농업주관부문은 병충측정기구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이 제공한 병충예보 의견을 제때에 당해 지역 병충측정기구에 분석연구자료를 제공하며, 만약 비교적 큰 의견차이가 있으면 당해 지역 농업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사실을 바르게 확인하여야 한다. 각 지에서 방재준비와 정책결정을 할 경우 병충측정기구의 예보를 주요근거로 삼는다.

제8조 신문선전부문은 병충측정기구에서 발령한 것 외에 기타 조직이나 개인이 제공한 병충예보를 발령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상술한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사회에 공개적으로 병충예보나 경보를 발령하여 농업생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 각급 농업행정주관부 문은 책임을 추궁할 권한이 있다.

제10조 본 방법은 농업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1조 본 방법은 공포된 당일부터 실시한다.

3. 축목·수의분야 주요 법령

- ◇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 226P
- ◇ 가축약품관리조례 / 235P
- ◇ 가축약품관리조례 실시세칙 / 243P
- ◇ 종축금관리조례 / 252P
- ◇ 종축금관리조례 실시세칙 / 256P
- ◇ 6대도시 유류(乳類) 발전항목 관리 잠정조례 / 261P
- ◇ 가축가금방역 조례 / 265P
- ◇ 가축가금방역 조례 실시세칙 / 269P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1997년7월3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동물방역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역병을 예방, 규제, 박멸하여 양식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람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동물방역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입국, 출국하는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법에서의 동물은 가축가금과 인공적으로 사육하고 합법적으로 잡은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의 동물제품은 동물의 생가죽, 털, 정액, 배태, 종자 알 및 가공을 거치지 않은 동체, 지방, 장기, 혈액, 털, 뼈, 뿔, 머리, 발 등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일컫는 동물역병은 동물의 전염병,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본 법이 말하는 동물방역은 동물역병의 예방, 규제, 박멸과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을 포함한다.

제4조 동물을 도살할 경우는 본 법에 따라 그 동체, 머리 발과 내장에 대한 검역, 감독을 실시한다. 검역을 거쳐 식품으로 합격한 것은 그 위생검사, 감독을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국가는 동물역병에 대해 예방 위주의 방침을 실시한다.

제6조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은 전국의 동물방역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동물방역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속의 동물방역감독기구는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한다.

군대의 동물방역감독기구는 군대의 현역동물 및 군대에서 사육하는 자체용도의 동물에 대한 방역사업을 책임진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사업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는 동물방역의 과학연구를 격려 지지하고, 선진적인 과학연구성과를 지도하고 동물방역의 과학지식을 보급하여 동물방역수준을 높인다.

제9조 동물방역사업, 동물방역과학연구 가운데서 성적이 좋고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인민정부 혹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이 표창한다.

제2장 동물역병의 예방

제10조 동물역병은 양식업 생산과 인체건강의 손해 정도에 근거하여 본 법이 규정 관리하는 동물역병을 아래 3가지로 나눈다.

- (1)첫째 유형의 역병은 사람과 가축에게 엄중한 손해를 끼쳐 긴급하고 엄격한 강제예방, 규제, 박멸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 (2)둘째 유형의 역병은 경제적 손실이 엄중하여 엄격한 규제, 박멸조치와 확산을 방지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 (3)셋째 유형의 병역은 자주 발생하여 늘 볼 수 있고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쳐 규제와 정화가 필요한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유형 역병의 구체적인 병 종류 목록은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 부문이 규정하고 공포한다.

제11조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부는 국가 동물역병예방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부는 국내외 동물검역의 정황과 양식업의 생산보호 및 인체건강의 수요에 근거하여 제때에 동물역병예방방법을 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국가는 양식업생산과 인체건강을 엄중하게 위해하는 동물역병에 대해 면역계획제도를 실행하고 강제면역을 실시한다. 강제면역을 실시하는 동물병역의 병 종류 목록은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부에서 규정하고 공포한다.

강제면역 이외의 동물병역을 예방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 행정관리부부 계획을 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12조 국가는 양식업생산과 인체건강을 엄중하게 해치는 동물역병을 예방하고 박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물역병의 예방과 박멸에 필요한 약품, 생물제품과 관련물질은 적당한 량의 비축이 있어야 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넣어야 한다.

제13조 동물방역감독기구는 동물병역예방에 대한 선전교육과 기술지도, 기술배양,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고 동물역병 면역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향, 민족 향, 진의 동물방역조직은 동물방역감독기구의 지도 하에서 동물역병 예방사업을 해야 한다.

제14조 동물을 사육, 경영하는 단위, 개인과 동물제품을 생산,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법과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동물병역의 면역계획과 예방사업을 잘하여야 하고, 동물방역감독기구의 검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동물사육장은 제때에 동물역병을 박멸하여야한다. 종축(種畜), 종금(種禽)은 국가가 규정한 건강합격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16조 동물과 동물제품의 운수공구, 포장, 포장물질 등은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이 규정한 동물방역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병에 감염된 동물 및 그 배설물 병에 감염된 동물의 제품, 병들어 죽거나 사망한 원인이 불명확한 동물시체는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동물원성치병(動物源性致病)미생물의 보존, 사용, 운수는 국가규정의 관리제도와 조작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학연구, 교학, 방역 등 특수수요로 인해 동물병과(動物病料)를 운수하는 경우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동물역병과학연구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을 엄격히 관리하고 동물역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18조 아래의 동물, 동물제품을 경영하는 것을 금한다.

- (1) 전염병을 봉쇄한 지역 안과 동물역병 발생과 관련되는 것.
- (2) 전염병 발생지역내에서 쉽게 감염되는 것.
- (3) 법에 따라 검역하여야 하나 검역을 거치지 않거나 혹은 검역 불합격인 것.
- (4) 전염된 것.
- (5) 병들어 죽었거나 죽은 원인이 불명한 것.
- (6) 기타 국가의 동물방역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

제3장 동물역병의 규제와 박멸

제19조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이 전국 동물전염정황을 통일관리하고 공포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은 필요한 경우 본 행정구내의 동물전염정황을 공포한다.

제20조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이 전염병에 걸렸거나 전염병이 걸린듯한 동물을 발견하면 제때에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물방역감독기구는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상급 기관에 보고한다.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보고를 속이거나 거짓보고를 해서는 안되며 타인이 동물전염정황을 보고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제21조 첫째 유형의 역병이 발생할 경우 현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

행정관리부문은 즉시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전염지점, 구역, 위협받는 구역 등을 확정하고 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염병의 근원을 조사하며, 제때에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전염구역의 봉쇄를 결정하여 전염정황을 급에 따라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관련부문과 단위를 조직하여 격리, 박멸, 소각, 소독, 긴급면역접종 등 강제적인 규제와 박멸조치를 취하여 신속히 전염병을 박멸하고 인접지역에 통보한다.

봉쇄기간 동안 전염되었거나 전염이 된 듯한 동물과 동물제품이 전염구역에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비 전염구역의 동물이 전염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물역병을 소멸하는 수요에 근거하여 출입봉쇄기구의 인원, 운수공구 및 관련물품에 대하여 소독과 기타 제한적인 조치를 취한다.

전염구역 범위가 2개 이상 행정구역인 경우 관련 행정구역과 동일한 상급의 인민정부가 전염구역을 봉쇄하거나 각 관련 행정구역의 상1급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전염구역에 대한 봉쇄 결정을 내린다.

제22조 둘째 유형의 동물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이 전염지점, 전염구역, 위협구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수요에 근거하여 관련부문과 단위를 조직하여 격리, 박멸, 소각, 소독, 긴급면역접종, 쉽게 감염되는 동물과 동물제품 및 관련물품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제, 박멸조치를 취한다.

제23조 전염지점, 전염구역, 위협구역과 전염구역봉쇄의 해제는 원래 봉쇄를 결정한 기관이 선포한다.

제24조 셋째 유형의 동물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급, 향급 인민정부는 동물역병에 방계획과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의 관련규정에 따라 예방조치와 정화를 강구한다.

제25조 둘째, 셋째 유형의 동물역병이 폭발적으로 유행할 경우는 본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중대한 동물전염정황을 규제, 박멸하기 위해 동물방역감독기구는 사람을 파견하여 현지에 법에 따라 설립된 검사소와 함께 감독검사임무를 집행한다. 필요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기준을 거쳐 임시 동물방역감독검사소를 설치하여 감독검사임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 사람과 가축에 공동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은 위생행정부문 및 관련단위와 서로 전염정황을 통보한다.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 위생행정부문 및 관련단위는 제때에 규제, 박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전염구역 내의 관련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목축수의행정 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만든 동물전염병에 대한 규제, 박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동물전염정황이 발생할 경우 항공, 철도, 도로, 수로 등 운수부문은 우선적으로 전염정황을 규제, 박멸하는 관련인원과 물자를 운송하여야 하며, 전신부문은 제때에 동물전염정황보고를 전달하여야한다.

제4장 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

제30조 동물방역감독기구는 국가표준과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이 업종표준, 검역관리방법과 검역대상을 규정한 대로 법에 의거하여 동물, 동물제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31조 동물방역감독기구는 동물검역원을 두어 동물과 동물제품검역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동물검역원은 상응한 전문기술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자격증서 발급방법은 국무원 목축행정관리부문에서 규정한다.

현급 이상 목축관리부문은 동물검역원의 훈련, 평가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동물검역원은 상응한 자격증서를 얻은 후에 검역할 수 있다.

동물검역원은 검역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고 검역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32조 국가는 돼지 등 동물에 대해 지정된 지점에서 도살하고 집중 검역을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내에서 지정된 지점에서 도살하고 집중 검역을 하는 동물종류와 구역범위를 규정하며, 구체적인 도살장은 시(구가 없는 시도 포함),현 인민정부조직관련부문에서 연구하여 확정한다.

동물방역감독기구는 도살장에서 도살한 동물을 검역하고 동물방역감독기구에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검사필도장을 찍는다.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과 상품유통행정관리부문이 협상을 통하여 확정된 범위내에서 하는 도살장, 육류연합가공공장의 도살검역은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진행한다.

제33조 농민개인이 자체용으로 도살하고 사용하는 돼지 등 동물의 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34조 동물방역감독기구는 법에 따라 검역을 진행하고, 국무원 재정물가행정관리 부문의 규정에 따라 검역비용을 받되 기타 비용은 더 받을 수 없으며 중복하여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35조 동물방역감독기구는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36조 국내 다른 곳에서 들여온 종자동물 및 그 정액, 배태, 종자 알은 먼저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구의 검역심사비준 절차를 밟아야하며 합격하여야 한다.

제37조 인공으로 포획한 동물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은 포획지점 혹은 접수지점의 동물방역감독기구의 검역합격을 거쳐야 팔거나 운송할 수 있다.

제38조 검역에 합격된 동물과 동물제품은 동물방역감독기구가 구체적인 검역증명을 발급하며, 동물제품은 동물방역감독기구가 사용하는 검사필 도장을 찍거나 봉해야 한다.

검역에 불합격한 동물과 동물제품은 화주가 동물검역원의 감독아래 방역소독과 기타 무해 처리를 한다. 무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소각한다.

제39조 동물은 검역증명에 의해서 판매, 운송하고 전람, 공연, 시합에 참가할 수 있다. 동물제품은 검역증명, 검사표식에 의거하여 판매되고 운송된다.

제40조 검역증명을 양도하거나 고치거나 위조할 수 없다.

검역증명의 양식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 제정한다.

제5장 동물방역감독

제41조 동물방역감독기구는 법에 따라 동물방역사업을 감독한다.

동물방역감독기구는 검사, 감독임무를 수행할 때 동물과 동물제품의 표본을 채취하여 검사하며, 검역증명을 하지 않은 동물과 동물제품은 보충검사 혹은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듯한 동물과 전염된 동물제품은 격리, 밀폐처리를 한다.

제42조 철도, 도로, 수로, 항공운수를 거치는 동물과 동물제품은 운송위탁인이 검역증명을 제공하여야 위탁운송을 할 수 있으며, 운송인은 검역증명에 근거하여 운송할 수 있다.

동물방역감독기구는 동물과 동물제품의 운수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하고 검사할 권한이 있다.

제43조 동물방역감독사업인원이 감독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증명을 제시하고 관련단위와 개인은 지지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동물방역감독기구 및 인원은 동물방역감독검사를 할 때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제44조 동물사육장소, 저장장소, 도살장, 육류연합가공공장, 기타 지정된 도살장과 동물제품냉장장소 등 저장소의 위치선정과 설계는 국무원 목축행정관리부문이 규정한 동물방역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5조 동물사육장소, 도살장, 육류연합가공공장과 기타 지정된 도살장 등 단위에서 종사하는 동물사육, 경영과 동물제품생산, 경영활동은 국무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이 규정한 동물방역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동물방역감독기구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물진료활동에 종사하려면 이에 상응한 전문기술인원을 있어야 하며, 동시에 목축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한 동물진료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사람과 가축이 공동으로 걸릴 수 있는 전염병에 걸린 인원은 동물진료 및 동물사육, 경영과 동물제품생산, 경영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6조 본 법규정을 위반하여 아래행위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동물방역감독기구가 경고한다. 개정을 거부하면 동물방역감독기구가 법에 따라 대신 처리하고 처리에 드는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 (1)사육, 경영하는 동물에 대해 동물역병의 강제면역계획과 국가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제때에 면역접종과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2)동물과 동물제품의 운수도구, 패킹, 포장물질을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깨끗이 씻고 소독하지 않은 경우
- (3)국가 관련규정에 따르지 않고 전염병동물 및 그 배설물, 전염병동물의 제품, 병사 혹은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동물시체를 처리하는 경우

제47조 본 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원성치병미생물(動物源性致病微生物)을 보존하고 사용하고 운송하거나 혹은 동물 병료(病料)를 운송하는 것에 대하여 동물방역감독기구는 경고를 하고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48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동물, 동물제품을 경영한 것에 대하여 동물방역감독기구는 경영 정지를 명령하고 즉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이미 판매한 동물, 동물제품을 회수해야 하며, 위법소득과 아직 판매하지 않은 동물, 동물제품은 몰수해야 한다. 정절이 엄중한 것은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1)봉쇄된 전염구역 내의 것과 발생된 동물전염병과 관련된 것.

- (2) 전염구역에서 쉽게 감염되는 것.
- (3) 법에 따라 검역을 받았으나 검역이 불합격인 것.
- (4) 전염병에 전염된 것.
- (5) 병사 혹은 죽은 원인이 불명확한 것.
- (6) 기타 국가의 동물방역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

제49조 본법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검역하여야 하나 검역증명이 없는 동물, 동물제품을 경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물방역감독기구는 경영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아직 팔지 않은 동물과 동물제품은 법에 따라 보충검사하고 본법 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50조 본법 제42조 규정을 위반하고 검역증명에 따라 동물, 동물제품을 운송하는 규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동물방역감독기구가 경고하고 개정할 것을 명령한다. 정절이 엄중한 것은 운수위탁인과 운송인에 대해 각기 운송비용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다.

제51조 검역증명을 양도하고 고치거나 위조한 것은 동물방역감독기구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검역증명을 회수한다. 검역증명을 양도하거나 고친 것은 2000~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5000원을 넘을 경우 위법소득의 1배~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역증명을 위조한 것은 1만원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3만원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본법 제45조제1항 규칙을 위반하고 동물사육, 경영, 동물제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의 동물방역조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동물방역감독기구가 경고하고 개정할 것을 명령한다. 개정을 거절하면 1만원 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본법규정을 위반하고 단위에서 보고를 감추거나 거짓보고를 하거나 타인이 동물병역정황을 보고하는 것을 방해하면 동물방역감독기구가 경고하고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54조 본법규정을 위반하고 검역을 도피하여 중대한 동물전염상황을 일으켜 양식업생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였거나 인체건강을 엄중하게 해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5조 동물검역원이 본법규정을 위반하고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역에서 불합격한 동물, 동물제품에 대해 검역증명을 발급하고 검사도장을 찍은 경우 그 단

위 혹은 상급 주관기관이 과실기록을 하거나 동물검역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다. 정절이 엄중한 것은 해고 처분을 내린다.

전 규정의 위법행위로 인해 관련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동물검역원이 속한 단위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56조 동물방역감독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소홀히 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고 전염정보보고를 숨기거나 지연시키고 검역결과를 위조하여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57조 동물방역감독인원이 법에 따른 직무 수행을 방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제7장 부칙

제58조 본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약품 관리조례

(1987년5월21일 국무원 반포)

제1장 총 칙

- 제1조 가축약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약품 품질을 보증하며, 축금 등 동물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목축업발전을 촉진하고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특별히 제정한다.
- 제2조 가축약품의 생산, 경영과 사용은 반드시 품질을 보증하고 효과가 있는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3조 국무원 농업목축업행정관리기관은 전국의 가축약품 관리사업을 주관하고 현급 이상 농업목축행정관리기관은 소속지구의 가축약품 관리사업을 주관한다.
- 제4조 가축약품의 생산, 경영과 사용에 종사하는 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가축약품 생산기업의 관리

- 제5조 가축약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아래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생산하는 가축약품과 상응하는 기술자 조교, 수의사 조교 이상 기술직의 기술인원 및 기술노동자가 있어야 한다.
 - (2)생산하는 가축약품과 상응하는 공장건물, 시설과 위생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 (3)국가노동안전, 위생표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4)품질검사기구와 전문검사인원 및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어야 한다
 - (5)비전문적으로 가축약품을 생산하는 기업 겸 생산자는 반드시 단독의 가축약품 생산구역이 있어야 한다.
- 제6조 가축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창업할 경우, 기업 소재지 현 이상 농업목축업 행정관리기관의 심사와 동의를 받고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목축업행정관리기관의 심사 기준을 거친 후 《가축약품 생산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축약품 생산기업은 《가축약품 생산허가증》을 소지하고 현지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여 기준을 거친 후 《영업허가증》을 받는다.
- 《가축약품 생산허가증》은 유효기간을 규정하여야 하며 만기가 되면 재심사하여 합격된 후 증서를 발급한다.

제7조 가축약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기술규정에 따라 생산하고 생산기록은 온전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필요로 하는 원료, 보충사료 및 가축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와 포장재료는 약용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가축약품 포장은 반드시 표지가 붙어 있어야 하며 “가축용”이라는 글자를 명기하고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표지나 설명서에 반드시 상표, 가축약품 명칭, 규격, 기업명칭, 제품번호와 비준문서번호를 밝혀야 하며 가축약품의 주요성분, 함량, 작용, 용도, 용법, 용량, 유효기간과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 가축약품을 나누어 포장하는 경우 온전하고 정확한 분장기록이 있어야 하고 포장에 가축약품 이름, 규격, 기업명칭, 제품번호, 비준문서번호, 분장단위와 분장번호를 명기해야 하며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을 규정한 가축약품은 나누어 포장한 후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제10조 가축약품은 공장에서 출하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거쳐야 하며 품질표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제품이 공장에서 나갈 수 없다.

가축약품 공장에서 출하될 때 제품품질 검사합격증이 있어야 하며, 합격증이 없는 것은 가축약품 경영기업에서 구매하지 못하며 수요자는 구매하지 못한다.

제3장 가축약품 경영기업의 관리

제11조 가축약품 경영기업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경영하는 가축약품에 상응하는 가축약품 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2)경영하는 가축약품에 상응하는 영업장소, 설비, 창고설비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가축약품을 경영하는 기업은 기업의 상급 주관부문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현 이상의 농업목축업행정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가축약품 경영허가증》을 발급받는다. 가축약품 경영기업은 《가축약품 경영허가증》을 가지고 현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여 비준을 거친 후 《영업허가증》을 받는다.

《가축약품 경영허가증》은 유효기간을 규정하여야 하며 만기가 되면 재심사하여 합격된 후에야 증서를 발급한다.

제13조 구매한 가축약품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품질이 불합격되면 구매할 수 없다.

제14조 가축약품의 저장은 창고에 저장하는 보관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가축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축약품을 판매하려면 품질을 보증하고 착오가 없어야 하며, 가축약품의 작용, 용도, 용법, 용량과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도시와 농촌의 정기시장에서 경영하는 가축약품은 《가축약품 경영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장 수의의료단위의 약제관리

제17조 수의 의료단위는 의료임무와 상응하는 가축약품, 수의 기술인원을 갖추어야 하고 건전한 가축약품 관리제도를 건립하며 약제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의 의료단위에서 가축약품을 배합 제조를 할 경우, 제제(制劑)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설, 검사 의료기가 있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목축업행정관리기관의 심사 기준을 거쳐 《가축약품 제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축약품 제제허가증》은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만기가 되면 재심사하여 합격된 후 증서를 발급받는다.

제19조 수의 의료단위에서 배합하는 가축약품 제제는 합격표준에 달하여야만 본 단위의 임상 및 그 책임진 의료구역에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20조 수의 의료단위에서 구매한 가축약품은 품질검사제도를 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농 목민이 가축약품을 구매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의 의료단위는 가축약품 판매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5장 새로운 가축약품의 심사기준과 수출입 가축약품 관리

제21조 가축약품은 국가기준, 전문기준과 지방기준으로 나뉜다.

이미 있는 국가기준, 전문기준이나 지방기준의 가축약품을 생산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목축업행정관리기관의 심사 기준을 거쳐 비준문서번호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국가는 새로운 약을 연구하고 제조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새로운 약을 연구하고 제조하려면 국무원 농업목축업행정관리기관에 연구제작 방법, 생산공업, 품질표준, 약리, 독리(毒理), 임상실험보고, 환경영향에 대한 보

고서 및 오염방지 조치 등의 관련자료와 새 가축약품 건본을 보내야 한다. 새로운 가축약품은 중국 가축약품감찰소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며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국무원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국가기준이나 전문기준을 통하여 《새로운 가축약품 증서》를 발급한다. 《새로운 가축약품 증서》가 없는 것은 정식적인 과학연구 성과에 넣을 수 없거나 기술양도를 하지 못한다.

제23조 새로운 가축약품 제제의 연구제조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에서 새로 제제한 처방 및 공예제조, 품질표준, 임상실험보고 등 자료를 보내고 성, 자치구, 직할시 가축약품감찰소의 재심사, 감정, 유효한 안전성 평가를 한 다음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지방기준에 넣는다.

제24조 새로운 가축약품 생산과 새로운 가축약품 제제는 성, 자치구, 직할시 가축약품감찰소의 검사합격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에서 비준하여 비준문서번호를 발급한다.

제25조 가축약품의 수입은 국무원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이 심사하고 비준한 후 《수입 가축약품 허가증》을 발급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혹은 국무원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이 지정한 가축약품감찰소의 검사 합격 후에야 수입할 수 있다.

제26조 우리나라에서 외국기업이 생산 경영한 어떤 가축약품을 처음으로 수입할 경우, 가축약품을 판매하는 외국기업은 국무원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에 검사와 등기를 신청하고, 가축약품 품질기준, 검사방법, 약리와 독리 실험결과, 임상실험보고, 사용설명서 등의 자료와 수출국(지구)의 생산 혹은 판매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와 심사를 거쳐 안전하고 유효한가를 증명하고 《수입 가축약품 등기 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제27조 수출입 가축용 마취약품과 정신약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에서 심사하고 비준하여 발급한 《수입허가증》과 《수출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제6장 가축약품 감독

제28조 가짜 가축약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가짜 가축약품에 속한다.

(1)가축약품이 아닌데 가축약품으로 모방한 것.

(2)가축약품에 함유된 성분의 종류, 이름과 국가표준, 전문표준 혹은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속하는 가축약품은 생산과 경영을 금지한다.

(1)비준문서번호를 취득하지 못한 것.

(2)국무원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이 명문 규정으로 사용을 금지시킨 것.

제29조 불량한 가축약품의 생산을 금지한다.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면 불량 가축약품이다.

(1)가축약품 성분이 국가기준, 전문기준 혹은 지방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2)유효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3)변질로 인하여 약으로 쓸 수 없을 경우.

(4)오염되어 약으로 쓸 수 없을 경우.

(5)기타 가축약품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가짜 가축약품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

제30조 현급 이상의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이 가축약품에 대하여 감독, 관리를 행사한다.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가축약품 감찰기구 그리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준하여 설립한 도시 가축약품감찰기구는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을 협조하여 전국과 본 관할 구의 가축약품의 품질감독, 검사 업무를 각각 책임진다.

제31조 각급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은 이미 허가한 가축약품 생산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조사, 검증, 심사평가를 진행하고, 약효가 명확하지 못하고 약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비준문서번호를 취소한다. 비준문서번호가 취소된 가축약품을 더 이상 생산하고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

제32조 현급 이상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은 가축약품 감독원을 선임한다. 가축약품 감독원은 가축약품, 수의 기술인원이어야 하며 현지 인민정부가 발급한 《가축약품 감독원증》에 의거하여 업무를 전개한다.

가축약품 감독원은 본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범위 내의 가축약품 생산, 경영과 사용단위의 가축약품 품질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규정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단위는 거절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수의 기술 감독원은 가축약품 생산과 과학연구 단위에서 제공한 기술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33조 가축약품의 생산기업, 경영기업과 수의 의료단위는 본 단위가 생산 경영하고 사용하는 가축약품의 품질, 의료효과와 안전성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가축약품 사용단위는 가축약품 중독사고를 발견할 경우, 제때에 현지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가축약품 생산기업과 가축약품 경영기업의 가축약품 검사기구 혹은 인원은 현지 가축약품감찰소의 업무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가축용 마취약품, 정신약품, 독성약품과 방사성 약품 등과 같은 특수 약품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7장 가축약품의 상표와 광고관리

제36조 가축약품 상표는 국가 상표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登記해야 한다.

등록상표는 가축약품의 포장, 꼬리표, 설명서에 기명하고 “등록상표” 라는 글자를 써 넣거나 혹은 등록 표기를 해야 한다.

제37조 가축약품 광고는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의 심사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을 받지 않은 것은 등재, 배치, 인쇄, 발송, 배포와 부착을 할 수 없다.

제38조 가축약품 광고의 내용은 국무원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에서 비준한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축용 마취약품과 정신약품은 광고선전을 하지 못한다.

제39조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축약품 광고를 신청하려면 국무원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수입 가축약품登記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가축약품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40조 가짜 가축약품을 생산, 경영하였거나 혹은 본 조례 제2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면 본 가축약품의 생산, 경영을 정지하여야 하며 약물과 불법수입을 몰수하며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본 기업을 생산중지시키고 영업정지, 시정(停業整頓) 혹은 《가축약품 생산허가증》, 《가축약품 경영허가증》, 《가축약품 제제허가증》을 회수한다.

제41조 불량한 가축약품을 생산, 경영하면 가축약품의 생산, 경영을 정지하고 약물과 불법수입은 몰수하고 벌금에 처한다. 정황과 결과가 엄중한 것은 본 기업의 생산, 경영을 정지하거나 정업정돈 혹은 《가축약품 생산허가증》, 《가축약품

경영허가증》, 《가축약품 제제허가증》을 회수한다.

제42조 《가축약품 생산허가증》, 《가축약품 경영허가증》, 《가축약품 제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가축약품을 마음대로 생산하고 경영하였거나 혹은 가축약품 제제를 제조하면 생산과 경영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가축약품 제제를 제조하지 못하게 하고 가축약품 전부와 불법수입을 몰수하고 벌금에 처한다.

제43조 본 조례의 가축약품 수입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정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하거나 가축약품을 몰수할 수 있다. 마음대로 판매한자는 불법수입을 몰수하고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가짜, 불량한 가축약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혹은 본 조례 제2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는 소속단위 혹은 상급 주관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정황과 결과가 엄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 규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이 결정한다. 그러나 본 조례 제16조와 제7장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주어야 한다. 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수입은 몰수하고 벌금에 처한다. 가축약품의 생산 혹은 경영 중 《공업제품 품질책임조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수입을 몰수하고 벌금에 처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결정하고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은 조사에 협조한다.

벌금과 몰수한 불법수입은 전부 국고에 넣는다. 몰수한 가짜, 불량 약물 혹은 국가에서 명문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규정한 기타 약품은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소각한다.

제46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처벌결정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단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이 가축약품을 규제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안에 기소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중독사고를 일으키거나 혹은 축금 등 동물에 기타 위해의 결과를 일으킨 단위나 혹은 개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를 입은 일방은 현급 이상의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에 처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일방은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배상 청구는 피해자 일방이 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혹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접수하지 않는다.

제9장 부 칙

제48조 본 조례의 다음과 같은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축급 등 동물이란 가축, 가금, 어류, 꿀벌, 누에 및 기타 인공으로 사육한 동물을 가리킨다.

(2)가축약품은 축급 등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진단하는데 쓰이는 것이며, 목적이 있게 그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작용, 용도, 용법, 용량의 물질(식료약품첨가제 포함)을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

1. 혈청, 균(역)ワクチン, 진단 액 등 생물제품.
2. 가축용 중약재, 중성약, 화학원료 약과 및 제제.
3. 항생물질, 생물화학약품, 방사성 약품.

(3)새로운 가축약품이란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만들어 낸 가축약품의 원료약품을 가리킨다.

(4)가축약품의 새로운 제제는 가축약품 원료약품으로 새로 연구하고 가공한 가축약품 제제를 가리킨다.

제49조 본 조례의 실시세칙은 국무원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과 국가공상관리기관이 규정한다.

제50조 본 조례는 국무원 농업목록업행정관리기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1조 본 조례는 1988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국무원에서 1980년8월26일에 비준한 《가축약품관리 잠정조례》는 폐지한다.

가축약품 관리조례 실시세칙

(1988년 6월 30일 농업부 반포, 1998년 1월 5일 농업부령 제28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가축약품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가축약품의 생산, 경영, 사용, 연구, 선진, 검사, 감독관리에 종사자는 반드시 본 세칙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국가는 가축약품의 생산, 경영, 수입 및 의료단위가 가축약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허가없이 가축약품을 생산, 경영, 수입하는 것과 가축약품을 제조하는 것을 금한다.

제2장 가축약품 생산기업의 관리

제4조 가축약품 생산기업이란 전문적으로 가축약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가축약품을 겸하여 생산하는 기업을 가리키며 상술한 기업의 분 공장, 가축약품을 생산하는 각종형식의 연영(聯營)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을 포함한다.

제5조 가축용 생물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창립할 때는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의 심사동의를 거쳐야 하고 농업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가축생산기업을 새로 건립하거나 확장하거나, 개조할 경우 반드시 농업부가 제정한 《가축약품 생산품질 관리규범》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현존하는 가축약품 생산기업은 《가축약품 생산품질 관리규범》의 규정대로 계획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의 심사비준을 거쳐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7조 가축약품 생산기업은 생산한 가축약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상응한 의료기기와 설비가 있어야 한다. 가축약품 검사기구는 기업생산기술기구내부에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제8조 가축약품 생산기업이 생산한 매개 가축약품의 품종은 반드시 농목행정관리기관이 정한 가축약품 품질표준과 공예규정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공예(역주: 기술공정)생산 규정과 처방, 제조형태, 용도, 용법, 용량, 규격을 변경할 경우 원래

의 비준절차에 따라 농목행정관리기관에 신청하고 비준을 거친 후에야 생산할 수 있다.

제9조 가축약품 생산기업은 온전한 생산기록과 검사기록이 있어야 하며 최저 3년은 보존해야 한다.

제10조 가축약품의 검사필증은 규정된 격식과 내용대로 인쇄 제작해야 한다. 가축약품의 주요성분은 약효가 있는 성분을 가리킨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는 가축약품은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11조 가축용 마취약품, 정신약품, 독성약품, 방사성 약품과 외용약품의 검사필증 및 바깥포장은 규정된 통일 표지대로 인쇄해야 한다.

제12조 가축약품의 내외포장은 가축약품 품질보증, 저장, 운수 및 사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밀봉검사, 검사필증이 결손되었거나 포장이 파손된 것은 공장에서 출품하지 못한다.

제13조 가축약품의 밀봉검사, 검사필증 및 포장의 양도와 판매를 금지한다.

제14조 가축약품이 공장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본 기업의 의약검정기구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품질표준에 부합되는 것은 내 포장에 검사 합격표지를 첨부해야 하고, 포장상자 안에는 검사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품질표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공장을 나가지 못한다.

제3장 가축약품 경영기업의 관리

제15조 가축약품 경영기업이란 전문적으로 가축약품을 경영하는 기업과 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가리키며 도매, 소매회사 혹은 상점 및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제16조 가축약품 경영기업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가축약품의 구매, 보관, 판매, 조제,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약제사, 수의기술원(獸醫技術員) 이상의 기술인원이어야 한다. 약학과 수의학 기술인원이 아닌 자는 《가축약품경영 허가증》을 발급하는 농목행정관리기관 혹은 지정된 단위에서 실시하는 가축약품경영 지식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가축약품경영 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7조 가축약품 경영기업과 수의 의료단위에서 가축약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실험검사를 해야 한다. 실험검사의 내용에는 가축약품명칭, 규격, 생산기업, 생산비준 번호, 유효기간, 검사합격증서, 비준문서번호, 포장 및 외관품질 등이 포함된다.

제18조 가축약품 경영기업에서 가축약품을 구매, 보관, 판매할 때는 반드시 건전한 품질검사와 입고(入庫)검사, 재고 보관, 출고검사, 판매 시 대조 등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4장 수의의료단위의 약제관리

제19조 수의 의료단위의 가축약품 제조실은 제조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설비, 환경을 구비하여야 하며, 상응한 품질검사 설비와 약품검사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제20조 수의 의료단위에서 제조한 가축약품 제품은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에 등록해야 한다.

제21조 가축약품 제조는 엄밀한 규정, 품질검사와 위생제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매년 조제 때마다 상세하고 온전한 조제기록, 검사기록이 있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것은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불합격된 것은 사용을 불허한다.

제5장 《가축약품생산허가증》, 《가축약품 경영허가증》, 《가축약품조제허가증》의 심사비준 절차

제22조 가축약품 생산기업을 창업할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기본건설 비준절차 외에 아래에 같이 규정된 비준 절차를 따라야 한다.

(1)기업 혹은 기업주관부문은 기업 소재지 현급 이상 농업(목축)청(국)에 신고하여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에 심사 비준을 받는다.

(2)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목축)청(국)의 심사 비준을 거쳐 《가축약품 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3)가축약품 기업은 《가축약품 생산허가증》과 관련 문서와 자료를 지참하여 현지 공상행정관리국에 동시 신청을 하고 비준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는다.

가축생산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이 《가축약품 생산허가증》의 비준 절차를 밟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다.

심사, 비준을 접수하는 농목행정관리기관은 모든 신청 자료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동의 혹은 비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3조 기축용 생물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농업부의 비준을 거쳐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으로부터 《가축약품 생산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제24조 가축약품 경영기업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가축약품 경영허가증》을 신청한다.

- (1)성급 이상 각 부문에 속한 가축약품 경영기업은 그 주관부문이 심사 동의를 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이 심사 비준하고 《가축약품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 (2)시(지) 현(구)의 각 부문에 속한 가축약품 경영기업은 그 주관부문이 심사 동의를 하고 소재지 동급의 농업(목축)국이 심사 비준하고 《가축약품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 (3)현 이하(개체포함)의 가축약품경영자는 현 농업(목축)국의 심사비준을 거쳐 《가축약품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 (4)가축약품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업은 국무원 혹은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외경제무역행정관리기관이 심사 비준하고,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에서 심사비준을 하고 《가축약품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가축약품 경영기업 혹은 개체 가축약품 경영자는 《가축약품경영허가증》을 가지고 현지의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신청하고 비준을 거친 후 영업허가증을 받는다. 심사를 접수한 농목행정관리기관은 전부의 신청자료를 전부 받은 후 1개월 내에 비준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5조 수의 의료단위가 가축약품 상점을 열어 가축약품의 도매, 소매업무를 하거나 혹은 성향(城鄉)의 거래시장에서 가축약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가축약품 경영 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가축약품 소매기업 및 개체 가축약품 경영자의 《가축약품 경영허가증》은 발급기관의 관할구내에서만 유효하다.

제27조 수의 의료단위가 가축약품을 제조할 때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에 신청하여 심사 비준을 거친 후 《가축약품 제조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제28조 《가축약품 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 《가축약품 경영허가증》과 《가축약품 제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비준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상술한 허가증이 기간 만료 후 새 증서가 필요한 경우, 가축약품 생산 경영기업과 수의 의료단위는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원래 증서를 가지고 새 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새로 신청하는 절차는 원래 신청했던 절차와 같다.

제29조 《가축약품 생산허가증》, 《가축약품 경영허가증》, 《가축약품 제조허가증》은 농업부에서 제정한 통일된 격식에 인쇄한다.

제30조 발급과 새로운 증서로 바꾸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는 “《가축약품 생산허가증》, 《가축약품 경영허가증》, 《가축약품 제조허가증》의 발급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가축약품의 표준과 비준 문서번호

제31조 가축약품의 표준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1)국가표준 : 《중화인민공화국 가축약품사전》, 《가축약품 규범》으로써 가축약품사전위원회에서 제정, 개정하고 농업부가 심사 비준하고 반포한다.
- (2)전문표준 : 《가축약품 품질표준》으로써 중국 가축약품감찰소에서 제정, 개정하고 농업부가 심사 비준하고 반포한다.
- (3)지방표준 :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가축약품 제조표준》으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가축약품감찰소에서 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이 심사 비준하고 반포한다.

제32조 새로운 가축약품에 대해 생산기간을 보호한다. 비준을 거친 새로운 가축약품이 원래의 연구제조단위로부터 기술양도를 받지 못했으면 보호기간(시험생산기간 포함)내에 이식(利植)생산을 못한다.

제33조 제1,2류의 새로운 가축약품이 비준을 받은 후에는 시험생산을 진행해야 하며 시험생산기간은 2년이다. 생산기업은 시험생산을 하기 전 반드시 농업부에 신청 보고를 해야 하며, 심사 비준 후 시험생산 비준 문서번호를 발급받는다.

제34조 가축약품 생산기업이 비준 문서번호를 신청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가축약품감찰소에 검사 표본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가축약품감찰소는 제 때에 심사를 책임진 농업(목축)청(국)에 검사보고를 해야 하며, 농업(목축)청(국)은 검사보고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비준 문서번호의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5조 가축약품의 비준 문서번호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만기 전 6개월 내에 가축약품생산기업은 원 심사기관에 재등록을 해야 한다. 3년 이상 생산을 정지한 가축약품 제품은 원래의 비준 문서번호를 폐기한다.

제36조 비준 문서번호가 없는 가축약품의 생산, 경영, 사용을 금지한다.

제7장 새 가축약품의 심사기준

제37조 국가는 새로운 가축약품의 연구와 제조를 격려해야 한다. 여건이 되어있는 과학연구단위, 대학, 가축약품생산기업, 의료단위와 개인은 모두 새로운 가축약품의 연구, 제조에 종사할 수 있다.

제38조 농업부는 가축약품 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과학연구, 관리, 생산, 교학, 의약 등 방면의 전문가들로 조직한다.

가축약품 심사평가위원회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1) 새로운 가축약품을 심사 평가한다.
- (2) 외국에 등록하려는 가축약품을 심의 평가한다.
- (3) 이미 생산한 가축약품을 재평가한다.

제39조 새 가축약품, 가축약품의 새로운 제조 및 가축용 새 생물제품의 심사와 구체적인 관리는 《새 가축약품 및 가축약품의 새로운 제조 관리방법》, 《가축용 새 생물제품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수출입 가축약품의 관리

제40조 외국기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가축약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수입 가축약품 등기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수입 가축약품 등기허가증》은 본 증서에 명기된 가축약품 제품과 생산기업에 한해 유효하다.

제42조 농업부는 외국기업이 등록한 가축약품 제품과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제43조 외국기업이 등록 신청한 가축약품에 대해서 농업부는 품질측정 단위와 임상 실험 단위를 지정하여 책임지고 품질 실험과 임상 약효실험을 하도록 한다.

제44조 《수입 가축약품 등기허가증》을 받은 가축약품 제품은 수입 단위가 소재 지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에 신청 보고하여 심사 기준을 거친 후 《수입 가축약품허가증》을 발급 받는다.

제45조 생산의 긴급수요에 따라 소량 수입해야 할 가축약품과 자가용 및 과학연구, 실험중 필요하지만 《수입가축약품 등기허가증》은 받지 못한 가축약품 제품은 수입단위가 농업부에 신청 보고하여 심사 기준을 받은 후 《수입 가축약품허가증》을 발급 받는다. 지방에 소속된 단위가 수입할 경우 우선 먼저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 가축약품 수입단위는 《수입 가축약품 허가증》에 품명, 규격, 수량, 일자와 생산공장을 규정한 대로 수입한다.

제47조 수입 가축약품은 강제 검사를 실시한다. 세관은 농업부가 지정한 해안 가축약품감찰소가 《수입화물 보관장》 위에 찍은 《검사 받음》의 도장을 보고 검사한다.

해안 가축약품감찰소에 품질 검사보고를 제출하기 전에는 수입 가축약품을 매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48조 수출 가축약품은 반드시 수입국의 품질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정부 비준의 생산 증명서류 혹은 품질검사 합격증명을 요구하면 수출 가축약품 공장 소재지 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 가축약품감찰소로부터 제공받는다.

제49조 《수입 가축약품 등기허가증》, 《수입 가축약품 허가증》의 신청보고와 심사 비준 절차 및 구체적인 관리는 《수입 가축약품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장 사료약품첨가제 관리

제50조 약물을 함유하고 있는 사료첨가제는 가축약품으로 관리한다.

가축약품첨가제는 농업부가 반포한 사료약품첨가제의 사용 허가 품종 및 표준의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하며 사용한다.

제51조 약품은 직접 사료 중에 섞어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약물을 예혼제(預混劑)로 만들어야 한다.

예혼제는 제체(載體), 희석제와 분산제로 규정한 품종이어야 한다. 생산기업은 배합, 생산공예, 품질표준을 가축약품 제제(制劑)의 신청 절차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에 보고한 다음 심사비준을 거쳐 비준문서번호를 발급 받은 후 생산할 수 있다.

제52조 예혼제의 유효성분의 배합은 반드시 표지에 명기해야 한다. 약품의 사용 정지기간을 규정한 것은 표지 혹은 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제53조 사료약품첨가제에 사용하는 약물은 가축약품 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두가지 이상의 약물로 제조된 사료첨가제는 반드시 약물 배합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장 가축약품 감독

제54조 농업부는 중국 가축약품감찰소를 설립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가축약품감찰소를 설립한다. 수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목축)청(국)의 심사 동의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계획단열(計劃單列)도시, 시(지)농업(목축)국은 시(지)가축약품감찰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5조 각급 농목행정관리기관이 설립한 가축약품감찰소는 국가가 가축약품 품질을 감독, 검사, 감정하는 법정 전문기술기구이다. 중국 가축약품감찰소는 가축약품 품질의 검사, 감정의 최종 재결을 책임진다.

제56조 가축약품 감독원은 각급 농목행정관리의 영도 하에 정부를 대표하여 가축약품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하는 전문직 법률집행 요원이다. 가축약품 검찰원의 인원수는 관할구 내 가축약품 감독관리 임무와 서로 상응해야 한다. 가축약품 감독원이 가축약품 감독 임무를 집행할 때는 “중국 가축약품감독”의 뺏지를 달아야 하며 또한 《가축약품 감독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57조 생산을 비준한 가축약품에 대해서 만약 효과가 떨어지고 독성 부작용이 크거나 또는 기타 원인으로 사람과 가축의 건강에 해를 줄 경우, 제때에 농업부에 회보하고 가축약품심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 가축약품의 광고선전은 국가의 광고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와 《가축약품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가축약품 광고의 심사와 구체적인 관리는 《가축약품 광고심사방법》 및 《가축약품 심사표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장 벌칙

제59조 가축약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로는 경고, 생산정지 혹은 정업정돈(停業整頓), 가축약품과 불법수입의 몰수, 벌금, 허가증 취소, 영업허가증 취소 등이 있다. 행정처벌은 현 이상의 농목행정관리기관 혹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가축약품 관리조례》 제45조에서 규정한 직책범위 내에서 각각 결정하고 동시에 서면으로 처벌통지를 내린다.

제60조 《가축약품 관리조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위조 가축약품으로 처리한다.

제61조 위조 가축약품을 생산, 판매하는데 대해서 위조가축약품과 비법수입을 몰수하고 동시에 위법소득의 2~3배의 벌금을 안기되 최고로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생산중지, 영업정지, 시정 혹은 《가축약품생산허가증》, 《가축약품경영허가증》, 《가축약품 허가증》을 회수하고 취소할 수가 있다.

제62조 열등가축약품을 생산, 판매하는데 대해서 열등가축약품과 비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1~2배의 벌금을 안기되 최고액은 2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황과 결과가 엄중한 기업에 대해 생산 중지, 영업 정지, 시정 혹은 《가축약품생산허가증》, 《가축약품경영허가증》, 《가축약품 허가증》을 회수하고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63조 《가축약품생산허가증》, 《가축약품경영허가증》, 《가축약품제제허가증》 없이 가축약품을 경영하거나 배합제조하면 생산 중지, 영업정지 및 시정 외에 전부의 가축약품과 비법수입을 몰수하고 동시에 위법소득의 2--3배의 벌금을 안길 수 있되 최고액은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4조 《가축약품관리조례》와 본 세칙의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벌금 및 비법소득의 몰수를 검사 처리할 때 국가재정부문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안건을 검사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동급 재정부문의 심사를 거쳐 발급한다.

제65조 가축약품감독 및 검험인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재물협잡, 徇私舞弊, 뇌물수수 혹은 검험결과를 위조하는 자에 대해서 정황에 근거하여 농목행정관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안기고 정황이 엄중하여 범죄에 도달하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12장 부 칙

제66조 가축약품의 심사비준, 감독, 검험에서 비용이 필요할 때 납입단위에서 《가축약품감독검험비용표준》에 따라 비용을 납입한다.

제67조 《가축약품관리조례》의 다른 조항 실시를 위한 관리방법은 농업부에서 제정, 반포하고, 본 세칙의 구성부분으로 한다.

제68조 본 세칙은 농업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69조 본 세칙은 반포한 날로부터 실행한다.

종축금 관리제도

(1994년4월15일 국무원 반포)

제1장 총 칙

제1조 축금 품종의 자원보호, 육성과 축금 생산경영관리를 강화하고 종축금 품질을 향상시키며 축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의 종축금은 씨받이에 사용되는 축금으로 집에서 기르는 돼지, 소, 양, 말, 당나귀, 토끼, 개, 닭, 오리, 거위, 메추리 및 그 난(卵), 정액, 배태 등 유전자를 포함한다.

제3조 축금 품종자원보호, 육성과 종축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농가에서 자체 번식하고 자체 사용하는 종축금은 예외이다.

제4조 국가는 축금 우량종과 육성 축금의 새로운 품종의 번식과 육성, 보급, 사용을 격려해야 한다.

축금 품종자원보호, 육성과 종축금 과학연구, 생산에서 현저한 성적을 이룬 경우 인민정부 혹은 축금 행정관리부문에서 표창한다.

제5조 국무원 축금 행정주관부문은 전국의 종축금 관리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축금 행정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종축금 관리사업을 주로 관리한다.

제2장 축금 품종 자원보호

제6조 국가는 축금 품종자원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어 보호한다. 보호목록과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목축행정관리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제7조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축금 품종자원보호구(장소), 유전자 창고와 측정소를 설립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축금 품종은 특별히 보호한다.

제8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축금 품종자원의 보편적인 조사, 감정, 보호, 육성과 이용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제9조 국외에서 도입 혹은 국외로 수출하는 종축금은 국가의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장 축금 품종육성과 심사결정

제10조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목축행정주관부문은 축금 품종자원분포, 자연조건과 경제상황에 근거하여 우량종의 번식육성 체계계획을 수립한다.

제11조 종축금 장소를 설치하려면 우량품종의 번식육성계획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지방에 종축금장을 세우려면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목축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국가급 종축금 장소를 설치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목축행정주관부문의 심사동의를 거쳐야 하는 동시에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범위를 벗어난 축금 품종의 승인과 새로운 품종의 감정 명명은 국가 축금 품종심사결정위원회 혹은 그 위탁을 받은 성급 축금 품종심사결정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후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 축금 품종의 승인과 새로운 품종의 감정 명명은 성급 축금 품종심사결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목축행정주관부문이 비준하는 동시에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비준된 축금 품종은 비준단위에서 품종증서를 발급하고 공포를 하는 동시에 국가 혹은 지방의 축금 품종 잡지에 등재한다.

국가 축금 품종심사결정위원회와 성급 축금 품종심사결정위원회는 축금 행정주관부문 및 과학연구, 교학, 생산단위의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다.

제13조 본 조례의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가심사를 거쳐 비준된 축금 품종만을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목축행정주관부문 혹은 그 위탁된 단위는 축금 우량종 등기와 생산 성능 측정을 책임진다.

제4장 종축금의 생산과 경영

제15조 종축금을 생산,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목축행정주관부문에 《종축금 생산경영허가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으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이 증서를 근거로 법에 따라 등록을 한다.

축금 냉동정액, 배태 혹은 기타 유전자를 생산 경영하는 경우 국무원 목축행

정주관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목축행정주관부문은 《종축금 생산경영허가증》을 심사한 다음 발급한다.

제16조 종축금의 생산 경영단위와 개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종축금 생산경영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1)우량종 번식육성체계 계획의 분포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 (2)사용하는 종축금이 합격되어야 하고 우량해야 하며, 출처가 기술요구에 부합되는 동시에 일정한 수량에 도달하여야 한다.
- (3)상용하는 축금 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 (4)상용하는 방역설비가 있어야 한다.
- (5)상용하는 육종자료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국가소유 종축금 장소는 사업단위를 위하여 육성을 부담하고 우량종을 제공하고 품종자원을 보호하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임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독립적으로 회계하고 자주적으로 경영하며 우량 축금의 번식과 육성 위주를 견지해야하고 여러 가지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기업화 경영을 실시하고 국가에서 더 이상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유 축금 장소가 기업법인조건을 구비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업법인이 된다.

제18조 종축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규정된 품종, 품계(品係), 대별(代別)과 이용 연한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며 생산경영범위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종축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종축금의 번식과 육성, 생산기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산과 육종 보관서류를 작성하는 동시에 《축금 방역조례》 및 관련된 수의 위생규정에 근거하여 방역제도를 세우고 실시한다.

제20조 판매되는 종축금은 종축금의 국가표준, 업종표준 혹은 지방표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종축금 장소에서 구비한 《종축금 합격증》, 종축 계보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전문적인 축금 종 배종(인공수정을 포함)과 부화를 진행할 경우는 종축금 장소에서 도입한 《종축금 합격증》을 소지한 종축 계보의 종축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축금 인공수정에 종사하는 인원은 현금 이상 인민정부 목축행정주관부문에 서 심사 발급한 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이 항목의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축금 인공수정 인원은 업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5장 벌칙

제23조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면 목축행정주관부문이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은 몰수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종축금 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종축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것.

(2) 규정된 품종, 품계, 대별과 이용연한에 근거하지 않고 종축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것.

(3) 본 조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치지 않고 비준받지 못한 축금 품종을 보급하는 것.

(4) 《종축금 합격증》, 종축 계보가 침부되지 않은 종축금을 판매하는 것.

전항 (2), (4)의 행위 중 하나가 있고 정확이 엄중한 경우는 《종축금 생산경영허가증》을 회수할 수 있다.

제24조 품질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종축금을 판매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대체하며 진짜를 가짜로 대체하거나 기타 공상행정관리법규를 위반한 행위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칙

제25조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은 본 조례의 제정에 근거하여 세칙을 제정한다.

제26조 본 조례는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7조 본 조례는 1994년7월1일부터 실행한다.

종축금 관리조례 실시세칙

(1998년 1월 5일 농업부 반포)

제1장 총칙

제1조 《종축금 관리조례》(이하 조례로 약칭)제25조 규정에 의해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축금 품종 자원보호, 새 품종의 육성과 종축금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본 실시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호(농장직공 포함)가 자체번식, 자체사용 하는 종축금은 예외로 한다.

제3조 종축금 관리인원은 공무를 수행할 때 증서를 지니고 일터에 들어가야 한다.

제2장 가축품종자원보호

제4조 축금 품종자원은 국가, 성(자치구, 직할시)2급 보호를 실시한다. 국가급 축금 품종자원 보호 명단은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이 확정 공포하고, 성급 축금 품종자원 보호 명단은 성급 목축행정주관부문이 확정, 공포하며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제5조 국무원 목축행정부문과 성급 목축행정주관부문은 계획성 있게 축금 품종자원 동태, 감측체계, 종자보존장, 보호구, 유전자 데이터와 측정소 등을 설치한다.

제6조 종자 보존군(群)은 어떠한 형식이든지 교잡을 금지한다. 확실한 필요에 의해 육종을 할 경우 관리 권한에 따라 보고하고 비준을 받은 후에야 추진할 수 있다.

제3장 종축금의 수출입 관리

제7조 종축금의 수출입 품종 명단은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에서 반포한다. 종축금 수출입의 계획, 계획은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에서 마련한다.

제8조 종축금의 수출입을 신청한 단위 혹은 개인은 종축금 수출입 심사비준표에 기입을 하고 성급 목축행정주관부문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세관은 심사비준표에 근거하여 관련수속을 처리한다. 국가 축금 품종심사결정위원회는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 종축금에 대해 기술심사 혹은 측정을 실시한다.

제4장 축급 품종 육성과 심사

제9조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은 전국 우량품종 번식육성체계의 계획 수립을 책임진다. 성급 목축행정주관부문은 국가 계획에 근거하여 본 지구의 상응한 계획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품종의 선발육성, 새로운 품종 육성, 경제 잡교 및 그 시스템 등 우량종 번식 육성체계 계획이 포함되며,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국가는 집단과 개인이 종축급 새품종을 육성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제10조 축급의 새 품종 심사 결정은 국가와 성2급 심사결정체도를 실행한다. 국가 축급품종 심사결정위원회는 성 밖으로 품종을 보급시켜야 하고 또 국가에서 심사결정한 품종의 심사가 필요하면 성급 축급 품종에 대한 심사결정작업을 협조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제11조 축급의 새 품종 보고 심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품종의 주요특성, 특징이 선명하고 생산성능이 우량하며 유전성이 안정되고 기타품종과 현저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 (2) 중간시험, 구역시험을 거쳐 증산효과가 분명해야 하고, 품질, 번식률과 항병력 등 면에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뛰어난 우량성능이 있어야 한다.
- (3) 육종 품종 수량 및 축급구조가 품종의 요구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 (4) 생산성능지표는 목축행정주관부문이 지정한 축급 품종검측기구에서 검정의견에 서명해야 한다.

제12조 축급의 새 품종 신청 보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보고심사 품종신청서
- (2) 육종기술 작업보고
- (3) 보고심사품종의 성상(聲像), 그림책자자료 및 필요한 실물 등.

제13조 축급의 새 품종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자는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성급 축급 품종 심사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축급 품종심사결정위원회는 1개월 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짓는 동시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접수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가 혹은 성급 축급 품종심사결정위원회는 접수 후 6개월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심사결정에 통과하면 목축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 공포한다. 성급에서 비준 공포한 축급 품종은 국무원 목축행정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제14조 신청자가 심사결정 결과에 의의가 있다면 원심 판정기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혹은 성급 축금 품종심사결정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받은 지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축금 신품종, 품계 및 시리즈의 명명을 공포하면 어떠한 단위, 조직과 개인도 임의로 그 명칭을 고칠 수 없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국가 혹은 성급 축금 품종 심사결정위원회의 심의 동의 후 동급 목축행정주관부문이 비준 공포한다.

제16조 목축행정주관부문의 비준 공포를 거치지 않은 축금 품종은 경영, 보급, 포상과 광고를 할 수 없다.

제17조 축금의 품종, 품계 및 시리즈가 생산과정 중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발견되면 국가 혹은 성급 축금 품종심사결정위원회는 생산과 보급 정지를 건의하고 동급의 목축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한다.

제5장 종축금장 관리

제18조 국유 종축금장을 사업단위로 한다. 기업화 경영을 실시하고 국가에서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 국유 종축금장은 법인조건이 구비되는 경우 공상관리기관의 합격심사를 거쳐 기업법인이 된다.

제19조 종축금장은 우량축금을 번식육성하는 것을 위주로 다종 경영을 적극 전개하고 자주경영, 독립결산을 실행한다.

제20조 종축금장은 축금품종의 자원, 배육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고 우량품종과 새 품종개발을 제공하며 새 기술을 보급할 임무가 있다.

제21조 종축금장은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관리, 번식육성, 사육기술을 채택하여 명확한 육성목표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건전하고 온전한 체계적인 당안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제22조 종축금장의 건립과 인정은 국가 우량품종 번식육성체계의 총체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급에 따른 심사비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중점 종축금장의 건립과 인정은 성급 인민정부 목축행정주관부문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 종축금장은 성 인민정부 목축행정주관부문에서 비준한다.

제23조 국유 종축금장에서 사용하는 토지, 초원, 경작지, 수면, 생산생활 설비, 종축금과 자금 등 국유재산은 원 비준기관의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부문과 개인도

차용, 양도, 교환(平調) 및 무상 점유할 수 없다.

제6장 종축금의 생산경영

제24조 종축금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종축금 생산경영허가증》(이하 허가증으로 약칭)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증에 근거하여 현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를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 원종(순수계열)장, 曾祖代場, 種公牛所, 국가중점 종축금장과 배태 혹은 기타 유전자를 생산경영하는 단위의 허가증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급 목축행정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쳐 증서를 발급한다.

기타 종축금장, 종축소의 허가증은 성급 행정주관부문에서 심사비준하여 증서를 발급한다. 단순히 종축금 경영과 난부화(卵孵化)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의 허가증은 현급 이상 목축행정주관부문에서 심사비준하고 증서를 발급한다.

제26조 원종(순수계열)장 증조대장 및 국가중점 종축금장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우량품종 번식육성체계의 배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고 전국 혹은 지역성 목축업 생산에 비교적 큰 작용을 하는 종축금 품종과 진귀한 축금 품종을 사육해야 한다.
- (2)종축금은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원종에서 유래해야 한다.
- (3)독립적인 육종장소가 있어야 하고 온전한 종 도입, 육종기록이 있어야 한다.
- (4)명확한 육종목표와 군체(群體)규모가 있어야 한다.
- (5)씨받이용 숫 축금은 종보존 혹은 육성 선택의 요구에 따라 여섯 가계(家系)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계보가 분명해야 한다.
- (6)종축금 기초군의 품질은 반드시 본 품종표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숫 가축은 특급 혹은 1급, 모가축은 1급에 달해야 하고, 또한 3대 계보가 명확해야 한다.
- (7)건전한 수의 위생방역, 환경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액, 배태(胚胎) 혹은 기타 유전재료를 생산 경영하는 단위는 반드시 상술한 (1)(2)(3)(4)(5)(6)(7)항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사에 합격한 자는 비준기관이 허가증을 발급하고 동시에 품종, 품계, 대별(代別)과 유효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28조 심사비준기구는 이미 비준한 종가축장에 대해 비정기적인 표본검사를 해야 한다.

제29조 판매하는 종축금은 본 품종 표준 2급이상(2급포함) 등급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그중 씨받이용 숫 가축은 1급이상(1급포함)등급표준에 달해야 한다. 판매하는 종축금은 종축금 생산단위의 공식 도장이 찍혀야 하고 《종축금 합격증서》와 종축금 계보가 있어야 한다.

제30조 각급 목축기술보급기구는 우량종축금의 보급, 종가축 계보의 등기와 사용기록을 적극적으로 잘 해나가야 한다.

제7장 부칙

제31조 《종가축 생산경영허가증》은 국무원 목축행정주관부문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관리 권한에 따라 심사하여 발급한다.

제32조 목축행정주관부문은 소속된 목축기술보급기구에 위탁하여 행정처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3조 축금품종 심사판정과 종축금 생산성능 측정비용은 국가 혹은 지방재정, 물가부문의 관계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제34조 본 세칙은 농업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5조 본 세칙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6대도시 유류(乳類) 발전항목 관리 잠정조례

(1983년 12월2일 농목어업부 반포)

제1조 “세계식량계획국”(이하 WFP로 약칭)이 원조해주는 중국 “6대 도시 유류 발전항목”(이하 항목으로 약칭)의 순조로운 실시를 통하여 항목의 각 항 지표를 완성하여 6대 도시에 신선한 우유공급을 가급적 신속하게 개선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본 잠정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잠정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유엔/양식조직에서 함께 추진하는 6대도시 및 그 변두리 지역의 유업 발전을 위하여 세계 양식계획처가 제공한 원조 집행계획》(이하 실시계획으로 약칭)과 중국 현행의 관련규정, 제도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다.

제3조 농목어업부는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본 항목을 실시하고 북경, 상해, 천진, 무한, 남경, 서안 등 6개 도시의 인민정부(이하 시정부로 약칭)는 본 항목의 본 도시에서의 구체적인 집행작업을 책임진다.

제4조 농목어업부는 본부 목축국을 중국정부와 WFP 사이의 본 항목의 정책문제를 연결해주는 관문으로 삼는다. 동시에 농목어업부 목축국 국장 한사람이 항목주임을 담당하고 본 항목의 집행작업을 지도한다. 농목어업부 목축국 내에 “농목어업부 목축국 6대 도시 유류 발전항목관리 검측조”(이하 검측조로 약칭)를 설립하고, 항목주임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본 항목실시의 조직관리, 검측과 실시계획 중 규정된 관련 기술서비스의 조직작업을 책임진다.

제5조 시정부는 본 항목이 본시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을 책임지고 지도하며 관련부문책임자가 참석한 “시 유류발전항목 지도소조”(이하 지도소조로 약칭)를 조직하여 시정부의 대표를 이 지도소조 조장으로 임명하여 시정부를 대표하여 본 항목을 집행해야 한다. 그 아래에 “시 유류발전항목 사무실”(이하 항목반으로 약칭)을 설립하고 지도소조의 지도 하에 본시 각 관계부문이 항목의 각 항작업을 집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동시에 항목의 각 항 실시작업과 검측조 사이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6조 농목어업부와 시정부는 각자 지도 하의 항목관리기구에 충분한 전문 직업작업인원을 안배하고 필요한 작업조건을 창출함으로써 항목작업의 품질과 성과를 보장해야 한다.

제7조 관련부와 6개 시정부(혹은 지도소조)에서 지정한 대표로 구성된 “6개도시 유류발전항목협조조”(이하 협조조로 약칭)는 관련항목의 중대문제에 대한 토론, 심

의를 책임지고 각부문의 관계를 조절하고 감독감측조의 작업을 책임진다. 협조 조 조장은 농목어업부의 대표가 담당하고 항목의 부주임을 겸하여 항목주임을 도와 항목집행 작업을 지도한다.

제8조 항목반은 아래의 본시 항목 계획을 조직, 편제를 책임진다.

1. WFP에 제출한 《6대도시 유류 발전항목계획표》(초안)와 《6대도시 유류 발전항목 1983~1988년 매년 건설 항목별 투자계획표》에 근거하여 분기별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2. 분기별 실시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획을 마련한다.
 - (1)유(乳)가축발전, 우유의 생산, 가공, 판매계획
 - (2)기본건설계획
 - (3)물자공급과 설비구매계획
 - (4)년도 작업계획
 - (5)상술한 계획의 집행을 보증하는 재무계획

제9조 시의 분기별 실시계획은 시 지도소조에서 토론하여 통과하고 시정부의 심사 기준을 받아 시 항목사무실을 독립계획단위로 하여 시 계획위원회에서 본시 국민경제계획으로 넣는 동시에 시정부가 농목어업부에 보고하고 검측조가 총괄하여 6대도시 항목의 분기별 실시계획을 편제하여 농목어업부의 심사분류총괄을 거쳐 WFP에 제출한다.

- (1)분기별 실시계획은 반드시 전 해 10월 전까지 농목어업부 및 성(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다.
- (2)주관부문의 심사 기준을 거쳐 본시계획의 분기별 실시계획에 집어넣어 그 해 제1분기 말에 농목어업부에 2부씩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상술한 계획은 각 시 항목반에서 책임지고 집행한다. 검측조에서는 지도, 분류총괄을 하는 동시에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한다.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각시가 분기별 실시계획에 대해 조정과 수정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검측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년도 계획내의 조정과 수정은 반드시 본 시 지도소조와 계획심사부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검측조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설비를 수입할 경우 주관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자금(외화 포함)이 확보된 후 검측조에 계획을 보고하고 검측조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을 조직한다. 각 시에서는 단독으로 수입할 수 있으나 수입계획을 검측조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12조 물자의 매매 수입과 각 시의 배당기금을 원조하기 위해 각 시 항목반은 단독장부를 만들고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직접 원조를 받는 항목단위도 반드시 항목자금 단독장부, 단독관리를 해야 한다. 재무관리의 내용과 방법은 《6대도시 유류 발전항목 재무회계관리집행규정》(이하 재무회계규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13조 각급 항목관리와 집행기구는 건전한 항목통계계층을 건립해야 하고 제때에 정확하게 계절회보, 반년회보, 연말보고 등 각종 보고를 잘해야 한다. 그 중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각 시 항목반에서 감측조에 보고하는 보고서 중에 국가 수입심사회계처에서 심사회계해야 할 보고서는 반드시 시의 심사회계국에서 지정한 심사회계원이 심사회계를 하고 서명 한 후에야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 원조물자의 관리는 모두 《6대도시 유류 발전항목 물자저장운송 잠정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각 단위는 항목자금 사용으로 형성된 고정자산을 반드시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해서 그 완벽함과 정상이용을 보장하고 고정자산 카드를 확립해야 한다. 항목고정 자산 카드는 분명하게 기입할 필요가 있으며 일식 3부로 사용단위에서 1부 보존하고 항목반에 2부를 제출하고 항목반에서 분류 총괄 후 1부는 보존하고 다른 1부는 감측조에 보고한다.

제16조 감측조는 각 시 항목반에서 마련한 항목기술훈련과 기술서비스 계획을 책임지고 조직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6대도시 유업 기술서비스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제17조 외국 선진기술을 배우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모델이 많아서 야기될 수 있는 중복과 혼란을 면하기 위하여 항목수요로 인한 출국시찰, 학습, 전문가 초빙 및 외국과의 기술교류 활동은 반드시 감측조에서 일괄적으로 조직한다.

제18조 각급 항목의 구체적인 관리기구는 각종 기술자료의 수집, 정리, 조직과 관계단위와의 기술정보교류를 잘하여야 한다.

제19조 항목을 집행하는 과정 중 감측조는 농목어업부 목축국을 대표하여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각 시 집행항목의 각 방면 상황에 대해 검사해야 하고, 각 시에서는 검사를 받아들이고 또한 사실적으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항목반에서는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본시 각 항목단위에 대해 감독,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집행항목의 관계 단위는 거절할 수 없고 또한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항목주임 혹은 부주임은 해마다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협조조 회의”를 개

최하여 연구항목의 중대한 문제를 토론연구 해야한다. 예를 들면 항목의 각 항 조례, 제도, 방법을 제정 개정하고 년도계획을 심사결정 하여 항목작업에 관한 감측조의 보고를 듣고 심사하는 등이다.

제21조 감측조는 반년에 한 번씩 각 시 항목반 책임자가 참가한 “항목반 책임자 연 석회의”를 조직하여 전 반년과 전년의 작업을 결산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22조 작업진도를 장악하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항목반에서는 매년 7월 20일 전과 1월 20일 전으로 각각 전 반년과 지난해의 작업을 결산하고 감측조에 보 고하여 분류 결산보고 혹은 관계 단위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 항목을 실시하는 각 직접적인 관계 단위와 각 개인의 적극성을 충분히 불러 일으키기 위해 각 항목관리기구와 각 항목단위에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직무 책임제를 실시하고 상응한 상벌제도를 제정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심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농목어업부와 시 인민정부는 해마다 선진단위, 단체, 개인에 대 해 각각 표창과 장려를 실시한다.

제24조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북경, 상해, 천진, 무한, 남경, 서안 등 여섯 개 도시 의 항목작업이다.

제25조 본 조례는 협조조의 토론을 거쳐 농목어업부의 비준을 거친 후에 반포한다. 반포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6조 본 조례의 해석권은 농목어업부 목축국에 속한다.

제27조 본 조례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집행과정 중 개정이 필요하면 감측조에서 각 시 항목반을 모집하여 상의해서 증설과 개정의견을 제출하여 협조조의 심사를 통과를 거쳐 항목주임의 서명을 받은 후 농목어업부에 보고하여 비준 받은 후 집행한다.

가축가금 방역조례

(1985년 12월 14일 국무원 반포)

제1장 총칙

제1조 가축가금(가금으로 통칭함)의 전염병(기생충병 포함, 이하 같음)을 예방 퇴치하고, 목축업생산과 인민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가축은 돼지, 소, 양, 말, 당나귀, 노새, 낙타, 타조, 사슴, 개 등을 일컫는다. 본 조례에서 가금이라 함은 닭, 오리, 거위를 말하며, 축금산품은 가공을 거치지 않은 고기, 기름, 장기, 가죽, 혈액, 털, 뼈, 족, 뿔, 정액, 종란을 말한다.

제3조 수출입 축금, 축금산품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농목어업부는 전국의 방역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농목부문은 본 지구의 방역사업을 주관한다. 축금, 축금산품 생산경영 단위의 주관부문은 본 계통의 축금 방역사업을 책임진다.

제5조 농목어업부는 반드시 국내 외 축금 역황 상황과 목축생산에 근거하여 사람과 가축의 건강요구를 보호하고자 축금의 방역과 검역 대상을 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제2장 축금전염병의 예방

제6조 각급 농목부문은 예방위주 방침과 관련 축금방역 정책,법령을 홍보하며, 방역규장제도와 방역계획을 제정 및 조직화하며, 기술복무, 기술자문을 전개하여 각 기층 축금 방역사업을 원활히 하고, 축금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각 기층의 방역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기층의 방역기구 건설을 강화하며, 인원과 시설을 충실히 한다. 기술, 경제 도급책임제와 축금보험제 등 새로운 경험을 총괄하고 확대하여 실제적인 방역사업이 되도록 한다.

제7조 축금 사양장, 창고, 도살장, 가공공장과 종축장의 건설은 반드시 방역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축금의 사양, 경영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당해 지역 농목부문의 방역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검역, 기생충제거 등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8조 가축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당해 지역 농목부문의 축금방역기구 혹은 그 위탁단위는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증명을 해야 한다. 무릇 사양농가에 가서 검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사양농가에 가서 검역하며, 그 조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 지정한 지점에서 검역하도록 한다. 시장에서 가축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검역 증명을 지참하여야 하며, 증명이 없으면 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 당해 지역 농목부문은 감독과 검사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 가축을 현(시)외로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검역증명이 있어야 하며, 현급 농목부문 혹은 그 위탁단위에 보고함과 동시에 현급 농목부문 혹은 그 위탁단위에서 감독 검사를 진행한다. 교통운수부문은 검역증명에 근거하여 운송을 책임진다.

제9조 가축에 대한 검역요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10조 도살장, 육류종합가공공장의 축금방역, 검역사업은 공장 측에서 책임지며, 농목부문은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 도살장, 육류종합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축금산품은 반드시 공장 측에서 발급하는 방역증명이 있어야 하며, 가축 몸체에는 검역완료도장이 찍혀야 한다. 기타 단위, 개인이 도살하는 가축은 반드시 당해지역 축금 방역기구 혹은 그 위탁단위에서 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가축 산품 검역증명을 발급하면, 몸체에 검역완료도장을 찍는다.

제11조 축금산품은 전조의 제2항 혹은 제3항에서 규정한 검역증명에 근거하여 시장에 출하, 판매 및 운송한다. 농목부문은 감독 검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며, 교통운수부문은 검역증명에 근거하여 운송을 책임진다.

제3장 축금전염병의 퇴치

제12조 축금이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유사한 상황을 발견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신속히 격리 등 방역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지역 축금 방역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그 지도와 감독 검사를 받는다.

제13조 중대하거나 혹은 당해 지역에서 새로이 발견된 축금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당해 지역 축금 방역기구는 반드시 즉시 역원(疫源)을 찾아내고 긴급 퇴치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당해 지역 현급 이상의 농목부문은 역구를 확정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봉쇄령 반포를 신청함과 함께 차상위 인민정부에 그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역구 범위가 2개 성(자치구, 직할시) 이상에 걸치는 경우 농목어업부가 역구를 확정하고 봉쇄령을 반포하며, 국무원에 그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역구로부터 축금과 축금산품의 구매, 운송을 금지하며, 당해 지역 현급 이상 농목부

문은 역구의 병에 걸린 축금과 그 무리들을 도살, 퇴치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제14조 사람과 축금이 모두 전염병에 걸렸을 때 당해 지역 농목부문은 반드시 즉시 위생부문에 통지해야 하며 공동으로 역병퇴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15조 각급 농목부문은 반드시 관할구역의 유관단위와 개인이 본 조례를 집행하는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6조 농목부문 혹은 그 위탁단위는 제8조 제2항, 제3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축금 혹은 축금산품의 검역증명을 조사해야 하며, 표본 검사할 수도 있다. 검역증명 혹은 검역증명의 유효기한이 초과한 축금 혹은 축금산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검역증명을 발급한다.

제17조 농목부문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도살장, 육류종합가공장이 본 조례와 <육류제품 위생검사 시행규정>에 의거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진행한다. 감독검사에서 발견한 문제에 근거하여 공장 측 혹은 상급주관부문은 건의나 처리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검역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축금산품에 대해서는 공장의 반출을 제지할 권한이 있다. 농목부문은 감독 검사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도살장, 육류종합가공장에 수의사를 파견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상벌

제18조 각급 인민정부는 축금 방역사업에서 현저한 성적 혹은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는 표창을 한다.

제19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 당연히 정황에 따라 행정처분 혹은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형법에 저촉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20조 농목부문의 축금 방역인원이 차량정류장, 항구, 공항, 사양장, 종축장, 도살장, 가공공장, 창고, 시장 등 장소에 가서 임무를 집행할 시 유관단위에서는 필요한 업무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21조 농목부문에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검역, 방역사업을 할 때 검역, 방역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제정한다.

제22조 실험동물, 관상동물, 연예동물, 애완 야생동물에 대한 방역사업도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23조 본 조례의 실시세칙은 농목어업부에서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는 본 조례 및 실시세칙을 참고하여 당해 지역 상황에 적절한 실시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24조 본 조례는 농목어업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본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가금 방역조례 실시세칙

(1992년 4월 8일 농업부 반포)

국무원(1989) 국가 발 34호 문서에 의한 《가축가금 방역조례 실시세칙》 수정 및 완비 요구에 따라 우리 부는 기존 《실시세칙》을 수정하였다. 농업부 1991년 제6차 상무회의 심의 통과를 이미 거쳐 지금 반포 시행한다. 1985년 8월 7일 농목어업부에서 반포한 《가축가금 방역조례 실시세칙》은 바로 폐지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가축가금방역조례》(이하 약칭 《조례》) 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실시세칙에서 부르는 축금, 축금제품은 《조례》의 제2조 규정과 같다.

제3조 축금 전염병(기생충병 포함)은 세 종류로 나눈다.

제1종: 구제역, 蘭舌病, 소 콜레라, 牛肺疫,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돼지 콜레라, 돼지 전염성 水疱病, 닭의 급성 전염병(A형 유행성 감기), 아프리카 말콜레라

제2종: 탄저, 브루셀라균병, 결핵병, 부결핵병, 광견병, 유행성B형 뇌염, 돼지 단독, 돼지 肺疫, 돼지 霉形體肺炎, 돼지 스피로헤타 이질, 돼지 위축성비염, 소 지방성 백혈병, 소 유행열, 소 전염성 鼻기관염, 점막병, 양 수두, 염소 관절병뇌염, 면양 維迪斯那병, 鼻疽, 말 전염성 빈혈병, 말 비강폐염, 닭 新城疫, 가금 광란, 닭 馬立克氏 病, 닭 백혈병, 雛白痢, 오리 콜레라, 거위 새끼 콜레라, 토끼 병독성 패혈증(잠정명), 토끼 스피로헤타병, 토끼 螺旋體病, 토끼 출혈성 패혈증

제3종: 음, 鈎端螺旋體 病, 일본 흡혈충병, 弓形體病, , 焦蟲病, 錐蟲病, 돼지 낭충병, 球蟲病

본 실시세칙이 규정하는 것 이외의 축금전염병은 각 성(省), 자치주, 직할시에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스스로 규정한다.

제4조 국무원 농목주관부문은 전국의 축금 방역, 검역 및 기타 수의 위생작업을 관리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 농목주관부문은 본 지역에 있는 축금 방역, 검역 및 기타 수의위생근무를 관리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농목주관부문의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는 구체적으로 관할 구역에 있는 수의 위생감독관리를 실행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농목주관부문의 수의위생방역소, 축목수의소, 검역소(이상 통칭 축금방역검역기구) 및 향진(鄉鎮) 축목수의소는 조례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축금, 축금제품의 방역, 검역근무를 관리한다.

축금, 축금제품을 생산, 경영하는 단위의 주관부문은 반드시 《조례》와 본 실시세칙과 인민정부 및 농목주관부문이 제정한 축금방역 규정, 제도, 방법, 계획, 계획, 조치에 따라 본 체계의 축금방역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농목주관부문의 감독, 검사를 받는다.

군대의 현역 군마, 군노새, 군견의 방역, 검역 등 수의위생작업은 군대 자체로 실시한다.

제5조 축금, 축금제품의 수출입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1, 2종 전염병 혹은 질병 감염 축금 혹은 제품을 검출했을 시 즉시 소재지 농목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 농목주관부문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1) 《조례》를 근거하여 축금방역, 검역 및 기타 수의위생행정 규정, 제도, 방법, 기술규범, 기준 및 계획, 계획의 기초와 제정을 책임진다.
- (2) 국가 축금 방역, 검역 대상을 규정하고 공포한다.
- (3) 전국의 축금, 축금제품과 관계방면의 방역, 검역 및 기타 수의 위생근무의 감독과 관리를 책임진다.
- (4) 국가 관계 규정과 관리에 따라 《조례》 관철에 필요한 각 항 증명서, 도장, 표지를 제정하고 관리한다.
- (5) 축금 질병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반포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각급 정부농목주관부문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1)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축금방역, 검역 및 기타 수의위생작업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 (2) 지방 축금의 방역계획을 제정하고 그 실시를 감독한다.
- (3) 법률, 법규 위임 권한에 근거하여 지방축금방역, 검역 및 기타 수의위생관리방법, 기술규범과 관계 규정을 기초하고 제정한다.

제7조 각급 농목주관부문 소속 축금방역검역기구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1) 관할 구역 내의 축금, 축금제품의 방역, 검역작업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 (2) 관할 구역 내의 축금 질병상황의 조사, 감측을 책임지며, 의심스럽고 어려운 질병의 진단과 질병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 (3) 관할 구역에 있는 축금방역, 검역등 수의위생작업의 과학보급활동, 기술지

도, 기술 확충을 추진하고 기술청부책임제 및 축금보험제 등 경험을 종합하고 보급하는 것을 책임진다.

제8조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 각급 농목주관부문과 향진(鄉鎮) 정부가 수의위생감독기구, 축금방역검역기구와 향진 축목수의소의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충실히 하여 기술인원의 소질을 향상시키고 방역, 검역 검사와 수의위생감독 기계설비를 배치한다.

제2장 축금 전염병의 예방

제9조 강제 면역접종을 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면역증명제도를 실행한다. 축금의 사육, 구매, 도살, 저장운송과 축금제품의 생산, 가공, 구매, 운송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소재지 농목주관부문의 축금 방역, 검역 배치에 따라 축금방역 등 수의위생작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소재지 농목주관부문에 작업상황을 보고한다.

제10조 축금 사육, 생산, 경영하는 단위와 사육전문업자에 대한 축금방역 예방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축금 사육장, 사육전문업자는 반드시 수의 위생인원이 수의위생작업을 책임지고 하도록 해야한다. 종축장, 종금장과 사육장에는 반드시 수의위생전문인원이 있어야 하고 병든 축금 격리와 똥오줌, 오물처리, 소독 등 시설이 있어야 한다.
- (2) 가축개량소(가축 배종소, 번육소, 냉동정액소), 종축장, 종금장, 배종전문농가에서 사육하는 종축금은 반드시 규정된 전염병이 없어야 한다.
- (3) 종축, 종금을 도입하는 단위는 종축, 종금이 사양장 내에 들어온 후 일정한 시간을 격리하고 규정한 전염병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 도입한 종축, 종금이 사육장이나 농가에 도착하면 단위나 개인은 반드시 일선 동식물검역단위의 증명서를 가지고 소재지 현(縣)급 이상의 농목주관 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도살공장, 육류연합가공공장 및 기타 축금 도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축금방역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고 농목주관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도살공장, 육류연합가공 공장은 아래 방역 요구에 부합해야 된다.

1. 전문 수의위생검사기구가 있고 생산, 경영 규모에 상응하는 수의전공 중등 이상 학력이 있는 전문직 직원과 검역, 검시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직접적으로 검역, 검시를 하는 직원은 전문 훈련을 받은 적이 있고 수의전공 중등이상 수준이 되어야 한다.
2. 병든 축금을 격리할 수 있는 축사와 신속하게 도살할 수 있는 전용 축사가 있어야 한다. 병에 걸린 축금의 시체, 육류를 무해화(無害)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방역 요구에 부합하는 축금과 축금제품을 운송하는 도구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4. 수의위생 관리제도가 있어야 하며,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2) 기타 축금을 도살하는 단위와 개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축금방역요구를 실행한다.

제12조 축금사육장, 개량소, 종축장, 종금장, 도살공장, 육류연합가공공장, 창고의 건설은 반드시 방역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그 신축, 증축 또는 개축공사와 부지 선정 및 설계는 그 지방의 수의위생감독기구에 심사 신청해야 한다. 심의에 합격하여야 시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준공 후에는 합격 검수를 받아야 생산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수의위생감독기구는 신청서를 받은 후 2개월 내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축금 거래 시장과 농업시장의 경영관리 단위는 축금의 종류에 따라 전용 장소를 마련해야 하며, 그 장소는 항상 시간을 정해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한다. 똥오줌, 똥짚, 오물은 무해(無害)처리를 해야 한다.

제14조 축금을 실은 차량, 비행기, 선박이 역구(疫區)를 통과할 경우, 축금의 주인 혹은 위탁인은 역구의 주차장, 공항, 항구에서 풀, 축금 식수와 유관 물자를 실어서는 안 된다. 운수도중 어떠한 단위, 개인이라도 병든 축금 혹은 병사한 축금을 도살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길가에 병사한 축금 혹은 부패하고 변질된 축금제품, 똥오줌, 까는 똥짚, 오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도중에 병사한 축금과 똥오줌, 까는 똥짚, 오물은 반드시 지정한 곳이나 도착한 곳에 내려 그 지방의 수의위생인원의 감독 하에 화주는 규정에 따라 무해(無害) 처리해야 한다. 처리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제15조 축금과 축금제품을 운송하는 차량, 선박, 비행기 및 사육도구, 작제용구는 화주가 실기 전과 내린 후 깨끗이 청소하고 씻는다. 농목주관부문의 축금방역

검역기구 혹은 그 지정단위는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증명서를 발급한다. 소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까는 벧짚, 똥오줌, 오물은 화주가 무해 처리를 해야 한다.

제16조 각급 농목주관부문은 필요에 따라 성(省)과 성(省), 현(縣)과 현(縣) 간의 지역 연합 협조관계를 맺어야 한다.

제17조 현(縣)급 이상의 지방 농목주관부문은 현지 축금 전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축금의 전염병을 검사, 관찰한다. 다음의 축금은 임상 검사와 시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1) 종용 축금

종우: 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 균병, 蘭舌病, 소 지방성백혈병, 부결핵병, 우폐역, 소 전염성비기관염, 점막병을 검사한다.

종마, 종나귀: 鼻疽, 말 전염성 빈혈, 말 비강폐염을 검사한다.

종양: 구제역, 브루셀라 균병, 난설병, 염소 관절염뇌염, 면양 維迪斯那病, 양 수두, 음

종돈: 구제역, 돼지 콜레라, 돼지 전염성 수포병, 브루셀라 균병, 돼지 霉形體 폐염, 돼지 密螺旋體 이질을 검사한다.

종토끼: 토끼 병독성패혈증, 토끼 스피로헤타병, 음, 구충병을 검사한다.

종금: 新城疫, 雛白痢, 오리 콜레라, 거위 새끼 콜레라, 백혈병, 霉形體병을 검사한다.

(2) 젖소, 젖염소, 역축용 말, 노새, 나귀 등은 동종의 종우, 종양, 종말, 종나귀에 대한 검사요구와 다르다.

(3) 역우, 비육우: 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 균병, 부결핵병, 우폐역등을 검사한다.

곧 도살하려는 축금은 임상검사를 하고, 다음 역병을 검사해야 한다. 소 구제역, 탄저, 양 구제역, 탄저, 양 수두, 돼지 구제역, 전염성수포병, 돼지 콜레라, 돼지단독(丹毒), 돼지폐역, 탄저 등이 그것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농목주관부문은 현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검사 대상을 늘릴 수 있다.

제18조 가축을 팔기 전에 가축 주인은 소재지 농목주관부문 방역검역기구 혹은 위탁 단위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검역 검험에 합격하여야 팔 수 있다.

도살 가축 중 현(縣)내에 유통되는 것은 현지 농목주관부문 방역검역기구 혹은 위탁 단위 및 향진(鄉鎮) 축목수의소에서 검역을 받는다. 사육호(혹은 사육단위)에 가서 검역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면 사육호(혹은 사육 단위)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런 조건이 없으면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지점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종용, 유용, 역용 가축과 종금, 현 밖으로 운송되는 가금은 팔기 전에 현지 현금 이상의 농목주관부문방역검역기구 혹은 위탁 단위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도살장, 육류연합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축금제품은 공장에서 검역을 한다.

기타 단위와 개체호가 도살, 가공한 축금, 축금제품은 소재지 농목주관부문 축금방역검역기구 혹은 위탁 단위에서 검역 검험을 해야 한다.

검역 위탁사업은 농목주관부문의 축금방역검역기구가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위탁받는 단위는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위탁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위탁받은 권한 내에서 검역직권을 행사한다.

제19조 방역검역기구와 단위는 전조에서 규정한 권한에 따라 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검역에 합격한 축금제품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縣)내에서 유통하는 축금은 축금생산지검역증명서를 작성한다.

현(縣) 밖으로 운송하는 축금(현과 현에 인접된 향 제외)은 축금운수검역증명서를 작성한다.

축금제품은 축금제품 검역검험증명서를 작성하고, 몸통에 “검사필”도장을 찍거나 검사표지 낙인을 새긴다.

제20조 현 밖으로 운송되는 축금과 축금제품은 화물 주인이 축금운송검역증명서, 축금제품검역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하며, 운수 단위와 개인은 위의 증명서에 의거해 운송할 수 있다.

철도로 운송하는 축금, 축금제품은 화물 주인이 축금운송검역증명서, 축금제품 검역증명서를 지니고 철도에 나가있는 농목주관부 기구 혹은 인원의 감독 검사와 허가를 받은 후에야 철도 운송을 할 수 있다. 농목주관부문이 철도에 기구나 인원을 파견하지 않는 지역에는 철도부문이 유효기간 내에 축금운송검역증명서, 축금제품검역검사증명서를 근거로 운송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병사한 축금 및 그 제품을 발견하면 규정에 따라 화물 주인이 무해 처리를 하며 처리비용은 화물 주인이 부담한다.

제22조 축금과 축금제품을 검역, 검사할 때는 국가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하며 검역 검사증명서를 작성하며, 위조증명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제23조 다음에 열거하는 축금, 축금제품의 취급은 금지한다.

- (1) 봉쇄한 역구 발생구역에 있는 것
- (2) 검역검사증명서가 없는 것

- (3) 소지한 검역검사증명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 (4) 역병이 있고 유해한 것
- (5) 병으로 죽거나 독으로 죽은 것 또는 원인불명인 것
- (6) 기타 수의위생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제24조 축금, 축금제품검역검사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축역(畜疫)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7일 이내, 축금제품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 현급 이상의 지방 농목주관부문에 속한 축금방역검역기구와 향진 축목수의소는 일정 수의 수의위생검역원을 두며, 역구 구역에서의 축금, 축금제품의 검역검사를 책임진다. 수의위생검역원은 수의전문 중등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는 자가 담당하며, 현급 이상 농목주관부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성급 농목주관부문은 수의위생검역원 증명서를 발급한다.

수의위생검역원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1) 축금, 축금제품검역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검사증명서를 작성한다.
- (2) 현지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와 협조하여 감독검사를 전개한다.
- (3) 검역 중 전염병이 있는 축금 및 축금제품을 발견하면 그것들이 시장에 나와 판매되고 운송되는 것을 저지할 권한이 있으며, 주인이 무해 처리하는 것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 (4) 《조례》와 본 실시세칙에 위반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비평, 경고, 벌금을 내릴 권한이 있다.

제26조 가금의 검역은 《조례》 제9조를 의해 실시한다.

제3장 축금 전염병의 퇴치

제27조 축금과 축금제품을 사육, 생산, 구매, 도살, 가공, 저장, 운송하는 단위 및 관련 단위와 개인은 축금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현지 가금방역검역기구 혹은 향(진)축목수의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축금방역검역기구, 향(진)축목소가 제안한 방제 방법과 조치를 성실하게 집행해야 한다. 축금방역검역기구와 향(진)축목소는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에 역병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본 실시세칙 제3조에 규정한 제1종 축금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혹은 현지에서 발견한 축금 전염병 혹은 제2종 축금 전염병이 심하게 유행할 경우, 전염병의 근원을 밝히고 긴급 퇴치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범위 내의 것은 현급 농

목주관부문이 전염병 발생 장소, 구역, 위험구역으로 나누고,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전염병 발생 구역에 봉쇄령을 내리며 차상위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인접 구역과 관계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역구의 범위가 두 개 이상의 현(旗)에 걸치는 경우 시(地,盟,州) 인민정부(행정기관)는 봉쇄령을 내리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두 개 이상의 시(地,盟,州)에 걸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봉쇄령을 내리고 국무원 농목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두 개 이상의 성, 자치주, 직할시일 경우는 국무원 농목주관부문이 봉쇄령을 내리고 국무원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제29조 축금 전염병이 발생한 장소, 구역 및 위험구역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봉쇄하는 장소에 반드시 취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사람, 축금, 기타 사육 동물, 차량의 출입과 축금제품 및 오염 가능한 물품의 운송을 금지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반드시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 농목주관부문의 허가를 거쳐 엄격하게 소독을 한 후 출입할 수 있다.
- (2) 병에 걸렸거나 죽은 축금은 현급 이상의 농목주관부문이 없애거나 소각, 무해처리 등을 실시할 권한이 있으며 축금 주인은 거절할 수 없다. 병사한 축금과 축금제품을 처리하는 비용은 주인이 부담한다.
- (3) 전염병 발생 지역의 출입구에는 반드시 소독 시설이 있어야 하며, 발생 지역 내의 도구와 축사, 장소는 엄격하게 소독해야 한다. 축금의 똥 오줌, 깐 볏짚, 오염된 물품은 수의인원이 감독과 지도 아래 무해 처리를 해야 한다.

봉쇄하는 역구 구역에서 취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교통 요지에는 임시 검역소독초소를 세우고, 전문가와 소독 시설을 갖추어 축금과 축금제품의 이동을 감시하고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소독한다.
- (2) 시장 거래와 역구 구역내의 축금, 축금제품의 거래를 중지한다.
- (3) 쉽게 전염되는 축금은 검역과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사육 축금은 반드시 울타리가 있는 곳이거나 지정하는 지점에서 사육하고 역구 내에서 축역의 사용을 규제한다.

위험구역에서 취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현지 지방의 인민정부는 관계단위와 개인을 동원하여 방어 조치를 취한다.
- (2) 축금방역검역기구, 향(진)축목수의소는 수시로 질병 상황과 동태를 측정해야 한다.

제30조 역구(질병지점 포함) 내의 마지막 한마리까지 병에 걸린 축금을 도살하거나 또는 병을 완전히 치료한 후에도 1주기 잠복기 이상을 검사, 관찰하여야 하며, 병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깨끗이 청소를 하고 현금 이상의 농목주관부문으로부터 검사합격을 받은 후에 원래 봉쇄령을 내린 정부에 봉쇄령 해제 반포 신청과 함께 인접 지역과 유관부문에 통보하고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할 종합보고안을 작성한다.

봉쇄구역을 제거한 후에도 병력이 있었던 축금은 병독 기간을 관찰하고 역구 내 활동을 제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현지 농목주관부문이 제정한다.

제31조 생산, 경영, 운송하는 장소에서 본 실시세칙 제3조가 규정하는 제1종 혹은 제1종 유사 축금 전염병을 발견하거나 지방에서 규정한 위해가 비교적 큰 질병과 새로운 축금 질병을 발견하면 아래에 제시한대로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축금시장, 농업 시장에서 발견되면 현지 농목주관부문의 감독 아래 본 실시세칙 제29조에 따라 발생지점을 봉쇄하고 조치를 취한다.

(2) 운송단위에서 발견되면 시발 기차역, 항구, 공항은 모든 축금의 이동을 금지하고 현지 농목주관부문에 처리를 보고한다. 도착 기차역, 선박, 공항에서 발견되면 운송한 차량, 선박, 비행기를 역구 구역으로 간주하고 현지 농목주관부문의 감독 아래 본 실시세칙 제29조의 역구 구역을 봉쇄할 때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를 한다. 오염된 차량, 선박, 비행기, 장지, 도구와 똥오줌은 본 실시세칙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3) 경영, 도살, 가공장소에서 발견되면 즉시 축금을 경영, 도살, 가공하는 행위와 축금과 축금제품을 운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현지 농목주관부문 감독 아래 병에 걸린 모든 축금과 같은 무리에 있는 축금을 속히 도살해야 한다. 그 육류는 《육품위생검사 시행규정》 및 농목주관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장, 발생장소, 도구는 필히 세척 소독을 해야 하며 현금 이상의 농목주관부문의 검사 합격을 거친 후에 다시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제32조 질병 증상이 발견될 때 각급 농목주관부문은 필요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에 신청해서 관계부문을 조직화하여 방역지휘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33조 본 실시세칙 제3조가 규정하는 제2, 3종 전염병이 발생하면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제34조 축금과 사람이 함께 전염병에 걸리면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35조 각급 농목주관부문에 속한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

- (1)관할 구역 내의 유관단위와 개인은 《조례》와 본 실시세칙 및 관계 규장, 제도, 방법, 표준적 상황을 준수하고 집행하며, 검사와 측정을 감독한다.
- (2)수의위생증명서, 도장, 표지에 관한 심사 비준과 발급 및 관리를 책임진다.
- (3)축금방역과 상관되는 건축 공사의 심사 비준과 검수를 책임진다.
- (4)감독검사 업무 수행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표본을 채취할 수 있으며, 문제를 발견하면 규정에 위반한 축금, 축금제품 및 관련 물품에 대해 봉쇄보존, 검사유보, 압류, 소각 및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5)축금방역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지한다. 수의위생행정처리, 처벌을 결정하며, 수위위생행정 안전을 접수하여, 수의위생행정분규를 재심, 재결하며, 수의위생기술 분쟁을 감정하고 재결한다.
- (6)기타 수의위생감독관리사무를 책임진다.

하급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는 상급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의 감독을 받는다.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는 감독관리 업무상 필요에 의해 현지 농목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기차역, 항구, 공항 및 축금 사육장, 구매, 도살, 저장 등 관계단위와 장소 그리고 축금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 운송, 구매 등을 하는 관계 단위 또는 장소에 파견기구와 파견 인원을 둘 수 있다.

도로 상에서 검사 감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안도로검사소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철도로 운송하는 축금, 축금제품의 수량이 비교적 큰 구역은 현지 지방인민정부의 농목주관부문과 철도국의 협상을 거쳐 쌍방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곳에 농업주관부문 수의위생감독기구가 기구 또는 인원을 파견시켜 감독검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36조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는 수의위생감독원을 배치한다. 수의위생감독원은 수의전문 중등 이상 학력 혹은 동등한 학력이 있으며,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으며, 법률지식과 함께 축금방역행정법규,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수의 업무에 밝고 품행이 바르고 공정한 국가 공무원이 담당한다.

수의위생감독원은 성급 농목주관부문이 시험을 보아 합격한 자에 한해 국무원 농목주관부문이 발급하는 증서를 준다.

수의위생감독원과 검수원이 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순시(巡視), 직관, 표본 채취, 조사, 질문, 증거채취와 관계 자료, 기록, 증명서류 등을 열람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유관단위와 개인은 편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수의위생감독원은 검사 감독 중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처벌을 결정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는 사육, 생산, 경영, 유통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면역, 검역, 소독을 하지 않았거나 면역, 검역, 소독 증명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증거물과 부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 지우거나 위조한 증명) 또는 추출 검사에서 불합격된 축근, 축근제품을 발견할 경우, 규정에서 부여한 행정처리, 처벌 외에 규정에 따라 보충 예방주사, 보충 검사, 보충 소독과 모든 축근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표창과 처벌

제38조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 중에 검역, 감독관리 및 기타 수의위생 사업에서 현저한 성적을 보인 단위와 개인에 대해 각 급 인민정부는 일정한 표창을 하며 큰 공헌이 있는 자는 큰 상을 수여한다.

제39조 축근방역행정법규, 규정 및 관계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게 수의위생감독 검사기구는 그 경위와 위해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정처벌과 조치를 취한다.

- (1)경고와 기한 내 시정
- (2)벌금
- (3)손실배상
- (4)수의위생 관련 증명서, 도장의 압류 또는 몰수
- (5)《조례》 및 본 실시세칙이 규정한 기타 행정처분 조치

이상의 행정처벌과 처분은 단독으로 혹은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하여 조치할 수 있다. 벌금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수의위생감독원은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당사자에게 독립적으로 경고와 기한 내 시정을 하게 할 수 있으며, 600원 이하의 행정처벌권을 갖는다.

수의위생검역원은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적으로 당사자에게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토록 할 수 있으며 150원 이하의 행정처벌권을 갖는다.

제41조 당사자가 수의위생행정처분과 처벌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분 혹은 처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내 처분 혹은 처벌을 한 수의위생감독기구의 상급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기구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 개월 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내 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재심신청을 하지 않은 채 처분 혹은 처벌을 이행하지도 않은 경우 또는 재심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경우 처분 처벌을 내린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는 금령에 위배하는 축금, 축금제품 및 관련 물품을 규제하거나 무해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즉시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처리 결정을 내린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 축금방역 행정법규, 규장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와 타인에게 경제손실을 입힌 경우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는 배상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피해자는 배상손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6장 부 칙

제43조 각급 농목주관부문에 속한 수의위생감독검사기구, 축금방역검역기구와 향(진)축목수의소는 《조례》와 본 실시세칙 규정에 따라 방역, 검사검역, 소독, 기술감독 측정업무를 할 경우 필요한 일정한 비용을 받는다.

제44조 시험 동물, 애완 동물, 연예 동물, 집에서 사육하는 동물과 포획한 야생동물의 방역, 검역은 본 실시세칙 규정을 참조해서 실시한다.

제45조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농목주관부문의 수의위생감독원, 검역인원이 감독, 검역 임무를 수행할 때 유관단위와 개인은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46조 수의위생검역원, 감독원이 부착하는 표지 및 그 증서, 증장과 축금과 축금제품의 방역검사증과 수의위생 관련 감독관리 서류, 증서는 국무원의 농목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한다.

제47조 《조례》 제23조 및 본 실시세칙 규정에 의거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맞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8조 본 실시세칙의 해석은 국무원 농목주관부문이 책임진다.

제49조 본 실시세칙은 반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85년8월7일 농목어업부가 반포한 《가축가금방역조례 실시세칙》은 폐지한다.

4. 동식물검역분야 주요 법령

-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 284P
-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 292P
- ◇ 식물검역조례 / 305P
- ◇ 식물검역조례 실시세칙(농업부문) / 306P
- ◇ 국외도입 종자·묘목 등 검역 심사비준 관리방법 / 319P
- ◇ 국가 입국동물 격리검역장 관리방법 / 323P
- ◇ 동물산품의 위탁가공관련 검역 방역의 규정 / 325P
- ◇ 부대계통 가죽·가금 및 그 생산품 위탁검역문제에 관한 통지 / 327P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 검역법

(1991년 10월 30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통과)

제1장 총 칙

제1조 본 법은 동물전염병, 기생충병과 식물위험성병, 벌레,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약칭은 병충해)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방지하고, 농림목어업 생산과 인체건강을 보호하며, 아울러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동식물·동식물 제품·기타 검역물을 싣는 적재용기, 포장물 및 동식물 역구에서 온 운수공구는 본법 규정에 근거해서 검역해야 한다.

제3조 국무원은 통일적으로 전국 출입국동식물 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동식물검역기관을 설립하고(이하 국가동식물검역기관이라 칭함), 국가동식물검역기관은 대외 개방항구와 동식물 출입국 검역업무가 집중된 곳에 일선동식물 검역기관을 설립하여 본법규정에 근거하여 출입국동식물을 검역한다.

수출 무역 동식물제품 검역기관은 국무원이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전국 출입동식물 검역사업을 관리한다.

제4조 일선 동식물 검역기관은 검역을 위하여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본법에 근거해서 선박, 차량, 항공기에 올라가서 검역할 수 있다.
- (2)항구, 공항, 차량정류장, 우전국 및 검역물들을 보관, 가공, 양식, 재배하는 장소에서 검역할 수 있고 또 규정에 딸 표본을 채취할 수도 있다.
- (3)검역필요에 따라 생산 및 창고 등 보관장소에 들어가서 역황에 대한 감측, 조사 및 검역감독 관리를 할 수 있다.
- (4)검역물 관련 동향일지, 화물운수명세서, 계약서,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들을 검사, 복사, 기록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아래에 열거한 것들의 입국을 금지한다.

- (1)동식물병원체(균종, 독성종 등을 포함),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 (2)동식물 역황이 유행하는 국가 및 지역과 관련있는 동식물, 동식물 제품과 기타 검역물
 - (3)동물사체
 - (4)도양
-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위에 규정된 금지된 물건들을 발견했을 경우, 되돌려

주거나 혹은 없애버린다.

과학연구 등 특수수요로 제①항에서 규정한 금지물을 들어와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한 후에 국가 동식물검역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물의 목록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 및 공포한다.

제6조 국외에서 발생한 중대한 동식물 역황이 중국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무원은 마땅히 긴급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동식물 역구로부터 운수공구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유관항구들을 봉쇄시킬 수 있다. 또한 동식물 역황 위협을 받는 지역의 지방인민정부와 유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응당 신속히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고 동시에 상급인민정부와 국가동식물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우전국, 운수부문에서는 중대한 동식물 역황 보고와 검사 재료들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7조 국가동식물검역기관과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출입국 동식물과 동식물 제품의 생산, 가공, 보관과정에 대해 검역감독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제8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이 항구, 공항, 차량정류장, 우전국에서 검역임무를 집행할 때 세관, 교통, 민항, 철로, 우전국 등 유관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한다.

제9조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인원들은 필히 직무에 충실하고 법 집행을 공정히 해야 한다.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인원들이 법에 근거하여 공무를 집행할 때,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2장 수입검역

제10조 동물, 동물제품,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들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먼저 신청한 다음 검역심사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무역, 과학기술합작, 교환, 증정, 원조 등 방식으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계약 혹은 협의과정에 중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역요구사항을 알려야 하며, 또 반드시 수출국가 혹은 지역정부 동식물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반드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국

경을 통과하기 전이나 통과할 때, 수출 국가 혹은 지역의 검역증서, 무역계약 등 증빙 서류들을 지참하여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보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동물을 실은 운수공구가 입국장소에 도착할 때,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응당 현장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운수공구 혹은 동물들에 접근한 사람, 동물 적재공구와 피 오염 장소에 대해 방역 소독처리를 해야 한다.

제14조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항구에서 검역해야 한다.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운수도구를 운행하지 못한다.

격리검역이 필요한 수입 동식물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지정한 격리장소에서 검역을 해야 한다.

항구조건 등 원인으로 인해 격리검역이 제한 받을 때, 국가동식물검역기관은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을 지정한 지점으로 운송하여 검역할 것을 결정한다. 운수 및 상하차 과정에서 화(물)주 그 대리인은 반드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관, 가공, 격리사양 혹은 격리재배장소의 지정은 반드시 동식물 검역과 방역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수입은 검역을 거쳐 입국을 허가한다. 세관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 혹은 검사인이 날인된 도장 찍힌 보고증에 근거하여 통관한다. 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 세관 감독관리구역을 이동하여 검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이 발부한 '검역이동통지서'에 의해 검사 허락한다.

제16조 검역 불합격한 수입동물의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는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 후 아래의 규정대로 처리한다.

- (1) 일급 전염병, 기생충병에 걸린 동물을 검출한 경우, 그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전부 돌려보내거나 혹은 전부 죽여 그 사체를 소각한다.
- (2) 이급 전염병, 기생충병에 걸린 동물을 검출한 경우에는 돌려보내거나 혹은 죽이고,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격리장 혹은 기타 지정한 지점에서 격리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수입한 동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검역에서 불합격한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이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고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 후 해를 제거하거나 돌려보내거나 혹은 없애버린다. 해 제거처리를 거쳐 합격

된 경우에는 입국을 비준한다.

제17조 수입한 식물, 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검역해서 식물위험성병, 벌레, 잡초 등을 발견한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 후 해를 제거하거나 돌려주거나 혹은 없애버린다. 해 제거처리를 거쳐 합격된 경우에는 입국을 비준한다.

제18조 본 법의 제16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일급, 이급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의 목록과 본 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식물위험성병, 벌레, 잡초의 목록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 및 공포한다.

제19조 수입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검역하여 본 법 제18조에서 규정된 목록이외 농림목어업에 막중한 피해를 끼치는 기타 병충해를 발견한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 후, 해를 제거하거나 돌려보내거나 혹은 없애버린다. 해 제거처리를 거쳐 합격된 경우에는 입국을 비준한다.

제3장 수출검역

제20조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출국 전에 일선 구동식물검역기관에 보고하여 검역한다.

출국 전에 격리검역이 필요한 동물들은 항구동식물검역기관에서 지정한 격리 장소에서 검역을 해야 한다.

제21조 수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을 실시하며, 합격 혹은 해 제거처리를 거쳐 합격된 경우 출국을 비준한다. 세관에서는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서 혹은 날인한 검역 보고서에 근거하여 통관한다. 검역불합격 또는 효과적으로 해 제거처리를 못한 경우에는 출국을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

제22조 검역 합격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반드시 다시 보고하여 검역해야 한다.

- (1)수입 국가 혹은 지역이 변경되고, 변경된 수입 국가와 지역에서 또 다른 검역요구가 있을 경우
- (2)포장을 바꾸었거나 혹은 당초 한꺼번에 다 실지 않고 후에 다시 실는 경우
- (3)검역 규정의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4장 국경 통과 검역

제23조 국경을 통과하여 동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중국 국가동식물검역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지정된 항구와 노선을 따라 통과하여야 한다.

동물을 신고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공구, 적재용기, 사료와 적재실 내의 집기재료들은 반드시 중국 동식물검역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4조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신고 국경을 통과할 경우, 담당인 혹은 호송인은 화물운수증과 수출 국가 혹은 지역정부의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입국할 때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사 보고를 해야 한다. 출국할 때에는 다시 검역하지 않는다.

제25조 국경을 통과하는 동물들은 검역 합격을 거쳐 통과를 비준한다. 본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목록에 있는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역대상 모든 동물들이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

국경을 통과하는 동물들의 사료가 병충해에 오염되었을 경우, 해 제거처리를 하거나 국경통과를 비준하지 않거나 혹은 소각해 버린다.

국경을 통과하는 동물들의 사체, 배설물, 적재실 내의 집기재료 및 기타 폐기물들은 반드시 동식물검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제26조 국경을 통과하는 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에 대해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그 운수공구나 포장을 검사하며 검역 합격을 거쳐 통과하게 할 수 있다. 본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목록에 있는 병충해를 발견했을 경우, 해 제거처리를 하거나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제27조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국경을 통과하는 기간에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포장을 열거나 운수공구로부터 부리지 못한다.

제5장 휴대, 우편물검역

제28조 휴대 또는 우편으로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들이 입국할 경우 들어올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여 검역심사비준수속을 해야 한다.

제29조 국경 반입이 금지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목록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 및 공포한다.

위에서 규정한 목록에 있는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휴대 또는 우편으로 반입할 경우 돌려보내거나 혹은 없애버린다.

제30조 본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목록 이외의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또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동물을 데리고 입국할 경우, 반드시 수출국가 혹은 지역의 검역증서 등 증명서류들을 지참해야 한다.

제31조 본 법 제29조에서 규정한 목록 이외의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우편으로 반입할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국제우편호환국'에서 검역해야하며, 필요 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검역을 거치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다.

제32조 우편으로 들어온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검역 혹은 해 제거처리 합격을 거쳐 반입하며, 검역에 불합격하거나 해 제거처리방법이 없으면 다시 돌려보내거나 혹은 없애버리고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제33조 휴대 또는 우편으로 출국할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은 주인의 검역요구가 있을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을 해야 한다.

제6장 운수공구검역

제34조 동식물 역구에서 온 선박, 항공기, 차량이 국경에 도착한 때에는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본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목록 중에 있는 병충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운수공구로부터 내어서 가져가지 못하며, 해 제거처리를 하거나 봉하거나 혹은 없애버린다.

제35조 입국 차량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예방소독처리를 해야 한다.

제36조 출입국 운수공구 안의 개수물(泔水), 동식물성 폐기물들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마음대로 버리지 못한다.

제37조 출국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운수공구는 반드시 동식물검역과 방역 예방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8조 해체용으로 수입하는 노후선박들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하며 본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목록 중에 있는 병충해를 발견했을 경우 해 제거처리를 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39조 본 법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들을 했을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검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법대로 검역심사비준수속을 하지않은 경우
- (2)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입국한 동식물, 동식물제품, 혹은 기타 검역물을 합부로 운수공구에서 부렸거나 운송한 경우
- (3)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지정한 격리장소에서 격리검역을 하는 동식물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혹은 처리하는 경우

제40조 검사 신고를 마친 동식물, 동식물제품 혹은 기타 검역물들이 실제상황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벌금을 부과하고, 이미 취득한 검역증은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41조 본 법규정을 위반하여 합부로 동식물, 동식물제품 혹은 기타 검역물의 포장을 열거나 국경을 통과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혹은 기타 검역물들을 운수공구에서 부리거나 합부로 국경을 통과하는 동물들의 사체, 배설물, 적재실 내의 집기재료 혹은 기타 폐기물들을 버리는 경우, 동식물검역기관은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본 법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동식물 역황을 일으켰을 경우, 형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3조 검역증, 도장, 표지, 봉인표식 들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형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동식물검역기관의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의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또한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재심기관에서는 반드시 재심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재심기관에서 기간 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재심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간 내에 재심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도 기소하지도 않은채 처벌결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

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인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검역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혹은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하여 검역증서 발급시기를 놓칠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 칙

제46조 본 법에 나오는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동물”이란 사양, 야생의 살아있는 동물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축, 짐승, 뱀, 거북, 새우, 게, 조개, 누에, 벌 등을 가리킨다.
- (2)“동물제품”이란 가공하지 않은 혹은 가공해도 역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동물들의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생가죽, 털, 살고기, 내장기관, 동물지방, 동물수제품, 우유제품, 뼈, 발굽, 뿌리 등을 가리킨다.
- (3)“식물”이란 재배식물, 야생식물 및 그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 등을 말한다.
- (4)“식물제품”이란 가공하지 않은 혹은 가공해도 병충해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양식, 콩, 면화, 기름, 마, 연초, 씨앗, 마른 과일, 신선한 과일, 채소, 생약재, 목재, 사료 등을 가리킨다.
- (5)“기타 검역물”이란 동물악편, 진단액, 동식물성 폐기물 등을 말한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가입한 동식물검역에 관련되는 국제조약에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보류한다고 밝힌 조항은 제외한다.

제48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할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대로 비용을 징수한다. 비용 징수방법은 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문과 국무원 물가유관부문 등이 같이 제정한다.

제49조 국무원은 본 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50조 본 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82년 6월 4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 검역조례》는 폐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1996년 12월 2일 국무원에서 반포)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이하 출입국동식물검역법이라 부름)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출입국 동식물검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입국, 출국, 국경을 통과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 (2)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싣는 적재용기, 포장물, 적재실 내의 집기재료
- (3) 동식물 역구에서 온 운수공구
- (4) 해체용으로 수입한 노후 선박들
- (5) 법률, 행정법규, 국제조약규정 혹은 무역계약에 따라 반드시 검역해야 할 출입국 동식물외의 기타 화물, 물품.

제3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전국 출입국 동식물검역사업을 관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국(이하 국가 동식물검역국이라 칭함)은 통일적으로 전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사업을 관리하며 국외의 중대한 동식물 역황을 수집하며 국제 출입국 동식물검역 협력과 교류를 책임진다.

국가 동식물검역국은 대외 개방항구와 출입국 동식물검역업무가 집중되는 지점에 설립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이다. 출입국동식물검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 동식물을 검역한다.

제4조 국외에서 중대한 동식물 역황이 발생하고 또 중국에 전해 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아래의 긴급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국무원에서는 유관 변경구역에 대해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동식물 역구에서 온 운수공구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 금지시키거나 혹은 유관 부두를 봉쇄시킬 수 있다.
- (2)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동식물 역황이 유행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금지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목록을 공포할 수 있다.
- (3) 유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병충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본 조례 제2조에 열거한 것들에 대해 긴급검역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동식물 역화(疫禍)의 위협을 받는 지역의 지방인민정부는 신속히 유관부문과 함께 응급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며 동시에 상급인민정부와 국가 동식물검역국에 보고해야 한다.

우선, 운수부문에서는 중대한 동식물 역황보고와 검사재료들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제5조 외교, 영사특권과 면책권을 갖고 있는 외국기구와 인원이 공용 혹은 사용에 쓰는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출입국동식물검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해야 하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사할 때 반드시 유관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세관은 법에 의해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협조하여야 하며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과 세관 총본부에서 제정한다.

제7조 출입국 동식물 검역국이 지정하는 동식물 역구와 동식물 역황이 유행하는 국가와 지역의 목록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확정하고 공포한다.

제8조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과 본 조례들을 엄격히 집행한 성과가 우수한 단위와 개인에게는 표창을 한다.

제2장 검역심사비준

제9조 수입동물, 동물제품과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5조 제2항에서 금지한 출입물의 검역심사비준은 국가 동식물검역국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책임진다.

수입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심사비준은 식물검역조례를 규정한 기관에서 책임진다.

제10조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입국 검역심사 비준수속을 할 수 있다.

- (1) 수출국가 혹은 지역에 중대한 동식물 역황이 없는 경우
- (2) 중국 동식물검역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 (3)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이 체결한 유관 쌍방검역협정(검역협약, 비망록 등 포함)에 부합되는 경우

제11조 검역심사 비준수속은 반드시 무역계약 혹은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휴대, 우편으로 보낸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들이 국경을 들어올 경우, 반드시 먼저 신청을 하고 검역심사비준 수속을 해야 한다. 특수상황 때문에 미리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대인 혹은 우편으로 보낸 사람이 반드시 부두에서 검역심사수속을 보충한 후 심사비준기관의 동의 및 검역 합격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제13조 동물을 운수해서 국경을 지나는 경우, 동물주인 혹은 그 대리인은 반드시 먼저 국가 동식물검역국에 서면신청을 해야 하며, 수출국가 혹은 지역정부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역황증명과 수입국가 혹은 지역정부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입국허가증을 내야하며, 또 국경 통과노선을 설명해야 한다. 국가 동식물검역국은 심사, 동의 후에 《동물입국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4조 과학연구 등 특수수요로 인해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5조 제1항에서 입국 금지되어있는 대상물을 반입해야 할 경우, 특별 입국 검역심사 비준수속을 할 때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반드시 서면 신청해야 하며 수량, 용도, 운수방법, 이후 방역조치 등을 설명해야 하며 또 유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이 서명한 의견서도 구비하여야 한다.

제15조 입국 검역 심사비준 수속을 한 후,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반드시 다시 검역심사비준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 (1) 수입물건의 품종 혹은 수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수출국가 혹은 지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입국 부두가 변경되었을 경우
- (4) 검역심사비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제3장 입국 검역

제16조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11조에서 법정검역요구라 함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 등에서 규정하는 동식물검역요구를 가리킨다.

제17조 국가에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동식물제품을 국외에서 생산, 가공, 보관하는 단위들에 대해 등록등기제도를 실행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제18조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수입할 경우,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반드시 입국 전 혹은 입국 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사보고를 해야 한다. 세관 감독관리지역을 이동하여 검역할 할 경우,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반드시 지정지점에 도착할 때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을 통지해야 한다. 화물을 보관시켜야 할 경우,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반드시 입국 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보고 및 신청해야 하며, 지정 운송지점에 도달했을 경우 반드시 지정 지점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사보고를 해야 한다.

수입 가축 및 정액, 배태는 반드시 입국 30일전에 검사보고를 해야 하며, 다른 동물들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15일전에 검사보고를 해야 한다.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들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7일전에 검사보고를 해야 한다.

동식물성 포장물, 적재실 내의 집기재료들의 입국 시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반드시 제때에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보고 신청해야 하며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고 신청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동식물성 포장물, 적재실 내의 집기재료들은 직접 동물제품과 식물, 식물제품에 쓰이는 포장물, 적재실 내의 집기재료들을 말한다.

제19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역 보고를 할 때, 반드시 검역보고증을 작성해야 하며 수출 국가 혹은 지역정부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 산지증서와 무역계약, 신용증, 영수증 등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법에 근거하여 검역심사 비준수속을 해야 하며, 또 검역심사 비준증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국가 혹은 지역정부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유효검역증서가 없거나 혹은 법규정대로 검역심사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돌려보내거나 없애버린다.

제20조 수입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부두에 도착할 때 검역인원들은 운수공구와 화물현장에서 검역할 수 있다. 물건과 증서내용이 부합되는가를 검사하며 또 규정대로 표본을 채취할 수 있다. 운송담당인,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반드시 검역인원들에게 적재명세서와 유관자료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21조 동물을 실은 운수공구가 부두에 도착할 때 모든 운수공구 혹은 동물에 접근하는 인원들은 반드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역 소독을 해야 하며 기타 현장 방역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제22조 검역인원들은 반드시 아래 규정대로 현장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1)동물: 역병 유무의 임상증상들을 검사한다. 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이 되거나 혹은 이미 죽은 동물을 발견할 경우 화(물)주 혹은 그 운반책임자의 협조 하에 상황을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동물들의 적재실 내의 집기재료, 남은 사료와 배설물 등은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검역인원들의

감독 하에 해 제거처리를 해야 한다.

- (2)동물제품: 부패변질현상 유무와 용기, 포장에 완전하고 양호한가를 검사한다. 요구에 부합되는 것은 운수공구에서 부릴 수 있도록 비준한다. 포장이 열렸거나 용기가 망가졌을 경우,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책임지고 완전하게 정리한 후 운수공구에서 부릴 수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운수공구의 유관부분 및 동물제품을 실은 용기, 외면포장, 적재실 내의 집기재료, 오염된 장소 등은 소독처리 해야 한다. 실험실검역이 필요한 경우는 규정대로 표본을 취해야 한다. 쉽게 변식하는 식물해충 혹은 잡초종자가 한데 섞여있는 동물제품 등은 동시에 식물검역을 해야 한다.
- (3)식물, 식물제품: 화물과 포장물에 병충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며, 규정대로 표본을 취해야 한다. 확산가능성이 병충해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그 화물, 운수공구와 하역현장에서 필요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전염병역구에서 왔거나 혹은 동물전염병과 기생충병원체를 가지기 쉽고 또 이것을 동물사료를 만드는데 이용하는 식물제품도 동시에 동물검역을 해야 한다.
- (4)동식물성 포장물, 적재실 내의 집기재료: 병충해, 잡초종자, 토양이 붙어있는가를 검사하며 규정대로 표본을 취한다.
- (5)기타 검역물: 포장이 잘 되었는가, 병충해오염이 되었는가를 검사한다. 포장이 파손되었거나 병충해에 오염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 해 제거처리를 한다.

제23조 선박, 기차에 실은 대량의 동식물제품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분할하여 골고루 검사해야 한다. 항구, 차량정류장의 보관조건의 제약으로 현지 검역을 못할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동의를 거쳐 물건을 다시 실어 지정 지점으로 운반하여 보관한다. 물건을 부리면서 검역할 때 역황을 발견하면 물건을 계속 부리는 것을 금지하며 역황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병해충에 오염된 하역공구와 장소에 대해 해 제거처리를 해야 한다.

제24조 대, 증가축을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동식물 검역국에서 설립한 동물격리검역장소에서 45일간 격리 검역해야 한다. 기타 동물을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지정한 동물격리검역장소에서 30일 격리 검역해야 한다. 동물격리검역장소 관리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제25조 같이 입국한 동식물제품을 여러 항구에서 나누어 부릴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자기 항구에 하역한 화물만 검역하며 먼저 하역한 부두의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반드시 검역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다른 항구의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대외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항구의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이 종합하여 통일적으로 검역증서를 발급한다.

하역지를 나누어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역황을 발견하면 반드시 선상 훈증과 소독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나누어진 여러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통일적으로 검역증서를 발급하고 또 신속히 기타 하역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들에 통지해야 한다.

제26조 수입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은 중국의 국가표준, 산업표준 및 국가동식물 검역국의 규정에 따라 검역을 해야 한다.

제27조 수입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검역 합격된 것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보고증서에 도장을 찍거나 혹은 《검역이행통지서》를 발급한다. 입국 항구의 세관감독관리구역에서 이동해서 검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이동통지서》를 발급한다.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이행통지서》, 《검역이동통지서》를 근거로 세관보고 및 운송수속 등을 해야 한다. 세관에서는 수입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을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이행통지서》, 《검역이동통지서》를 근거로 검사하여 내보내야 한다. 운수, 우전부문에서는 증명 서류에 따라 운송해야 하며 운송기간 중에 국내 다른 검역기관에서 다시 검역하지 않는다.

제28조 수입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은 검역 불합격인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과 기술지도 하에 해 제거처리를 시킨다. 보상이 필요할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가 동식물검역국에서는 검역수요에 따라 동식물, 동식물제품 수출국가 혹은 지역정부기관의 동의를 거쳐 검역인원을 파견하여 예비검역, 장비감시 혹은 산지 역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 세관, 국경경비 등 부문에서 금지한 불법 수입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은 가까운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보내 검역을 한다.

제4장 출국 검역

제31조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법규정에 따라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출국검사신청을 할 때 반드시 무역계약서 혹은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중국이 수출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생산, 가공, 보관단

위 등록등기에 대한 수입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등록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 동식물검역국에 그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출국 전에 격리검역이 필요한 수출동물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지정한 격리장소에서 검역을 해야 한다. 수출 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창고 혹은 현장에서 검역을 한다. 필요가 있으면 생산, 가공 과정 중에 검역을 할 수도 있다.

검역할 출국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은 반드시 수량이 맞고, 포장이 양호하고, 정결하게 쌓아 놓아야 하며 표시가 선명해야 한다.

제34조 수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검역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수입국가 혹은 지역과 중국 유관동식물검역규정
- (2) 쌍방 검역협정
- (3) 무역계약에서 체결한 검역요구.

제35조 출발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 합격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출국 항구까지 운송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동물들은 반드시 출국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임상검역 혹은 재검사를 해야 한다.
- (2) 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출발지에서 원래 운수공구로 계속해서 국경을 나 갈때,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여행증명을 검사한다. 운수공구를 바꿔서 출국할 경우에는 여행증명을 바꾸어야 한다.
- (3) 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출국 항구에 도착한 후 적재할 때 수출국가 혹은 지구의 변경으로 다른 검역요구가 있거나 규정된 검역유효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반드시 다시 검역을 해야 한다.

제36조 출발지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합격한 수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출국항구로 운송 할 경우, 운수, 우전부문은 출발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에 의거하여 운송하며, 국내 기타 검역기관에서 다시 검역하지 않는다.

제5장 국경 통과 검역

제37조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운수하여 국경을 통과할 때(중계수송도 포함), 담당인 혹은 호송인은 반드시 화물운수증과 수출 국가 혹은 지역 정

부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입국하는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사보고를 해야 한다. 동물을 싣고 국경을 통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 동식물검역국에서 발급한 《동물국경통과허가증》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국경을 통과하는 동물들이 입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운수공구, 용기의 표면을 소독하고, 동물의 임상검역을 진행해야 하며, 검역합격인 경우에 국경 통과를 비준한다. 입국지점의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검역인원을 파견하여 출국 지점까지 운송하는 것을 감시하게 하며 출국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다시 검역하지 않는다.

제39조 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싣고 출국하는 운수공구와 포장물, 적재용기들은 반드시 완전하고 양호해야 된다.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사에서 운수공구 혹은 포장물, 적재용기의 내용물이 도중에 흘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인 혹은 호송인은 반드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요구에 따라 밀봉조치를 취해야 한다. 밀봉조치를 할 수 없으면 통과허가를 하지 못한다.

제6장 휴대, 우편물검역

제40조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들을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입국할 때 법에 따라 검역심사 비준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반송하거나 없애버린다. 우편물을 반송하는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우편물이나 발송증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우편물을 없애버릴 경우에는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통지서를 발급하여 보낸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1조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휴대하고 입국할 경우 반드시 입국시에 세관에 신고하고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역접수를 해야 한다. 세관은 신고 혹은 조사를 통해 얻은 검역대상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로 하여금 제때에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검역을 거치지 않으면 휴대하고 입국하지 못한다.

제42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항구, 공항, 자량정류장의 여객통로, 화물찾는 장소 현장에서 검사 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휴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조사하거나 신문하거나 물품을 꺼내서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봉해서 검사 할 수도 있다. 여객 출입국 검사 현장에 반드시 동식물 검역대를 설치하고 표시해놓아야 한다.

제43조 동물을 휴대하고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동물을 데리고 나온 국가 혹은 지역정부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검역 합격이 되어야 입국할 수 있다. 애완견, 고양이 등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입국할 경우에는 또한 반드시ワクチン接種증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검역증서,ワクチン接種증서가 없을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기간 내에 돌려보내거나 몰수해서 없애버린다. 기한을 정해 돌려보내는 경우 휴대인은 반드시 규정된 시간 내에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이 발부한 서류증서를 지참하여 찾아서 출국하여야 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가져가지 않은 것은 자동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29조에서 규정한 목록에 나열되어 있는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출입국지 못한다.

제44조 우편으로 입국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이 국제우편물호환국(국제우편물속달공사와 기타 국제우편물을 경영하는 단위를 포함, 약칭은 우편국)에서 검역을 한다.

현장 검역에서 합격된 것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통과 날인을 하여 우편국에 전해준다. 실험실검역 혹은 격리검역이 필요한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반드시 우편국과 인수인계 해야 하며 검역 합격하면 검역통과 날인을 해서 우편국에 전달한다.

제45조 휴대, 우편으로 입국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이 검역 불합격되거나 해 제거처리의 유효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보내거나 없애버리며, 동시에 《검역처리통지서》를 발부하여 휴대인, 발신인에게 전달한다.

제7장 운수공구 검역

제46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동식물 역구에서 온 선박, 항공기, 차량에 올라가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다. 운수공구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검역인원의 문의에 답해야 하며, 문의 기록에 서명해야 하며, 운행일지와 적재화물의 상황을 제공해야 되며, 입구를 열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반드시 앞에서 적시한 운수공구에 대해 병해충의 서식 가능성이 있는 식당차, 식당, 주방, 저장실, 식품창고 등 동식물제품을 보관, 사용하는 장소와 개숫물, 동식물성 폐기물의 보관장소 및 수집상자 등의 적치구역 혹은 장소를 검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 소독처리를 해야 한다.

제47조 동식물 역구에서 온 선박, 항공기, 차량을 검역해서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 18조에서 규정한 목록에 있는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훈증, 소독 혹은 기타 해 제거처리를 해야 한다. 입국 금지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봉인 혹은 없애버린다. 봉인처리를 한 것은 중국 내에 머무르거나 혹은 이동 기간 중에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허가없이 열어서 유용하지 못한다. 운수공구상의 개숫물, 동식물성 폐기물 및 보관장소, 용기들은 반드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해 제거처리를 해야 한다.

제48조 동식물 역구에서 입국한 차량들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방역소독처리를 한다.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적재하고 입국하는 차량들을 검역해서 병충해를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화물 일체에 대해 해 제거처리를 한다. 홍콩, 마카오에 동물을 운송하고 돌아오는 차량은 차량전부에 대해 방역소독을 해야 한다.

제49조 해체용으로 입국하는 노후선박들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한다.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해 제거처리를 한다. 입국 금지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없애버린다.

제50조 동식물 역구에서 입국한 운수공구는 검역 또는 소독처리에 합격한 후에 운수공구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증명을 요구하면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운수공구검역증서> 혹은 <운수공구소독증서>를 발급한다.

제51조 입국 혹은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공구가 중국 내에서 정류하는 기간, 교통관계인과 기타 관계인들은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을 운수공구에서 부리지 못한다, 부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검사보고를 해야 한다.

제52조 동물을 싣고 출국하는 운수공구들은 적재하기 전에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하에 소독처리를 해야 한다.

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싣고 출국하는 운수공구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동식물방역 및 검역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위험성 병충해를 발견했거나 혹은 규정기준을 초과한 일반성 병충해를 발견한 경우 해 제거처리를 한 후라야만 운송할 수 있다.

제8장 검역감독

제53조 국가 동식물검역국과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의 생산, 가공, 보관과정에 대해 검역감독제도를 실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제54조 격리사양, 격리증식이 필요한 출입국 동물과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들은 격리기간에 반드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출입국 동식물검역 훈증, 소독처리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인원들은 반드시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훈증, 소독사업에 대해 감독, 지도를 해야 하며, 또한 그 책임 하에 훈증, 소독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6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공항, 항구, 차량정류장, 창고, 가공공장, 농장 등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생산, 가공, 보관하는 장소에서 동식물 역학감측을 실시해야 하며 유관단위에서는 반드시 협조해 주어야 한다.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동식물 역학 감측기구들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57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적재한 운수공구, 적재용기에 봉인표식 혹은 표기를 할 수 있으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검역봉인표식, 표기들을 열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동식물검역 봉인표식과 표기는 국가 동식물검역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하여 발급한다.

제58조 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적재용기, 포장물들을 보세구역으로 운송할 때(보세공장, 보세창고 등 포함), 입국 항구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검역을 한다.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검역감독을 할 수 있으며, 가공해서 다시 출국할 경우에는 출입국동식물검역법과 본 조례의 유관 출국검역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59조 아래 열거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5000원 이

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검역보고 혹은 검역심사 비준수속을 법에 의거하여 하지 않았거나 혹은 검역심사비준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 (2) 사 보고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실제상황과 같지 않을 경우 위의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이미 검역증서를 가진 경우에는 그 증서를 몰수하여 취소한다.

제60조 아래 열거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3000원 이상, 3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입국, 출국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을 운수공구에서 부리거나 혹은 운송한 경우
- (2)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지정한 격리장소에서 격리 검역하는 동식물을 함부로 이동하거나 처리한 경우
- (3) 국경을 통과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들의 포장을 함부로 열거나 혹은 동식물검역봉인표식 혹은 표기를 함부로 뜯거나 훼손해버린 경우
- (4) 국경을 통과하는 동물들의 사체, 배설물, 직재실 내의 집기 혹은 기타 폐기물들을 함부로 버리거나 혹은 운수공구의 개숫물, 동식물성 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제61조 본 조례 제17조,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기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생산, 가공, 보관 단위는 상술한 출입국 물품이 검역불합격인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돌려보내거나 없애버리거나 혹은 해 제거처리를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등록된 것을 취소해 버린다.

제62조 아래 열거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범죄행위가 아주 경미하여 형사재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중대한 동식물 역황을 일으킨 경우
- (2) 동식물검역증서, 도장, 표기, 봉인표식을 위조, 변조한 경우

제63조 동식물검역 훈증, 소독처리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인원들이 규정대로 훈증과 소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훈증, 소독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부 칙

제64조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래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 (1)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란 재배 또는 야생으로 번식할 수 있는 식물전부 혹은 부분적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식물체, 묘목(시험관묘 포함), 열매, 종자, 대목, 이삭, 꺾꽂이, 엽편, 싹음, 피근, 꿀줄기, 인경, 구경, 꽃가루, 세포배양재료 등을 가리킨다.
- (2) '적재용기'란 여러 번 쓸 수 있고 병충해 오염에 견디기 용이한 출입국 화물을 싣는 용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장(조롱), 상자, 통, 광 등을 말한다.
- (3) '기타 유해생물'란 동물전염병, 기생충병과 식물위험성병, 벌레, 잡초이외의 동식물을 해치는 각종 생물유기체, 병원미생물, 및 연체류, 설치류, 진드기류, 다족충류 동물과 위험성병충의 중간에 기생하는 매체생물 등을 말한다.
- (4) '검역증서'란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건강 혹은 위생상황에 관한 법률효력을 지닌 문건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동물검역증서》, 《식물검역증서》, 《동물건강증서》, 《수의위생증서》, 《훈증/소독증서》 등이다.

제65조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에 대한 검역으로 인해, 혹은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훈증, 소독, 반환, 소각 등 처리에 필요한 비용 혹은 손실은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이 부담한다.

제66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법에 근거하여 검역할 때 표본을 취할 경우, 반드시 채취증서가 있어야 하며 실험 후 남은 표본은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이 규정된 시일 내에 가져가야 한다. 제 기간내에 가져가지 않은 경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7조 무역거래성 동식물제품을 출국하는 검역기관은 국무원에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제68조 본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물검역조례

(1983년 1월 3일 국무원에서 반포, 1992년 5월 13일 《<식물검역조례>개정에대한 국무원결정》에 근거하여 수정반포)

제1조 식물위험성병, 벌레, 잡초들이 전파 만연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 임업생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 주관부문에서 전국의 식물검역사업을 관리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농업주관부문, 임업 주관부문은 본 지역의 식물검역사업을 관리한다.

제3조 현 급 이상의 지방 각 급 농업주관부문, 임업 주관부문에 속하는 식물검역 기구에서는 국가의 식물검역업무를 책임지고 집행한다.

식물검역인원은 차량정류장, 공항, 항구, 창고 및 기타 유관장소에서 식물검역 업무를 진행할 때 반드시 검역제복을 입어야 하며 검역표기를 달아야 한다.

제4조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위험성이 크고 능히 그 식물 및 제품을 따라 전파될 수 있는 병, 벌레, 잡초들은 모두 식물검역대상에 포함된다. 농업, 임업 식물검역 대상과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 목록은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 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 임업 주관부문에서는 본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당해 성, 자치구, 직할시의 보충목록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 주관부문에 그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식물검역대상이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면 반드시 역구를 지정하고, 봉쇄, 소멸 조치를 취하여 식물검역대상의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 발생지역이 비교적 보편화된 경우는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보호구로 정하여 식물검역대상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역구는 식물검역대상의 전파상황, 당해지역의 지리적 환경, 교통상황과 봉쇄, 소멸조치를 취할 필요에 근거하여 지정해야 하며 그 범위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역황이 발생한 지역의 식물검역기구는 당해지역의 도로연합검문소 혹은 목자검문소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특별히 중대한 역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식물검역검사소를 설립하여 식물검역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제6조 역구와 보호구의 확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에서 제안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하며, 또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에 그 방안을 보고한다.

역구과 보호구의 범위가 두개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에 걸칠 경우, 유관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 임업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역구, 보호구의 변경과 취소 시 절차는 지정할 때와 같다.

제7조 식물과 식물제품을 이동할 때, 아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한다.

(1) 반드시 검역을 시행해야 할 목록에 있는 식물, 식물제품을 역황이 발생한 현 급 행정구역 앞으로 이동할 경우 필수적으로 검역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는 반드시 검역을 시행해야 할 식물, 식물 제품 목록에 들어있는에 상관없이, 또 어디로 가는지에 상관없이 이동하기 전에 모두 반드시 검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본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반드시 검역해야 할 식물과 식물제품들을 검역하여 식물검역대상을 발견 못했을 경우에는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한다. 식물검역대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철저히 소독 처리할 수 있으면 호송인은 반드시 식물 검역기구의 요구에 따라 지정한 지점에서 소독처리를 해야 한다. 검역합격하면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하며, 소독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운송을 정지시킨다.

식물검역증서의 양식은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식물검역대상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포장재료, 적재공구, 현장, 창고 등도 역시 검역을 해야 한다. 이미 오염된 것들은 호송인이 책임지고 식물검역기구의 요구대로 처리해야 된다.

검역실시를 위해 필요한 배와 차량의 계류, 화물운반, 개봉, 표본채취, 보관, 소독처리 등 비용은 호송인이 책임져야 한다.

제9조 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검역해야 할 식물과 식물제품들에 대해 교통운수부문과 우정부문에서는 식물검역증서에 의거하여 운송 혹은 수발해야 한다. 식물검역증서는 물건과 함께 보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 주관부문과 철로, 교통, 민항, 우정부문 등이 함께 제정한다.

제1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이에 본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검역해야 할 식물과 식물제품을 운송해야 할 때, 반입하는 단위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당해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구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반출하는 단위에게는 검역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출단위는 반드시 이 검역요구서에 근거하여 당해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구에 검역신청을 해야 한다. 반입 단위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물검역기구에서는 반입해 온 식물과 식물제품의 검역증서를 검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다시 검역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운송하는 식물과 식물제품의 검역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제11조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들의 번육단위에서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식물 검역대상이 아닌 종자, 종묘 번육기지, 모수립 기지를 건립해야 한다. 시험 보급하는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들은 식물검역대상들이 들어있지 말아야 한다. 식물검역기구는 반드시 산지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국외에서 종자, 묘목들을 들여 온 단위에서는 반드시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구에 신청을 하여 검역심사 비준수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무원 유관부문 소속의 북경사무소가 에 있는 단위가 국외에서 종자, 묘목들을 들여올 경우, 반드시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 소속인 식물검역기구에 신청을 해서 검역심사비준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또 위험성병, 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국외 반입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들은 반드시 격리하여 시험한다. 식물검역기구에서는 반드시 조사, 관찰과 검역을 해야 하며, 확실히 위험성병, 벌레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분산해서 뿌리거나 심을 수 있다.

제13조 농림대학교와 실험연구단위의 식물검역대상에 대한 연구는 검역대상의 비역구에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 교학, 과학연구를 검역대상의 비역구에서 진행해야 할 경우,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에서 규정한 식물검역대상은 반드시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식물검역대상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식물검역기구는 새로이 발견한 검역대상과 기타 위험성병, 벌레, 잡초들을 반드시 신속히 상황을 조사하고, 즉시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여 철저히 소멸해야 하며 동시에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역황은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에서 공포한다.

제16조 본 조례 제5조 제1항과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역황조사와 소멸조치를 할 때 소요되는 긴급방역비와 보조비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매년의 식물보호비, 삼림보호비 혹은 국영농장생산비에서 배당한다. 특히 중대한 역황의 방지를 위한 사업비는 국가가 참작하여 보조해 준다.

제17조 식물검역사업 추진과정에 성적이 현저한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에서 표창한다.

제18조 아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식물검역기구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책임지고 배상해야 하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기관에서 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본 조례 규정에 의해 식물검역증서를 처리하지 않았거나 혹은 검역보고 중에 거짓을 꾸민 경우

(2)식물검역증서, 도장, 표기, 봉인표식을 위조했거나 고쳤거나 매매했거나 혹은 양도한 경우

(3)반드시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을 본 조례규정에 따라 이동하지 않았거나 격리 시험재배 혹은 격리 생산하지 않은 경우

(4)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부로 식물, 식물제품 포장을 뜯거나 식물, 식물제품을 바꾸었거나 혹은 합부로 식물, 식물제품의 규정된 용도를 변경한 경우

(5)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역황을 확산시킨 경우

위의 제(1),(2),(3),(4)항 중의 하나에 해당되나 범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식물검역기구에서는 불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동한 식물과 식물제품에 대해 식물검역기구는 봉인보관, 몰수, 망실 또는 책임지고 용도를 바꿀 수 있다. 망실 비용은 책임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식물검역인원이 식물검역업무 중에, 교통운수부문과 우정부문의 유관 업무 인원이 식물, 식물제품의 운수, 우편업무 중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 소재단위 혹은 상급 주관기관에서 행정처분을 가해야 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20조 당사자가 식물검역기구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식물검역기구의 상급기구에 재심 신청을 해야 한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를 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기간 내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또한 기소도 하지 않은채 행정처벌결정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식물검역기구에서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 집행하거나 혹은 법에 근거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 식물검역기구는 검역업무를 수행할 때 검역비용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제22조 수출, 수입하는 식물의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23조 본 조례의 실시세칙은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조례 및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당해지역 구체적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24조 본 조례를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부 1957년 12월 4일에 반포한 《국내식물 검역실행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식물검역조례실시세칙(농업부분)

(1995년 2월 25일 농업부에서 반포, 1997년 12월 25일 농업부령 제39호로 수정)

제1장 총 칙

제1조 《식물검역조례》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세칙은 국내 농업식물검역에 적용되며 입엽과 출입국 식물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농업부는 전국 농업식물 검역사업을 관리한다. 그 집행기구는 그 소속의 식물검역기구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에 소속하는 식물검역기구에서 본 지역의 식물검역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각 급 식물검역기구의 직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업부 소속인 식물검역기구의 주요 직책

1. 유관 식물검역법규, 규장 및 검역사업의 장기계획적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2. 《식물검역조례》 집행을 관철하며 집행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3. 식물검역업무 경험을 조사 연구, 총괄 보급하며 전국 식물검역자료들을 수집하며 전국 중점식물검역대상의 전체적인 조사, 역구 확정, 봉쇄와 방지소멸조치의 실시방안을 작성한다.
4. 국외에서 들여온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국가에서 입국 금지된 것 제외)들의 검역 심사비준을 책임진다.
5. 식물검역기술의 연구와 시범을 조직한다.
6. 식물검역 간부 및 기술인원들을 양성, 관리한다.

(2) 성급 식물검역기구의 주요 직책

1. 《식물검역조례》와 국가에서 반포한 식물검역법령, 규장제도를 관철해야 하며 본 성의 실시계획과 조치사항을 제정한다.
2. 현 급 식물검역기구의 업무를 검사 및 지도한다.
3. 본 성의 《식물검역실시방법》, 《보충적 식물검역대상 및 필수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목록》과 기타 식물검역규장제도를 만든다.
4. 성 내 역구와 보호구의 확정방안을 작성하며, 전 성 검역대상을 조사, 봉쇄, 통제소멸 조치를 제출하며, 식물검역기술의 연구와 보급을 조직 전개한다.

5. 현금 검역간부와 기술인원들을 양성, 관리하며 검역사업경험을 총괄하고 교류하며 검역기술자료들을 수집한다.
6.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하며 수권범위 내에서 국외에서 들여온 종자의 검역 심사비준과 반드시 검역해야 하는 식물, 식물제품의 성 간 이동검역 수속을 맡아서 종자를 들여온 단위에서 해야 하는 소독처리와 격리 시험재배 사항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7. 차량정류장, 공항, 항구, 창고 및 기타 유관 장소에서 식물검역업무를 집행한다.

(3) 현금 식물검역기구의 주요 직책

1. 《식물검역조례》와 국가, 지방 각 급 정부에서 반포한 식물검역법령과 규정제도를 관철해야 하며 하급 간부와 농민에게 검역지식을 선전 보급한다.
2. 당해 지역의 식물검역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한다.
3. 검역대상 조사를 전개해야 하며 당해 지역의 검역대상 분포자료들을 편집하며 검역대상의 봉쇄, 통제와 소멸업무를 책임진다.
4.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의 번육기지에서 산지검역을 집행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의 이동검역 수속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이동해 오는 반드시 검역해야 하는 식물제품에 대해 필요시 다시 검역을 한다. 종자를 들여 온 단위에서 진행하는 소독 처리와 격리 시험재배에 대해 감독 및 지도를 한다.
5. 유관 부문에서 건립한 검역대상이 아닌 종자, 묘목의 번육, 생산기지를 감독 지도한다.
6. 당해 지역 차량정류장, 공항, 항구, 창고 및 기타 유관장소에서 식물검역업무를 집행한다.

제5조 각 급 식물검역기구는 반드시 일정한 수의 전임식물 검역인원들을 배치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적정한 검역실험실과 검험실을 건립해야 한다.

전임 식물검역원은 반드시 보조농예사 이상의 기술직무 자격을 구비하거나 혹은 기술직무자격이 없는 경우는 중등전업학력에 식물보호업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기술인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 시험에 합격 한 후 성 급 농업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농업부에 등록하고 전임 식물검역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각 급 식물검역기구는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종묘 번육, 생산 및 과학연구 등을 수행하는 유관단위에서 겸임 식물검역원 혹은 식물검역원을 초빙하여 업무협조를 받는다. 겸임검역원은 소재지 단위의 추천에 의하여 초빙단위에서 심사합

격한 후에 초빙장을 발급한다.

성 급 식물검역기구는 반드시 식물검역실험실을 충실하게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현 급 식물검역기구는 반드시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검�험실을 건립해야 한다. 《식물검역조작규정》에 따라 검사하며, 식물검역증서를 발부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제6조 식물검역증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

- (1)종자, 묘목 등 번식재료 및 기타 검역을 실시해야만 하는 식물, 식물제품의 공간 이동은 성 급 식물검역기구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현 급 식물검역기구에서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성 내에서 종자, 묘목 및 기타 반드시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을 이동할 경우 현급 식물검역기구에서 검역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2)식물검역증서에는 반드시 증서발급기관의 식물검역전용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전임 식물검역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권한을 부여받아 발급한 성 간 식물이동검역증서에는 반드시 성 급 식물검역기구의 식물검역전용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 (3)식물검역증서전본은 농업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증서는 1건당 4부를 발부하며, 정본 1부, 부분이 3부이다. 정본은 화(물)주에게 물건과 함께 교부하며, 부분 1부는 화(물)주가 수발, 호송단위에 주어 보관하게 하고 1부는 물건 보관단위 혹은 개인소재지(현) 식물검역기구(성 간 이동하는 경우 이동해 들어가는 식물검역기구에 전함)에서 보관하며 1부는 증서발부하는 식물검역기국에서 갖는다.

제7조 식물검역인원의 의복방법 및 복장, 표기양식 등은 농업부,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장 검역범위

제8조 농업식물 검역범위는 양곡, 면, 기름, 삼, 빵, 차, 사탕, 채소, 담배, 열매(마른 열매제외), 약재, 화초, 목초, 녹비, 열대작물 등 식물과 식물의 각 부분을 포함하며, 종자, 괴근, 꿀줄기, 구경, 인경, 이삭, 대목, 시험관묘, 세포 번식체 등 번식재료를 포함하며 위의 식물을 가공하지 않았거나 혹은 가공해도 역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제품도 포함한다.

전국적 식물검역대상과 반드시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 목록은 농업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보충하는 식물검역대상과 반드시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 목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에서 제정하며 농업부에 그 안을 보고한다.

제9조 《식물검역조례》 제7조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 간에 식물, 식물제품을 운송할 때,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한다.

- (1) 모든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들은 반드시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 목록에 속하든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어디로 이동하든지 이동 전에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한다.
- (2) 전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가 반드시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식물제품들은 역황이 발생한 현급 행정구역에서 다른 곳으로 운수하기 전에 반드시 검역해야 한다.
- (3) 역황오염 가능성이 있는 포장재료, 적재공구, 현장, 창고 등 장소도 반드시 검역해야 한다.

제3장 식물검역대상의 구역 확정, 통제와 퇴치

제10조 각 급 식물검역기구는 본 관할지역의 식물검역대상을 원칙적으로 매 3-5년마다 1회 조사를 해야 하며, 중점대상은 매 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검역대상분포자료를 작성하며, 상급 식물검역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농업부에서는 현까지의 전국 농업식물 검역대상 분포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향까지의 분포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동시에 농업부에 보고를 한다.

제11조 전국적 식물검역대상, 국외로부터 새로이 전입하거나 국내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성병, 벌레, 잡초의 역황을 농업부에서 반포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보충한 식물검역대상의 역황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에서 반포하며 또 농업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제12조 역구와 보호구를 확정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한 봉쇄, 통제, 소멸 혹은 보호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역황이 발생한 지역의 식물검역기구에서는 《식물검역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합동검문소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식물검역검사소를 설립하고 식물검역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구에서는 반드시 본 관할지역 내에 설립한 혹은 해제한 식물검역검사소의 명칭, 지점 등을

농업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역구 내의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와 필수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들은 역구 내에서만 재배, 사용할 수 있으며 역구에서 운송해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 역구에서 운송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특수상화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성급 식물검역기구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성 외로 운송해나갈 경우에는 농업부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역구 내의 검역대상이 기본적으로 소멸했거나 혹은 이미 널리 알려진 유효한 통제방법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역구를 확정할 때의 순서대로 해제수속을 해야 하며, 기준을 거쳐 명문으로 공포해야 한다.

제4장 운송 검역

제14조 《식물검역조례》 제9조와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 간에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을 운송할 경우, 아래 순서대로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 (1)반입하는 단위 혹은 개인은 반드시 먼저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구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현급 식물검역기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검역요구서도 지참하여야 한다.
- (2)반출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구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당해 지역 식물검역기구에서는 반출단위 혹은 개인이 제출한 반입검역요구서에 근거하여 검사보고를 수리하고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 (3)우편으로 부치거나 운송을 책임진 단위에서는 반드시 유효 식물검역증서 정보에 의하여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을 수발, 운송해야 한다.

제15조 반출단위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구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현급 식물검역기구에서는 아래 열거한 각 상황에 따라서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한다.

- (1)식물검역대상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운송하는 식물, 식물제품은 사실을 확인하여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한다.
- (2)가끔씩 식물검역대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종자, 묘목 등 번식재료들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생산지 검역합격증서에 근거하여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한다.
- (3)생산지 식물검역대상 발생상황이 뚜렷하지 않은 식물, 식물제품들은 반드시 《운송검역조작규정》에 따라 검역을 진행한다. 식물검역대상이 없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한다.

운송검역 과정 중에 검역대상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해 제거처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하며, 합격 후에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한다. 해 제거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처리불합격인 경우 통행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16조 반입지역의 식물검역기구에서는 역황이 발생한 현 급 행정구역에서 들어온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 혹은 기타 검역대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식물, 식물제품을 다시 검역해야 한다. 재검역 중 문제를 발견한 경우 당연히 원 식물검역증서 발급기구와 공동으로 명확하게 사실을 조사해야 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한 후 재검역한 식물검역기구에서 《식물검역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생산지 검역

제17조 각 급 식물검역기구는 본 관할지역의 원종장, 우량종장, 묘포 및 기타 번육기지에 대해 국가와 지방에서 제정한 《식물검역조작규정》에 따라 생산지 검역을 해야 하며 유관단위 혹은 개인은 반드시 협조해 주어야 한다.

제18조 종묘 번육단위 혹은 개인은 필히 식물검역대상이 분포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종묘 번육기지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로 설립할 우량종장, 원종장, 묘포 등 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당해지역 식물검역기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식물검역기구는 반드시 종묘 번육단위가 검역요구에 부합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번육기지를 설립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미 검역대상이 발생한 우량종장, 원종장, 묘포 등에는 반드시 즉시 유효조치를 취하여 봉쇄, 퇴치해야 한다. 검역대상을 소멸하기 전에 번육한 것들은 무병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며 엄격히 해 제거처리를 한 후 식물검역기구의 검역에 합격되어야만 운송을 할 수 있다.

제19조 시험, 시범 보급용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들은 반드시 먼저 식물검역기구에서 검역해야 하며 확실히 식물검역대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식물검역증서를 받은 후라야만 시험, 시범 보급할 수 있다.

제6장 국외유입 종자 검역

제20조 국외에서 들어온 종자, 묘목 및 기타 번식재료(국가에서 입국 금지한 것 제외)들은 농업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에서 검역 심사비준을 한다.

종묘를 들여 올 단위 혹은 대리수입단위는 반드시 대외무역계약 또는 협의 체결 30일 전에 종묘 재배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구에 신청하여 국외 유입종자 검역심사 수속을 해야 한다. 유입 종자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종묘 재배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기구가 심사하여 의견을 기재한 후 농업부 관계부문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단위에게 심사비준보고를 해야 한다. 국무원 유관부문 소속의 북경 소재 단위, 북경 주재 부대단위, 북경주재 외국기구 등 단위에서 들여올 때, 반드시 대외무역계약 또는 협의 체결 30일 전에 농업부 관계부문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단위에 신청을 한 후 국외유입종자 검역심사 비준수속을 할 수 있다.

국외유입종자 검역 심사비준 관리방법은 농업부에서 따로 제정한다.

제21조 국외에서 들여온 종자, 묘목 등 번식재료들은 반드시 아래의 검역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들을 들여온 단위 혹은 대리단위는 반드시 대외 무역계약 혹은 협의 시에 중국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역요구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수출 국가 혹은 지역정부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를 소지하여 중국의 검역요구에 부합된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2)수입하는 단위에서는 종자수입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재배시험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입 후 반드시 지정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격리 시험재배를 진행하여야 하며, 격리재배 시험재배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일년생 농작물은 한 생육주기를 기준으로 하고, 다년생 농작물은 이년을 기준으로 한다.

격리 시험재배 기간 내에 당해 지역 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확실히 검역 대상이 없는 경우에만 분산하여 재배할 수 있다. 만약 검역대상 혹은 기타 위험성병, 벌레, 잡초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식물검역기구의 의견에 따라 성실히 처리해야 한다.

제22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주관부문에서는 반드시 수요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식물검역 격리재배시험장(포)을 설립해야 한다.

제7 장 표창과 처벌

제23조 《식물검역조례》를 집행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는 농업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혹은 농업주관부문에서 표창한다.

- (1) 식물검역대상과 위험성병, 벌레, 잡초 등에 대한 보편적 검사 방면에서 성적이 우수한 단위 혹은 개인
- (2) 식물검역대상의 봉쇄, 통제, 퇴치 방면에서 성적이 우수한 단위 혹은 개인
- (3) 《식물검역조례》, 식물검역 규장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모범적으로 집행했거나, 《식물검역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하는데 있어 성적이 우수한 단위 혹은 개인
- (4) 식물검역기술의 연구와 응용에 중대한 발전을 가져온 단위 혹은 개인
- (5) 철로, 교통, 우정, 민항 등 부문과 당해 지역 식물검역기구가 밀접히 협조하여 《식물검역조례》를 관철 집행한 성적이 우수한 단위 혹은 개인

제24조 아래 열거한 위법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나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식물검역기구는 벌금을 부과한다.

- (1) 검역보고과정 중에 고의로 검역받을 물품종류, 품종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검역받을 물품의 수량, 검역받을 작물의 면적을 속이거나 허위 증명서류들을 제공한 경우
- (2) 운수과정 중에 검역해야 할 식물, 식물제품을 함부로 열거나 바꾸거나 혹은 검역받지 않은 다른 식물, 식물제품을 몰래 싣거나, 혹은 비 재배식물, 식물제품을 재배용으로 한 경우
- (3) 식물검역증서, 도장, 표기, 봉인표식을 위조, 고쳤거나 매매, 양도한 경우;
- (4) 《식물검역조례》 제7조, 제8조의 제1항,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식물, 식물제품을 함부로 운송한 경우
- (5) 《식물검역조례》의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이 있는 종자, 묘목과 기타번식재료들을 시험, 생산, 보급했거나 혹은 《식물검역조례》의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을 받지 않고 비 역구에서 검역대상생명체(活體) 시험연구를 한 경우
- (6) 《식물검역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한 지점에서 재배하지 않았거나 요구대로 격리 재배시험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격리 재배시험기간에 함부로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들을 분산시킨 경우 벌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비 경영활동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활동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최고 3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1항 (2), (3), (4), (5), (6) 항의 위법행위에 속하고 역황 확산을 일으킨 경우에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없애거나 혹은 해 제거처리를 하게 한다.

본 조례 제1항의 위법행위에 속하고 또 손실을 빚었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구에서는 책임을 부과하여 손실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본 조례 제1항 (2), (3), (4), (5), (6) 항의 위법행위에 속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식물검역기구에서는 당사자의 불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제25조 당사자가 식물검역기구의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식물검역기구의 상급기구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 기간 내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기소도 하지 않은채 행정처벌결정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물검역기구에서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하거나 법에 근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26조 국내 식물검역 요금 수취 기준과 방법은 농업부, 재정부, 국가물가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7조 본 실시세칙에서 나오는 '이상', '이하'라 함은 본 숫자를 포함한다.

본 실시세칙에서 나오는 '역황'이라 함은 전국 식물검역대상,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보충한 식물검역대상, 국외에서 새로이 유입된 것과 국내 돌발성의 위험성병, 벌레, 잡초 및 식물검역대상과 위험성병, 충, 잡초의 발생 및 분포상황을 말한다.

제28조 식물검역 규장과 규범성문건의 제정은 반드시 국무원에서 반포한 《식물검역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어떤 《식물검역조례》와 어긋나는 규장과 규범성 문건들은 무엇이든 모두 무효이다.

제29조 본 실시세칙은 농업부 책임 하에 해석한다.

제30조 본 실시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3년 10월 20일 농목어업부에서 반포한 《식물검역조례실시세칙(농업부분)》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외도입 종자·묘목 등 검역 심사비준 관리방법

(1993년11월10일 농업부 반포)

제1조 국외(境外 포함, 이하 같음)에서 들어오는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의 검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물검역조례》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외로부터 종자 묘목과 기타 번식재료의 도입은 농업부와 각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청(국)에서 2중으로 심사비준을 실행한다. 집행기구는 농업부 전국식물보호 총괄기관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청(국) 식물검역기관이다.

제3조 종자 묘목과 기타번식재료를 도입하는 단위 혹은 대리 도입단위(아래에는 도입단위라 함)는 반드시 대외무역계약 혹은 협의에서 《도입 종자 묘목의 검역비준 명세》에서 제기한 대외 식물검역요구를 열거해야 하며, 수출 국가 혹은 지구 정부 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서가 중국의 대외식물 검역요구에 부합 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4조 도입종자 검역신청

(1)도입단위는 반드시 대외무역 계약 협의를 체결하기 30일 전에 국외도입종자 검역심사 비준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2)국무원과 중앙 각 부문 소속 북경소재단위, 북경소재 부대단위, 북경소재 외국기구 등은 농업부 전국 식물보호총괄기관에 신청을 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 유관단위와 중앙부서의 북경 외 주재단위는 재배지구의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 청(국) 식물검역(식물보호식물검역)기관에 신청을 제출한다.

(3)도입단위가 신청을 제출할 때 규정한 격식 및 요구에 따라 《종자 묘목 도입 검역심사비준 신청서》(부록)를 기입해야 한다. 생산용 종묘 도입은 이와 함께 반드시 유효한 종묘 수입권 증명을 하여야 한다.

농업부 전국식물보호총괄기관에 심사비준한 생산용 종묘를 보고하고, 재배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농업청(국) 식물검역(식물보호·식물검역)기관이 서명한 유관 종묘의 역황상황 검측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4)도입단위는 반드시 도입 식물의 원산지에서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해 알아야 하며, 또한 신청 시 검역심사비준단위에 유관 역황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도입 물량은 큰데 역황이 분명하지 못하여 농업안전생산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묘는 도입단위가 반드시 사전에 검역인원이 참가하는 종묘 원산지 역황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5조 검역 심사 비준

(1) 검역 심사비준단위는 《종자 묘목 도입 검역심사 비준 신청서》를 받은 후 15일 내에 심사비준하거나 혹은 서명하여 돌려보낸다.

(2) 농작물종자자원과 과학연구시험재료의 도입, 북경에 있는 국무원과 북경소재 중앙 각 부문 소속단위, 북경주둔 부대단위, 북경주재 외국기구 등에 대해서는 농업부 전국식물보호총괄기관에서 심사비준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유관단위와 북경 외 소재 중앙 각 부문 소속단위는 재배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청(국) 식물검역(식물보호·식물검역)기관에서 심사비준한다. 열대작물종자자원교환과 도입은 농업부 개간담당부서의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농업부 전국식물보호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한다.

종자자원과 과학연구시험재료의 검역심사 비준허용량은 '부록2'에 제시하였다.

(3) 국제 구역(區域)성 실험과 대외에서 만든 종묘 도입은 재배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청(국) 식물검역(식물보호식물검역)기관이 의견을 기재 서명한 후 농업부 전국식물보호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한다.

(4) 생산용 종묘의 도입

1. 새로 도입(이전에 도입한 적이 없는 것과 최근 3년 내에 도입하지 않은 것을 지칭함)한 작물 혹은 품종의 도입은 반드시 사전에 소량(종자는 2무, 묘목은 50주 분량으로 제한)을 시험적으로 격리하여 심어야 한다. 도입단위는 도입신청 전에 반드시 격리 재배계획을 수립하고 격리 시험재배 상황이 검역요구에 부합하면 재배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청(국) 식물검역(식물보호·식물검역)기관에서 심사하고 비준한다.

2. 이미 당해지역에서 다년간 도입됐었고 역황 감측을 거쳐 검역요구에 부합하는 작물 혹은 품종은 그 도입수량이 '생산용 종묘도입 검역심사비준 허용량' 내에 있는 것은 재배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청(국) 식물검역(식물보호식물검역)에서 심사 비준한다(북경소재 국무원과 중앙 각 부문소속단위, 북경주둔 부대단위, 북경주재 외국기구 등은 농업부 전국식물보호총괄기관이 심사비준한다). 초과하는 수량의 도입은 재배지 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청(국) 식물검역(식물보호식물검역)기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한 후 농업부 전국식물보호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한다.

(5) 《종자 묘목 도입 검역심사 비준증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단, 최장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도입단위가 검역심사 기준을 거친 후 《종자 묘목 도입 검역심사 비준증서》의 유효기한이 이미 초과하였거나 도입한 종묘의 품종, 수량, 수출국가 혹은 지구를 변경하려고 할 때 검역 심사기준 수속 모두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6조 종묘 입국 후 검역

- (1)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종묘가 도입된 후 《종자 묘목 도입 검역심사 비준증서》를 일선 동식물 검역기관으로부터 찾아서 바로 종묘 심사 비준 단위에 보내어 심사한다.
- (2) 종묘 도입 후 도입단위는 반드시 《종자 묘목 도입 검역심사 비준증서》에서 지정한 지점에서 도입 종묘를 격리하여 심어보거나 재배해 본다. 격리하여 심어 보거나 재배할 때 그 기간은 일년생 식물은 한 생육주기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다년생 식물은 최소 2년이여야 한다. 격리하여 심어보거나 재배하는 기간에 재배지의 성 농업청(국) 식물검역(식물보호·식물검역)기관에서 역황감측을 책임지며, 동시에 역황 감측보고에 서명한다. 필요할 때 전국 식물보호총괄기관은 중점적으로 역황 감측을 한다.

제7조 검역심사비준 관리

- (1) 국외 도입 심사비준은 분기별 보고제도를 실시한다. 각성 자치구 직할시 식물검역(식물보호·식물검역)총괄기관은 반드시 매 새로운 분기가 시작 첫 달의 10일 내에 전번 분기의 종묘 도입검역 심사비준 및 역황 감측상황을 전국 식물보호총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역황을 발견했을 때에는 반드시 바로 보고해야 한다.
- (2) '국외도입 검역 심사비준 허용량'은 전국식물보호총괄기관이 역황변화 상황과 농업생산발전 상 실제필요에 근거하여 수정을 한다.
《종자 묘목 도입 검역심사 비준신청서》 《종자 묘목 도입 검역심사 비준증서》는 농업부 전국식물보호총괄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양식을 제정하고 각성 자치구 직할시 농업청(국)에서 통일적으로 복제한다
- (3) 국외도입 검역심사 비준비용과 재배기간 역황 감측비용은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받는다. 중점 역황을 실제 조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검역비는 도입단위에서 책임진다.

제8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것을 위반하면 국가 유관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 본 방법은 반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1980년 8월 12일 농업부에서 《종자 묘목

도입 검역심사 비준증서에 관한 통지》와 1990년 8월13일 농업부에서 《국외도입 검역심사 비준사업에 관한 보충규정(실험실행)의 통지》는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 입국동물 격리검역장 관리방법

(1996년 12월 2일 농업부 반포)

- 제1조 국가 입국동물 격리검역장의 관리와 격리기간 중 동물 안전을 보증하고 목축업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출국경동식물검역법> 및 기타 동식물검역법규의 유관규정을 근거하여 특별히 이 방법을 제정한다.
- 제2조 국가 입국동물 격리검역장은 국가 동식물검역국에서 비준 설립한 것이다. 필요한 격리검역시설과 조건을 구비해야 하며, 입국동물을 전문적으로 격리 검역하는 장소이다. 국가 동식물검역국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으로 하여금 격리장의 검역감독과 관리 책임을 지게 한다. 현재 천진, 북경, 상해, 광주 등 4개의 격리장을 운영한다.
- 제3조 격리장 사용이 필요한 모든 단위는 동물 입국 최소 3개월 전에 국가 동식물검역국에 예약 수속을 해야 한다. 천진, 북경, 상해, 광주 등 4개 격리장의 예약이 필요한 단위는 동시에 관령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격리장 차용 예약금(격리장 차용비의 50%로 계산한다.)을 지불하여야 한다. 예정된 시간에 격리장을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예정수속을 거쳐야 한다. 사정 상 예정된 격리장의 사용이 취소되면 바로 국가 동식물검역국을 통지해야 한다. 화물주의 귀책사유로 예정시간에 격리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4조 격리장은 반드시 격리동물의 양호한 조건, 완전하고 양호한 시설, 가축우리 및 우리 안의 청결한 환경위생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쥐의 소멸, 모기와 파리 방지, 화재 및 도난 방지, 독성 방제 등 관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제5조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이 동의한 인원만이 격리장에 들어갈 수 있다. 비 업무 인원은 격리구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역과 관계없는 그 어떤 동물이든 격리장으로 휴대하는 것은 금지한다.
- 제6조 격리장 사용 전후 국가 동식물검역국이 지정한 소독약을 사용하여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감독 하에 매회 3일 간격으로 3회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 제7조 동일 격리구 내에 별도로 격리장 사용신청을 동물들을 한꺼번에 격리수용하지 못한다. 격리사의 이용간격은 30일이다.
- 제8조 동물 및 운송도구는 소독한 후라야 격리장에 출입할 수 있고, 격리장에 들어간 목초, 사료는 비 감염구에서 가져와야 하며 동시에 소독처리를 거쳐야 한다. 동물 포장물과 집기재료도 반드시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 제9조 동물격리기간의 수의위생요구는 다음과 같다.

- (1) 사양인원은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이 인정한 병원에서 건강 검사를 해야한다. 결핵, 布病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릴 수 있는 병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건강검사결과는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 보고한다.
 - (2) 업무관련인원, 사양인원 및 기타 동식물검역기관에서 허락한 인원이 격리구를 출입할때는 모두 소독하고 샤워 및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
 - (3) 생육(생육제품 포함), 뼈, 가죽, 털 등 동물제품은 격리장에 휴대 금지한다.
 - (4) 정기적으로 청결하게 씻고 소독하며, 가죽과 가죽우리의 청결위생을 유지해야한다.
 - (5)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동의 없이는 생물제품을 격리장내에 휴대할 수 없으며 동물에 약을 주고 치료해서는 안 된다.
 - (6) 사망동물에 반드시 해부하며, 사망원인을 명확히 조사한 후 사체를 무해화 처리한다. 동물이 생산한 새끼, 젖 등은 격리구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 (7) 동물의 분뇨, 깔개, 폐수 및 기타 폐기물은 무해화 처리 후에라야 격리구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
 - (8)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물품이든지 격리구에 가지고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다.
 - (9) 임상 혹은 실험실 검사를 거쳐 전염병이 걸렸다고 증명되거나 의심이 있는 동물은 바로 격리사양을 진행해야 한다.
- 제10조 격리검역기한이 되면 일선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낸 증거를 근거로만이 동물을 격리장밖에 운송할 수 있고 남은 사료 쓴 도구 등은 소독처리 후라야 격리장 밖으로 운송할 수 있다.
- 제11조 매 회 동물 격리검역이 완료되면 격리장은 바로 각종 기록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 제12조 격리장 내에 만약 중대한 감염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속하게 국가 동식물검역국에 보고하고 격리장을 봉쇄하며, 동시에 즉시 철저히 소독하며, 격리장을 비운 상태로 3 개월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 화물주의 부당 사용으로 격리장 설비가 손상되면 화물주가 가격에 의해 배상해야 한다.
- 제14조 본 방법의 해석권은 농업부에 속한다.
- 제15조 본 방법은 반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동물산품 위탁가공관련 검역방역 규정

(1979년 7월 28일 농업부 발표)

‘예방위주’ 방침을 관철하고 가축과 가금의 전염병이 국외로부터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 가공용 동물산품에 대하여 필히 성실하게 강화하고자 특별히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1) 각 단위가 외국(지구포함)에서 동물산품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외 전염발생상황을 신중히 이해해야 하며 경솔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일선 동식물검역소 동의를 받은후 체결하며 계약 중에 수의검역조항이 열거되어야 한다. 부분은 동식물검역소에 보낸다.
- (2) 위탁가공용 동물산품은 각종동물의 생가죽, 생털류(깃털, 짐승 털, 갈기, 꼬리 등), 생고기류, 꿀, 발굽, 뿔, 腸衣 등을 가리킨다.
돼지 산품은 1979년 6월 15일 7부1국 “아프리카 돼지감염병이 중국으로의 진입을 엄격히 방지하는 긴급연합통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3) 위탁가공의 동물산품은 입국 항구에 한해 가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선 동식물검역소가 인정한 방역조건이 구비한 공장에서 가공한다. 공장에서 기타 단위와 기타지방에 맡겨 가공하지 못한다. 위반에 대해서는 동물산품의 입국을 중지시킨다.
- (4) 위탁가공용 동물산품이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은 반드시 우선 신고를 하여야 하고, 항구에 도착하면 바로 수출국 혹은 지역에서 서명 발송한 수의 검역증서와 기타 유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식물검역소에 검역보고와 검역수속을 하여야 한다.
- (5) 항구에 도착한 위탁가공용 동물산품은 동식물검역소 현장 검역을 거친 다음 화물주 혹은 그 대리인이 겉 포장 소독을 한 후 동식물검역소에서 “통과통지증”을 발급한다. 세관의 감독 하에서만 부두, 공항, 정차장을 떠나 지정한 공장 혹은 창고에 운송하여 검역소독을 진행할 수 있다.
- (6) 위탁가공용 동물산품은 가공 전에 동식물검역소가 검역을 진행하며, 화물주가 소독을 책임진다. 생모류, 말린가죽(幹皮張)은 에록시에탄 혼증한다. 염장 처리한 가죽은 다양한 산지별로 소독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꿀, 발굽, 뿔은 고온처리 혹은 에록시에탄 혼증하며, 腸衣는 0.2%의 과산소乙酸에 담가서 소독하며 생고기류는 가공과정 중의 방역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이상 방법 외에 다른 유효소독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가공공장은 오수 무해화 처리를 잘 해야하고, 폐물, 쓰다 남은 재료는 반드시 유효소독 한 후에야만이 배출 혹은 이용할 수 있다.

(7) 동식물검역소는 검역과 소독효과를 조사하는 업무를 착실히 해야 한다. 검역 인원은 통상 현장에 가서 가공과정 전반의 방역소독업무를 조사하고 지도해야 한다.

(8) 위탁가공용 동물산품은 가공 후 외국으로 운송할 때 다시 검역하지 않으며, 임의의 어떤 증명도 발급하지 않는다.

(9) 규정의 해석권은 농업부에 속한다.

부대계통 가축·가금 및 그 생산품 위탁검역문제에 관한 통지

(1988 3월 12일 농목어업부 반포)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민해방군은 부대생활을 개선하고, 군대자급력을 제고하고, 국가 육식공급 부족국면을 완화하려고 가축·가금과 가축·가금 생산품을 많이 생산했다. 가축·가금 및 그 산품의 유통 중에 역황이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방군 총 후방 근무부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미 가축·가금 검역을 시작할 수 있는 양호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현재 상인은 부대 가축·가금 검역업무를 실행을 위탁하도록 농목부문에 요청하고 있다. 각지는 《조례》 및 《실시세칙》에 이미 있는 규정과 실제필요에 근거하여 부대에서 사양한 가축·가금 검역 및 증서발급 업무를 조건을 구비한 부대 수의기구에 위탁하며, 본 단위의 가축·가금 및 그 생산품의 검역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현급 이상의 농업/목축부문은 책임지고 자세히 심사하여 위탁증서를 발급하며, 규정에 따라 위탁단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한다. 위탁 관련 조건, 권한과 의무는 성급 농업/목축 행정부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참 고 문 헌

1. 서적

- 허운학외, 「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 해설」, 「매일경제신문사, 2001
- 로렌스 브람 편, 「중국의 시대」, 민음사, 2002
- 법무부, 「중국법연구(IV)-헌법」, 1993
- 진형삼외, 「중국의 농업관련 주요법규와 조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 李生, 王樂軍 主編, 「農業基本法律問題研究」, (北京)工商出版社, 2000년8월
- 丁關良 著, 「中國農村法治基本問題研究」, (北京)中國農業出版社, 2001년7월
- 周建華 編, 「農業政策與法規」, (廣州)華南理工大學出版社, 2001년4월
- 王存學, 駱友生 主編, 「中國農村經濟法律基本問題」, (北京)法律出版社, 1998년3월
- 浙江省農業廳 編, 「農業法規與政策」, (杭州)浙江科學技術出版社, 2001년10월
- 于書良 主編, 「農業政策與法規」, (濟南)山東人民出版社, 1999년7월
- 李步雲, 汪永清 主編, 「中國立法的基本理論和制度」, (北京)中國法制出版社, 1998년5월
- 趙昌文 著, 「農業宏觀調控論」, (成都)西南財經大學出版社, 1997년5월
- 全國人大司法委員會 編, 「依法全面推進村民自治」, (北京)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01년3월
- 張力 主編, 「林業政策與法規」, (北京)中國林業出版社, 2000년1월
- 毛育剛 著, 「中國農業演變之探索」,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년7월
- 楊鵬飛, 洪民榮 編著, 「WTO法律規則與中國農業」, (上海)財經大學出版社, 2000년8월

2. 법령집

- 華瑞捷 主編, 「農業政策法律法規實用全書」, (北京)國家行政學院出版社, 1999년3월
- 農業部政策體改法規司 編, 「農業法律法規規章全書」, (北京)經濟科學出版社, 1998년5월

3. 연감 및 보고자료

- 中國農業年鑒編輯委員會 編, 「2001中國農業年鑒」, (北京)中國農業出版社, 2001년11월
- 中華人民共和國 編, 「2001中國農業發展報告」, (北京)農業出版社, 2001년10월

중국 농업관련법령 해설 연구

인쇄 2002년 4월

발행 2002년 4월

발행처 협성대학교

전화 031-299-0900

F a x 031-227-3131

인쇄 (주)인쇄마을
031-227-2300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